

19414095

1994年度

水産業動向에 관한 年次報告書

水 産 廳
NATIONAL FISHERIES ADMINISTRATION



이 年次報告書는 1993年度의 水産業 動向과 施策 및 1994年度의 水産施策에 관한 報告書로서 水産振興法 第 16條의 規定에 의하여 1994年度 國會 定期會에 提出하기 위하여 作成하였음.

目 次

| | |
|------------------------------|----|
| 第 1 編 1993年度 水産業 動向 | 1 |
| 第 1 章 世界 水産業 動向 | 3 |
| 第 1 節 水産物 生産 | 3 |
| 第 2 節 水産物 交易 | 5 |
| 第 2 章 우리나라 水産業 動向 | 7 |
| 第 1 節 漁業 構造 | 7 |
| 第 2 節 漁家 經濟 | 24 |
| 第 3 節 水産物 生産 | 30 |
| 第 4 節 水産物 輸出·入 | 40 |
| 第 5 節 水産物 需給 및 價格 | 45 |
| 第 6 節 漁場環境 | 49 |
| 第 2 編 1993年度 水産施策 | 59 |
| 第 1 章 바다 淨化와 기르는 漁業 育成 | 61 |
| 第 1 節 바다 淨化 | 61 |
| 第 2 節 水産資源 造成 | 66 |

| | |
|------------------------------|-----|
| 第3節 養殖漁業 開發 | 69 |
| 第4節 內水面漁業 開發 | 71 |
| 第2章 漁業 構造調整과 秩序 確立 | 73 |
| 第1節 漁業構造 調整 | 73 |
| 第2節 漁業制度의 整備·補完 | 74 |
| 第3節 漁業秩序 確立 | 75 |
| 第3章 漁村 綜合開發과 漁業基盤施設 擴充 | 79 |
| 第1節 漁村 綜合開發 | 79 |
| 第2節 漁村人力 育成 | 81 |
| 第3節 漁港建設 擴充 | 84 |
| 第4節 漁撈施設의 現代化 | 87 |
| 第4章 水産物 流通改善과 加工産業 育成 | 92 |
| 第1節 水産物 價格 安定 | 92 |
| 第2節 流通構造 改善 | 94 |
| 第3節 水産物 加工産業 育成 | 97 |
| 第4節 水産物 檢査 | 101 |
| 第5節 水産物 輸出·入 對策 | 103 |
| 第5章 遠洋漁業의 育成 | 110 |
| 第1節 國際漁業 協力 強化 | 110 |
| 第2節 新漁場 開發 | 112 |
| 第3節 遠洋漁業 競爭力 強化 | 113 |

| | |
|------------------------------|-----|
| 第 6 章 水產 技術開發 | 117 |
| 第 1 節 研究機能 強化 | 117 |
| 第 2 節 水產 技術開發 | 118 |
| 第 3 節 漁具漁法 및 加工技術 開發 | 122 |
| 第 4 節 漁場環境 및 資源調查 | 126 |
| 第 5 節 水產技術 指導·普及 | 131 |
| 第 6 節 水產技術 訓練 | 135 |
| 第 7 章 支援體制 整備과 制度 改善 | 138 |
| 第 1 節 漁民支援 強化 | 138 |
| 第 2 節 行政規制 緩和 | 153 |
| 第 3 編 1994年度 水產施策 | 157 |
| 第 1 章 基本方向 | 159 |
| 第 1 節 水產業의 與件 變化 | 159 |
| 第 2 節 重點 推進施策 | 160 |
| 第 3 節 投融資 規模 | 162 |
| 第 2 章 바다 淨化와 기르는 漁業 育成 | 165 |
| 第 1 節 沿岸漁場 淨化 | 165 |
| 第 2 節 沿岸漁場 污染 防止 | 165 |
| 第 3 節 水產資源 造成 | 166 |
| 第 4 節 養殖漁場 開發·整備 | 169 |
| 第 5 節 內水面漁業 開發 | 171 |

| | |
|----------------------------|-----|
| 第3章 漁業構造調整과 秩序確立 | 173 |
| 第1節 漁業構造調整 | 173 |
| 第2節 不法漁業追放 | 178 |
| 第3節 操業水域擴張 | 179 |
| 第4節 安全操業指導 | 180 |
| 第4章 漁村綜合開發과 漁業基盤施設擴充 | 181 |
| 第1節 漁村綜合開發 | 181 |
| 第2節 漁村人力育成 | 184 |
| 第3節 漁港施設擴充 | 186 |
| 第4節 漁撈施設의 現代化 | 188 |
| 第5章 水產物流通改善과 加工產業育成 | 195 |
| 第1節 價格安定對策 | 195 |
| 第2節 流通構造改善 | 197 |
| 第3節 加工產業育成 | 200 |
| 第4節 水產物檢査 | 202 |
| 第5節 水產物輸出·入對策 | 204 |
| 第6章 遠洋漁業의 育成 | 206 |
| 第1節 國際漁業協力強化 | 206 |
| 第2節 既存漁場確保 및 新漁場開發 | 207 |
| 第3節 遠洋漁業競爭力強化 | 212 |
| 第7章 水產技術開發 | 214 |

| | |
|-----------------------------|-----|
| 第 1 節 養殖品種 研究開發 | 214 |
| 第 2 節 漁具漁法 및 加工技術 開發 | 219 |
| 第 3 節 漁場環境 및 資源調查 | 223 |
| 第 4 節 水産技術 指導·普及 | 226 |
| 第 5 節 研究機能 強化 | 228 |
| 第 6 節 水産技術 訓練 | 229 |
| | |
| 第 8 章 支援體制 整備 및 制度 改善 | 232 |
| 第 1 節 漁民支援 強化 | 232 |
| 第 2 節 行政規制 緩和 | 241 |
| | |
| 第 9 章 農漁村發展委員會의 活動 支援 | 242 |
| 第 1 節 農漁村發展委員會 構成 運營 | 242 |
| 第 2 節 水産業發展對策의 檢討 | 244 |
| 第 3 節 農漁村特別稅 投資計劃 樹立 | 246 |
| | |
| 〈統計로 본 水産業 動向〉 | 251 |

表 目 次

| | | |
|--------|---------------------------|----|
| 〈表 1〉 | 世界 水産物 生産推移 | 4 |
| 〈表 2〉 | 世界 水産物 輸出推移 | 5 |
| 〈表 3〉 | 世界 水産物 輸入推移 | 6 |
| 〈表 4〉 | 漁家戸數と 漁家人口 | 7 |
| 〈表 5〉 | 漁業従事者 性別、年齢別 構成 | 8 |
| 〈表 6〉 | 専業・兼業別 漁業家口 | 9 |
| 〈表 7〉 | 漁業形態別 漁業家口 | 9 |
| 〈表 8〉 | 漁業生産 現況 | 10 |
| 〈表 9〉 | 漁業 總生産(附加價値) 現況 | 10 |
| 〈表 10〉 | 漁業別 漁船勢力 | 11 |
| 〈表 11〉 | 船質別 漁船隻數 | 12 |
| 〈表 12〉 | 等級別 漁船隻數 | 12 |
| 〈表 13〉 | 品目別、年度別 養殖漁場 面積 | 15 |
| 〈表 14〉 | 所有者別 年度別 淺海 養殖漁場 面積 | 16 |
| 〈表 15〉 | '93品目別 所有者別 養殖漁場 面積 | 16 |
| 〈表 16〉 | 内水面 養魚場 現況 | 17 |
| 〈表 17〉 | 沿岸漁業 經營體 推移 | 18 |
| 〈表 18〉 | 近海漁業 經營體 推移 | 20 |
| 〈表 19〉 | '93養殖漁業 經營體 構成 | 21 |
| 〈表 20〉 | 内水面漁業 經營體 推移 | 22 |
| 〈表 21〉 | 遠洋業體の 經營規模 推移 | 23 |

| | | |
|--------|---|----|
| 〈表 22〉 | 漁家所得 推移 | 24 |
| 〈表 23〉 | 漁業外 所得構成 | 25 |
| 〈表 24〉 | 可處分所得 吳 家計費 | 26 |
| 〈表 25〉 | 家計費 支出內譯 | 26 |
| 〈表 26〉 | 漁家資産 推移 | 27 |
| 〈表 27〉 | 漁家負債 推移 | 28 |
| 〈表 28〉 | 漁家便宜用品 保有現況 | 29 |
| 〈表 29〉 | 漁業別 生産推移 | 30 |
| 〈表 30〉 | 沿近海漁業 業種別 生産推移 | 34 |
| 〈表 31〉 | 養殖漁業 品種別 生産推移 | 35 |
| 〈表 32〉 | 内水面漁業 品種別 生産推移 | 37 |
| 〈表 33〉 | 遠洋漁業 業種別 生産推移 | 40 |
| 〈表 34〉 | 水産物 輸出推移 | 40 |
| 〈表 35〉 | 品目別 輸出實績 | 41 |
| 〈表 36〉 | 國家別 輸出實績 | 42 |
| 〈表 37〉 | 主要 魚種別 輸出實績 | 43 |
| 〈表 38〉 | 水産物 輸入動向 | 45 |
| 〈表 39〉 | 水産物 需給動向 | 46 |
| 〈表 40〉 | 動物性 蛋白質 供給推移 | 46 |
| 〈表 41〉 | 水産物 利用動向 | 48 |
| 〈表 42〉 | 水産物 生産者物價 動向 | 49 |
| 〈表 43〉 | 水産物 消費者物價 動向 | 49 |
| 〈表 44〉 | '93年 우리나라 近海漁場 50m층의 水溫 不連續帶 分布位置 變動 | 51 |
| 〈表 45〉 | '93年 우리나라 近海漁場 먹이生物 豐富海域 分布變動 | 52 |

| | | |
|--------|----------------------|-----|
| 〈表 46〉 | 清淨海域 指定現況 | 62 |
| 〈表 47〉 | 水產資源 保全地域 指定現況 | 62 |
| 〈表 48〉 | 漁場淨化 事業實績 | 65 |
| 〈表 49〉 | 市·道別 人工魚礁 施設實績 | 66 |
| 〈表 50〉 | 水產種苗培養場 現況 | 67 |
| 〈表 51〉 | 民間 種苗買入 放流實績 | 68 |
| 〈表 52〉 | '93 養殖漁場 生産基盤施設 支援現況 | 70 |
| 〈表 53〉 | 内水面 稚魚放養 實績 | 71 |
| 〈表 54〉 | 연어 放流 및 採捕 實績 | 72 |
| 〈表 55〉 | 漁業指導船 現況 | 76 |
| 〈表 56〉 | 不法漁業 團束實績 | 76 |
| 〈表 57〉 | 漁民福祉會館 建立實績 | 80 |
| 〈表 58〉 | 漁村 觀光開發 推進實績 | 80 |
| 〈表 59〉 | 漁民後繼者 育成 支援實績 | 82 |
| 〈表 60〉 | 年度別 寄宿舍 食費 補助現況 | 83 |
| 〈表 61〉 | 韓國漁業技術訓練所 教育實績 | 83 |
| 〈表 62〉 | 全國 漁港 指定現況 | 85 |
| 〈表 63〉 | 漁港開發 現況 | 86 |
| 〈表 64〉 | 漁撈施設事業 實績 | 88 |
| 〈表 65〉 | 沿岸 開發漁船斗 既存漁船斗 比較 | 89 |
| 〈表 66〉 | 政府備蓄事業 實績 | 93 |
| 〈表 67〉 | '93 水產物 流通補給施設 支援現況 | 95 |
| 〈表 68〉 | 内地地共販場 系統出荷 實績 | 96 |
| 〈表 69〉 | 水產加工品 生産推移 | 99 |
| 〈表 70〉 | 加工業體 支援實績 | 100 |
| 〈表 71〉 | 輸出水產物 檢查推移 | 101 |

| | | |
|--------|----------------------------------|-----|
| 〈表 72〉 | 關稅讓許 品目 | 104 |
| 〈表 73〉 | 補助金의 分類 | 105 |
| 〈表 74〉 | '93 輸入自由化 品目現況 | 106 |
| 〈表 75〉 | '93年度 輸入自由化 品目의 輸入動向 | 107 |
| 〈表 76〉 | 輸出用 水產物 收買促進資金 支援現況 | 108 |
| 〈表 77〉 | 우리나라 近海 海況變動 調査 및 海況情報 提供 體系圖 | 127 |
| 〈表 78〉 | 年度別 自援 漁村指導者 確保人員 | 134 |
| 〈表 79〉 | 水產公務員教育院 教育訓練 實績 | 137 |
| 〈表 80〉 | 營漁資金 供給實績 | 138 |
| 〈表 81〉 | 水產振興財政資金 運用實績 | 139 |
| 〈表 82〉 | '93 農漁村發展基金 運用規模 | 140 |
| 〈表 83〉 | 水協 自體資金 造成 및 運用 | 141 |
| 〈表 84〉 | 被害 및 復舊費 支援內譯 | 142 |
| 〈表 85〉 | 船員共濟料 國庫補助金 支援實績 | 143 |
| 〈表 86〉 | 附加價値稅 零稅率 適用 機資材 品目 | 145 |
| 〈表 87〉 | '93년 水產業分野 歸屬 標準所得率 調整內譯 | 146 |
| 〈表 88〉 | 免稅油類 供給實績 | 147 |
| 〈表 89〉 | 水協의 組織 | 148 |
| 〈表 90〉 | 水協 事業規模 | 149 |
| 〈表 91〉 | 水協中央會 收支狀況 | 150 |
| 〈表 92〉 | 會員組合 收支狀況 | 150 |
| 〈表 93〉 | 出資金 造成狀況 | 150 |
| 〈表 94〉 | 水產物 輸出團體 現況 | 151 |
| 〈表 95〉 | 水產關聯 非營利法人 現況 | 152 |
| 〈表 96〉 | 規制緩和 推進狀況 | 154 |

| | | |
|---------|---------------------------|-----|
| 〈表 97〉 | '94 水產豫算 | 162 |
| 〈表 98〉 | '94 水產資金 支援計劃 | 164 |
| 〈表 99〉 | 人工魚礁 施設計劃 | 167 |
| 〈表 100〉 | 培養場別 種苗生産計劃 | 168 |
| 〈表 101〉 | '94 水產養殖事業 支援計劃 | 170 |
| 〈表 102〉 | '94 漁村綜合開發 推進計劃 | 182 |
| 〈表 103〉 | '94 漁村 觀光開發 推進計劃 | 183 |
| 〈表 104〉 | 漁民後繼者 育成 支援計劃 | 184 |
| 〈表 105〉 | 自營水產科 學生現況 | 185 |
| 〈表 106〉 | '94 海技士 吳 漁船員 教育訓練 計劃 | 186 |
| 〈表 107〉 | 漁撈施設 事業計劃 | 191 |
| 〈表 108〉 | '94 政府備蓄 事業計劃 | 196 |
| 〈表 109〉 | '94 規格出荷 事業計劃 | 199 |
| 〈表 110〉 | 附加價値稅 零稅率 適用擴大 對象漁業用 機資材 | 233 |
| 〈表 111〉 | '94 免稅油類 供給計劃 | 233 |
| 〈表 112〉 | 營漁資金 供給計劃 | 235 |
| 〈表 113〉 | 水產振興財政資金 運用計劃 | 235 |
| 〈表 114〉 | 農漁村構造改善事業計定 運用規模 | 236 |
| 〈表 115〉 | 各種 特別對策別 金利引下 吳 '94 利差補填額 | 238 |
| 〈表 116〉 | 漁船 吳 船員 共濟加入 計劃 | 239 |
| 〈表 117〉 | 規制緩和 推進狀況 | 241 |
| 〈表 118〉 | 農漁村發展委員會 建議事項 | 245 |
| 〈表 119〉 | 農漁村特別稅 投資計劃('94~2004) | 248 |

第 1 編

1993年度 水産業 動向

여백

第 1 章 世界 水産業 動向

第 1 節 水産物 生産

FAO통계에 의하면 '92년 世界 水産物 生産량은 '91년의 97,052천톤보다 1,061천톤이 증가한 98,113천톤으로서 1.1% 증가하였다.

나라별로 보면 중국이 前年보다 14.3%가 증가한 15,007천톤을 생산하여 전년에 이어 수위를 차지하였으며, 일본은 8,460천톤으로 전년 2위를 그대로 유지하였고, 페루는 6,843천톤으로 3위를 차지하였다.

그다음 順位로 칠레, 러시아, 미국 등이 차지하였는데, 특히 칠레는 6,502천톤을 生産하여 전년보다 8.3%가 증가하였다.

한편, 우리나라의 生産量은 전년의 2,521천톤보다 175천톤이 증가한 2,696천톤으로 전체 생산량의 2.7%를 차지하여 세계 제10위를 차지하였다.

主要魚種의 생산량을 살펴보면, 청어, 정어리, 멸치류는 20,389천톤으로 전년에 비하여 1,321천톤이 減少하였으며, 명태, 대구, 민대구류는 10,543천톤으로 140천톤이 증가한 반면, 가다랭이, 다랭이, 새치류는 4,395천톤으로 59천톤이 감소하였다.

그밖에 연어, 송어류는 1,447천톤, 오징어, 문어류는 2,758천톤을 생산하여 각각 196천톤, 141천톤이 감소하였다.

〈表 1〉

世界 水産物 生産推移

單位：千톤

| 計 | '90 | '91 | '92 | '92/'91 |
|---------|--------|--------|--------|---------|
| 중 국 | 12,095 | 13,135 | 15,007 | 114.3 |
| 일 본 | 10,354 | 9,301 | 8,460 | 91.0 |
| 페 루 | 6,875 | 6,949 | 6,843 | 98.5 |
| 칠 레 | 5,195 | 6,002 | 6,502 | 108.3 |
| 러 시 아 | 10,389 | 6,894 | 5,611 | 81.4 |
| 미 국 | 5,870 | 5,489 | 5,603 | 102.1 |
| 인 도 | 3,794 | 4,044 | 4,175 | 103.2 |
| 인 니 | 3,044 | 3,252 | 3,358 | 103.3 |
| 타 일 랜 드 | 2,786 | 2,968 | 2,855 | 96.2 |
| 한 국 | 2,843 | 2,521 | 2,696 | 106.9 |
| 기 타 | 34,311 | 36,497 | 37,003 | 101.4 |

資料：FAO, Yearbook of fishery statistics, 1992.

註：수산식물 제외

第 2 節 水産物 交易

'92년의 세계 수산물 輸出額은 前年보다 3.6% 증가한 40,276백만 \$이었다.

이를 나라별로 보면 미국이 前年에 比하여 9.2% 증가한 3,583백만 \$을 달성하여 세계 제1위를 차지하였고, 타일랜드가 3,072백만 \$로 세계 2위, 노르웨이가 2,437백만 \$로 3위이며, 우리나라의 수산물 수출액은 전년 1,500백만 \$보다 8.9%가 감소한 1,366백만 \$로 '91년의

〈表 2〉

世界 水産物 輸出推移

單位：百萬\$

| | '90 | '91 | '92 | '92/'91 |
|-----------|--------|--------|--------|---------|
| 計 | 35,752 | 38,892 | 40,276 | 103.6% |
| 미 국 | 3,020 | 3,282 | 3,583 | 109.2 |
| 타 일 랜 드 | 2,265 | 2,901 | 3,072 | 105.9 |
| 노 르 웨 이 | 2,060 | 2,282 | 2,437 | 106.8 |
| 덴 마 크 | 2,165 | 2,302 | 2,320 | 100.8 |
| 카 나 다 | 2,270 | 2,168 | 2,085 | 96.2 |
| 중 국 | 1,302 | 1,182 | 1,560 | 132.0 |
| 네 델 란 드 | 1,333 | 1,356 | 1,410 | 104.0 |
| 한 국 | 1,363 | 1,500 | 1,366 | 91.1 |
| 아 이 슬 랜 드 | 1,240 | 1,280 | 1,253 | 97.9 |
| 기 타 | 18,734 | 20,639 | 21,190 | 102.7 |

資料：FAO, Yearbook of fishery statistics, 1992.

註：수산물, 어망 제외

제6위에서 8위로 밀려났다.

한편, 세계의 수산물 輸入額은 45,452백만\$로서 전년에 비하여 4.1%가 증가하였다.

이를 나라별로 살펴보면 일본이 6.2% 증가한 12,832백만\$을 기록하여 제1위를 차지하였으며, 美國이 6,024백만\$로 2위, 프랑스가 2,935백만\$로 3위, 그뒤를 이어 스페인이 2,898백만\$로 4위를 차지하였다.

우리나라의 수산물 輸入額은 전년의 578백만\$에서 '92년에는 505백만\$로 12.6% 감소하여 세계 17위를 차지하였다.

〈表 3〉

世界 水産物 輸入推移

單位 : 百萬\$

| | | '90 | '91 | '92 | '92/'91 |
|---|---|--------|--------|--------|---------|
| 計 | | 39,535 | 43,654 | 45,452 | 104.1% |
| 일 | 본 | 10,668 | 12,086 | 12,832 | 106.2 |
| 미 | 국 | 5,573 | 5,600 | 6,024 | 107.6 |
| 프 | 랑 | 2,809 | 2,926 | 2,935 | 100.3 |
| 스 | 페 | 2,361 | 2,749 | 2,898 | 105.4 |
| 이 | 탈 | 2,458 | 2,690 | 2,643 | 98.3 |
| 독 | 일 | 1,900 | 2,114 | 2,191 | 103.6 |
| 영 | 국 | 1,911 | 1,911 | 1,907 | 99.8 |
| 홍 | 콩 | 1,112 | 1,232 | 1,398 | 113.5 |
| 덴 | 마 | 1,116 | 1,149 | 1,197 | 104.2 |
| 기 | 타 | 9,627 | 11,197 | 11,427 | 102.1 |

資料 : FAO, Yearbook of fishery statistics, 1992.

第 2 章 우리나라 水産業 動向

第 1 節 漁業 構造

1. 漁家人口

정부에서 조사한 '93漁業基本統計調查結果에 의하면 전국의 '93漁家戶數는 前년에 비하여 1.7%가 減少한 114천호로 조사되었다.

또한 漁家人口는 전년에 비하여 4.7% 감소한 405천명으로 나타났다. 이 중 여자는 206천명으로 전체의 51%를 차지하여 전년도 構成比 수

〈表 4〉 漁家戶數와 漁家人口

單位：千戶、千名

| | '90 | '91 | '92 | '93 | '93/'92 |
|-------------|------|------|------|------|---------|
| 漁 家 戶 數 | 122 | 120 | 116 | 114 | 98.3% |
| 漁 家 人 口 | 496 | 470 | 425 | 405 | 95.3 |
| 戶 當 漁 家 人 口 | 4.08 | 3.92 | 3.66 | 3.56 | 97.3 |

資料：농림수산부 '93어업기본통계조사결과

註：'90이후 海面漁業에 종사하는 경영자가구만을 대상으로 하였음

준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한편 漁業従事者도 207천명으로 전년도 수준을 그대로 유지하였는데, 이 중 여성종사자 비율은 '92년도 47.4%에서 '93년도 48.3%로 증가하였다. 연령 構成比를 보면 50세이상 노년층이 '92년도 46.8%에서 '93년도 48.5%로 1.7% 높아져서 어촌의 人力構造가 매년 부녀화, 高齡化되어 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산업의 高度化로 인한 어촌인력의 都市流入 증가와 어촌 생활환경의 落後, 힘든 일 기피현상 등에 그 原因이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表 5〉 漁業従事者 性別, 年齡別 構成

單位：千名

| | | '90 | '91 | '92 | '93 | '93/'92 |
|-------------|---------|--------|--------|--------|--------|---------|
| 性 別 | 男 子 | 118.7 | 113.0 | 108.7 | 106.9 | 98.3% |
| | 女 子 | 93.1 | 91.6 | 97.9 | 99.7 | 101.8 |
| | (構 成 比) | (44.0) | (44.8) | (47.4) | (48.3) | |
| 従 事 者 | | 211.8 | 204.6 | 206.6 | 206.6 | 100.0 |
| 年 齡 別 | 15~19세 | 1.5 | 1.4 | 0.9 | 0.7 | 77.8 |
| | 20~49세 | 126.0 | 115.8 | 109.1 | 105.8 | 97.0 |
| | 50세이상 | 84.3 | 87.4 | 96.6 | 100.1 | 103.6 |
| | (構 成 比) | (39.8) | (42.7) | (46.8) | (48.5) | |

資料：농림수산부 '93어업기본통계조사결과

専·兼業別 경영자가구 현황을 살펴보면 純粹專業家口는 25천가구로 22.3%, 兼業家口는 88천가구로 77.7%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겸업어가의 주업종은 農業으로서 77.3%를 점유하고 있으며, 그외 상업 5.1%, 사무직 4.3%, 생산직 4.2% 등으로 나타났다.

〈表 6〉 專業·兼業別 漁業家口

單位：千戶

| | '90 | '91 | '92 | '93 | '93/'92 |
|----|-------|-------|-------|-------|---------|
| 計 | 121.5 | 119.7 | 116.2 | 113.6 | 97.8% |
| 專業 | 28.0 | 28.1 | 26.6 | 25.3 | 95.1 |
| 兼業 | 93.5 | 91.6 | 89.6 | 88.3 | 98.5 |

資料：농림수산부 '93어업기본통계조사결과

漁業經營者 家口の 어업형태별 구성을 살펴보면 養殖漁業家口가 43천가구로 전체 어가구의 37.7%、漁船漁業家口는 37천가구로 32.6%를 차지하였으며 漁船非使用家口는 29.7%인 34천가구로 나타났다.

〈表 7〉 漁業形態別 漁業家口

單位：千戶

| | '90 | '91 | '92 | '93 | '93/'92 |
|------------|----------------|----------------|----------------|----------------|---------|
| 總 漁 家 口 | 121.5 | 119.7 | 116.2 | 113.6 | 97.8% |
| · 漁船非使用家口 | 32.7 (26.9) | 31.4 (26.2) | 33.9 (29.2) | 33.8 (29.7) | 99.7 |
| · 無動力船使用家口 | 2.9 (2.4) | 2.8 (2.3) | 2.0 (1.7) | 1.8 (1.6) | 90.0 |
| · 動力船使用家口 | 36.2 (29.8) | 36.6 (30.6) | 35.4 (30.5) | 35.2 (31.0) | 99.4 |
| · 養殖業家口 | 49.7 (40.9) | 48.9 (40.9) | 44.9 (38.6) | 42.8 (37.7) | 95.3 |

資料：농림수산부 '93어업기본통계조사결과

註：()는 구성비임

2. 漁業 總生産

'93년도 漁業生産量은 3,335천톤으로 前年에 비하여 1.4% 증가하였

〈表 8〉

漁業生産 現況

單位：千톤, 億원

| | '92 | | '93 | | 生産額 增加率 |
|-----|-------|--------|-------|--------|------------|
| | 生産量 | 生産額 | 生産量 | 生産額 | |
| 計 | 3,289 | 33,721 | 3,335 | 36,692 | 8.8% |
| 沿近海 | 1,295 | 18,633 | 1,526 | 22,835 | 22.6 |
| 養殖 | 936 | 6,024 | 1,038 | 5,690 | △ 5.5 |
| 内水面 | 34 | 1,249 | 30 | 1,195 | △ 4.3 |
| 遠洋 | 1,024 | 7,815 | 741 | 6,972 | △ 10.8 |

資料：농림수산부 어업생산량통계

〈表 9〉

漁業 總生産(附加價値) 現況

單位：億원

| | '92 | | '93 | | 增加率 | |
|----------------|------------------|-----------------|-----------------|-----------------|-------|-------|
| | 經常 | '90不變 | 經常 | '90不變 | 經常 | '90不變 |
| 國民總生産(GNP) | 2,387,046 | 2,042,310 | 2,638,609 | 2,156,414 | 10.5% | 5.6% |
| 農林漁業 | 178,058 | 166,034 | 187,850 | 162,107 | 5.5 | △2.4 |
| 漁業 (GNP構成比) | 19,415 (0.8%) | 17,969 (0.9) | 21,093 (0.8) | 19,412 (0.9) | 8.6 | 8.0 |

資料：한국은행 국민계정

註：'93년은 잠정치

으며, 이에 따라 어업생산액도 8.8%가 증가한 3조6,692억원으로 나타났다. 이 중 沿近海漁業은 전년보다 17.8%가 증가한 1,526천톤을 생산하여, 전년보다 22.6%가 증가한 2조2,835억원의 생산액을 기록하였으나, 養殖漁業은 생산량이 10.9% 증가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생산액은 5.5%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원양어업과 내수면어업은 생산량의 감소로 인하여 생산액은 각각 10.8%, 4.3%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漁業生産額에서 중간투입액(유류, 어망, 얼음대 등)을 控除한 '93년어

업 총생산액(부가가치)은 經常價格 기준으로 前年度보다 8.6%가 증가한 2조 1,093억원으로 暫定集計되었는데 이것은 주로 태평양 연안국들의 조업규제의 영향으로 원양어업이 크게 감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오징어, 고등어, 멸치 등 연근해어업이 호조를 보임으로써 전체적으로는 '90년 불변가격 기준으로 전년과 비슷한 수준인 8.0%가 증가하였기 때문이다.

3. 漁船勢力

'93년말 어선세력은 87,473척에 919,917톤으로 '92년말에 비하여 隻數는 7.1%, 톤수는 4.1% 감소하였다. 이 중 動力漁船의 隻數는

(表 10)

漁業別 漁船勢力

單位 : 隻, G/T

| | | '91 | '92 | '93 | '93/'92 |
|-----|-------|---------|---------|---------|---------|
| 計 | 隻數 | 103,848 | 94,135 | 87,473 | 92.9% |
| | · 動力 | 84,024 | 76,825 | 72,838 | 94.8 |
| | · 無動力 | 19,824 | 17,310 | 14,635 | 84.5 |
| | 톤數 | 982,643 | 959,056 | 919,917 | 95.9 |
| | · 動力 | 961,715 | 940,468 | 903,912 | 96.1 |
| | · 無動力 | 20,928 | 18,588 | 16,005 | 86.1 |
| 沿近海 | 隻數 | 56,911 | 55,795 | 53,163 | 95.3 |
| | 톤數 | 455,385 | 450,335 | 448,408 | 99.6 |
| 養殖 | 隻數 | 40,928 | 31,734 | 26,857 | 84.6 |
| | 톤數 | 49,379 | 37,745 | 32,080 | 85.0 |
| 內水面 | 隻數 | 3,181 | 2,967 | 3,044 | 102.6 |
| | 톤數 | 2,640 | 2,607 | 2,534 | 97.2 |
| 遠洋 | 隻數 | 771 | 734 | 546 | 74.4 |
| | 톤數 | 401,034 | 388,630 | 334,443 | 86.1 |
| 其他 | 隻數 | 2,057 | 2,905 | 3,863 | 133.0 |
| | 톤數 | 4,205 | 79,739 | 102,452 | 128.5 |

資料 : 수산청 어선과

〈表 11〉

船質別 漁船隻數

單位：隻、G/T

| | | '91 | '92 | '93 | '93/'92 |
|-----------------|----|---------|---------|---------|---------|
| 計 | 隻數 | 103,848 | 94,135 | 87,473 | 92.9% |
| | 噸數 | 982,643 | 959,056 | 919,917 | 95.9 |
| 木船 | 隻數 | 89,962 | 77,694 | 69,217 | 89.1 |
| | 噸數 | 243,676 | 223,628 | 209,692 | 93.8 |
| 鋼船 | 隻數 | 4,125 | 4,096 | 4,044 | 98.7 |
| | 噸數 | 713,235 | 701,155 | 667,698 | 95.2 |
| 合成樹脂船 (FRP船) | 隻數 | 9,761 | 12,345 | 14,212 | 115.1 |
| | 噸數 | 25,732 | 34,273 | 42,527 | 124.1 |

資料：수산청 어선과

〈表 12〉

噸級別 漁船隻數

單位：隻、G/T

| | '91 | | '92 | | '93 | | '93/'92 | |
|------------|---------|---------|--------|---------|--------|---------|---------|-------|
| | 隻數 | 噸數 | 隻數 | 噸數 | 隻數 | 噸數 | 隻數 | 噸數 |
| 計 | 103,848 | 982,643 | 94,135 | 959,056 | 87,473 | 919,917 | 92.9% | 95.9% |
| 1톤未滿 | 38,135 | 26,326 | 36,675 | 24,449 | 32,234 | 20,685 | 87.9 | 84.6 |
| 1~5톤未滿 | 52,877 | 106,423 | 44,515 | 96,395 | 42,186 | 93,975 | 94.8 | 97.5 |
| 5~50톤未滿 | 9,457 | 144,919 | 9,595 | 143,297 | 9,800 | 144,519 | 102.1 | 100.9 |
| 50~100톤未滿 | 1,941 | 157,425 | 1,910 | 153,597 | 1,945 | 155,243 | 101.8 | 101.1 |
| 100~200톤未滿 | 665 | 90,890 | 685 | 93,547 | 670 | 91,304 | 97.8 | 97.6 |
| 200톤以上 | 773 | 456,660 | 755 | 447,771 | 638 | 414,191 | 84.5 | 92.5 |

資料：수산청 어선과

83.3%, 噸수는 98.3%를 차지하고 있다.

어업별 어선척수는 연근해어선이 60.8%, 養殖漁船이 30.7%, 內水面漁船이 3.5%, 遠洋漁船이 0.6%, 기타어선이 4.4%를 차지하고 있다.

船質別로는 木船이 척수에 있어서는 전체 어선척수의 79.1%를 차지

하고 있으나 톤수에 있어서는 전체 어선톤수의 22.8%에 지나지 않으며, 經濟性 漁船인 合成樹脂船은 전년보다 척수와 톤수가 15.1%, 24.1%가 각각 증가하여 점차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또한 톤급별로 보면 5톤미만 어선은 전체척수의 85.1%, 톤수의 12.5%를 차지하고 있고, 5~50톤미만 어선은 척수와 톤수가 11.2%, 15.7%를 차지하고 있으며, 50톤 이상의 대형어선은 척수와 톤수가 3.7%, 71.8%를 차지하고 있다.

4. 利用漁場

가. 沿近海漁場

우리나라 沿近海漁場의 범위는 『水産業法』 제2조 제5호에서 동해, 황해 및 동중국해와 북위 25°선 이북과 동경 140°선 이서의 太平洋海域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동 수역을 제외한 수역을 海外漁場으로 하여 遠洋漁船이 조업하는 어장으로 구분하고 있다.

우리나라 沿近海 漁業은 60년대의 제주도 근해수역 조업으로부터 동지나해의 소코트라이어로, 70년대에는 황해, 동중국해, 동해의 대화되어장으로 操業漁場이 擴張되어 왔다.

그러나 이들 어장은 우리나라는 물론 일본, 중국, 대만 등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어장으로서 沿近海 水域은 그 일부가 韓·日 漁業協定 등에 의해 協定水域으로 관리하고 있다.

한편, 日本은 200해리 經濟水域을 선포하고 있으나 우리나라와 중국에 대하여 그 시행을 유보하고 있다. 최근에는 沿近海水域의 漁業資源, 특히 저어자원은 극도로 악화된 상태로 평가되고 있으나, 중국의 개방화와 한·중 수교에 따른 經濟交流 확대로 중국어선의 우리나라 沿岸水域 진출이 급증하고 있고, 일본국도 우리나라 어선의 自國水域 違反操

業 등을 이유로 새로운 한·일어업 관계 개선을 요구하고 있는 등 우리나라 沿岸水水域에서 조업경쟁이 계속되고 있다. 또한 '94년에는 유엔 해양법 협약이 발효될 전망으로 있어 연근해어업을 둘러싼 漁業環境이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 沿岸水水域 漁業資源의 보호 관리를 위한 조치와 아울러 우리나라의 漁業 實情 및 새로운 國內·外的 어업환경 변화에 적극 대처하기 위해 연근해 주변국과의 어업관계를 적절히 고려한 共同資源 管理體制의 구축이 필요한 실정이다.

나. 遠洋漁場

우리나라의 遠洋漁業은 '57년 처음 인도양에 참치어선 진출을 시발로 '70년 중반 이전까지는 급진적으로 伸張되었다. 그러나 '70년대 중반에 이르러서는 2차에 걸친 석유 파동과 '77년부터 미·러를 비롯한 세계 沿岸國들이 自國의 領域 확대 및 海洋資源 확보라는 명분으로 200해리 經濟水水域을 선포함으로써 遠洋漁場은 급격히 축소 또는 규제가 강화되어 生産活動에 막대한 제약을 받게 되었다.

'93년도 遠洋漁業은 베링공해 및 오호츠크 공해 등의 操業中斷과 海況 興件的 악화로 북양트롤 어업과 참치어업 등 일부 업종의 어획이 부진함에 따라 '92년 대비 28%(283천톤)가 감소한 741천톤이 생산되었다.

한편 '93년말 遠洋漁船은 備船漁船을 포함 628척이 出漁하여 5대양에서 명태, 오징어, 참치 등을 주 포획대상으로 操業하였으며 漁獲物의 대부분을 국내로 반입하여 水産物 수요 증대에 부응하고 있으나, 沿岸國의 자원자국화 정책 및 국제기구 등의 操業 規制 強化로 입어로 인상은 물론 公海操業도 규제가 강화되고 있어 遠洋漁業의 여건은 날로 어려워 지고 있는 실정이다.

5. 養殖漁場

가. 淺海養殖

淺海養殖 漁場은 '93년말 현재 109천ha가 개발되었으며, 연간 92만 톤 內外의 養殖水産物을 생산, 약 6천억원의 收入으로 漁民 所得增大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정부에서는 地先漁民에 대한 우선적인 養殖免許 取得施策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漁村契(水協) 漁場의 비중이 점차 증대되어 全體 漁場의 70%인 76千ha를 지선 다수 어민이 소유 경영하고 있다.

우리나라 養殖漁場 開發은 60년대에 김, 미역 등 海藻類 중심 양식에서 70년대에는 굴, 피조개 등 패류양식 어업으로 발전되었고 80년대부터는 넙치, 방어, 돔 등 魚類와 眞珠조개 등 高所得 어·패류양식으로 확대되었으며, 현재 양식되고 있는 品種은 넙치, 돔, 조피볼락, 굴, 피

<表 13> 品目別, 年度別 養殖漁場 面積

單位 : ha

| | '90 | '91 | '92 | '93 | 增加率 ('93/'92) |
|-------|-------------------|-------------------|-------------------|-------------------|-------------------|
| 計 | 113,026 (100%) | 109,382 (100%) | 108,241 (100%) | 109,035 (100%) | 0.1% |
| 魚 類 | 1,260 (1.1) | 1,196 (1.1) | 1,281 (1.2) | 1,348 (1.2) | 5.2 |
| 貝 類 | 40,071 (35.5) | 38,981 (35.6) | 38,520 (35.6) | 38,654 (35.5) | 0.3 |
| 海 藻 類 | 68,428 (60.5) | 66,109 (60.5) | 65,503 (60.5) | 66,091 (60.6) | 0.9 |
| 其 他 | 3,267 (2.9) | 3,096 (2.8) | 2,937 (2.7) | 2,942 (2.7) | 0.2 |

資料 : 수산청 중식과

조개, 바지락, 김, 미역, 툇, 우렁쉥이, 새우 등 총 40종에 이르고 있으며, 매년 새로운 養殖品種의 적극적인 개발로 양식품종도 多樣化 되어가고 있다.

〈表 14〉 所有者別 年度別 養殖漁場 面積

單位 : ha

| | '90 | '91 | '92 | '93 | 增加率 ('93/'92) |
|----------|-------------------|-------------------|-------------------|-------------------|-------------------|
| 計 | 113,026 (100%) | 109,382 (100%) | 108,241 (100%) | 109,035 (100%) | 0.7% |
| 漁村契 및 水協 | 78,698 (70) | 74,114 (68) | 74,249 (69) | 76,481 (70) | 3.0 |
| 個人 및 協業 | 34,328 (30) | 35,268 (32) | 33,992 (31) | 32,554 (30) | △4.2 |

資料 : 수산청 증식과

〈表 15〉 '93品目別 所有者別 養殖漁場 面積

單位 : ha

| | 計 | 魚 類 | 貝 類 | 海 藻 類 | 其 他 |
|----------|-------------------|-----------------|------------------|------------------|-----------------|
| 計 | 109,035 (100%) | 1,348 (100%) | 38,654 (100%) | 66,091 (100%) | 2,942 (100%) |
| 漁村契 및 水協 | 76,481 (70%) | 169 (13%) | 15,341 (40%) | 60,407 (91%) | 564 (19%) |
| 個人 및 協業 | 32,554 (30%) | 1,179 (87%) | 23,313 (60%) | 5,684 (9%) | 2,378 (81%) |

資料 : 수산청 증식과

나. 內水面

우리나라 內水面 水面積은 203천헥타로서 全 國土 9,900천헥타 대

비 2%에 해당하며 水面別로 보면 댐·湖가 63千헥타(31%), 江, 河川이 92千헥타(45%), 貯水池가 48千헥타(24%)로 구성되어 있다.

댐·湖 등 大單位 水面(700헥타 以上) 21개소, 69千헥타에 대하여는 중앙정부에서 稚魚放流 등 자원을 조성 관리하고 그외의 水面은 지방시·도에서 개발하도록 하고 있으며, 內水面 養魚場은 '93年末까지 2.

<表 16>

內水面 養魚場現況

單位 : ha

| 市道別 | 計 | | 뱀장어 | | 향어(가두리) | | 무지개송어 | | 其 他 | |
|-----|-------|---------|-----|-------|---------|------|-------|------|-------|---------|
| | 個所 | 面積 | 個所 | 面積 | 個所 | 面積 | 個所 | 面積 | 個所 | 面積 |
| 計 | 2,295 | 1,474.7 | 293 | 128.6 | 264 | 57.2 | 323 | 40 | 1,415 | 1,248.9 |
| 서울 | - | - | - | - | - | - | - | - | - | - |
| 釜山 | 44 | 58.9 | - | - | - | - | - | - | 44 | 58.9 |
| 仁川 | 1 | 0.02 | - | - | - | - | - | - | 1 | 0.02 |
| 大邱 | 1 | 8.0 | - | - | - | - | - | - | 1 | 8.0 |
| 光州 | 13 | 3.5 | 5 | 1.6 | 1 | 0.1 | - | - | 7 | 1.8 |
| 大田 | 8 | 0.4 | - | - | 2 | 0.1 | 2 | 0.1 | 4 | 0.2 |
| 京畿 | 298 | 69.0 | 11 | 3.9 | 38 | 6.5 | 25 | 5.0 | 224 | 53.6 |
| 江原 | 203 | 135.1 | 2 | 0.1 | 7 | 1.8 | 148 | 20.0 | 46 | 113.2 |
| 忠北 | 240 | 48.1 | 1 | 0.3 | 61 | 14.0 | 48 | 5.1 | 130 | 28.7 |
| 忠南 | 239 | 239.4 | 47 | 34.1 | 29 | 13.7 | 12 | 1.2 | 151 | 190.4 |
| 全北 | 489 | 540.5 | 70 | 29.5 | 34 | 7.3 | 11 | 2.0 | 374 | 501.7 |
| 全南 | 299 | 240.1 | 128 | 54.4 | 26 | 7.8 | 16 | 0.9 | 129 | 177.0 |
| 慶北 | 185 | 43.2 | 3 | 0.4 | 30 | 3.2 | 41 | 4.4 | 111 | 35.2 |
| 慶南 | 257 | 56.8 | 22 | 3.5 | 36 | 2.7 | 19 | 1.0 | 180 | 49.6 |
| 濟州 | 18 | 31.7 | 4 | 0.8 | - | - | 1 | 0.3 | 13 | 30.6 |

資料 : 수산청 자원조성과

295개소(1,475헥타)를 개발하여 여기에서 뱀장어, 송어, 향어, 틸라피아, 메기 등 15종을 養殖 生産함으로써 국민에게 고급 단백질 공급은 물론 어민 所得 増大에 크게 기여하는 한편, 遊漁 環境 造成으로 국민의 保健 向上 및 정서 함양에도 도움을 주고 있다.

6. 漁業 經營體

가. 沿岸漁業

'93년말 현재 沿岸漁業 經營체수는 總 61,033個로서 '92년도의 60,704個보다 329個가 증가하였다.

이를 어업별로 보면 許可漁業의 增加 業種은 沿岸 채낚기, 沿岸 통

〈表 17〉

沿岸漁業 經營體 推移

單位：個

| 區 分 | '90 | '91 | '92 | '93 | '93/'92 |
|-------|--------|--------|--------|--------|---------|
| 計 | 50,481 | 54,305 | 60,704 | 61,033 | 100.5% |
| 沿岸流刺網 | 17,094 | 17,010 | 18,228 | 18,030 | 98.9 |
| 沿岸蛟鰻網 | 129 | 100 | 96 | 79 | 82.3 |
| 養 長 網 | 967 | 961 | 909 | 873 | 96.0 |
| 沿岸延繩 | 11,126 | 11,283 | 12,814 | 12,847 | 100.3 |
| 沿岸채낚기 | 3,654 | 2,232 | 2,218 | 2,322 | 104.7 |
| 共同漁業 | 3,088 | 2,956 | 2,920 | 2,940 | 100.7 |
| 定置漁業 | 678 | 669 | 639 | 652 | 102.0 |
| 區劃漁業 | - | 379 | 1,022 | 1,243 | 121.6 |
| 其他漁業 | 13,745 | 18,715 | 21,858 | 22,047 | 100.9 |

資料：수산청 연근해과

註：區劃漁業은 '90.8.1 水産業法 改正으로 新設된 漁業임.

발, 沿岸 외줄낙시漁業 등이나 수산자원에 미치는 영향이 큰 어업으로서 '82년 이후 신규허가가 억제되어 있는 沿岸 鮫鱈網, 囊長網, 해선망 漁業과 無動力船을 이용한 연안형망, 연안선망, 타뢰망어업은 계속 감소 추세를 나타내고 있다. 한편, 전년 수준을 유지한 업종으로는 石操網, 揚操網漁業 등이다.

면허어업인 共同漁業과 定置網漁業은 '93년말 현재 총 3,592개로서 전년에 비해 33개가 增加되었다. 증가된 원인으로는 沿岸水域의 漁業資源 減少로 漁船漁業의 경영 악화에 따라 貝類 등 定着性 水産動物의 棲息地인 지선 앞바다의 중요성이 어민들에게 인식되면서 기르는 어업으로의 전환에 의한 것으로 보여진다.

나. 近海漁業

近海漁業 經營體는 7,944개로서 전년보다 115개가 감소하였다. 이와 같은 減少 現象은 대부분의 근해어업이 수산자원 보호와 漁業調整 측면에서 업종별로 허가의 定數가 설정되어 있거나 신규허가를 '92부터 전면 억제조치 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이를 業種別로 보면 허가정수가 설정되어 있거나 신규허가가 억제된 大型 機船底引網漁業, 中型 機船底引網漁業, 近海 旋網漁業, 近海 트롤 漁業, 機船船引網漁業, 潛水器漁業, 近海통발어업, 近海 棒受網漁業 경영체는 전년보다 큰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 반면 漁業許可가 유예된 經營體가 어업을 개시한 것으로 보여지는 근해채낚기어업은 5개가 증가하였으나 근해유자망어업 53개, 근해안강망어업 15개, 근해형망어업 36개, 근해연승어업 11개의 經營體가 각각 減少 現象을 나타내고 있어 이는 근해어업 新規許可가 전면 억제된 이후 부실한 經營體가 자진 漁業 廢止 및 被害復舊 등으로 漁業許可가 유

예된 것으로 분석된다.

〈表 18〉

近海漁業 經營體 推移

單位：個

| 區 分 | '90 | '91 | '92 | 93 | '93/'92 |
|-------|-------|-------|-------|-------|---------|
| 計 | 7,837 | 8,014 | 8,059 | 7,944 | 98.6% |
| 大型機底 | 280 | 280 | 280 | 280 | 100.0 |
| 中型機底 | 106 | 107 | 107 | 107 | 100.0 |
| 근해트물 | 130 | 129 | 129 | 130 | 100.8 |
| 근해旋網 | 124 | 121 | 121 | 120 | 99.2 |
| 근해채낚기 | 1,335 | 1,464 | 1,517 | 1,522 | 100.3 |
| 機船引網 | 114 | 111 | 110 | 109 | 99.1 |
| 근해流刺網 | 1,619 | 1,565 | 1,554 | 1,501 | 96.6 |
| 근해魷簾網 | 858 | 832 | 836 | 821 | 98.2 |
| 潛水器 | 273 | 273 | 255 | 254 | 99.6 |
| 근해통발 | 835 | 996 | 1,001 | 999 | 99.8 |
| 근해형망 | 534 | 502 | 445 | 409 | 91.9 |
| 근해延繩 | 1,573 | 1,579 | 1,653 | 1,642 | 99.3 |
| 근해棒受網 | 56 | 55 | 51 | 50 | 98.0 |

資料：수산청 연근해과

다. 養殖漁業

'93년말 養殖漁業 經營體는 8,483개이며, 品種別로는 김 양식 경영체가 1,938개로 全體의 22.8%이며, 다음이 굴 949(11.2%), 피조개 860(10.1%), 고막류(새고막) 777, 바지락 625, 미역 583, 우렁쉥이 499개의 順이다.

經營 形態別로는 어촌계 및 수협 경영체가 4,067개로서 全 養殖漁業 經營體의 48%를 차지하고 있으며, 다음이 協業 經營體 2,449개 (29%), 個人 경영체 1,967개(23%)의 順으로 나타나고 있다.

(表 19)

'93 養殖漁業 經營體 構成

單位：個

| | | 計 | 漁村契 | 水協 | 個人 | 協業 |
|--------|-----------|--------------|------------|---------|------------|------------|
| 計 | | 8,483 | 3,456 | 611 | 1,967 | 2,449 |
| 魚類 | | 989 | 96 | 25 | 541 | 327 |
| 貝類 | 小計 | 4,231 | 1,440 | 122 | 1,154 | 1,515 |
| | 굴 | 949 | 190 | 30 | 309 | 420 |
| | 홍합 | 157 | 56 | 3 | 33 | 65 |
| | 피조개 | 860 | 111 | 14 | 360 | 375 |
| | 바지락 | 625 | 286 | 17 | 119 | 203 |
| | 고막류 其他 | 1,055 585 | 540 257 | 49 9 | 195 138 | 271 181 |
| 海藻類 | 小計 | 2,684 | 1,763 | 453 | 119 | 349 |
| | 김 | 1,938 | 1,255 | 355 | 86 | 242 |
| | 미역 | 583 | 446 | 21 | 31 | 85 |
| | 다시마 | 73 | 31 | 40 | 1 | 1 |
| | 其他 | 90 | 31 | 37 | 1 | 21 |
| 其他水産動物 | | 579 | 157 | 11 | 153 | 258 |

資料：수산청 증식과

品種別 經營形態를 보면, 魚類 및 其他 水産動物 養殖은 개인 및 協業 經營體가 많고, 海藻類 養殖은 어촌계 및 수협 경영체가 많은 경영 형태를 보이고 있는데, 이는 김, 미역 등 해조류 양식은 養殖技術이 보편화되고 자본이 적게 들기 때문에 地先 漁村契 위주의 所得源으로 개발토록 한 정부시책에 의해 零細漁民들이 주로 경영하고 있는 반면 魚類와 眞珠조개, 우렁챙이, 새우 등은 많은 자본과 고도의 養殖技術이 요구되므로 개발능력이 있는 자가 주로 경영하고 있기 때문이다.

라. 內水面漁業

'93年末 內水面 經營體數는 2,295個(1,475ha)로 前年보다 141個가 增加되었다.

이는 뱀장어, 향어, 송어, 민물돔(틸라피아) 등의 養魚技術 發達과 메기, 관상어 등의 養殖品種 다양화 및 淡水魚의 需要 증가에 따라 民間投資에 의한 양식이 계속 늘고 있기 때문이다.

앞으로 國際競爭力이 있는 송어, 향어, 민물돔 등과 메기, 은어, 쏘가리, 참게 등 高所得 經濟性 魚種의 養殖이 증가될 것으로 豫상된다.

〈表 20〉

內水面漁業 經營體 推移

單位 : 個

| | '90 | '91 | '92 | '93 | '93/'92 |
|-------|-------|-------|-------|-------|---------|
| 計 | 1,713 | 1,951 | 2,154 | 2,295 | 107% |
| 잉 어 | 252 | 292 | 460 | 486 | 106 |
| 향 어 | 358 | 289 | 252 | 264 | 105 |
| 뱀 장 어 | 216 | 244 | 265 | 293 | 111 |
| 송 어 | 321 | 371 | 346 | 323 | 93 |
| 기 타 | 566 | 755 | 831 | 929 | 112 |

資料 : 수산청 자원조사과

마. 遠洋漁業

'93년도에 遠洋漁業을 經營한 업체는 '92년도 209개사보다 10%가 줄어든 188개사였다. 업체의 규모를 살펴보면 1~2척의 遠洋漁船을 보유한 小規模 業體가 130개사(69%)로써 主류를 이루고 있다.

원양어업의 業種別 專業 經營 形態를 살펴보면 참치어업 26개사, 오징어어업 43개사, 트롤어업 54개사, 기타 24개사이다.

한편 '93년도 遠洋漁船은 참치선 236척, 오징어선 116척, 트롤선 239척, 기타 37척 등으로 총 628척이 操業하였다.

최근 우리나라 원양어업 경영체 및 어선척수가 감소한 것은 연안국의 어업자원 자국화 정책과 國際機構의 공해조업 규제 강화 등으로 漁場 확보가 더욱 어려워지고 있고, 입어조건 강화로 인한 경비부담의 증가와 임금 및 어로경비의 상승 등으로 漁業經營의 어려움과 더불어 UN의 북태평양 오징어유자망어업 금지조치도 원양어업 경영체 감소의 한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表 21>

遠洋業體의 經營規模 推移

單位：個社

| | '90 | '91 | '92 | '93 | '93/'92 |
|---------|-----|-----|-----|-----|---------|
| 계 | 210 | 225 | 209 | 188 | 90.0% |
| 1隻 | 105 | 120 | 108 | 93 | 86.1 |
| 2隻 | 41 | 41 | 36 | 37 | 102.8 |
| 3 ~ 5隻 | 27 | 27 | 26 | 32 | 123.1 |
| 6 ~ 10隻 | 23 | 23 | 24 | 17 | 70.8 |
| 11~20隻 | 6 | 7 | 8 | 4 | 50.0 |
| 21隻以上 | 8 | 7 | 7 | 5 | 71.4 |

資料：수산청 원양개발담당실

第 2 節 漁家 經濟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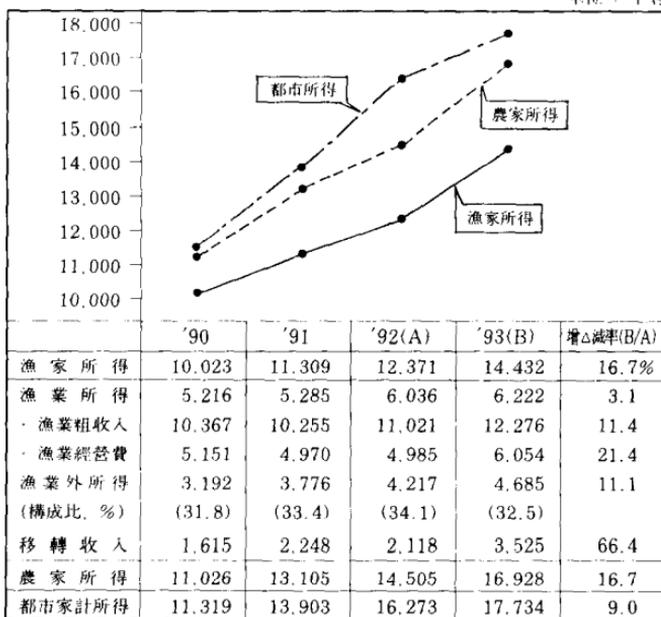
1. 漁家所得

‘93년 어가소득은 14,432천원으로 ‘92년보다 16.7%가 增加하여

(表 22)

漁家所得 推移

單位：千圓



資料：농림수산부 어가경제조사결과

〈表 23〉

漁業外 所得構成

單位：千圓

| | '91 | '92(A) | '93(B) | 增加率(B/A) |
|--------|-------|--------|--------|----------|
| 漁業外所得 | 3,776 | 4,217 | 4,685 | 11.1% |
| 農業所得 | 2,066 | 1,779 | 2,001 | 12.5 |
| 其他兼業所得 | 365 | 662 | 582 | △12.1 |
| 事業外所得 | 1,345 | 1,776 | 2,102 | 18.4 |

資料：농림수산부 어가경제조사결과

지난 5년간 평균증가율 14.9%보다 1.8%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이 중 어업소득은 전년보다 3.1%가 증가한 6,222천원, 어업외소득은 전년보다 11.1% 증가한 4,685천원이었다. 어업외소득이 전년보다 크게 증가한 이유로는 경제불황과 과소비 억제 등으로 겸업소득의 감소에도 불구하고, 노임·급료 상승에 따라 사업외의 소득이 증가하고 농업소득도 증가하였기 때문이다.

한편 移轉收入은 전년보다 66.4%나 크게 증가하였는데 이는 출타가족에 의한 송금 및 피해보상금 등의 수입이 증가하였기 때문이다.

2. 消費支出

'93년 어가소득 14,432천원 가운데서 조세공과금 104천원을 공제한 可處分所得은 '92년보다 16.6%가 늘어난 14,328천원이며 이 중 가계비는 9,411천원으로 9.5%가 늘어났다.

이에 따라 漁家經濟 잉여는 前年보다 24.7%가 증가한 4,456천원으로 나타났으며, 평균소비성향은 69.9%에서 65.7%로 낮아져 소비증가가 둔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表 24〉

可處分所得 및 家計費

單位：千圓

| | '91 | '92(A) | '93(B) | 增加率 (B / A) |
|-------------|--------|--------|--------|----------------|
| 漁 家 所 得 | 11,309 | 12,371 | 14,432 | 16.7% |
| 可處分所得(C) | 11,248 | 12,293 | 14,328 | 16.6 |
| 家 計 費(D) | 8,235 | 8,593 | 9,411 | 9.5 |
| 分 家 支 出 | 182 | 128 | 461 | 260.2 |
| 漁 家 剩 餘 | 2,831 | 3,572 | 4,456 | 24.7 |
| 平均消費性向(D/C) | 73.2% | 69.9 | 65.7 | |

資料：농림수산부 어가경제조사결과

〈表 25〉

家計費 支出內譯

單位：千圓

| | '91 | '92(A) | '93(B) | 增加率 (B / A) |
|-----------|-------|--------|--------|----------------|
| 家 計 費 | 8,235 | 8,593 | 9,411 | 9.5% |
| 飲 食 物 費 | 2,018 | 2,117 | 2,223 | 5.0 |
| 住 居 費 | 647 | 658 | 728 | 10.6 |
| 被 服 費 | 593 | 624 | 634 | 1.6 |
| 光熱·水道費 | 299 | 347 | 424 | 22.2 |
| 教育教養娛樂費 | 932 | 1,080 | 1,279 | 18.4 |
| 醫 療 費 | 564 | 613 | 671 | 9.5 |
| 冠 婚 喪 祭 費 | 910 | 859 | 1,019 | 18.6 |
| 交 通·通 信 費 | 435 | 507 | 576 | 13.6 |
| 其 他 | 1,837 | 1,788 | 1,857 | 3.9 |
| 영 甄 係 數 | 24.5 | 24.6 | 23.6 | |

資料：농림수산부 어가경제조사결과

한편 '93년 漁家의 가계비 지출내역을 보면 유류 난방 설치 및 가전 제품 보급확대에 따른 광열 수도비, 수입료 인상 및 학원비·하숙비 등으로 인한 교육비와 공공요금 인상에 따른 교통비, 또한 혼수 및 장례 비용 증가에 따른 관혼상제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飲食物 費는 5.0%가 증가하여 가계비 중 음식물비가 차지하는 비중을 나타내는 엔겔계수는 前年보다 1% 낮은 23.6%로 점차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 漁家資産

'93년의 漁家資産은 99,638천원으로 '92년의 90,923천원보다 9.6%가 증가되었으며, 토지, 건물 등 고정자산이 82,266천원으로 82.6%, 농어업용 자재, 소동물, 재고 농산물 등 유동자산이 4,725천원으로 4.7%, 현금, 예·저금, 대부금 등 유통자산이 12,647천원으로 12.7%로 각각 구성되어 있다.

<表 26>

漁家資産 推移

單位：千원

| | '91 | '92(A) | '93(B) | 增加率 (B / A) |
|---------|--------|--------|--------|----------------|
| 漁家資産 | 81,295 | 90,923 | 99,638 | 9.6% |
| 固定資産 | 67,500 | 75,613 | 82,266 | 8.8 |
| 流動資産 | 4,912 | 4,556 | 4,725 | 3.7 |
| 流通資産 | 8,883 | 10,754 | 12,647 | 17.6 |
| · 現 金 | 403 | 399 | 435 | 9.0 |
| · 預·貯 金 | 6,183 | 7,421 | 8,921 | 20.2 |
| · 其 他 | 2,297 | 2,934 | 3,291 | 12.2 |

資料：농림수산부 어가경제조사결과

어가자산이 증가한 요인을 살펴보면 沿岸개발과 주거환경 개선으로 토지 및 건물평가액의 증가와 보상금 수령 등에 의한 預貯金 등 유동 자산 증가에 기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4. 漁家負債

어가부채는 전년보다 18.1%가 증가한 7,662천원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겸업어가중 토지 및 농기계 구입비가 늘고, 횃집·민박 등 경영자금 수요가 증가하고 유류구입, 어선수리 등을 위한 자금 수요가 늘어난 데 기인하였다.

부채의 사용내역을 보면 생산성 부채가 6,092천원으로 79.5%, 가계성 부채가 1,129천원으로 14.7%, 채무상환을 위한 부채가 441천원으로 5.8%로 각각 구성되어 있으며, 借入處別로는 農·水·畜協 등의 금융기관 부채가 79.5%를 차지하고 있으며 개인차입은 전년보다 25.6%

〈表 27〉

漁家負債 推移

單位：千圓

| | | '91 | '92(A) | '93(B) | 增加率 (B / A) |
|-------------|-------|-------|--------|--------|----------------|
| 漁家負債 | | 6,520 | 6,485 | 7,662 | 18.1% |
| 借入 處別 | 金融機關 | 5,131 | 5,232 | 6,088 | 16.4 |
| | 個人借入 | 1,389 | 1,253 | 1,574 | 25.6 |
| 用 途 別 | 生産性 | 5,240 | 5,211 | 6,092 | 16.9 |
| | ・漁業資金 | 3,256 | 3,001 | 3,044 | 1.4 |
| | ・兼業資金 | 1,984 | 2,210 | 3,048 | 37.9 |
| | 家計性 | 958 | 951 | 1,129 | 18.7 |
| | 債務償還用 | 322 | 323 | 441 | 36.5 |

資料：농림수산부 어가경제조사결과

가 증가한 1.574천원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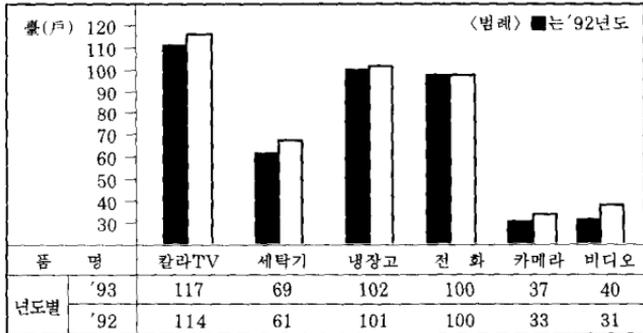
5. 文化生活 水準

漁家の 便宜用品 保有現況을 살펴보면 어가 100호당 칼라TV 117대, 세탁기 69대, 냉장고 102대, 전화 100대, 비디오는 40대로 어가의 편의용품 보유가 많아져 문화생활 수준이 점차 향상되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表 28>

漁家便宜用品 保有現況

單位：百戶當 普及量



資料：농림수산부 어가경제조사결과

第 3 節 水産物 生産

1. 生産動向

'93年度 우리나라 水産物 總 生産量은 前年度의 3,289千톤보다 47千톤이 증가된 3,336千톤이 生産되었다.

이는 沿近海漁業 및 養殖漁業의 生産 증가에 따른 것으로 漁業別로는 沿近海漁業의 경우 다획성 어종인 오징어, 고등어, 멸치 등의 好況으로 전년보다 17.8% 증가한 1,526천톤을 生産하였으며, 養殖漁業은 김, 다시마, 톳, 綜合의 生産량 증가로 전년보다 11% 증가한 1,038천톤이 生産되었다.

內水面漁業은 産業開發 및 生活污水로 인한 內水面 環境 惡化와 浬호, 저수지의 가두리 면허 재연장 불허에 따라 전년보다 12% 감소한

〈表 29〉

漁業別 生産推移

單位 : 千

| 區 分 | '90 | '91 | '92 | '93 | '93/'92 |
|-------|-----------|-----------|-----------|-----------|---------|
| 計 | 3,274,506 | 2,983,222 | 3,289,041 | 3,335,531 | 101.4% |
| 沿 近 海 | 1,542,013 | 1,303,913 | 1,295,396 | 1,526,139 | 117.8 |
| 養 殖 | 772,731 | 775,419 | 935,478 | 1,038,119 | 110.9 |
| 內 水 面 | 34,431 | 30,425 | 34,241 | 30,256 | 88.4 |
| 遠 洋 | 925,331 | 873,465 | 1,023,926 | 741,017 | 72.4 |

資料 : 농림수산부 농림수산통계년보

30천톤이 생산되었으며, 遠洋漁業은 참치독항, 북해도 트롤, 콩치 봉수망을 제외한 대부분의 업종에서 漁獲이 부진하여 前年對比 18%가 감소한 741천톤을 생산하였다.

2. 沿近海漁業

‘93年度 沿近海漁業 생산량 1,526,139톤은 우리나라 水産物 총 생산량 3,335,531톤의 45.8%를 차지하였다.

海·漁況을 살펴보면 동해안에서는 냉수성 어종인 명태는 1~4월에 걸쳐서 강원도 연안 海域에서 中心漁場이 형성되어 어황은 전년에 비해 다소 호전되었으나 평년에 비해서는 부진하였다.

콩치는 봄철에 北上 來遊群을 대상으로 慶北 沿岸 海域에서 어장이 형성되었으며 漁況은 전년에 비해 극히 부진하였고 暖流性 어종인 오징어는 6월이후 12월까지 울릉도를 중심으로 하는 동해안 전역에서 밀도 높은 어장이 형성됨으로써 예년에 없던 호황을 나타내었다.

南海岸에서는 고등어, 멸치가 水溫 前線의 발달 및 來遊量 增加로 생산이 순조로왔고 資源 減少 및 魚群 來遊量 減少로 장어리, 쥐치, 갈치 등은 생산이 저조하였고, 西海岸에서는 저층 수온 불연속대의 未發達로 어군이 분산되어 어황이 부진하였으나 조기는 자원이 점차 회복세에 있어 생산이 순조로왔다.

業種別로는 대형트롤, 동해구트롤, 근해형망, 대형선망, 채낚기, 연승, 정치망 등은 生産이 增加하였으나 안강망 등 그외 어업은 生産이 減少되었다.

가. 大型旋網漁業

대형선망어업은 50~130톤급 어선으로 沿近海漁業중 가장 規模가 크며 東中國海, 제주도, 대마도의 海역에서 정어리, 고등어, 쥐치, 전갱이 등을 주로 어획하는 漁業이다.

生産량은 1~3월사이 제주도 西方海역에서 東西方向으로 수온전선의 발달 및 8월이후 서해에서 魚群의 來遊量 增加로 前年 212,475톤보다 33.5%가 증가한 283,577톤이 生産되었다.

나. 大型機船底引網漁業

大型機船底引網漁業은 60~140톤급 어선으로 1척이 조업하는 외끌이와 2척으로 조업하는 쌍끌이가 있으며 西·南海와 동중국 海역에서 주로 갈치, 조기, 가자미, 쥐치를 漁獲하는 漁業이다.

조기는 생산이 순조로웠으나 資源 減少 및 내유량 감소로 多獲性 어종인 쥐치, 정어리 등의 生産이 低調하여 前년도 128,788톤보다 5% 감소한 122,917톤이 生産되었다.

다. 中型機船底引網漁業

中型機船底引網漁業은 20~60톤급 어선으로 동해 일원에서 명태, 대구, 새우류 등을 漁獲하는 東海區 機船底引網漁業과 西·南海에서 쥐치, 가자미, 갈치, 꽃게, 갑오징어 등을 어획하는 西·南區 機船底引網漁業으로 구분되고 있다.

生産량은 77년이후 減少 趨勢가 계속되어 왔으나 '92년이후 조기 생산량 증가로 前년도 41,174톤보다 6%가 증가된 43,650톤이 生産되었다.

라. 近海채낚기漁業

近海 채낚기漁業은 8~70톤급 漁船으로 오징어를 어획하고 있으며

어장은 魚群의 복상 시기에 따라 東·西·南 전해역에서 形成되는데 남해는 濟州道~對馬島間 海域을 중심으로 12월부터 翌年 5월까지, 서해는 格列飛列島를 중심으로 7~11월까지, 東海는 鬱陵島 近海 및 大和堆 近海에서 6~12월에 漁場이 形成된다. 오징어는 1년생으로 漁況 與件에 따라 불규칙적인 생산을 보이고 있다.

'93년도에는 8월이후 鬱陵島 주변해역에서 水溫前線의 발달로 魚群 密集이 形成되어 '68년이후 최고의 好況을 보여 生産量은 前년도 72,619톤보다 29%가 증가된 93,841톤이 生産되었다.

마. 鯨鰐網漁業

鯨鰐網漁業은 8~70톤급 漁船으로 西海 및 東中國 海域에서 갈치, 조기, 병어, 갑오징어, 꽃게 등을 漁獲하고 있다.

生産量은 每年 20만톤 내외이나 最近에는 多少 減少되고 있는 趨勢이며 주 대상 魚種인 갈치를 비롯 기타 대부분의 어종이 부진하여 前年度 231,699톤보다 16% 減少한 194,766톤이 生産되었다.

바. 機船船引網(權現網)漁業

機船船引網漁業은 沿岸漁業중 規模가 가장 큰 業種으로 40톤급 未滿의 漁船으로 南海岸에서 멸치를 漁獲하고 있다. 멸치는 沿岸 회유성 魚種으로 海況의 影響을 크게 받기 때문에 生産量은 海況 與件에 따라 增減 現象이 나타나고 있다.

'93년 8월이후 沿岸 水溫前線 發達로 내유량이 增加하여 前年度 79,188톤보다 105%가 增加한 162,754톤이 生産되었다.

사. 流刺網漁業

流刺網漁業은 東·西·南 各海域에서 조기, 멸치, 문치, 명태, 꽃게 등을 漁獲하고 있다. 멸치는 내유량 증가와 조기는 어황 순조로 生産量이 증가하였으나 그외 명태, 문치 등은 漁獲 부진으로 전년도 97,812톤 보다 3%가 감소한 95,311톤이 生産되었다.

〈表 30〉 沿近海漁業 業種別 生産推移

單位：噸

| 區 分 | '90 | '91 | '92 | '93 | '93/'92 |
|-------|-----------|-----------|-----------|-----------|---------|
| 計 | 1,725,820 | 1,303,913 | 1,295,396 | 1,526,139 | 117.8% |
| 大型 旋網 | 458,785 | 191,815 | 212,475 | 283,577 | 133.5 |
| 大型 機底 | 295,672 | 199,526 | 128,788 | 122,917 | 95.4 |
| 中型 機底 | 54,604 | 37,781 | 41,174 | 39,599 | 96.2 |
| 近海채낚기 | 25,981 | 65,615 | 72,619 | 93,841 | 129.2 |
| 鮫 鱈 網 | 279,255 | 257,763 | 231,699 | 194,766 | 84.1 |
| 船 引 網 | 149,806 | 86,323 | 79,188 | 162,754 | 205.5 |
| 流 刺 網 | 123,112 | 92,056 | 97,812 | 95,311 | 97.4 |
| 共同 漁業 | 156,078 | 130,107 | 133,138 | 151,237 | 113.6 |
| 其 他 | 182,528 | 242,927 | 298,503 | 382,137 | 128.0 |

資料：농림수산부 농림수산통계연보

3. 養殖漁業

淺海養殖 漁業 生産은 埋立·于拓으로 인한 연안어장 축소와 都市化, 産業化에 따른 工場廢水, 生活下水 및 油類汚染의 확산, 이상기후 등 環境 惡化로 '86년도 947천톤을 정점으로 매년 감소 추세에 있었으나, '93년도에는 겨울철에 養殖되는 김, 미역이 폭풍, 해일 등 自然災害없이 순조롭게 양식되어 平均 生産對比 113%인 1,038천톤을 生産하여

5.690億원의 生産高를 올렸다.

〈表 31〉 養殖漁業 品種別 生産推移

單位：M/T

| | | '90 | '91 | '92 | '93 | '93/'92 |
|--------|-------|---------|---------|---------|-----------|---------|
| 計 | | 772.731 | 775.419 | 935.478 | 1,038.119 | 111% |
| 魚 類 | | 2.656 | 3.905 | 4.595 | 5.471 | 119 |
| 貝 類 | 小 計 | 325.592 | 308.409 | 338.602 | 345.696 | 102 |
| | 굴 | 219.124 | 215.418 | 235.326 | 258.212 | 110 |
| | 홍합 | 9.759 | 9.495 | 9.689 | 55.183 | 570 |
| | 피조개 | 17.758 | 16.702 | 20.547 | 11.613 | 57 |
| | 바지락 | 61.713 | 45.537 | 54.402 | 10.046 | 18 |
| | 고막류 | 11.113 | 16.325 | 16.441 | 3.290 | 20 |
| 其 他 | 6.125 | 4.932 | 2.197 | 7.352 | 335 | |
| 海 藻 類 | 小 計 | 411.869 | 445.626 | 579.963 | 664.318 | 115 |
| | 미역 | 269.333 | 266.966 | 371.432 | 372.182 | 100 |
| | 김 | 97.637 | 143.945 | 163.555 | 235.272 | 144 |
| | 다시마 | 8.084 | 8.938 | 9.560 | 17.180 | 180 |
| | 其 他 | 36.815 | 25.777 | 35.416 | 39.684 | 112 |
| 其他水産動物 | | 32.614 | 17.479 | 12.318 | 22.634 | 184 |

資料：농림수산부 농림수산통계연보

註：其他 水産動物은 우렁쟁이, 새우, 꽃게 등

가. 魚類 養殖

'83년 이후 정부의 적극적인 개발 육성 및 養殖品種 多樣化로 생산이 계속 증가 추세에 있어 '93년도 生産量은 5,471톤으로 증가되었고

生産品種은 넙치, 방어, 돔, 농어, 조피볼락, 능성어, 송어 등이며, 앞으로 魚類는 국민소득의 향상과 함께 高級 活魚의 需要가 증가되어 어류양식은 계속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나. 貝類 養殖

'93년도 貝類養殖은 異常潮流, 赤潮 등에 의한 어업제한으로 굴의 직접 피해 이외에 피조개 採苗漁場의 환경 악화 등 악조건에도 정부의 적극적인 漁場淨化 사업에 힘입어 '92년도 339千톤과 비슷한 346千톤을 生産하였다.

品種別로는 굴이 258천톤으로 貝類 生産量의 75%를 차지하고 있으며, 홍합, 피조개, 바지락, 고막류 등이 주종을 이루고 있다.

다. 海藻類 養殖

海藻類 養殖은 김과 미역이 주종으로서 매년 海況 與件에 따라 생산이 크게 변하는데 '93년도에는 主成育 및 收穫期인 겨울철에 자연재해 없이 적정 海황이 유지되어 '92년도보다 84千톤이 증산된 664千톤을 生産하였다.

또한 養殖品種도 김, 미역 養殖 위주에서 톳, 다시마, 과래, 참모자반 등 고부가가치 품종으로 점차 多樣化되고 있다.

라. 其他 水産動物 養殖

其他 水産動物 養殖은 우렁쟁이, 새우가 주종이나 우렁쟁이의 多量 생산으로 '92년도 대비 11千톤이 증가된 23千톤을 生産하였다.

4. 內水面漁業

‘93年 內水面漁業 生産은 前年 34,241톤에 비해 11.6% 감소한 30,256톤이며, 漁撈漁業은 내수면 서식환경 여건 변화로 매년 全般的으로 감소 추세에 있으며, 養殖漁業은 전년수준을 약간 밑돌고 있다.

〈表 32〉 內水面漁業 品種別 生産推移 單位：톤

| | ‘90 | ‘91 | ‘92 | ‘93 | ‘93/‘92 |
|---------|--------|--------|--------|--------|---------|
| 計 | 34,431 | 30,425 | 34,241 | 30,256 | 88% |
| 漁 撈 | 18,594 | 16,167 | 14,192 | 11,877 | 84 |
| 잉 어 | 1,573 | 1,321 | 1,137 | 1,018 | 90 |
| 붕 어 | 6,109 | 4,973 | 4,428 | 3,547 | 80 |
| 미꾸리 | 903 | 652 | 559 | 484 | 87 |
| 뱀장어 | 131 | 112 | 111 | 96 | 86 |
| 가물치 | 508 | 345 | 417 | 331 | 79 |
| 매 기 | 413 | 410 | 365 | 376 | 103 |
| 송 어 | 192 | 233 | 453 | 229 | 51 |
| 피라미 | 2,229 | 1,971 | 1,618 | 1,462 | 90 |
| 패류(재첩등) | 2,052 | 2,756 | 1,959 | 1,587 | 81 |
| 其 他 | 4,484 | 3,394 | 3,145 | 2,747 | 87 |
| 養 殖 | 15,837 | 14,258 | 20,049 | 18,379 | 92 |
| 잉 어 | 1,300 | 1,201 | 1,267 | 595 | 47 |
| 항 어 | 9,478 | 7,215 | 11,883 | 10,860 | 91 |
| 송 어 | 1,529 | 1,250 | 1,432 | 2,143 | 150 |
| 뱀장어 | 1,146 | 2,386 | 3,148 | 2,451 | 78 |
| 가물치 | 446 | 446 | 500 | 518 | 104 |
| 민물돔 | 650 | 605 | 437 | 391 | 89 |
| 其 他 | 1,288 | 1,155 | 1,482 | 1,421 | 96 |

資料：농림수산부 농림수산통계연보

5. 遠洋漁業

'93년도에는 참치독항, 북해도 트롤, 공치봉수망을 제외한 대부분 업종의 漁獲이 부진하여 前年對比 18%가 減少한 741천톤을 生産하였다.

가. 참치漁業

우리나라의 참치漁業은 참치旋網 漁業과 참치 延繩 漁業이 있으며 참치 연승 어업은 國內 基地式과 海外 基地式이 있다.

참치 선망 어업은 350톤級 이상(해외 기지식)의 어선으로 통조림 원료인 가다랭이를 主對象으로 漁獲하고 있는 어업으로 '93년도에는 34隻이 出漁하여 전년 대비 69%인 127千톤을 生産하여 輸出 및 內需用 통조림 原料로 공급하였으며, 참치延繩 漁業중 國內 基地式은 110톤급 이상의 어선으로 횃감용인 눈다랭이, 황다랭이를 主對象으로 漁獲하고, 海外 基地式은 60톤급 이상의 漁船으로 통조림 原料인 날개다랭이를 주로 漁獲하고 있으며, '93년도에는 202隻의 延繩漁船이 출어하여 전년 대비 99%인 52千톤을 生産하여 주로 횃감용으로 수출하였다.

나. 오징어漁業

오징어漁業은 流刺網과 채낚기 漁業으로 구분되는데 북태평양에서 이루어지던 流刺網漁業은 '93년 1월 1일부터 公海』에서 操業을 금지하는 UN결의에 따라 '92년 어기를 끝으로 조업이 중지되었으나 채낚기 漁業은 남서대서양 및 뉴질랜드, 페루어장에 계속 출어하였다.

오징어 생산량을 보면 남서대서양의 포클랜드수역 및 뉴질랜드수역에 출어한 오징어채낚기어선이 157천톤을 어획하였으며 이외에도 남서대

서양, 페루 및 뉴질랜드수역에 출어한 일반 트롤어선에서도 38천톤이 어획되어 총 195천톤을 어획하였다.

다. 트롤漁業

트롤漁業은 원양어업중 比重이 가장 큰 業種으로서 遠洋 生産量의 48%를 차지하고 있는 대표적인 업종이다.

트롤어업중 북태평양 명태를 主 漁獲對象으로 하고 있는 北洋트롤 漁業은 '91.9.16 韓·러 漁業協定 체결이후 한·러 어업협력 증진을 통한 러시아 經濟水域내 操業이 好調를 보이기는 하였으나, 오호츠크公海操業을 '93. 4.25부터 중단함에 따라 전년대비 32%가 감소한 217千톤을 生産하였다.

그리고 海外基地 트롤漁業은 라스팔마스 基地를 中心으로 한 中西, 南西 大海洋 漁場과 인도네시아, 뉴질랜드, 中東 漁場 등에서 140천톤을 어획하였으나 전년대비 66千톤이 감소하였다. 이는 '93.4.29 이후 NAFO 수역 출어선의 철수와 서부 아프리카 수역 등 대서양어장의 어획 부진에 기인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새우 트롤어업은 중남미의 수리남 어장 操業이 저조하여 전년대비 82% 水準인 1,031톤을 漁獲하여 전량 수출하였다.

한편, '87. 5. 1부터 輸入으로 分類되고 있는 韓·美 共同漁業事業은 미국의 資源 自國化 政策 推進으로 '91년부터 終熄되었고, 러시아 水域은 '77.3月 200海里 宣布로 러시아 水域 操業이 중단되었으나 '89년부터 韓·러 共同漁業 사업을 시작으로 한·러 어업협정에 의한 러시아수역 조업이 계속되고 있다.

〈表 33〉

遠洋漁業 業種別 生産推移

單位: 噸

| | '90 | '91 | '92 | '93 | '93/'92 |
|--------|---------|---------|-----------|---------|---------|
| 計 | 925,331 | 873,465 | 1,023,926 | 741,017 | 72% |
| 참치延繩 | 69,524 | 47,074 | 52,779 | 52,198 | 99 |
| 참치旋網 | 173,343 | 227,518 | 182,287 | 126,648 | 69 |
| 오징어채낚기 | 88,843 | 150,039 | 184,291 | 156,601 | 85 |
| 오징어流刺網 | 99,203 | 62,617 | 38,649 | - | - |
| 北洋트롤 | 312,218 | 177,400 | 320,005 | 217,395 | 68 |
| 基地트롤 | 161,650 | 179,773 | 206,085 | 140,339 | 68 |
| 새우트롤 | 1,836 | 1,587 | 1,254 | 1,031 | 82 |
| 其 他 | 18,714 | 27,457 | 38,576 | 46,805 | 121 |

資料: 수산청 원양생산담당실

第 4 節 水産物 輸出·入

1. 輸出

'93년 水産物 輸出은 1,497백만\$로 전년대비 99% 수준이었는데, 그 원인은 통조림 제품과 기타 수산물의 수출은 양호하였으나, 貝類의

〈表 34〉

水産物 輸出推移

單位: 百萬\$

| | '90 | '91 | '92 | '93 | '93/'92 |
|--------|--------|--------|--------|--------|---------|
| 總 輸 出 | 65,016 | 71,870 | 76,632 | 82,236 | 107% |
| 水 産 物 | 1,513 | 1,643 | 1,518 | 1,497 | 99 |
| 構成比(%) | (2.3) | (2.3) | (2.0) | (1.8) | |

資料: 수산청 무역과

生産 부진과 독소 출현으로 인한 輸出 減少와 원양어류인 참치, 오징어의 생산 부진에 기인하였다.

가. 品目別 輸出實績

품목별 수출실적을 살펴보면, 活·鮮魚의 경우 生産이 늘어난 봉장어·넙치 등은 수출이 증가한 반면 피조개, 바지락 등 貝類는 독소 발생에 따른 生産 減少와 주 수출시장인 일본의 輸入 기피로 전년보다 4% 감소한 343백만\$을 수출하였으며, 냉동품은 가자미, 삼치, 새조개 등 輸出 주요 어종의 생산이 不振하여 수출물량은 27%가 감소하였고 금액은 10% 감소한 144백만\$을 수출하였다.

해조염신포는 간미역 대일 수출에서 物量이 다소 增加하였으나 수출 단가가 하락하여 전체 수출액이 다소 감소한 반면, 전량 일본으로 수출하는 톳의 경우 養殖産의 증가로 수출이 늘어나 해조염신포 전체로는 전년과 비슷한 154백만\$을 기록하였다. 통조림 製品의 경우 통조림 전체 수출액의 50% 이상을 차지하는 굴 통조림은 미국 내수시장의 불경기로 인한 수입상들의 輸入 지연으로 상반기에는 다소 부진하였으나

〈表 35〉

品目別 輸出實績

單位：千\$

| | '90 | '91 | '92 | '93 | '93/'92 |
|-------|-----------|-----------|-----------|-----------|---------|
| 計 | 1,513,094 | 1,642,570 | 1,518,072 | 1,496,933 | 99% |
| 活 鮮 魚 | 328,349 | 348,595 | 355,537 | 342,884 | 96 |
| 冷 凍 品 | 202,096 | 272,538 | 160,426 | 144,142 | 90 |
| 海藻鹽辛品 | 156,050 | 156,340 | 156,109 | 153,774 | 99 |
| 통 조 림 | 85,064 | 94,780 | 99,235 | 122,904 | 124 |
| 其他水産物 | 266,668 | 257,693 | 242,940 | 279,623 | 115 |
| 遠洋魚類 | 474,867 | 512,624 | 503,825 | 453,606 | 90 |

資料：수산청 무역과

3/4분기 이후 회복되어 소목의 증가세를 기록하였고, 고등어, 정어리, 게살 통조림의 호조로 통조림제품 전체로는 전년대비 24% 증가한 123백만\$를 수출하였다. 건조굴, 게살조제품, 캐비아 내용물 등 기타 수산물은 수출이 15% 증가한 280백만\$을 수출하였고, 생산 부진으로 어려움을 겪었던 참치, 오징어 등의 원양어류는 전년대비 10% 감소한 454백만\$를 수출하였다.

나. 國家別 實績

우리나라 水産物 輸出은 일본지역에 대한 輸出이 약 78%를 차지하고 있는데 '93년도 일본지역의 수출은 '92년도 수출실적 11억4천9백만\$ 보다 2% 증가한 11억6천8백만\$이었다.

〈表 36〉

國家別 輸出實績

單位: 千\$

| 國 家 別 | '91 | '92 | '93 | '93/'92 |
|-------|-----------|-----------|-----------|---------|
| 計 | 1,642,570 | 1,518,072 | 1,496,933 | 98.6% |
| 日 本 | 1,163,059 | 1,148,567 | 1,168,241 | 101.7 |
| 美 國 | 132,175 | 112,129 | 107,199 | 95.6 |
| 스 페 인 | 42,740 | 48,440 | 29,498 | 60.9 |
| 泰 國 | 41,521 | 53,656 | 57,334 | 106.9 |
| 프 랑 스 | 21,954 | 14,421 | 10,942 | 75.9 |
| 이탈리아 | 14,248 | 23,022 | 14,501 | 63.0 |
| 臺 灣 | 12,834 | 7,889 | 11,322 | 143.5 |
| 호 주 | 8,641 | 10,956 | 10,362 | 94.6 |
| 카 나 다 | 10,520 | 10,861 | 11,664 | 107.4 |
| 其 他 | 194,878 | 88,131 | 75,870 | 86.1 |

資料: 수산청 무역과

(表 37)

主要 魚種別 輸出實績

單位: 千\$

| | '91 | '92 | '93 | '93/'92 |
|----------|---------|---------|---------|---------|
| 참치 | 312.962 | 327.306 | 295.203 | 90% |
| 피조개 | 85.933 | 101.740 | 86.016 | 85 |
| 붕장어 | 69.534 | 50.861 | 69.543 | 137 |
| 게류 | 62.045 | 47.575 | 62.836 | 132 |
| 생선묵 | 90.385 | 89.670 | 62.511 | 70 |
| 굴류(통조림외) | 52.174 | 40.923 | 59.696 | 146 |
| 굴통조림 | 39.790 | 53.827 | 56.355 | 105 |
| 뿔 | 29.895 | 44.994 | 54.007 | 120 |
| 성게 | 41.129 | 42.635 | 42.346 | 99 |
| 간미역 | 46.013 | 36.308 | 33.223 | 92 |
| 명란 | 61.295 | 36.793 | 24.472 | 67 |
| 바지락 | 37.670 | 38.123 | 22.469 | 59 |
| 가자미 | 37.332 | 28.110 | 23.590 | 84 |
| 새우 | 21.654 | 19.329 | 18.340 | 95 |
| 갯지렁이 | 19.252 | 18.355 | 17.949 | 98 |
| 삼치 | 26.056 | 21.845 | 17.462 | 80 |
| 패주 | 22.214 | 22.984 | 16.677 | 73 |
| 조미오징어 | 44.119 | 24.854 | 14.233 | 57 |
| 갯장어 | 10.872 | 10.318 | 13.736 | 133 |
| 전갱이 | 12.484 | 15.244 | 13.446 | 88 |
| 오징어(조미외) | 6.245 | 11.861 | 12.938 | 109 |
| 고등어 | 11.695 | 5.551 | 10.566 | 190 |
| 취치포 | 13.945 | 13.743 | 8.004 | 58 |
| 감오징어 | 10.478 | 10.044 | 8.092 | 81 |
| 한천 | 13.078 | 10.555 | 7.900 | 75 |
| 새조개 | 73.764 | 40.347 | 6.629 | 16 |
| 명태피레트 | 43.723 | 14.252 | 4.144 | 29 |

資料 : 수산청 무역과

대일 수출품목으로 15백만\$ 이상 되는 종류는 합치, 봉장어, 가자미, 삼치, 게, 굴, 피조개, 바지락, 오징어, 새우, 미역, 톳, 갯지렁이, 성게 등이 있다.

미국지역 수출은 명태피레트 수출부진으로 '92년 대비 4%가 감소하였고 EU 國家에 대한 수출도 EU의 공장등록제 실시 등 衛生檢疫 강화로 부진하였다.

우리나라 수산물 수출대상 국가는 72개국이며, 총 수출액중 국별 輸出比重은 일본 78%, 미국 7.2%, 태국 3.8%, 스페인 2.0%, 이태리 1.0%, 기타국이 8%를 점유하고 있다.

2. 輸入

'93년도 水産物 輸入은 연근해 생산 둔화와 國民의 수산물 消費 수요 증가, 수입자유화 개방 확대 등으로 증가하여 수산물 총 수입은 542백만\$로써 전년의 506백만\$에 비해 7%가 증가했으나 '91년도 576백만\$ 보다는 6%가 감소하였다. 이를 用途別로 보면 수출용 원자재가 123백만\$로 전체 수산물 수입의 23%, 해외자원 개발사업법에 의한 合作事業과 漁業協力을 위한 공동사업이 146백만\$로써 27%를, 기타 내수용이 267백만\$로써 49%를 차지하였으며, 주요 수입어종은 냉동어란, 명태연육, 오징어, 불락, 대구 등이며, 국별 수입비중은 러시아 26%, 미국 26%, 중국 8%, 아르헨티나 8%, 일본 8%로서 상위 5개국이 全體 輸入의 76%를 차지하였고 캐나다 등 其他 50여개국이 24%를 점유하였다.

〈表 38〉

水産物 輸入動向

單位：千噸,百萬\$

| | | | '91 | '92 | '93 | '93/'92 |
|-------------|---------------|-----|-----|-----|-----|---------|
| 計 | 物 量 | | 366 | 328 | 356 | 109% |
| | 金 額 | | 576 | 506 | 542 | 107 |
| 輸 出 用 原 資 材 | 物 量 | | 120 | 56 | 44 | 79 |
| | 金 額 | | 211 | 150 | 123 | 82 |
| 漁 業 協 力 用 | 小 計 | 物 量 | 88 | 123 | 107 | 87 |
| | | 金 額 | 147 | 160 | 146 | 91 |
| | 共 同 事 業 漁 獲 物 | 物 量 | 38 | 38 | 29 | 76 |
| | | 金 額 | 61 | 65 | 51 | 78 |
| | 合 作 事 業 漁 獲 物 | 物 量 | 50 | 85 | 78 | 92 |
| 金 額 | | 86 | 95 | 95 | 100 | |
| 觀 光 用 食 資 材 | 物 量 | | - | - | - | - |
| | 金 額 | | 6 | 6 | 6 | 100 |
| 其 他 內 需 用 | 物 量 | | 158 | 149 | 205 | 138 |
| | 金 額 | | 212 | 190 | 267 | 141 |

資料：수산청 무역과

註：물량은 제품 기준임

第 5 節 水産物 需給 및 價格

1. 需給

'93년도의 水産物 總 供給量은 4,204千噸으로 前年에 比하여 4.9%가 增加하였다.

供給部門에서는 生産이 1.4%, 前年在庫가 23.4% 増加하였으며 輸入이 급증하여 19.0%나 증가하였다.

需要部門에서는 國內消費가 22.1% 증가한 반면, 수출은 22.2%나 감소하였고, 재고이월 또한 5.3% 감소하였다.

〈表 39〉

水産物 需給動向

單位: 千톤

| | | '90 | '91 | '92 | '93 | '93/'92 |
|------------|------|-------|-------|-------|-------|---------|
| 供 給 | 生 産 | 3.275 | 2.983 | 3.289 | 3.336 | 101.4% |
| | 輸 入 | 380 | 554 | 410 | 488 | 119.0 |
| | 前年在庫 | 276 | 290 | 308 | 380 | 123.4 |
| 計 | | 3.931 | 3.827 | 4.007 | 4.204 | 104.9 |
| 需 要 | 國內消費 | 2.583 | 2.235 | 2.327 | 2.842 | 122.1 |
| | 輸 出 | 1.058 | 1.284 | 1.300 | 1.002 | 77.8 |
| | 次年移越 | 290 | 308 | 380 | 360 | 94.7 |
| 1人當消費量(kg) | | 36.2 | 35.9 | 40.5 | 42.1 | 104.0 |
| - 魚貝類 | | 30.5 | 28.9 | 29.7 | 34.9 | 117.5 |
| - 海藻類 | | 5.7 | 7.0 | 10.8 | 7.2 | 66.7 |

資料: 수산청 어정과,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식품수급표」

註: 1인당 소비량은 순식품 기준임('93년은 추정치임)

〈表 40〉

動物性 蛋白質 供給推移

單位: g/1人當 1日

| | | '90 | '91 | '92 | '92/'91 |
|-------|--|--------|--------|--------|---------|
| 計 | | 33.13 | 32.38 | 33.55 | 103.6% |
| 畜産物 | | 17.25 | 17.19 | 18.35 | 106.8 |
| 魚貝類 | | 15.88 | 15.19 | 15.19 | 100.0 |
| (占有率) | | (47.9) | (46.9) | (45.3) | (96.6) |

資料: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식품수급표」

1인당 消費量에서는 어패류는 17.5% 增加하였으며 海藻類는 33.3%가 감소하여 全體的으로는 前年보다 4.0% 증가하는 소비형태를 보였다.

한편 國民 동물성 蛋白質 供給量에서 水産物이 차지하는 比重은 畜産物의 상대적 增加로 '91년 46.9%에서 '92년에 45.3%로 감소하였다.

2. 消費

가. 水産 加工食品 소비패턴

食品 消費傾向은 영양섭취 및 질병 예방에 비중을 두는 쪽으로 흐르고 있다. 수산물에는 각종 영양소가 골고루 함유되어 있고 특히, 核酸과 不飽和 脂肪酸의 함량이 높아 건강식품으로 애용되고 있다.

수산물의 소비성향은 그 강조점이 鮮魚·副食개념에서 卽席·便利·高次加工쪽으로 옮겨지고 있으며, 여성의 사회참여 증대로 패스트푸드의 체인 공급이 확대되고 있다.

1인당 연간 水産物의 消費量은 '88년 33.6kg에서 '92년도에는 40.5kg으로 늘어났다. 수산 가공식품의 소비증가율(연평균 5%)은 일반식품 소비 증가율(연평균 2.7%)보다 높은 수준에 있고 소득 수준이 향상됨에 따라 식생활이 多樣化, 高級化, 便利化 되는 추세이다.

나. 水産物 利用 動向

'93년도에 國內에서 생산된 수산물 중 加工用으로 이용된 원료량은 1.981천톤으로 沿近海 漁獲量 2.595천톤의 76%에 달하고, 그 중 냉동품, 어육연제품 및 해조제품 가공에 많이 이용되었다.

(表 41)

水産物 利用動向

單位: 千噸

| | '90 | '91 | '92 | '93 | '93/'92 |
|--------|-------|-------|-------|-------|---------|
| ○ 漁獲量 | 2,350 | 2,109 | 2,265 | 2,595 | 115 % |
| - 鮮魚用 | 438 | 301 | 287 | 614 | 214 |
| - 加工用 | 1,912 | 1,808 | 1,978 | 1,981 | 100 |
| | (81%) | (86%) | (87%) | (76%) | |
| · 乾製品 | 111 | 126 | 115 | 167 | 145 |
| · 冷凍品 | 593 | 415 | 397 | 535 | 135 |
| · 惣菜 | 110 | 81 | 86 | 81 | 94 |
| · 辣製品 | 282 | 311 | 274 | 290 | 106 |
| · 鹽辛藏品 | 21 | 21 | 17 | 12 | 70 |
| · 海藻製品 | 489 | 642 | 813 | 634 | 78 |
| · 其他 | 306 | 212 | 276 | 262 | 95 |

資料: 수산청 제조과

註: 1) 원양어획물은 제외

2) 원료어 기준임

3. 價格

'93년도 수산식품의 生産者物價(都賣物價)는 전년말에 비해 9.5% 上昇하여 全體 生産者 物價 上昇率 2.0%보다는 높았으나 과거 두자리 수의 큰 폭 上昇率에 비하면 安定勢를 유지하였다.

部類別로는 고등어, 오징어, 멸치의 대풍으로 魚介類가 1.0% 하락 하였으나 명태, 갈치, 조기, 김 등의 생산부진 영향으로 鹽乾魚類와 해 조류는 상승하였다.

이에 따라 水産食品의 消費者 物價도 전년말에 비해 12.6%가 상승 하였으며, 主要 魚種別로는 조기 19.5%, 갈치 62.3%, 가자미 1.7%, 마른멸치 42.9%, 김 11.9%가 상승한 반면, 고등어 22.6%, 명

태 17.8%, 마른오징어 5.9%, 오징어 4.6%가 하락하였다.

〈表 42〉 水産物 生産者物價 動向

單位：%

| | '90 | '91 | '92 | '93 |
|--------|------|------|-------|------|
| 總生産者物價 | 0.7 | 1.9 | 1.6 | 2.0 |
| 水産食品 | 15.8 | 20.5 | 3.9 | 9.5 |
| - 鮮魚介類 | 18.5 | 26.0 | 5.5 | △1.0 |
| - 鹽乾魚類 | △0.8 | △4.0 | △10.1 | 17.5 |
| - 海藻類 | 8.2 | △5.9 | △2.9 | 6.1 |

資料：한국은행

註：전년말 대비 등락율임

〈表 43〉 水産物 消費者物價 動向

單位：%

| | '90 | '91 | '92 | '93 |
|--------|------|------|------|------|
| 總生産者物價 | 9.4 | 9.3 | 4.5 | 5.8 |
| 水産食品 | 5.6 | 21.9 | △1.9 | 12.6 |
| - 鮮魚介類 | 7.4 | 29.9 | △1.7 | 12.8 |
| - 鹽乾魚類 | △0.5 | 11.8 | △2.0 | 12.7 |
| - 海藻類 | 7.3 | △0.2 | △2.2 | 10.0 |

資料：통계청

註：전년말 대비 등락율임

第 6 節 漁場環境

1. 海況

우리나라 연근해 어장의 계절별 수온변동 추이는 冬季에는 海面수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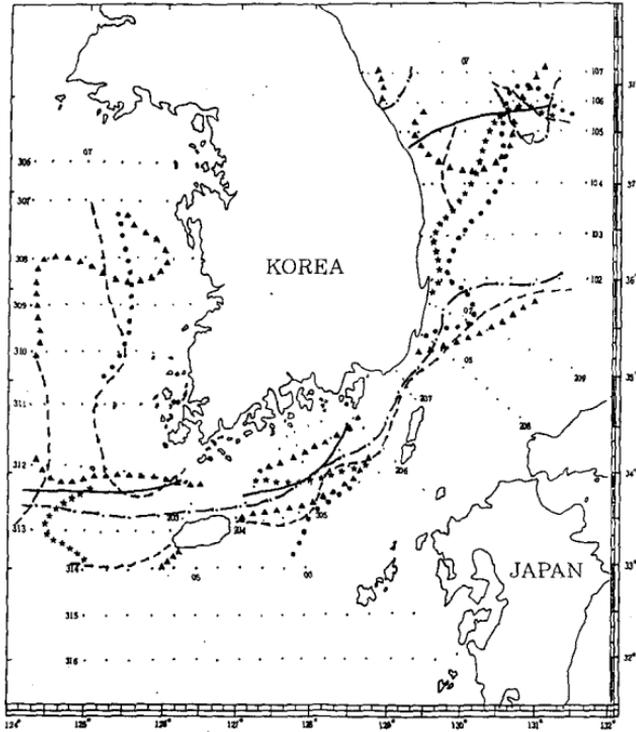
이 동해 7~15℃, 남해 9~16℃, 서해 4~10℃였으며, 50m층 수온은 동해 6~15℃, 남해 10~16℃, 서해 4~11℃로서 暖流세력이 전반적으로 강세였고 북한한류, 황해냉수는 약세, 남해연안수는 8℃ 내외로 소리도 연안에서 현저한 분포를 나타내었다. 한편 평년에 비하여는 주문진·울릉도 북방해역(1℃ 저온상)의 대부분 해역이 1℃ 고온상이었다.

春季의 해면 수온은 동해 8~20℃, 남해 11~20℃, 서해 6~18℃였으며, 50m층 수온은 동해 5~17℃, 남해 11~19℃, 서해 6~15℃로서 난류세력이 춘계초에는 강세였으나 춘계말에는 약세로 接岸하였고 북한한류는 춘계말에 연안측으로 강하게 남하하여 외해측으로 북상한 동한난류와의 사이에 남북방향의 수온 不連續帶를 형성하였다. 황해 냉수는 전반적으로 약세였고 남해연안수는 춘계말 이후 소멸하였다. 한편, 평년에 비하여 춘계초에는 동해 및 남해 1~2℃ 고온상, 서해는 표층에서 1℃ 저온상이었으나, 50m층은 1℃ 고온상이었다. 춘계말에는 동해연안과 남해 및 서해 대부분 해역이 1℃ 저온상이나, 동해 외해역과 서해의 50m층은 1~3℃ 고온상이었다.

夏季의 해면 수온은 동해 18~26℃, 남해 23~27℃, 서해 19~25℃였으며, 50m층 수온은 동해 6~21℃, 남해 11~22℃, 서해 9~20℃로서 난류계수는 약세인 반면 북한한류는 대체로 강세로서 평년에 비하여 표층은 전 해역이 1~5℃ 저온상이었으며, 50m층은 동해와 남해의 연안해역과 서해 대부분 해역이 1~5℃ 고온상, 동해와 남해의 근·외해역은 1~6℃ 저온상이었다.

秋季의 해면 수온은 동해 16~24℃, 남해 20~25℃, 서해 17~21℃였으며, 50m층 수온은 동해 7~24℃, 남해 12~25℃, 서해 10~20℃로서 난류세력은 대체로 약세였으며, 북한한류는 外海측에서 강세, 황해냉수는 군산이북 外海域에 분포하여 평년에 비해 동·남해는 전반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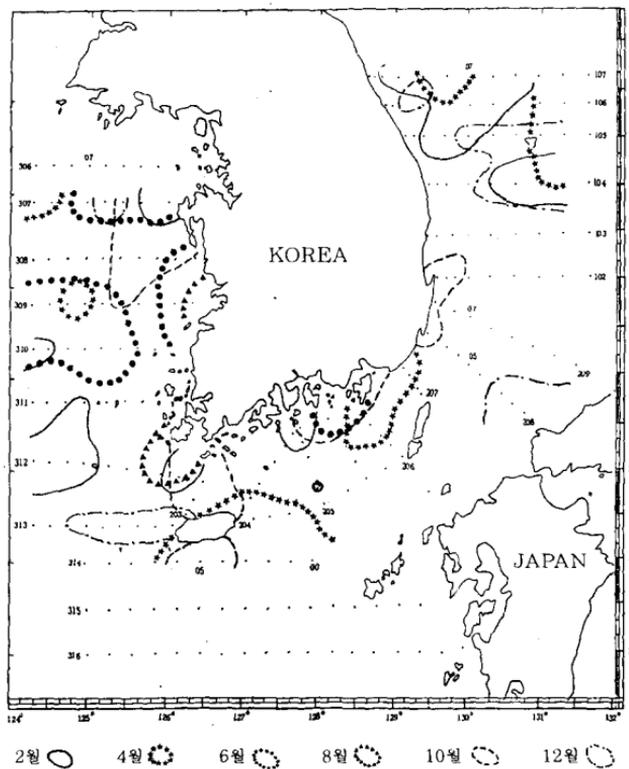
〈表 44〉 1993年 우리나라 近海漁場 50m층의 水溫不連續帶 分布位置 變動



2월 — 4월 ***** 6월 8월 ▲▲▲▲ 10월 — 12월 ----

資料 : 수산청 국립수산진흥원

〈表 45〉 1993년 우리나라 近海魚場 먹이生物 豊富海域 分布變動



資料 : 수산청 국립수산진흥원

으로 1~2℃ 저온상, 서해는 1~2℃ 고온상이었다.

우리나라 주변해역에 영향을 주는 수계간에 형성된 수온 불연속대 위치의 시기별 변동을 <表 44>에, 어류의 주요 먹이생물이 풍부한 해역의 시기별 위치를 <表 45>에 나타내었다.

동해의 경우에는 연안을 따라 남하하는 북한한류와 북상하는 동한난류의 강약에 따라 수온 불연속대가 남북 및 동서 방향으로 이동하며, 먹이생물은 울릉도 근해 및 동해중부 해역에서 풍부하게 분포하였다.

남해의 경우는 수온 불연속대의 위치가 연안측에 근접한 2월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제주도-대마도간 海域에 걸쳐 있고, 먹이生物은 주로 연안 가까운 해역과 제주도 周邊海域에서 풍부하게 발생하였다.

서해의 경우에는 수온 불연속대의 위치가 남부해역에서 연중 동서방향으로 걸쳐 있지만 6~10월에는 남북방향으로 형성되었다. 먹이생물 풍부해역의 위치는 시기별로 비교적 큰 변동을 보였다.

2. 漁況

가. 漁業別 漁況

(1) 東海岸

동해안의 主要漁業인 명태어업, 콩치유자망어업, 오징어채낚기어업, 기선저인망어업 등의 漁況을 보면, 명태어업은 1~4월에 걸쳐서 강원도 연안측 해역에서 中心 漁場이 형성되었으며, 漁況은 전년에 비해서는 다소 好轉되었으나, 평년('88~'92년 평균)에 비해서는 부진하였다. 콩치 유자망어업은 봄철에 北上 來游群을 대상으로 경북 연안측 해역에서 漁場이 형성되었으며, 漁況은 전년에 이어 극히 부진하였다.

· 오징어채낚기어업은 6월이후 12월까지 울릉도를 중심으로 하는 東海

岸 全域에서 密度 높은 漁場이 형성됨으로써 예년에 없던 好況을 나타내었고, 기선저인망어업은 東海岸 沿岸側 海域에서 年中 操業이 이루어졌으며 漁況은 평년 수준을 나타내었다.

(2) 南海岸

남해안에서는 멸치자망, 기선권현망, 분기초망, 대형선망, 대형트롤어업 등에 의하여 操業이 이루어졌다.

멸치자망, 기선권현망, 분기초망에 의해 주로 어획되는 멸치는 前年 및 平年에 비하여 好況을 나타내었다. 대형선망어업은 말쥐치, 정어리가 많이 잡혔던 80年代에 비해서는 不振한 漁況을 보였으나, 고등어의 漁獲 好調로 전년에 비해서는 好況을 나타내었다. 말쥐치를 주로 어획하는 대형트롤어업은 평년에 비해 여전히 低調한 漁況을 보였다.

(3) 黃海 및 東中國海

황해 및 동중국해에서는 근해안강망, 기선저인망어업 등에 의해서 操業이 이루어졌다.

근해안강망 및 기선저인망어업은 황해 및 동중국해에 걸쳐 계절에 따라 漁場은 다소의 변동을 보였으나, 年中 操業이 이루어졌다.

근해안강망어업은 主 對象 魚種인 갈치의 漁獲 不振으로 저조한 어황을 보였으나, 기선저인망어업은 비교적 안정된 漁況을 나타내었다.

나. 魚種別 漁況

主要 魚種別 漁況을 평가하면 멸치, 오징어, 고등어는 전년 및 평년보다 好況을 보였으며, 명태, 갑오징어는 전년 수준을 유지하였으나 평년에 비해서는 不振한 漁況을 나타내었다. 참조기는 평년 수준을 유지하였으나 전년에 비해서는 다소 저조한 漁況을 보였으며 갈치, 정어리, 말쥐치는 전년 및 평년에 비하여 低調한 漁況을 나타내었다.

3. 資源動向

가. 沿近海

연근해 어업의 總 漁獲量은 1960年代 이후 '74년까지 순조로운 增加를 거듭하여 왔으나 그 후 增加率은 鈍化되어 1981年 이후 150만톤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單位努力當 漁獲量은 1974年 이후 最近까지 계속적인 減少傾向을 보임으로써 70年代 中반에 비하여 1/3~1/5 수준으로 낮아지는 등 資源減少에 의하여 漁場의 生産性은 급격히 低下되고 있다.

주요 어종에 대한 漁獲 狀況을 보면 멸치류의 어획량이 249천톤으로서 연근해 어종별 어획량중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은 오징어 219천톤, 고등어 175천톤, 강달이류 72천톤, 갈치 58천톤, 전갱이 38천톤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생물학적 요인과 자원량 변동 추이 등에 의하여 분석된 沿近海 主要 魚種別 資源動向을 요약하면, 오징어는 최근 資源 豊도가 높아진 것으로 평가되나, 정어리와 말퀴치 자원은 加入量 水準의 低下로 인하여 최근 급격히 감소하였다. 고등어는 加入量의 增減에 따라 資源量이 變動하는 불안정한 상태이며, 그외 대부분 주요어종의 어획물은 若齡魚 比率이 지나치게 높게 나타나는 등 資源은 낮은 水準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나. 遠洋

(1) 遠洋漁業 全體 動向

우리나라 遠洋漁業은 '57년 印度洋에서 다랭이연승 시험조업을 시작으로 매년 급속한 生産量 신장을 보여 '76년에는 724천톤에 달하였으

나 沿岸國의 排他的 經濟水域 설정이 집중되었던 '70년대 후반에서 '80년대 전반기 동안에는 '76년 漁獲량의 약 2/3 수준으로 감소하였다.

'80년대 중반 부터는 정부 및 민간에 의한 연안국과의 수산외교 강화, 국제 수산자원의 공동관리 및 합작사업 참여, 연안국과의 과학적 공동 자원조사 실시 등 遠洋漁業 振興政策에 힘입어 '85년 이후에는 年間 生産량이 77~120만톤 수준으로 증가하였다. '90년 부터 미국은 漁民保護法 및 流刺網 規制法을 마련하여 公海에서 조업하는 流刺網漁業을 監視 및 規制하기 시작하여 '92년 12월 31일 이후 부터는 유엔결의 (46/215, '91.12.20)에 의해 公海上 流刺網漁業을 禁止토록 하였을 뿐만 아니라 최근 境界往來 魚類資源 및 高度回遊性 魚類資源에 대한 管理 및 保存이 UN의 국제공동관리 체제로 전환되고 있는 실정이다. '93년 우리나라 遠洋漁船 출어척수는 '92년보다 18% 감소한 628척으로 3大洋에서 다랭이류, 명태, 기타 저어류, 새우류, 콩치 및 오징어류를 대상으로 조업하여 '92년보다 27% 감소된 741천톤을 어획하였다.

'93년 우리나라 漁業別 生産量 動向을 보면 콩치 봉수망어업은 어획량이 증가한 반면 다랭이 선망, 트롤, 새우트롤, 오징어채낚기어업은 감소하였고 다랭이연승어업은 전년 수준이었다. 그중 트롤어업의 漁獲量 減少는 '93~'94년간 베링공해와 '93년 5월 이후 부터 오호츠크 공해에서 自律的 操業中斷이 주 원인이었다.

(2) 主要 魚種別 動向

'93년 연승 및 선망어업 대상 魚種인 황다랭이, 눈다랭이 및 가다랭이 등의 다랭이류의 漁獲量은 179천톤으로 전년비 24% 감소하였으며, '93년 연승어업의 다랭이류 漁獲量은 52천톤으로 전년수준이며 서부태평양 선망어업의 다랭이류 漁獲量은 127천톤으로 전년비 31% 감소하

였지만 우리나라 遠洋 다랭이류 生産量의 71%를 차지하였다.

명태 및 기타 저어류를 대상으로 하는 트롤漁業은 '93년에 358천톤을 어획하여 전년비 32% 감소하였다. 북양트롤어업의 명태어획량이 176천톤으로 전년비 24% 감소하였고 북해도 트롤어업은 41천톤으로 전년 수준이었다. 각 대양에 기지를 두고 조업하고 있는 기지 트롤漁業에 의한 底魚類 漁獲量은 '93년 141천톤으로 전년비 32% 감소하였다. 새우류 대상 트롤어업의 '93년 漁獲量은 1,031톤으로 전년비 18% 감소하였다.

북태평양 공치 棒受網漁業에 의한 '93년 공치 어획량은 40천톤으로 전년비 19% 증가를 보였다.

오징어류를 對象으로 하는 流刺網 漁業은 '93년 어기부터 유엔결의에 의해 全面 中斷되었으며, '93년 포클랜드, 페루 및 뉴질랜드 근해 오징어채낚기어업에 의한 오징어 漁獲量은 157천톤으로 전년비 15% 감소하였고, 北太平洋 公海 오징어채낚기어업은 13척이 試驗 操業을 하였다.

4. 沿岸漁場 環境 變化

가. 沿岸漁場 汚染

임해공단 조성 및 도시인구의 급격한 증가로 오염물질의 바다 유입량이 증가되고, 埋立, 干拓의 확대로 연안어장이 축소됨과 동시에 매립, 간척지의 이용에 따른 오염물질의 유입으로 沿岸海域의 오염은 심화되고 있으며, 특히 마산만, 진동만, 행암만, 광양만, 인천연안, 금강하류의 수질은 계속 악화되고 있는 상태였으며, 해수교환이 원활치 못하고 養殖漁業이 활발한 남해안 동부 해역의 저질 오염도는 우리나라 전국

연안층 가장 높은 상태를 계속 유지하고 있다. 또한 매년 여름철이 되면 진해만에서 발생되어 棲息生物에 피해를 입히고 있는 저산소 수괴는 7~8월 사이 진해만 거의 전역에서 형성되었고, 이때의 저층 용존산소는 2mg/l 이하의 낮은 농도를 나타냈으며, 고현만을 비롯한 진해만 서부 해역에서는 1mg/l 이하의 거의 무산소 수괴가 형성되었다.

나. 赤潮 發生

'93년 4월에 거제도 학동에서 鞭毛藻類인 *Eutreptiella*에 의해서 처음 적조가 발생한 이래 7월과 8월에는 *Ceratium*에 의한 적조가 거제 연안과 진해만에서 장기간 지속되었다. 그후 10월에는 사량도와 미륵도 해역에서 유독성 종인 *Cochlodinium* 赤潮가 발생하여 양식넙치, 방어 등을 폐사시켜 상당한 수산피해를 가져왔다. 한편 3월과 4월에는 마비성 패독종인 *Alexandrium* 이 대량 발생하여 패류생산 판매에 지장을 초래하였다.

이상의 결과 '93년 적조발생 건수는 38건으로서 '92년의 27건에 비해 증가하였으며 '92년 이후 충무 및 통영 연안에서 유독성 적조가 발생하여 양식생물에 피해를 일으키고 봄철에는 마비성 패독종도 출현하므로 어패류의 양식에 주의가 요망되고 있다.

第 2 編

1993年度 水産施策

여백

第 1 章 바다 淨化와 기르는 漁業 育成

第 1 節 바다 淨化

1. 淸淨海域 및 保全地區 管理

'72.11.24 체결된 한·미 貝類衛生協定과 수출용 貝類의 생산 관리 및 동 가공품 검사에 관한 규칙과 관련하여 지정된 淸淨海域(수출용 貝類 생산해역)은, 거제-한산만, 자란-사랑해역, 산양해역, 가막만해역 등 4개소에 20.4千ha가 指定되어 있으며, 국토이용관리법에 의거 水産動植物의 산란·서식환경을 보호하고 水産資源을 육성하기 위하여 지정된 水産資源保全地區는 현재 전국에 29개소가 있으며, 이 중 海面에는 천수만, 영광, 완도, 득량만, 여자만, 가막만, 남해·통영 I, II, 한산만, 진동만 등 10개소에 413千ha가 指定되어 있다.

이들 海域은 水産資源의 안정적 보호·육성을 위하여 매우 重要한 海域으로서 淸淨海域에 대하여는 156개 조사지점을 選定, 해수 및 패류에 대한 세균함량 등 위생조사를 주기적으로 실시하는 한편, 水産資源 保全地區에 대하여는 140개 調査地點을 선정, 일반 水質 및 중금속 汚染度 조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水質保全 管理를 위한 기초자료로 활

용도록 하였다. 또한 이들 海域 및 그 周邊에 대하여는 가축방목, 공장 설치 등을 금지토록 하고 公有水面 埋立·干拓과 준설행위를 강력히 억제하는 한편 海洋汚染의 근본적인 원인이 되고 있는 1.團廢水 및 生活下水, 糞尿, 廢棄物 등 각종 汚染物質의 해양유입 방지를 위하여 수립한 沿岸 오염방지 종합대책에 따라 각종 오염물질 淨化處理 施設을 확충하고 汚染物質의 해양 투기행위를 강력히 규제·단속해 나가는 등 관련 부처와의 긴밀한 협조하에 指定海域 및 수산자원보전지구의 水質保全管理에 철저를 기해 나가고 있다.

〈表 46〉 淸淨海域 指定現況

| 指定番號 | 海 域 名 | 面 積 | 最初指定日 |
|-------|---------|-----------|-------------|
| 計 | 4個所 | 20,438 ha | |
| 제 1 호 | 거제-한산만 | 2,121 | '74. 7. 5 |
| 제 2 호 | 자란-사랑해역 | 9,492 | '84. 5. 23 |
| 제 3 호 | 산양해역 | 4,249 | '87. 11. 25 |
| 제 4 호 | 가막만 | 4,576 | '87. 11. 25 |

資料 : 수산청 어장보전과

〈表 47〉 水産資源 保全地域 指定現況

| | 地 域 別 | 面 積 | 最初告示日 |
|-------|-------|------------|-------------|
| 計 | 29個所 | 450,314 ha | |
| 大單位水面 | 15個所 | 27,485 | |
| | 淸 平 湖 | 810 | '86. 7. 21 |
| | 牙 山 湖 | 2,270 | '84. 12. 27 |
| | 南 陽 湖 | 711 | '84. 12. 27 |

| | 地 域 別 | 面 積 | 最初告示日字 |
|-----|-------------|------------|------------|
| | 破 虜 湖 | 1.026 | '84.12.27 |
| | 昭 陽 湖 | 5.432 | '86. 7. 21 |
| | 春 川 湖 | 1.507 | '84.12.27 |
| | 大 清 湖 | 1.548 | '86. 7. 21 |
| | 槐 山 湖 | 148 | " |
| | 禮 唐 湖 | 959 | " |
| | 插 橋 湖 | 2.174 | " |
| | 雲 岩 湖 | 1.542 | " |
| | 羅 州 湖 | 780 | " |
| | 寶 城 湖 | 123 | " |
| | 榮 山 湖 | 4.508 | " |
| | 安 東 湖 | 3.947 | " |
| 河 川 | 4個所 | 9.189 ha | |
| | 南 漢 江 上 流 | 60 | '84.12.27 |
| | 襄 陽 南 大 川 | 99 | '77.12.13 |
| | 盈 德 五 十 川 | 1.890 | '78.11.22 |
| | 蔚 珍 王 避 川 | 7.140 | '82. 1. 8 |
| 海 域 | 10個所 | 413.640 ha | |
| | 忠 南 淺 水 灣 | 24.323 | '78.11.22 |
| | 全 南 莞 島 | 64.443 | '82. 1. 8 |
| | " 駕 莫 灣 | 29.859 | " |
| | " 汝 自 灣 | 50.178 | " |
| | " 得 糧 灣 | 46.375 | " |
| | " 靈 光 | 30.890 | " |
| | 慶 南 閑 山 灣 | 56.778 | '75. 3. 21 |
| | " 鎮 東 灣 | 28.138 | '78.11.28 |
| | " 南 海 統 營 1 | 13.268 | " |
| | " 南 海 統 營 2 | 69.388 | '82. 1. 8 |

資料 : 수산청 어장보전과

2. 漁場環境 淨化

漁場環境 淨化事業은 공동어장, 양식어장 등 연안을 중심으로 老朽化 된 어장을 되살리기 위한 사업으로서, 어장의 바닥갈이 등으로 底質을 개선하고 어장내에 堆積된 각종 有機物 수거와 불가사리 등 害敵生物을 구제하여 연안어장을 본래의 옥토로 가꾸어 汚染으로 인한 어장피해를 최소화하여 단위 生産性을 높이고자 '86년부터 '92년까지 국비 2,900백만원을 지원, 86천ha의 연안어장을 淨化하였고, '93년도에는 국비 1,097백만원을 지원, 16천ha를 淨化하여 공동어장 및 양식어장의 생산성을 증대하는데 기여하였으며, 오염이 광역화되어 있거나 퇴적물이 심화된 漁場에 대하여 기존 희망어선이나 人力에 의존하는 淨化사업으로는 淨化效果 제고의 한계로 특수한 기능과 장비를 갖춘 다기능 어장 淨化선을 건조·운영하기 위하여 '93년에 4,058백만원의 예산을 확보, 2선단 7척을 '93.8.30일에 건조·착공하여 '94. 8월 준공하였으며, 또한 漁港에 流入되는 각종 有機物 및 어선 입·출항에 지장을 주는 장애물을 제거하는 등 어항내의 깨끗한 環境 保全을 위한 어항청소선의 건조·운영을 위하여 '93년에 1,586백만원의 豫算을 확보, '93.11.19일에 착공하여 '94. 9월 준공하였다.

한편, 沿岸漁場은 어민 스스로 淨化한다는 기본 인식하에 연안 시·도, 시·군, 어촌계별로 바다청소 책임구역제를 실시 운영하여, 월 2회 바다 청소를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民間 自律團體 中心으로 범국민 「바다가꾸기 운동」을 전개토록 하여 어민, 단체 정부가 다같이 참여하는 事業으로 정착되어 가고 있다.

〈表 48〉

漁場淨化 事業實績

單位：百萬元

| | 合 計 | | '92까지 | | '93 | |
|-----------|-----------|------------------|----------|------------------|----------|------------------|
| | 物 量 | 金 額 | 物 量 | 金 額 | 物 量 | 金 額 |
| 計 | | 11,937 | | 4,444 | | 7,493 |
| ○ 漁場淨化 | 102,638ha | 6,293 (3,997) | 86,222ha | 4,444 (2,900) | 16,416ha | 1,849 (1,097) |
| ○ 漁場淨化船建造 | 2조7척 | 4,058 | - | - | 2조7척 | 4,058 |
| ○ 漁港清掃船建造 | 4척 | 1,586 | - | - | 4척 | 1,586 |

資料：수산청 어장보전과

註：() 는 국비

3. 赤潮 및 油類 汚染被害와 豫防

주로 여름철 高水溫期에 沿岸海域에서 頻繁하게 발생하는 赤潮로부터 유용 수산 동식물의 피해예방을 위하여 沿岸 汚染防止 綜合對策의 일환으로 수립된 赤潮發生 防止 및 被害 豫防對策에 의거 인천, 목포, 여수, 충무 연안과 진해만 일원 등 赤潮 다발해역에 58개 조사지점을 선정, 赤潮生物 분포 및 環境상태 등을 주기적으로 조사하는 한편 赤潮發生이 우려되는 海域에는 어촌지도 공무원을 상주 배치하고 어민 赤潮감시원을 지정하여 赤潮發生 정보를 수집하는 한편 수산진흥원 시험선의 調査 및 관계기관 합동 航空監視 등으로 신속하고 정확한 赤潮豫報를 위해 노력하였다.

또한 경인, 전남, 경남 등 3개지역에 대하여는 赤潮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관련기관·단체간 협조체제 강화로 赤潮發生 防止 및 被害豫防에

철저를 기하였다.

해상 운송 물동량 증가에 따른 油類汚染事故로 부터 海洋生態 및 水産資源의 被害豫防을 위하여 관계기관 합동으로 경인, 경남, 전남에 지역별 事故對策委員會를 구성, 신속한 汚染防除를 실시하는 한편, 被害調査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토대로 당사자간에 원만한 合意賠償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대형 油類事故의 경우 國際 油類損害 배상基金에 피해배상을 要請하는 등 適正 被害賠償이 되도록 노력하였다.

第 2 節 水産資源 造成

1. 人工魚礁 施設

人工魚礁는 수산자원의 産卵, 棲息에 적합한 환경을 조성, 水産資源

(表 49) 市·道別 人工魚礁 施設實績

單位 : ha, 百萬円

| | 計 | | '71~'92 | | '93 | |
|----|--------|---------|---------|---------|-------|--------|
| | 面積 | 金額 | 面積 | 金額 | 面積 | 金額 |
| 計 | 78.822 | 133.476 | 70.499 | 109.658 | 8.323 | 23.818 |
| 釜山 | 683 | 1.127 | 571 | 817 | 112 | 310 |
| 京畿 | 2.587 | 5.751 | 2.141 | 4.383 | 446 | 1.368 |
| 江原 | 11.973 | 18.892 | 10.786 | 15.902 | 1.187 | 2.990 |
| 忠南 | 3.678 | 6.941 | 3.116 | 5.346 | 562 | 1.595 |
| 全北 | 3.103 | 5.906 | 2.730 | 4.759 | 373 | 1.147 |
| 全南 | 16.341 | 26.599 | 14.300 | 21.963 | 2.041 | 4.636 |
| 慶北 | 12.328 | 20.769 | 11.278 | 17.771 | 1.050 | 2.998 |
| 慶南 | 18.283 | 30.808 | 16.984 | 25.422 | 1.299 | 5.386 |
| 濟州 | 9.846 | 16.683 | 8.593 | 13.295 | 1.253 | 3.388 |

資料 : 수산청 자원조성과

을 增強시키는 것은 물론 小型機船底引網 등의 불법어업을 방지하여 수산자원을 보호하는 효과가 있어 '71년부터 沿岸해역 10~50m 수심의 개발적지에 시설하고 있으며 '93년에는 23,818백만원을 투자, 8,323헥타를 시설하였다.

2. 種苗培養場 施設 및 生産放流

沿岸 水産資源의 증강을 위한 種묘방류 및 養殖用 種묘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고자 '73년부터 '93년까지 수산종묘배양장 11개소를 완공한데 이어 '92년도부터 '95년까지 건설을 추진하고 있는 충남 태안의 대규

<表 50>

水産種苗培養場 現況

單位：百萬원, 千마리

| | 施設年度 | 施設費 | 主要生産種苗 | 生産實績 | |
|-----|---------|--------|--------------|---------|--------|
| | | | | '76~'92 | '93 |
| 計 | | 24,773 | | 255,783 | 70,893 |
| 北濟州 | '73 | 911 | 소라, 전복, 참돔 | 16,747 | 650 |
| 注文津 | '78 | 890 | 전복, 성게, 넙치 | 11,679 | 754 |
| 麗川 | '79 | 1,084 | 전복, 꽃게, 돔 | 27,058 | 1,750 |
| 迎日 | '80 | 731 | 전복, 성게, 넙치 | 8,788 | 762 |
| 巨濟 | '82 | 1,207 | 넙치, 전복, 보리새우 | 101,080 | 16,855 |
| 莞島 | '84 | 1,321 | 전복, 참돔, 조피볼락 | 19,222 | 672 |
| 保寧 | '85 | 1,352 | 대하, 전복, 조피볼락 | 30,812 | 10,320 |
| 扶安 | '86 | 1,429 | 꽃게, 조피볼락, 대하 | 8,742 | 12,290 |
| 南濟州 | '87 | 1,524 | 조피볼락, 돌돔, 참돔 | 24,070 | 20,500 |
| 南海 | '89 | 3,703 | 보리새우, 진주조개 | 7,485 | 5,650 |
| 蔚珍 | '92 | 4,748 | 참게, 은어, 전복 | 100 | 690 |
| 泰安 | '92~'95 | 5,873 | (施設中) | - | - |

資料：수산청 자원조성과

모 종묘배양장 1개소의 敷地 買入 및 設計를 '92년도에 完了하였으며, '93년도에는 부지 정리 등 육상 토목공사를 실시하였다.

國立水産振興院에서는 '93년에 전복 2,422千마리, 보리새우 및 대하 31,190千마리, 넙치 630千마리, 참돔 455千마리, 꽃게 1,650千마리, 진주조개 1,550천마리 등 總 70,893千마리의 種苗를 生産, 어촌계와 민간 양식장 등에 분양하거나 沿岸에 방류하였다.

또한 연안어장 자원조성의 가속화와 자원 조성에 대한 民間의 參與를 유도하기 위하여 民間 種苗培養場에서 생산한 수산종묘를 '86년부터 買入, 沿岸에 방류하고 있으며 '93年度에는 151百萬원을 투자하여 우럭, 대하 등 34,787千마리를 買入, 放流하였다.

〈表 51〉 民間 種苗買入 放流實績

單位 : 千마리, 百萬원

| | '86~'92 | | '93 | |
|------|---------|-----|--------|-----|
| | 物 量 | 金 額 | 物 量 | 金 額 |
| 計 | 103,237 | 846 | 34,787 | 151 |
| 꽃 界 | 2,603 | 83 | - | - |
| 우 럭 | 3,970 | 304 | 92 | 10 |
| 대 하 | 96,664 | 459 | 34,695 | 141 |

資料 : 수산청 자원조성과

第 3 節 養殖漁業 開發

1. 漁場 開發

양식어장 개발은 水面의 종합적 利用開發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수산업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漁場 利用開發 기본지침에 의거 地先多數漁民의 소득원 확보 위주로 개발하고 기존 어장의 漁場與件 변화로 계속 양식이 곤란할 때에는 外延漁場으로 대체개발하거나 適正品種으로 변경 개발하는 등 漁場을 효율적으로 利用토록 함으로써 양식 수산물의 需要를 감안한 적정 생산이 이루어지도록 하였으며, 適正 需給調整이 필요한 김, 미역, 굴, 피조개, 톳 등은 안정생산 시책을 추진하여 전국단위로 漁場開發 및 生産을 조절하였다.

한편 海域別로 地域단위 特化品種의 團地化를 추진하기 위해 남해안은 어류, 굴, 피조개, 김, 미역, 우렁쟁이, 眞珠조개 등의 어장으로 육성하고 西海岸은 김, 바지락, 굴(投石式), 새우 등을 중점 양식토록 하였으며, 東海岸은 어류, 우렁쟁이, 가리비 등의 어장을 개발토록 하였다.

또한 水産物 輸入自由化에 대비하여 가리비, 眞珠조개, 魚類養殖 등 국제경쟁 우위품종을 중점 개발하고 國際競爭力이 취약한 새우, 우렁쟁이 등의 양식품종은 他品種으로 品種變更를 유도함은 물론, 양식여건이 좋은 베트남 등과 해외합작에 의한 해외 어장개발을 병행 추진하였다.

2. 生産基盤施設 擴充

養殖漁場の 안정적 생산과 경영 합리화를 위하여 종묘배양장, 사료저장고 등 양식생산 기반시설을 매년 정부에서 지원하고 있으며, '93년도에도 1,620百萬원을 投資하여 魚類種苗培養場 3개소와 飼料貯藏庫 8개소, 貝類種苗培養場 2개소 등 總 13個所를 지원하여 안정적 경영을 도모하였다.

〈表 52〉 '93 養殖漁場 生産基盤施設 支援現況

單位：百萬원

| 事業名 | 事業量 | 計 | 融 資 | 自 擔 |
|---------|------|-------|-------|-----|
| 計 | 13個所 | 1,620 | 1,296 | 324 |
| 魚類種苗培養場 | 3 " | 300 | 240 | 60 |
| 飼料貯藏庫 | 8 " | 800 | 640 | 160 |
| 貝類種苗培養場 | 2 " | 520 | 416 | 104 |

資料：수산청 증식과

註：지원율은 융자 80%, 자담 20%

3. 漁場管理·指導

養殖漁場の 효율적인 관리와 부실관리 어장의 방지를 위하여 '93養殖漁場 管理改善指針을 제정하여 養殖 漁業權을 품종별, 養殖 시기별로 구분 정기적으로 實態調査를 실시하여 부실관리 어업권은 관계법규에 따라 시정 조치 하는 등 어업질서 확립을 위해 노력하였으며, 漁場性을

감안한 어장별 적정시설 지도와 함께 도, 시·군, 수산진흥원, 수협 협동으로 지역별 주요양식 품종별 主産地에 대한 漁場豫察 評價制를 강화하여 피해예방 지도와 피해발생시 신속한 대처로 效率的인 漁場管理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였다.

第 4 節 內水面漁業 開發

1. 資源造成

댐·湖 등 大單位 水面을 비롯한 내수면에 '93까지 잉어, 떡붕어, 향어 등 稚魚 774百萬마리를 放養하였으며 은어, 빙어 등 人工受精卵 2,807百萬알을 방류하였다.

'93년에는 신규 댐인 住岩湖(全南 寶城)에 잉어, 떡붕어, 향어 稚魚 1,255千마리와 臨河湖(慶北 安東)에 19,545千마리를 買入 放養하였다.

<表 53>

內水面 稚魚放養 實績

單位：萬마리, 百萬원

| | 合 計 | | '71~'92 | | '93 | |
|-----------|--------|-------|---------|-------|-------|-----|
| | 物 量 | 金 額 | 數 量 | 金 額 | 數 量 | 金 額 |
| 計 | 77,430 | 8,971 | 75,590 | 8,583 | 1,840 | 388 |
| ○ 잉어, 떡붕어 | 66,657 | 6,728 | 65,717 | 6,542 | 940 | 186 |
| ○ 향 어 | 10,773 | 2,243 | 9,873 | 2,035 | 900 | 208 |

資料：수산청 자원조성과

2. 技術開發 및 消費促進

내수면 양식기술을 위하여 國·道立 內水面研究所(11個所)에서 참돔배기, 산천어, 초어, 백년어 등의 優良種苗 3百萬마리를 생산 양식어민에게 보급한 바 있으며, 新品種 開發을 위하여 산천어, 쓰가리, 참게, 자라, 동자개 등 10여종에 대한 종묘생산 및 양식기술을 시험 연구중에 있다.

한편 수산물 식량화 및 어민소득 증대를 위하여 淡水魚 양산체제를 구축하였고 담수어 유통(直賣場)시설 설치 운영, 요리법 개발, 강습회 및 전시회 등을 실시하여 持續的으로 淡水魚 소비 촉진을 도모토록 하였다.

3. 연어 人工孵化 放流

정부에서는 동해안의 연어 資源 증강 및 北太平洋에서의 연어 操業 입지 확보 등을 위하여 '67年度부터 '92년까지 연어稚魚 85百萬마리를 생산 방류한 바 있으며 '93년도에도 강원, 경북관내 3個 내수면연구소에서 15百萬마리를 人工孵化 동해안 12개 하천에 방류하였다.

'90년도부터는 放流 연어의 回歸率이 1.7%로 높아짐에 따라 定置網 등 소극적인 어업에 대하여는 採捕 禁止期間(10.11~11.30)을 해제하여 금지기간중 回歸 연어를 漁獲토록 하여 어민 소득 증대를 기하고 있다.

〈表 54〉

연어 放流 및 採捕 實績

單位 : 千마리

| 年 度 | 計 | '67~'90 | '91 | '92 | '93 | '93/'92 |
|-------|---------|---------|--------|--------|--------|---------|
| 放 流 量 | 100,243 | 63,583 | 12,000 | 10,000 | 14,660 | 147% |
| 採 捕 量 | 515 | 181 | 103 | 111 | 120 | 108% |

資料 : 수산청 자원조성과

第 2 章 漁業 構造調整과 秩序 確立

第 1 節 漁業構造 調整

연근해어업은 어선세력의 증대에도 불구하고 '80년이래 어업생산이 150만톤~130만톤 수준에서 정체되고 있으며 단위 생산성도 低下하는 등 연근해 어업 자원이 限界를 보이고 있어, 沿岸資源 造成事業의 증대와 병행하여 자원수준에 적합한 어선세력을 유지하는 시책이 절실히 요청되고 있다.

이에 따라 全體 資源水準에 적합한 漁船勢力을 유지하여 단위어선의 經濟性 및 競爭力을 높이며 자원의 합리적 이용관리를 위한 制度 整備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여 水産業法施行令 등 부속법령을 정비 補完하는 한편, 어업자원, 어업경영체 실태, 어업별 적정 어선세력의 평가 및 어선감축규모, 어선·어구의 보상기준 등에 대한 연구를 실시하고 동 결과에 따른 연근해어업 구조조정계획을 수립하여 關係部處 및 수산업계에 漁業構造 調整의 필요성을 인식, 확산시키는 데 노력을 傾注하였다.

第 2 節 漁業制度의 整備·補完

水産業法施行令과 水産資源保護令을 全文改正(시행령 '91.2.18. 보호령 91.3.28)한 이후 시행상 나타난 재반 문제점과 현실에 맞지 않은 내용을 整備·補完함으로써 水産業의 발전과 어민소득 증대에 기여하였으며 그 주요 개정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水産業法施行令

어업면허의 취소 등에 따른 보상액증 어선·어구 등 시설물에 대한 보상을 함에 있어 현재는 시설물의 殘存價額에서 施設物의 賣却收入額을 공제한 잔액만을 보상토록 한 것을 앞으로는 시설물 殘存價額의 전액을 보상하도록 함으로써 보상받을 어민의 便益을 圖謀하도록 하였고, 보상받은 어선은 보상금을 부담한 자에게 이를 인도하도록 하고 이를 인도받은 자는 行政官廳에 대하여 當該漁船의 폐기 또는 해체의 대행을 의뢰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보상된 어선의 방치에 따른 海上汚染 등을 豫防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어업의 면허와 그 제한, 漁業權 유효기간의 연장 허가 등 시·도지사의 권한을 대폭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함으로써 민원업무의 신속한 처리와 행정업무의 간소화를 도모하도록 하였다.

2. 水産資源保護令

강원도, 경상북도 연안의 일부해역에서 불빛을 사용하는 조업을 금지하

던 것을 經濟行政 規制緩和 施策의 일환으로 영세 연안어업에 피해가 없는 범위안에서 당해 금지지역을 일부 축소함으로써 水産資源의 효율적인 이용을 도모하도록 하였고, 연안어민의 소득증대를 도모하기 위하여 봉장어의 채포·금지기간을 폐지하고 소라, 보라성게 등의 捕獲 採取期間을 단축하는 등 漁撈行爲의 금지기간을 일부 완화하였으며, 遠洋漁業에 종사하는 어선이 어획한 漁獲物을 다른 선박으로 옮겨 신고자 할 때는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는 것을 經濟行政 規制緩和 施策의 일환으로 이를 시·도지사에게 신고를 함으로써 가능하도록 하였고 水産動植物의 지나친 濫獲을 防止함으로써 水産資源을 保護하기 위하여 水産廳長은 일정한 保護區域을 정하고 구역별로 어선의 척수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였다.

第 3 節 漁業秩序 確立

1. 不法漁業 追放

沿近海漁業은 '80년대 이후 伸張率이 鈍化되어 최근 연간 230만톤 수준에 머물고 있으며, 일부 沿近海 資源의 減少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는 바, 이는 沿近海漁場의 범위가 한정되어 있는데 비하여 隣接國과의 조업경쟁이 심화되고, 대단위 埋立, 干拓 및 海洋汚染 등에 의한 연안어장의 축소 및 漁場環境의 변화와 일부 어민에 의한 不法漁業과 稚魚 濫獲 등이 계속됨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따라서 어민들의 자율적인 漁業秩序 確立을 誘導하고 不法漁業 豫防 및 再發防止를 위해 어업질서확립대책을 수립, 강력한 단속을 추진하

고, 대 어민 홍보를 위하여 담화문 6,200부, 표어, 포스터, 리후렛 배포, TV, 라디오 出演 등 광범위한 홍보를 실시하였다.

한편 魚·貝類의 産卵·成育期인 5월과 10월을 全國 一齊閉網 期間으로 설정하여 관계기관(검찰, 해경)의 협조하에 小型機船底引網, 機船桁網과 같은 상습적이고 고질적인 무허가 불법어업을 우선적으로 단속하였으며, 아울러 有許可 어선의 허가사항 위반도 집중 단속하였다.

'93년도 단속실적은 전년보다 909건이 증가한 3,797건으로 어업별로는 小型機船底引網이 1,568건으로 41%를 차지하고 있으며, 내용별

〈表 55〉

漁業指導船 現況

單位：隻

| 區 分 | 計 | 噸 級 別 | | | |
|-----|-----|-------|--------|---------|---------|
| | | 10~49 | 50~150 | 300~500 | 1,300이상 |
| 計 | 69隻 | 43 | 13 | 8 | 5 |
| 水産廳 | 18 | 1 | 4 | 8 | 5 |
| 市·道 | 51 | 42 | 9 | - | - |

資料：수산청 지도과

〈表 56〉

不法漁業 圍來實績

單位：件

| | '90 | '91 | '92 | '93 |
|--------|-------|-------|-------|-------|
| 計 | 2,862 | 2,620 | 2,888 | 3,797 |
| 大·中型機底 | 129 | 173 | 230 | 313 |
| 小型機底 | 1,216 | 1,073 | 1,129 | 1,568 |
| 機船桁망 | 110 | 124 | 152 | 132 |
| 潛水機 | 120 | 61 | 65 | 99 |
| 船引網 | 48 | 28 | 36 | 54 |
| 流刺網 | 138 | 92 | 121 | 149 |
| 其他 | 1,101 | 1,070 | 1,135 | 1,482 |

資料：수산청 지도과

로는 無許可漁業이 1,883건에 50%를 차지하였다.

특히 수산청과 시·도가 合同團束班을 편성 해양경찰청의 협조를 받아 서해안의 군산, 어청도, 외연도와 東海岸의 감포, 구룡포, 울산 및 남해안의 부산 민락동, 남항, 경남 삼천포, 충무, 전남 여수, 고흥 등 全國 不法漁業 尤甚海域 및 港·浦口를 대상으로 10회에 걸쳐 불시 集中 團束을 실시한 결과 不法 小型機船底引網 등 690件을 團束하므로써 漁業秩序 確立의 轉機를 마련하였으며 전국 시·도 수산관계관과 어업지도선 선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93년도 漁業秩序確立 評價會議을 개최하고 한 해 동안 推進事項을 分析 評價하여 問題點을 도출하고 效率的인 團束方案으로 인근 시·도간 공조체제를 구축 合同 團束班을 編成하여 市·道 境界水域 및 尤甚港浦口를 집중 단속하고 단속공무원의 교체승선 團束 및 不法 漁業者에 대한 정보 교환과 인근 시도간 단속기간 일치 등 불법어업 단속방안을 마련, '94년도 漁業秩序 確立對策에 반영한 바 있다.

또한 指導·團束 機能 및 裝備 補強을 위하여 1,500톤급 지도선 1척(무궁화 18호)을 건조하고, 시·도의 30~80톤급 7척 건조를 지원하여 단속활동에 圓滑을 기하도록 하였다.

2. 安全操業 指導

출어선의 안전조업 지도를 위하여 東海 大和堆 오징어 盛漁期(6.15~12.31) 황해·東中國海 병어 盛漁期(3.1~7.31), 西海 特定海域 홍어 盛漁期(10.1~다음해 4.30)에는 500톤급이상 대형지도선을 배치하여 漁撈 보호 및 操業紛爭 예방 지도를 기하고, 특히 遠海漁場에는 1,300톤급의 福祉母船을 출동시켜 조업어선에 油類, 얼음, 기관부품 등의 船需品을 供給하고 應急患者에 대한 치료도 實施하였다.

또한 沿近海 出漁船의 안전조업을 위하여 전국 주요 港·浦口 39個所에 소재하고 있는 선박 출입항 신고기관인 統制所 및 合同申告所에 水協의 어선 안전 점검요원 96名을 배치하여 출항어선에 대한 항해 및 통신裝備의 安全點檢 실시와 出漁登錄, 船團編成 등의 지도를 함으로써 漁船이 航海 또는 操業中에 발생할지 모르는 각종 海難事故 및 越線 被拉사고를 미연에 방지토록 함으로써 연근해 어선의 安全 操業 및 어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에 크게 기여하였다.

3. 漁業無線局 運營

漁業無線局은 '93년도말 現在 36個所로서 交信加入 漁船이 11,363隻이다. 어업무선국은 매일 조업어선의 위치를 把握하여 安全을 확인하고, 漁業 氣象放送 및 폭풍, 태풍, 내습시 출어선을 안전한 港·浦口에 대피시키는 등 안전조업을 담당하고 있다.

특히 漁撈限界線 부근에서 操業하는 어선에 대하여는 無線測位를 실시, 越線, 被拉事故를 미연에 방지하고 있으며, 漁船이 海難事故를 당하였을 때에는 부근에 있는 어선과 구조기관에 신속히 알려 피해방지에 최대 역점을 두고 있다.

또한 海·漁況 예보와 魚價流通情報 방송을 실시하여 어민 소득증대에 기여함은 물론 어업무선국 운영 요원이 漁船 通信裝備 4,205臺를 無料로 수리 봉사하였고 落島, 僻地에 소재한 어선과 10W以下 小出力 無電機 設置漁船 2,078隻의 無線局 檢査를 실시함으로써 어민 편의를 도모하였다.

정부에서는 출어선의 安全 指導業務를 수행하는 漁業 無線局에 대하여 人件費 3,233百萬元(總 人件費의 60%)과 통신장비 27대 및 無線測位局 시설 개선 사업비로 567百萬元을 수협에 지원하였다.

第 3 章 漁村 綜合開發과 漁業基盤施設 擴充

第 1 節 漁村 綜合開發

1. 漁民福祉會館 建立

다른 산업에 비하여 지리적 여건 및 작업환경이 열악하며 또한 소득 수준이 상대적으로 低位에 있는 漁民들을 위하여 厚生福祉 施設의 設立 支援은 어선원들의 사기 앙양 및 근로의욕 鼓吹에 매우 필요한 사업으로 대두되고 있다.

그래서 이런 열악한 환경을 개선하고, 입출항 어선원 및 漁民들의 健全한 休息空間을 提供하고자 '89년부터 시설부지를 확보한 지구별수협부터 숙박시설, 목욕탕, 구판장 등 綜合的 便益施設을 갖춘 어민복지회관을 연차적으로 국고보조에 의해 건립 지원하고 있으며 '93년도에는 4개소(전북 김제수협, 전남 장흥군수협, 진도군수협, 경남 고성군수협)에 1,080백만원을 지원하였다.

이와 같이 政府 支援에 의해 건립된 漁民福祉會館은 취약한 勤勞條件 및 낮은 所得水準에 있는 漁民들의 근로의욕을 고취하고, 어업 이직률을 감소시켜 漁業生産性 增大에 寄與하고 있다.

또한 동 시설은 漁民을 위한 각종교육, 집회장소 및 무료 예식장 등

으로 활용되고 있으며 어촌사회의 문화, 복지 및 생활정보 교류의 중심적인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表 57〉

漁民福祉會館 建立實績

單位：百萬圓

| | 計 | '89 | '90 | '91 | '92 | '93 |
|---------|-------|-----|-------|-------|-------|-------|
| 事業量(個所) | 21 | 1 | 5 | 4 | 7 | 4 |
| 事業費 | 5,418 | 520 | 1,261 | 1,080 | 1,477 | 1,080 |

資料：수산청 협동조합과

2. 漁村觀光 所得源開發

국민소득의 지속적인 향상으로 국민의 生活與件이 호전됨에 따라 休息空間 觀光地, 文化空間에 대한 수요가 크게 늘고 있다.

이러한 도시민의 레저수요를 풍부한 觀光資源을 지닌 어촌지역으로 유치하여 國民情緒의 함양은 물론 어촌 遊休 勞動力의 고용기회 창출과 소득증대를 도모함으로써 어민들의 어촌 정착기반을 마련하고자 '90년 처음으로 어촌관광 소득원 개발사업을 추진하였다.

동 사업은 부존자원의 개발효과가 기대되고 사업경영 능력과 자담능

〈表 58〉

漁村 觀光開發 推進實績

單位：百萬圓

| | 計 | '90 | '91 | '92 | '93 |
|---------|-------|-----|-----|-----|-----|
| 事業量(個所) | 31 | 4 | 10 | 8 | 9 |
| 事業費 | 2,695 | 420 | 637 | 823 | 815 |

資料：수산청 협동조합과

력이 있는 어촌계를 선정하여 활어횟집, 숙박시설, 휴게소, 관광선의 시설을 추진하였으며, 사업비는 農漁村發展基金에서 융자 60%, 지방비 30%, 자담 10%로 투자, 지원하고 있는데, 융자금의 상환기간은 3년 거치 7년상환에 금리는 년 5%이다.

第 2 節 漁村人力 育成

1. 漁民後繼者 育成

‘60년대 이후 공업화내지는 도시화가 급속하게 진전됨으로써 상대적으로 낙후된 어촌에서는 유능한 청소년들의 離漁 現象으로 새로운 지식과 기술보급 미흡, 漁業勞動力의 질적 저하, 도시와 어촌간 所得隔差 深化로 漁村經濟의 활력이 저하되어 어촌의 성장과 생산력 향상의 둔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어촌에 정착하여 어업을 영위할 의지와 능력이 있는 유능한 청소년을 발굴하여 지원하는 사업을 계속 추진하고 있다.

최초 착수년도인 ‘81년부터 ‘93년까지 6,591명의 청소년을 선발하여 66,200백만원의 長期低利 資金을 지원하여 어촌에 정착케 하였다.

그 결과 이들은 漁村社會의 유능한 지도자로 부각되어 새기술과 새품종의 보급 선도 역할을 수행하여 새로운 所得源 開發 및 生産原價의 節減, 漁民 所得增大 등 漁村經濟 활성화를 촉진시켜 나가고 있다.

한편 ‘92년도부터 시작된 專業漁家 育成事業에 있어서는 ‘93년 현재 200여명을 선정하여 10,000백만원(1인당 50백만원)을 지원하였다.

〈表 59〉

漁民後繼者 育成 支援実績

單位：名，百萬円

| | 合 計 | | '81 ~ '92 | | '93 | |
|---------|-------|--------|-----------|--------|-------|--------|
| | 人 員 | 金 額 | 人 員 | 金 額 | 人 員 | 金 額 |
| 計 | 6,791 | 76,200 | 5,697 | 56,290 | 1,094 | 19,910 |
| ○ 漁民後繼者 | 6,591 | 66,200 | 5,597 | 51,290 | 994 | 14,910 |
| - 漁船漁業 | 3,894 | 39,900 | 3,320 | 31,290 | 574 | 8,610 |
| - 増養殖漁業 | 2,612 | 25,415 | 2,208 | 19,355 | 404 | 6,060 |
| - 水産物加工 | 85 | 885 | 69 | 645 | 16 | 240 |
| ○ 專業漁家 | 200 | 10,000 | 100 | 5,000 | 100 | 5,000 |

資料：수산청 협동조합과

2. 水産系 高校 支援

産業化에 따른 어업인구 감소, 청·장년층의 漁業 從事 忌避, 도시에 비해 어촌의 상대적 낙후 등 漁村사회의 급격한 변화로 漁村 기피 현상이 深化됨에 따라 정부에서는 어촌 발전대책의 일환으로, 1986년 당시 文教部 주관하에 水産高等學校 育成계획을 수립하여 수산업을 합리적으로 自營할 수 있는 어민후계자 육성과 漁村에 定着하여 지역사회 發展에 선도적 역할을 담당할 水産역군을 양성할 목적으로 1987년부터 1989년까지 기존 수산계 고등학교중 4개교(注文津, 巨濟, 莞島, 大川 水産高等學校)에 自營수산과를 설치 운영하여 오고 있다. 자영수산과 학생에게는 입학금과 수업료를 면제해 주고 있으며, 기숙사 식비를補助하는 등의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기관별 支援내용은 입학금과 수업료 면제는 교육부에서, 기숙사 식비지원은 水産廳 50%, 教育部 20%.

道教委 10%을 補助하고 나머지 20%는 自負擔으로 하고 있다.

〈表 60〉 年度別 寄宿舍 食費 補助現況

單位：百萬圓

| 計 | '88 | '89 | '90 | '91 | '92 | '93 |
|-----|-----|-----|-----|-----|-----|-----|
| 506 | 28 | 58 | 84 | 110 | 113 | 113 |

資料：수산청 연구해과

3. 海技士 養成 및 漁業技術 訓練

韓國漁業技術訓練所에서는 1968년부터 1993년까지 3,726명의 우수한 海技士를 양성 輩出하였다. 그리고 정부의 對外技術 協力事業 計劃의 일환으로 開發 途上國의 어업분야 연수생을 1968년부터 매년 초청하여 1993년까지 총 82개국 430명을 教育 訓練시켜 遠洋漁業의 海外 進出과 國위 선양은 물론 國際協力 증진에도 크게 寄與하였다.

〈表 61〉 韓國漁業技術訓練所 教育實績

單位：名

| | 計 | '68~'89 | '90 | '91 | '92 | '93 |
|-----------|--------|---------|-------|--------|--------|-------|
| 計 | 55,754 | 20,540 | 4,571 | 10,270 | 12,997 | 7,376 |
| 養成 教育 | 6,480 | 6,142 | 97 | 96 | 53 | 92 |
| · 海技士過程 | 3,726 | 3,455 | 45 | 81 | 53 | 92 |
| · 部員過程 | 2,622 | 2,555 | 52 | 15 | - | - |
| · 通信過程 | 132 | 132 | - | - | - | - |
| 外國人 研修 教育 | 430 | 362 | 21 | 16 | 19 | 12 |
| 其他教育 過程 | 48,844 | 14,036 | 4,453 | 10,158 | 12,925 | 7,272 |

資料：한국어업기술훈련소

또한 乗務經歷이 없는 者에 대한 신규교육 과정과 船員海技士 안전교육과정, 기타 연수 및 補修教育 과정을 통해 48,844명을 배출, 선박의 安全運航, 不法漁業 근절, 어업 생산성 향상, 선상폭력 및 안전사고 방지에 크게 기여하였다.

특히 海技士 안전교육을 全國 海岸의 현시 巡迴교육으로 실시, 교육생의 시간 및 경비를 절감케 하여 원거리 어민들의 편의를 도모하였고 漁船이 적기에 출어가 가능토록 배려함으로써 對漁民 봉사자세를 確立하는데 진력하였다.

第 3 節 漁港建設 擴充

우리나라 全國 沿岸에는 수산청장이 관리하는 83개 1·3種 어항과 시·도지사가 관리하는 324개의 2種 어항이 각각 漁港法에 따라 指定, 開發되고 있다.

1. 1·3種 어항

‘93년까지 1·3種 漁港 83개항중 48개항을 完1함으로써 57.8%를 개발하였다.

‘93년에는 1·3種 漁港은 完1 위주의 개발로 漁船의 安全收容을 위한 防波堤 등 외곽시설 開發에 중점을 두어 推進하였으며, 全南의 소흑산도항 등 41個港에 392億원을 투자, 防波堤 등 2,480m를 施設하였고 전남도 마량항의 基本施設을 完成하였고 漁港의 機能 提高를 위하여

〈表 62〉 全國 漁港 指定現況

| | 指 定 港 數 | 水 産 廳 管 理 | | 市·道 管 理 |
|-----|---------|-----------|----|---------|
| | | 1種 | 3種 | 2種 |
| 計 | 407 個港 | 50 | 33 | 324 |
| 釜 山 | 8 | 1 | - | 7 |
| 仁 川 | 7 | - | - | 7 |
| 京 畿 | 37 | - | 4 | 33 |
| 江 原 | 26 | 10 | - | 16 |
| 忠 南 | 35 | 4 | 1 | 30 |
| 全 北 | 18 | 1 | 4 | 13 |
| 全 南 | 131 | 10 | 14 | 107 |
| 慶 北 | 35 | 9 | 2 | 24 |
| 慶 南 | 89 | 10 | 6 | 73 |
| 濟 州 | 21 | 5 | 2 | 14 |

資料 : 水産청 어항과

13개항에 103억원을 투자, 老朽·脆弱施設에 대한 보수·補强事業도 推進하여 施設物의 안전도를 높였고 또한 초도항 등 8개항에 대한 基本調査를 실시하여 同港에 대한 施設計劃을 樹立하였으며, 시설 완공후 장기간의 경과로 港勢 등의 여건변화, 시설노후, 매물 등으로 인한 이용불편 해소와 漁港의 기능 및 역할변화에 따라 현재의 여건에 부합되도록 축산항 등 7개항에 대한 漁港 整備調査를 실시하여 시설 계획을 재조정하였다.

2. 2種 어항

시·도지사가 관리하는 2種 漁港 324개항중 '93년까지 121개 어항을 完工함으로써 37.3%를 개발하였으며, '93년에는 138억원(국비 61억

원, 지방비 77억원)을 투자하여 防波堤 등 2,294m를 시설하였다.

〈表 63〉

漁港開發 現況

單位：個港、億元

| | 總 計 劃 | | '92까지 | | '93 | | 殘 量 | |
|--------|-------|--------|-------|-------|-----|-----|-----|--------|
| | 港數 | 金額 | 港數 | 金額 | 港數 | 金額 | 港數 | 金額 |
| 계 | 407 | 17,720 | 158 | 5,263 | 11 | 633 | 238 | 11,824 |
| 1.3종어항 | 83 | 11,001 | 47 | 4,291 | 1 | 495 | 35 | 6,215 |
| 2 종어항 | 324 | 6,719 | 111 | 972 | 10 | 138 | 203 | 5,609 |

資料：수산청 어항과

3. 制度 改善

漁港 修築사업은 지금까지 漁船 收容 및 待避 목적으로 基本施設 爲主의 漁港을 건설하여 왔으나 그동안 고도 산업사회로의 發展에 따른 漁業 與件 變化에 상응하는 漁港建設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으며 漁村地域을 漁港 중심의 定住 生活圈으로 개발하기 위하여 漁港法을 '93. 6. 11일 개정(법률 제4558호) 공포함으로써 漁港建設에 대한 제도개선을 추진하였으 며 개정된 주요 내용으로서는 첫째, 漁港의 機能을 完善화 시키고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복지시설을 漁港施設에 포함시키는 등 漁港施設의 範圍를 확대하였으며 둘째, 漁港開發의 促進을 위하여 민간 사업자도 漁港施設 事業을 할 수 있는 根據를 마련하고 셋째, 漁港에 대 한 施設計劃을 수립할 때는 사전에 주민 또는 이해관계인의 意見を 收斂 하는 行政節次 規定을 둠으로써, 地域 實情에 맞는 계획을 樹立하도록 하고 넷째, 漁港區域안에서의 금지행위, 원상회복 및 벌칙 등을 새로이

規定함으로써 漁港에 대한 관리기능을 강화하였으며, 동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한 漁港法 施行令을 '93.12.31일(대통령령 제14091호) 공포하여 시행하고 있다.

第 4 節 漁撈施設의 現代化

1. 漁船建造

'93년에는 國庫補助가 수반되는 老朽漁船 代替事業과 農漁村發展基金에 의한 經濟性漁船 建造事業을 지원하여 海難脆弱 老朽漁船을 경제성있는 어선으로 대체·건조하는데 주력하였으며, 또한 40톤미만의 소형어선은 수명이 길고 유지·보수 등 관리비가 절감되어 경제성이 우수한 합성수지(FRP) 어선으로 대체토록 하여 어선의 船質改良을 적극 유도함으로써 漁船 現代化와 漁業經營 改善을 통한 어민소득 향상에 기여하였다.

2. 漁船機關 代替 및 裝備·設備 改良

어선의 操業能率 向上과 海難事故를 미연에 방지하고 油類費 節約을 위하여 燒球 및 陸上用 機關 등의 低效率 機關과 老朽機關을 효율이 좋고 성능이 우수한 船舶用 디젤기관으로 代替 支援함은 물론 漁撈設備의 機械化, 自動화를 위한 어로장비 및 설비의 대체와 신규지원, 漁獲物의 鮮度維持를 위한 冷凍設備 改良, 船員 住居環境 改善, 航海 安全裝備의 지원으로 조업능률 향상 및 어업생산성 제고와 安全操業을 圖謀하여 漁

業經營 改善에 크게 이바지 하였다.

또한 漁船用 機資材 生産業體에 대한 運營資金을 지원하므로써 어선
용 기자재의 품질향상과 원활한 공급을 기하여 어민편익을 증진시켰다.

〈表 64〉

漁撈施設事業 實績

單位：百萬圓

| 事業別 | 數量 | 物 量 | 事 業 費 | | | |
|------------------|---------|-----------|--------|-------|--------|--------|
| | | | 計 | 補助 | 融 資 | 自 擔 |
| 計 | | | 42.389 | 1.178 | 28.803 | 12.408 |
| ○ 漁 船 建 造 | 276 척 | 4,233 톤 | 30.029 | 1.178 | 19.372 | 9.479 |
| - 老朽漁船代替 | 197 | 1,044 | 8.104 | 1.178 | 3.532 | 3.394 |
| - 經濟性漁船建造 | 79 | 3,189 | 21.925 | - | 15.840 | 6.085 |
| ○ 漁船機屬代替 | 139 대 | 32,720 마력 | 4.188 | - | 3.186 | 1.002 |
| ○ 漁船裝備및 設備改良 | | - | 6.859 | - | 5.195 | 1.664 |
| - 裝 備 改 良 | 1,177 대 | - | 2,329 | - | 1,830 | 499 |
| · 無 電 機 | 76 | - | 115 | - | 90 | 25 |
| · 레 이 다 | 77 | - | 281 | - | 219 | 62 |
| · 로 란 | 1 | - | 1 | - | 1 | - |
| · 魚群探知機 | 87 | - | 177 | - | 139 | 38 |
| · 自動釣上機 | 337 | - | 1,208 | - | 949 | 259 |
| · 其他裝備 | 599 | - | 547 | - | 432 | 115 |
| - 設 備 改 良 | 57 척 | - | 4,530 | - | 3,305 | 1,165 |
| ○ 漁船用機資材 生産支援 | 6개사 | - | 1,313 | - | 1,050 | 263 |

資料：수산청 어선과

3. 沿岸 標準漁船型 研究開發

정부는 沿岸 漁船漁業의 생산성 향상과 국제경쟁력 제고를 위해 '93년도 水産 特定研究事業을 추진하여 어선협회, 부산수산대학, 부산대학, 선박해양연구소, 어선기관 생산업체 및 FRP 조선소 등 관련 전문가에게 개발을 의뢰하여 어민 선호도가 높은 操業 해역별 연안 FRP 漁船 4種을 研究 開發하였다.

'93年度에 연구개발한 沿岸漁船은 '92年度에 실시한 標準漁船 개발을 위한 기초조사 연구결과 개발대상으로 제시된 沿岸漁船 9種중 4種으로서 船體構造를 角型(Hard Line)에서 高速力船에 적합한 流線型(Chine Line)으로 개발하고, 油壓操舵裝置, 油壓 漁撈裝備, 無線電話(SSB), 레이더, 自動位置受信機(GPS), 魚探機 등 기계화 및 자동화된 漁撈裝備를 갖추도록 설계하여 어민에게 보급함으로써 漁船의 漁撈作業 인력이 현재의 3~5명에서 2~3명(沿岸流刺網 5명→4명)만 소요되도록 하여 가족단위 조업에 적합한 人力 절감형으로 개발하였으며, 연근해 수산자원 감소 등에 따라 沿岸 漁船漁業의 조업실태가 漁獲量

〈表 65〉 沿岸 開發漁船과 既存漁船의 比較

| 조업 해역 | 업종 | 開發 漁 船 | | | | 既存 漁 船 | | | |
|----------|-----|--------|-------|------|-----|--------|-------|-----|-----|
| | | 총톤수 | 기관마력 | 속력 | 선원 | 총톤수 | 기관마력 | 속력 | 선원 |
| 南海岸 | 延繩 | 7.93톤 | 370마력 | 14노트 | 3명 | 7~8톤 | 140마력 | 9노트 | 4명 |
| 西海岸 | 流刺網 | 4.99 " | 290 " | 15 " | 4 " | 4~5 " | 50 " | 8 " | 5 " |
| 東海岸 | 流刺網 | 2.98 " | 240 " | 15 " | 2 " | 2~3 " | 30 " | 6 " | 3 " |
| 南海岸 | 봉발 | 2.98 " | 240 " | 15 " | 2 " | 2~3 " | 30 " | 6 " | 3 " |

資料 : 수산청 어선과

증가보다는 漁獲物의 高附加價値化를 위한 罾김용 활어위주의 소량 생산체제로 전환됨에 따라 활어를 보관할 수 있는 활어창 설비를 확충하고, 배의 속력도 현재 7~9노트에서 15노트 수준으로 유지하도록 설계함으로써 操業時間을 단축시키고 어민 소득증대는 물론 수산자원의 안정적 생산을 기할 수 있도록 沿岸漁船의 船型을 高速型으로 개량하였다.

4. 制度改善

어선의 안정성과 성능을 높이기 위하여 漁船 設備基準을 보완하고 漁船의 建造·改造에 대한 지도·감독의 강화와 漁船檢査의 효과적인 실시를 통하여 漁船에 대한 관리기능을 강화함으로써 漁業 生産力의 增進과 水産業의 합리적 발전을 도모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漁船法을 '93. 6. 11개정(법률 제4559호) 하였고, 漁船法의 전문개정에 따라 同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同法 施行令을 '93. 12. 31개정(대통령령 제14090호) 하였으며, 어선법의 주요 개정내용은

첫째, 漁船登録 대상에서 제외하였던 1톤미만의 무동력선도 水産業을 위한 어업허가·신고·면허를 받아 漁業에 종사하는 船舶인 경우에는 漁船으로 등록토록 하여 어선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둘째, 어선의 안전성과 성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일정한 기준에 따라 無線設備을 갖추도록 하는 한편, 배의 길이가 24m이상의 漁船에 대하여는 滿載吃水線을 표시토록 하였고

셋째, 漁船의 不法建造·改造방지를 위하여 조선업자는 許可받은 漁船에 한하여 어선의 建造·改造공사를 하도록 하였으며

넷째, 舊噸數 측정기준에 의하여 噸數가 측정된 기존漁船에 대하여

어선소유자가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新船數로 측정하여 總船數를 변경할 수 있도록 하였고 어선 및 어선용품의 優秀建造·製造·整備 사업장 지정제도를 도입하여 동 사업장에서 建造·製造·整備한 漁船 또는 漁船用品에 대해서는 어선검사의 일부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다섯째, 港·浦口 등에 放置된 老朽廢船에 대하여 시·도지사가 이를 관리하거나 제거할 수 있도록 하는 동시에 필요한 경우에는 行政 代執 行을 할 수 있도록 하였고

여섯째, 航行 또는 操業중에 船舶國籍證書, 漁船檢査證書 등 관계서류를 비치하지 아니하거나 신청·신고의무 불이행 등 경미한 漁船法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과태료제도로 개선함으로써 司法 處理에 따른 전과자가 되는 것을 방지토록 하는 한편, 法 秩序를 확립토록 하였다.

또한 漁船法 施行令의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첫째, 水産關係 公務員이 漁船法 위반사항에 대한 司法警察 관리의 職務를 행하게 됨에 따라 司法警察 官吏의 職務를 수행하는 水産關係 公務員의 자격기준을 정하였으며

둘째, 漁業許可 등의 효력이 상실된 경우 당해 漁船에 대하여는 그 효력이 상실된 후 1년이 경과되어야만 시·도지사가 직권으로 漁船登錄을 말소하도록 함이 원칙이나, 당해 漁船이 불법으로 어업에 이용하는 때에는 1년이 경과되기 전이라도 직권으로 登錄을 말소토록 하여 漁業 秩序를 확립토록 하였으며

셋째, 漁船의 建造·改造에 대한 허가와 現場確認, 漁船의 讓渡 등에 관한 수산청장의 권한 일부를 현실에 맞도록 시·도지사에 위임하였으며

넷째, 航行 또는 操業시 船舶國籍證書 등 관계서류를 비치하지 아니하거나 신청·신고의무 불이행에 따른 漁船法 위반행위에 대한 위반 행위별 과태료 부과금액 및 징수절차를 정하였다.

第 4 章 水産物 流通改善과 加工産業 育成

第 1 節 水産物 價格 安定

1. 政府 備蓄事業

水産物은 계획생산이 어려울 뿐 아니라 一時 다획성, 계절성 등 特殊性으로 價格이 不安定하고 需給 調節의 어려움도 크다.

이에 대처하기 위하여 정부에서는 農水産物 價格安定基金을 利用하여 생산이 많이 될 때 產地水協을 통하여 적정량을 收買하고 성수기에 소비자에게 방출함으로써 생산어민에게는 受取價格을 높여주고 소비자에게는 적정가격으로 공급하는 가격안정事業을 실시해 오고 있다.

'93년에는 農安基金 369億원으로 冷凍오징어, 김 등 7個 品目 9,480톤 수매를 계획하였으나, 마른멸치는 生産時期에 價格 上昇과 規格품 생산이 부진하여 收買하지 못하므로써, 김 등 6개 품목 9,159톤을 279억원에 수매 비축하게 되었다.

〈表 66〉

政府備蓄事業 實績

單位：톤, 百萬元

| | 計 劃 | | 實 績 | | 對 比 | |
|-------|-------|--------|-------|--------|-----|-----|
| | 物 量 | 金 額 | 物 量 | 金 額 | 物 量 | 金 額 |
| 計 | 9.480 | 36.920 | 9.159 | 27.943 | 97% | 76% |
| 김 | 600 | 12.340 | 600 | 12.338 | 100 | 100 |
| (萬송) | (300) | | (300) | | | |
| 간 미역 | 1,000 | 1.293 | 1,000 | 1.293 | 100 | 100 |
| 마른미역 | 80 | 700 | 79 | 669 | 99 | 100 |
| 마른오징어 | 500 | 6.032 | 480 | 4.991 | 96 | 83 |
| 冷凍오징어 | 6,000 | 12.505 | 6,000 | 7,209 | 100 | 58 |
| 冷凍고등어 | 1,000 | 1.990 | 1,000 | 1.443 | 100 | 73 |
| 마른멸치 | 300 | 2.060 | - | - | - | - |

資料：수산청 어정과

2. 民間 價格安定 事業

’93年度 民間 價格安定 事業에는 總 1,245億원의 農安基金을 지원하여 오징어, 명태, 조기, 갈치, 김 등 305千톤을 수매함으로써 生産 漁民의 受取價格 제고와 소비자 가격 안정에 기여토록 하였다.

事業 部門別로는 備蓄收買 事業에 831億원을 지원하여 180千톤을 收買토록 하였고 輸出原料 40千톤 수매를 위해 185億원을 지원하였으며, 生産者(團體) 출하 조절용으로 85千톤 수매를 위해 229億원을 지원하였다.

또한 産地水協 委販場과 소비지 공판장에는 都賣市場 出荷調節資金 660億원을 지원하여 1,701千톤의 物量을 원활히 유통되도록 함으로써

內陸 消費地에서의 수급 및 가격안정에 기여토록 하였다.

3. 需給 및 價格管理 強化

수산물 가격안정을 위해 需給 調節 등 관리기능을 강화하였다. 특히 조기, 고등어, 명태, 갈치, 오징어, 김, 마른멸치 등 主要 大衆魚種에 대하여는 生産·搬入과 輸出·入 및 在庫動向 등을 持續的으로 점검하여, 수급 및 가격이 안정되도록 관리하였다.

또한 설날 등 성수기에 성수품목의 需給 및 價格 安定을 위해 1.8~1.22(15일간)의 설날 對策期間에는 조기, 명태, 고등어, 김 등 4개 품목을, 9.15~9.29(15일간)의 추석 대책기간에는 조기, 명태, 고등어, 김 등 4개 품목을, 11.10~12.30(51일간)의 越冬期 대책기간에는 새우젓, 멸치젓, 생굴, 조기, 명태 등 7개 품목의 공급 확대와 出荷管理를 하였으며, 연중 物價對策 狀況室을 상설 운영하고 재고조사 등 出荷促進 및 지도독려를 강화하는 한편 品目別 담당관 지정과 需給狀況 일일 점검제 실시 등 물가관리 비상체제를 운영함으로써 물가오름세 심리를 억제하여 價格安定에 기여하였다.

第 2 節 流通構造 改善

1. 流通施設 擴充

수산물의 신속한 揚陸과 위생적인 처리를 위한 수산물유통시설 확충 사업으로 '93년도에 총 사업비 6,760백만원을 투입, 위판장 4,847평,

급유시설 10,200드럼, 급유선 100톤급 2척, 폐수처리시설 4개소 설치를 위하여 수산업협동조합 등에 각각 支援하였다.

<表 67> '93 水産物 流通補給施設 支援現況

單位：千원

| | 物 量 | 事 業 費 | | | |
|--------|----------|-----------|-----------|-----------|-----------|
| | | 計 | 國 庫 | 融 資 | 自 擔 |
| 合 計 | | 6,760,010 | 1,425,011 | 2,962,202 | 2,372,797 |
| 鮮魚委販場 | 4,220坪 | 3,350,207 | 807,681 | 1,083,093 | 1,459,433 |
| 活魚委販場 | 627" | 936,427 | 280,927 | 374,571 | 280,929 |
| 給油施設 | 10,200드럼 | 469,200 | 140,760 | 187,680 | 140,760 |
| 給油船 | 200톤(2척) | 1,334,000 | - | 1,056,000 | 288,000 |
| 廢水處理施設 | 4個所 | 660,176 | 195,643 | 260,858 | 203,675 |

資料：수산청 시설과

한편 수산물을 産地와 消費地를 연계한 직거래와 直販場의 물량 공급 기지로 活用 하고자 충남 천안군에 '92~'93년에 걸쳐 10,845백만원을 투입, 數地 17,785평에 지하1층 지상 6층으로 냉장 2만톤 등 연건평 4,508평의 대규모 集配센터를 건설하였으며, 서울시 외발산동에 '93년부터 '96까지 부지 8,675평, 건평 11,170평, 총사업비 30,826백만원 규모의 내륙지 공판장을 시설하고자 '93년도에 3,000백만원을 투자하여 건설중에 있고, 수산물의 안정적 공급과 유통마진을 축소시킬 수 있도록 화성, 용진, 부안수협에 水産物 直販場 시설자금 1,675백만원을 지원 하였으며, 아울러 冷凍·冷蔵車輛 4대 확보를 위해 46백만원을 지원하여 수산물의 원활한 輸送과 低溫流通 체계가 촉진되도록 하였다.

2. 流通機能 強化

沿近海 수산물 생산량 2,564천톤의 66%인 1,700천톤(18,816억원)을 産地 수협에 市場 販賣하여 漁民 受取價格 提高와 어획물의 신속한 分散 流通이 이루어 지도록 하였고, 鮑, 蜆, 鰓 등 委販 脆弱品에 대하여 279억원을 지원 9,230톤의 共同收集 販賣 사업을 실시하였다.

또한 水協 共販場을 통한 내륙지 系統出荷 실적은 173천톤이며 水産物 直賣場 31개소를 새로이 開設하여 91개소를 확보하므로써 수산물 유통개선에 기여하였다.

그리고 산지 및 내륙지 공판장의 環境 淨化와 수산물의 衛生管理 지도를 적극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신선하고 위생적인 수산식품을 공급하도록 하였고 仲買人 등 유통 종사자와 생산어민에 대한 수산물 취급관리 계몽 및 홍보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였다.

〈表 68〉 內陸地共販場 系統出荷 實績

單位 : 톤

| 구 | 계 | 자체 매취 | 일반 출하 | 조합 출하 |
|-----|---------|--------|---------|-------|
| | 173,150 | 50,708 | 120,830 | 1,612 |
| 서 울 | 53,124 | 4,148 | 48,976 | - |
| 可樂洞 | 41,194 | 4,416 | 36,778 | - |
| 春川 | 5,076 | 4,156 | 856 | 64 |
| 大田 | 7,429 | 7,007 | 422 | - |
| 清州 | 2,598 | 1,929 | 669 | - |
| 全州 | 8,764 | 8,410 | 354 | - |
| 光州 | 15,592 | 15,214 | 378 | - |
| 大邱 | 28,510 | 4,307 | 24,203 | - |
| 水原 | 7,501 | 1,121 | 4,832 | 1,548 |
| 蔚山 | 3,362 | - | 3,362 | - |

資料 : 수산청 어장과

아울러 수산물 規格化 및 包裝 개선으로 商品性을 제고하고 수산물 去來單位의 標準化를 조기에 정착시키기 위하여 새우젓의 13개 품목에 農安基金 100억원을 年利 3%의 低利로 지원, 9,376톤의 規格品이 출하되도록 하였다.

第 3 節 水産物 加工産業 育成

1. 加工製品 生産

’93年度 水産物 加工製品 生産은 1,486千톤으로 前年度의 1,771千톤보다 19% 감소하였다.

製品 形態別로는 高次加工品은 8% 감소하였고, 單純加工品은 18% 감소하였다. 수산제품의 生産이 이와같이 감소하는 이유는 연근해 및 원양생산물의 감소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이 중 加工品의 大종을 이루고 있는 冷凍品은 1,096千톤으로 고통어, 정어리, 명태, 갈치 등의 原形凍結이 1,007千톤으로 92%, 명태, 봉장어, 새우, 연육 등의 處理凍結이 89千톤으로 8%를 차지하고 있다.

’93年度の 冷凍品(原形·處理) 生産量이 전년도 生産량 1,351千톤보다 255千톤 감소된 것은 연근해 및 원양산 원료 감소와 수출 부진에 기인한다.

魚肉煉製品은 冷凍明太煉肉을 주원료로 사용하여 전반적으로 品質이 高級化되고 있으며, 消費者의 기호에 맞고, 맛과 品質이 우수하고 다양한 製品이 개발되어 국민의 食生活 개선에 기여하고 있으며, ’93년도에

는 99 톤을 生産하여 '92年 93 톤보다 6 톤이 증가하였다.

통조림품은 참치통조림의 원료 감소에 따라 製品의 生産량이 '92年度보다 17% 감소한 48 톤을 生産하였고, 海藻加工製品도 108 톤을 生産해 '92年度の 135천톤보다 25% 감소하였다.

또한, 乾製品은 51 톤이 生産되어 전년도 보다 33% 증가하였고, 엽신장품은 전년도보다 22.5% 감소한 13 톤이 生産되었다. 調味加工品은 과거에 비해 취치의 저조한 어획량 때문에 원료의 供給이 阻滯치 못하여 '92年度 13 톤보다 23%가 감소한 10 톤을 生産하였다.

2. 加工·製造業體의 育成

국민소득 및 생활수준 향상으로 국민들의 수산물 消費 성향이 단순가 공품에서 다양한 高次加工品으로 變化하고 있다.

이에따라 水産物 加工業은 어업 生産물의 最大 消費 販路가 되고 있으며, 국민들의 嗜好에 맞는 다양한 水産 加工食品을 개발하여 소비자들에게 供給하고 있다.

한편, 못먹는 부분의 除去 및 保存性的의 向上에 의한 鮮度維持 經費 節減 등 수산물 유통경비를 줄이는데 수산물 加工이 큰 역할을 하고 있다.

水産物 加工製品의 生産 증대와 加工業體의 육성 발전을 위하여 '93年度에는 冷凍·冷蔵施設의 新設 및 改·補修, 산지 가공시설 등 18個所に 139億원을 지원하였고, 운영자금은 84개소에 126억원을 지원하여 총 102개소에 265억원을 지원하였다.

3. 水産物 消費 擴大

水産物의 消費 擴大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수산물의 안정적인 生産 및 供給이 우선 되어야 하므로, 위생적이고도 품질이 우수한 수산물을 공급하는데 힘쓰고 있다. 현재 국내에는 輸入産과 沿近海 및 遠洋産 水産物이 동시에 유통되고 있는 바, 수입 수산물에 대하여는 輸入檢査를 強化하여 불법 수입 및 저질품 수입을 억제하고, 국내 수산물 중 품질이 우수한 제품에 대하여는 品質認證制를 실시하여 수산물 소비 확대에 힘쓰고 있다.

<表 69>

水産加工品 生産推移

單位：M/T

| | '90 | '91 | '92 | '93 | '93/'92 |
|---------|-----------|-----------|-----------|-----------|---------|
| 計 | 1,754,887 | 1,620,766 | 1,771,287 | 1,486,181 | 83.9% |
| ○ 高次加工品 | 483,062 | 362,306 | 324,822 | 298,697 | 91.9 |
| - 處理 凍結 | 201,781 | 111,089 | 97,732 | 88,931 | 90.9 |
| - 凍 조림 | 58,026 | 61,445 | 55,533 | 48,561 | 87.4 |
| - 寒 天 | 628 | 681 | 468 | 272 | 58.1 |
| - 煉 製品 | 96,833 | 106,236 | 93,378 | 99,090 | 106.1 |
| - 調味加工品 | 30,935 | 18,222 | 13,459 | 10,275 | 76.3 |
| - 魚 油 粉 | 94,854 | 64,633 | 64,252 | 51,568 | 80.2 |
| ○ 單純加工品 | 1,271,825 | 1,258,460 | 1,446,465 | 1,187,484 | 82.1 |
| - 原形凍結 | 1,118,491 | 1,088,067 | 1,253,061 | 1,007,981 | 80.0 |
| - 乾 製品 | 31,902 | 35,216 | 33,717 | 50,976 | 151.1 |
| - 鹽辛藏品 | 20,702 | 21,449 | 16,698 | 12,568 | 75.2 |
| - 海藻製品 | 88,437 | 106,560 | 134,887 | 108,701 | 80.5 |
| - 其 他 | 12,293 | 7,168 | 8,102 | 7,258 | 89.5 |

資料：농림수산부 농림수산통계연보

4. 品質 認證制度의 實施

品質 認證制란 국가전문기관이 그 제품의 가치를 인증하고 증표(品자마크)를 표시하여 시장에 출하토록 하므로서 특산물의 상품성 향상과 공정거래를 도모하여 생산어민과 소비자를 동시에 보호하는 한편, 수입 개방화에 따른 외국산 수산물의 국내산 둔갑 판매 방지를 위해 '93. 4월 부터 실시하고 있다.

현재 품질인증 대상품목은 굴비, 옥돔, 멸치젓, 마른오징어, 김 등 14개 품목이며, 앞으로도 새로운 우수품목을 계속 발굴하여 연차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表 70〉

加工業體 支援實績

單位：百萬圓

| | '91 | | '92 | | '93 | | '93/'92 |
|------------|-----|--------|-----|--------|-----|--------|---------|
| | 個所 | 支援額 | 個所 | 支援額 | 個所 | 支援額 | |
| 計 | 88 | 21,700 | 163 | 24,980 | 102 | 26,608 | 107% |
| ○ 施設 資金 | 16 | 12,200 | 13 | 10,600 | 18 | 13,960 | 132 |
| - 冷凍·冷蔵 新設 | 9 | 10,800 | 8 | 9,600 | 8 | 9,600 | 100 |
| - 冷凍·冷蔵改修 | 7 | 1,400 | 5 | 1,250 | 5 | 1,000 | 100 |
| - 其他 加工 | - | - | - | - | 5 | 3,360 | - |
| ○ 運營 資金 | 72 | 9,500 | 150 | 14,380 | 84 | 12,648 | 88 |
| - 冷凍·冷蔵業 | 28 | 3,000 | 37 | 4,456 | 28 | 4,000 | 90 |
| - 醬·조림 製造業 | 15 | 2,700 | 20 | 3,648 | 20 | 3,548 | 97 |
| - 調味加工業 | 5 | 300 | 15 | 500 | 12 | 500 | 100 |
| - 海産加工業 | 9 | 500 | 60 | 1,300 | 8 | 800 | 62 |
| - 煉製品 加工業 | 15 | 3,000 | 15 | 3,776 | 16 | 3,800 | 100 |
| - 鹽 辛 品 | - | - | - | 700 | - | - | - |

資料：수산청 제조과

第 4 節 水産物 檢査

1. 檢査動向

가. 輸出水産物

'93년도 수출수산물 검사실적은 130천톤으로서 전년도 실적 223천톤에 비하여 42%가 감소하였으며, 제품별로는 통조림품이 증가한 반면, 수출의 주종을 이루는 냉동품을 비롯하여 염장품, 건제품 등은 감소하였다.

이와 같이 검사실적이 감소한 요인은 '93. 4. 1부터 냉동굴 등 31개 품목을 제외한 쉘 製品이 義務檢査制에서 希望檢査로 전환됨과 아울러 중국 등 후발국가들의 시장 점유율이 점차 늘어나 우리 수산물 수출이 줄어들고 있기 때문이다.

<表 71>

輸出水産物 檢査推移

單位 : 톤

| 區 分 | '90 | '91 | '92 | '93 | '93/'92 |
|----------|---------|---------|---------|---------|---------|
| 計 | 246,760 | 240,991 | 222,843 | 130,336 | 58% |
| ○ 高次加工品 | 194,699 | 197,174 | 184,029 | 99,201 | 54 |
| - 냉 동 품 | 159,875 | 169,537 | 153,342 | 78,785 | 51 |
| - 통조림품 | 15,850 | 13,246 | 13,361 | 14,553 | 109 |
| - 어분, 어유 | 3,247 | 4,801 | 9,790 | 2,471 | 25 |
| - 조미가공품 | 14,327 | 7,551 | 4,796 | 2,126 | 44 |
| - 기 타 | 1,400 | 2,039 | 2,740 | 1,266 | 46 |
| ○ 單純加工品 | 52,061 | 43,817 | 38,814 | 31,135 | 80 |
| - 건 제 품 | 15,884 | 14,430 | 14,409 | 9,048 | 63 |
| - 염 장 품 | 32,987 | 27,170 | 22,124 | 20,501 | 93 |
| - 해 조 류 | 3,190 | 2,217 | 2,281 | 1,586 | 70 |

資料 : 국립수산물검사소 수산물검사년보

나. 輸入水産物

수입 수산물검사는 '91. 1. 3부터 국립수산물검사소 부산지소에서 실시하여 당해년도 검사실적은 115,712톤이었고, '92. 3. 2부터는 본소 및 전국지소에서 확대 실시하여 당해년도 검사실적은 214,604톤이었으며, '93년도 검사실적은 248,126톤으로서 이를 용도별로 보면 原資材 34,211톤, 合作物 71,363톤, 內需用 139,955톤, 北韓産 1,455톤, 價格安定用 20톤, 其他 1,122톤이고 검사결과는 適合 245,986톤, 不適合 2,140톤으로서 부적합율이 0.9%로 나타났다.

2. 制度改善

輸出對象國의 輸入 規制 등 國·內外的 수출여건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製造業 競爭力 강화를 위한 수출검사제도 정비계획에 따라 수산물검사법 시행령을 개정, 수출 수산물에 대한 의무검사 제도를 폐지하고 自律檢査로 전환하는 한편 食品 安全性 보장을 위하여 水産廳長이 指定·告示한 31개 품목에 대하여만 檢査를 실시토록 하여 輸出 增大에 기여하고 있다.

또한 수입수산물에 대하여는 종래 보사부 국립검역소의 검사 의뢰분에 한하여 검사소가 검사를 실시함에 따라 輸入申告(檢疫所)와 檢査(水檢) 機關의 二元化로 검사 지연 등 民願 不便을 초래하므로써 이의 改善이 요구되어 行政權限의 委任 및 委託에 관한 규정을 개정(대통령령 제14015호, '93. 12. 6)하여 原料水産物 및 單純加工品에 대한 輸入申告 및 檢査業務 權限을 수산청장(水檢所長)에게 위탁하여 '94. 1. 1부터 실시하게 되었으며 앞으로의 검사방향은 檢査의 정확성과 객관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官能檢査보다는 理化學 檢査를 강화하여 식품의 안

전성 確保에 주력할 수 있도록 보사부의 식품공전에 原料水産物에 대한 성분 규격을 新設토록 추진중에 있다.

第 5 節 水産物 輸出·入 對策

1. UR協商 妥結

'86. 9 우루과이의 Punta Del Este에서 세계 주요 각료들이 모여 GATT의 제8차 협상인 "UR협상"의 개시를 선언하였다.

UR협상이 대두된 배경을 살펴보면 1948 GATT 발족 이래 7차까지의 협상은 주로 工産品에 대한 關稅引下 협상이 중심으로 되어 왔기 때문에 지적재산권, 서비스 등을 새로이 GATT체제내에 수용할 필요가 생겼으며, 人類 生命 保護와 國家安保 등의 이유로 그간 협상 의제에서 除外되어 왔던 農産物에 대하여도 새로이 국제적인 商品化의 질서문제가 크게 대두되었다. 또한 각국이 GATT規範 밖의 각종 회색조치를 남발하고 GATT規範을 자의적으로 解釋, 規制를 강화하는 등 GATT의 최고이념인 貿易自由化 원칙이 도전받음으로서 이들 조치를 엄격히 제한하고 명료화하기 위함에 있었다.

따라서 '93. 12. 15 극적으로 妥結된 UR협상은 i) 많은 예외규정으로 강력한 이행 수단이 없던 GATT體制를 강력한 이행 수단을 갖는 常設機構인 WTO체제로 轉換하였고 ii) 서비스, 지적재산권에 대한 규범을 마련하고 iii) 工産品 및 水産物의 관세 인하와 農産物에 대한 관세화 등으로 시장접근을 보다 용이하게 하였다.

또한 iv) 全 會員國이 아닌, 협정에 서명한 나라들만 적용되던 복수국

간 貿易協定(민간 항공기 교역, 정부조달, 국제낙농 및 우육관련 협정)을 WTO(세계무역기구)관할내로 흡수하였으며 v)반덤핑 및 상계 관세, 긴급 수입 제한, 무역에 관한 기술 장벽, 보조금, 원산지 규정, 수입허가 節次, 선적前 검사 등 그간 눈에 보이지 않게 貿易 自由化를 방해해오던 제도에 대해 그 발동 요건, 기준 등을 보다 상세화하고 엄격히 제한하는 내용의 협정을 체결하였다.

水産物에 대한 UR협상 타결내용을 살펴보면 크게 나누어 관세협상, 비관세협상, 보조금협상으로 나눌수 있으나, 비관세 및 보조금에 대해서는 일반적 規範을 마련하고 각국이 그 규범에 따르도록 하는 방식을 취했으며, 관세협상에 있어서는 구체적인 내용에 합의하였다.

관세협상은 각국별로 그 引下方式(무세화, 관세 조화, 漸進的 감축인하 방식 등)을 달리 제안하였으나 '88몬트리올 각료 회의에서 일단 同意된 대로 漸進的 감축인하 방식을 採擇하게 되었으며 우리나라는 총 338개 品目중 우리나라에 競爭力이 있는 品目 또는 우리나라에서는 생산이 안되거나 미미한 144개 品目에 대한 관세를 '86세율을 기준으로

<表 72>

關稅讓許 品目

單位: 個, %

| | 활어 (0301) | 신냉어류 (0302) | 냉동어류 (0303) | 어육펠렛 (0304) | 건염, 훈제류 (0305) | 갑각, 연체류 (0306-7) | 해조류 (12류) | 조제품 (16류) | 기타 (9개류) |
|--------|--------------|----------------|----------------|----------------|-------------------|---------------------|--------------|--------------|-------------|
| 總 品 目 | 17 | 35 | 43 | 11 | 38 | 83 | 20 | 56 | 35 |
| 讓許 品 目 | 6 | 3 | 32 | 3 | 10 | 7 | 18 | 33 | 32 |
| '86稅率 | 20 | 20 | 20 | 20 | 20 | 20 | 20 | 20 | 10~30 |
| 讓許稅率 | 10 | 20 | 10 | 10 | 20 | 20 | 20 | 20 | 4~30 |

資料: 수산청 무역과

註: 338개 품목은 '92현재 수산물 HS분류품목 341개 품목중 장어, 해리, 바다표범의 원피와 가죽을 제외한 숫자임

하여 33% 인하하기로 양허하였다.

이러한 양허세율은 '93년도 현재 세율과 같거나 더 높아, 이번 관세 양허로 인하여 인하할 品目은 1개 品目에 불과하며, 기준세율이 '86년도 세율이므로 輸入 調節 등이 필요할시 오히려 세율을 上向 調整할 수 있게 되었다.

한편, 보조금 협상에서는 補助金を 許容 보조금과 금지 보조금 및 상계가능 補助金으로 나누고 금지보조금인 輸出補助金은 8년 이내에, 輸入 代替 補助金은 5년 이내에 점진적으로 철폐토록 하였으며, 상계가능 보조금 支給에 대해서는 상대방이 자국의 이익을 侵害 하였을 시에는 WTO의 紛爭解決 절차에 따라 상계 조치가 가능토록 하였다.

〈表 73〉

補助金の 分類

| 種 類 | 說 明 |
|-----------|---|
| 禁止 補助金 | 輸出成果에 따라 支給되는 補助金 또는 輸入物品대신 국내 물품을 사용하도록 支給되는 補助金 |
| 許容 補助金 | 社會間接資本施設등과 같이 支援對象에 있어 특정성이 없거나 特定성이 있더라도 研究開發, 落後地域開發, 環境通應 支援을 위한 補助金 |
| 相計 可能 補助金 | 補助金중 禁止, 許容補助金を 除外한 補助金 |

資料 : 수산청 무역과

비관세 협상은 UR협상의 個別 협정문이 대부분 관세외나 水産物에 관련이 깊은 것으로서는 GATT 1994 UR議定書, 衛生 및 檢疫規制 적용에 관한 협정, 貿易에 관한 技術障壁 協定, 긴급 수입제한 조치에 관한 협정 등이 있다.

따라서 水産物検査法 및 食品衛生法上の 각종 기준을 WHO(세계보건기구) Codex 食品 委員會 등 국제기준에 맞추어 나가야 하고 간미역 등 8개의 輸出 自律規制 措置를 4년 이내에 철폐토록 되어 있다.

2. 輸入 自由化

'89. 10 GATT/BOP 合意에 따라 1단계('92~'94) 輸入自由化 에서 계획의 중간연도인 '93년에는 新鮮冷蔵한 서대 등 20개 品目이 輸入 自由化 되었다.

〈表 74〉 '93輸入自由化 品目現況

| HS | 品目名 | HS | 品目名 |
|--------------|--------------|--------------|--------------------|
| 0302 23 0000 | 서대(신선냉장) | 0306 23 1000 | 새우와브리새우(신선냉장) |
| 0302 61 0000 | 정어리(") | | |
| 0302 69 4000 | 돔(") | 0307 41 1000 | 갑오징어(산것, 신선냉장) |
| 0302 69 5000 | 붕장어(") | | |
| 0302 69 9040 | 아귀(") | 0307 49 2000 | 갑오징어. 오징어(염장, 염수장) |
| 0303 31 0000 | 넙치(냉동) | 0307 59 2000 | 문어(건조) |
| 0303 39 0000 | 기타넙치류(") | 0307 91 9020 | 해삼(산것, 신선냉장) |
| 0304 20 9000 | 냉동패래트(기타의 것) | 1604 19 9090 | 기타어류(기타조제품) |
| 0304 90 9000 | 기타어육(냉동) | | |
| 0305 69 6000 | 조기(염장염수장) | 1604 20 4010 | 생선묵(깨맛의것) |
| 0305 69 7000 | 진갱이(염장, 염수장) | 1605 90 2010 | 오징어(훈제) |
| | | 1605 90 9010 | 조미오징어 |

資料 : 수산청 무역과

이들 品目중 실제 輸入實績이 있었던 것은 11개 品目이었으며, 이들 11개 품목의 '93년도 수입금액은 35백만\$로서, 全體 水産物 輸入의 6.4%를 차지하였다.

〈表 75〉 '93年度 輸入自由化 品目の 輸入動向

單位：M/T, 千\$

| 品 目 名 | '92 | | '93 | | 對比(%) | | 輸 入 國 |
|-----------------------|--------|--------|--------|--------|-------|-----|------------|
| | 物量 | 金額 | 物量 | 金額 | 物量 | 金額 | |
| 計 | 12,034 | 18,170 | 31,723 | 34,780 | 263 | 191 | |
| 등 (신선냉장) | - | - | 8 | 71 | - | - | 미국, 뉴질랜드 |
| 아귀(") | - | - | 1,065 | 6,235 | - | - | 미국 |
| 넙치(냉동) | 57 | 122 | 254 | 367 | 466 | 301 | 러시아, 일본 |
| 기타넙치류(〃) | 11,299 | 10,666 | 29,275 | 23,014 | 259 | 216 | 미국, 러시아 |
| 기타파렛트(〃) | 324 | 768 | 681 | 2,444 | 210 | 318 | 일본, 중국 |
| 기타어육(") | - | - | 263 | 727 | - | - | 홍콩 |
| 조기(염장염수장) | - | - | 29 | 128 | - | - | 중국, 대만 |
| 새우와브리새우 (산것, 신선냉장) | 354 | 6,613 | 31 | 478 | 9 | 7 | 필리핀, 인도네시아 |
| 오징어와갑오징어 (염장염수장) | - | - | 58 | 49 | - | - | 중국 |
| 갑오징어 (산것, 신선냉장) | - | - | 1 | 4 | - | - | 중국 |
| 기타 조제품 | - | 1 | 58 | 1,263 | - | - | 베트남, 중국 |

資料：수산청 무역과

3. 輸出 支援

水産物 輸出은 '82년 以後 年평균 20%의 꾸준한 增加 추세를 보여 왔으나 '87년말 부터 시작된 急速한 원화 절상과 주요 沿近海 輸出魚種

生産 減少로 '88년을 정점으로 '89년부터 감소하기 시작하여 '93년에는 1,497백만\$을 輸出하므로써 前年度 1,518백만\$의 98.6%水準으로 감소세가 持續되고 있다.

'93년에는 이와 같은 輸出不進 克服과 輸出促進을 위해 수출용 활·선어, 패류, 냉동, 통조림 원료의 구매가공용 자금으로 185억원을 支援하였다.

〈表 76〉 輸出用 水産物 收買促進資金 支援現況

單位：百萬圓

| | '90 | '91 | '92 | '93 | '93/'92 |
|-----------|--------|--------|--------|--------|---------|
| 計 | 11,500 | 12,500 | 13,000 | 13,500 | 142% |
| 냉 동 수 산 물 | 4,000 | 4,000 | 4,000 | 5,000 | 125 |
| 활·선어·패류 | 1,500 | 1,500 | 2,000 | 2,000 | 100 |
| 수 산 통 조 림 | 6,000 | 7,000 | 7,000 | 7,000 | 100 |
| 해 조 류 | - | - | - | 4,500 | - |

資料：수산청 무역과

註：재원은 농수산물 가격안정기금임

또한 수출업계 애로사항 해소를 위해 水産物 輸出業體(500개)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는 한편, 海外市場 개척단 파견, 國際貿易 博覽會 참가 등 수출시장 확대에 주력하였으며 국제무역박람회에는 대립수산외 15개 業體가 참가 82만\$의 계약 성과를 거두었고 한·일 貿易 産業 技術 協力 委員會, EC 위생제도 실시에 따른 한·EC 위생관련 협정, 한·이태리 위생관련 輸出·入 문제 협의 등 수산물 수출을 위해 외교 교섭을 통한 교역조건 개선에 노력하였다.

4. 制度改善

수출절차 簡素化 및 輸出業體 부담 경감을 통한 대외 競爭力 제고를 위하여 水産物 11개 品目, 망 및 끈류 5개 品目の 輸出을 자유화 하였으며, 수산물검사법을 개정하여 수입국의 검사요구 품목과 食品衛生 및 대외 신뢰성 유지를 위해 필요한 31개를 제외한 品目은 수출檢査를 면제토록 하였고 水産物 운반선 외항 운송사업 면허처분 요령을 개정하여 水産物 외에도 農·畜産物을 함께 운송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業界의 經營 改善에 기여하였다.

第 5 章 遠洋漁業의 育成

第 1 節 國際漁業 協力 強化

1. 兩國間 漁業協力

우리나라와 漁業協定을 체결한 국가는 일본, 미국, 러시아 등 14개국으로 '93년도에는 신규로 체결된 兩國間 漁業協定은 없었으나, 양국간 어업협정에서 정한 協力事業을 협의하기 위해 일본, 러시아, 프랑스 등 7개국과 11회에 걸쳐 정례회의를 개최하여 操業水域, 隻數, 入漁料 등 入漁條件을 정해 원만한 협정 운용과 어장의 안정적 확보에 주력하였다.

이와 아울러 새로운 어장을 지속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남미의 主要 漁場으로 우리나라 漁船이 진출해 있는 페루 및 아르헨티나와 漁業協定 締結 및 우리나라 漁船의 入漁條件 개선 문제를 협의키 위해 水産廳長을 단장으로 한 漁業交涉團을 파견하였으며, 아르헨티나 등 남미국가와의 어업협력 강화를 위해 '93. 6월에는 주수리남 대사관의 水産官을 아르헨티나 대사관으로 駐在地를 變更 措置하였다.

또한 UN魚族保存會議 등 국제수산물 관련 회의에 12회 참석하여 공해에서의 遠洋漁業의 안정적인 漁場 유지에 노력을 하는 한편 페루 水産長官, 아르헨티나 水産廳長, 괌지사 등 수산관계 유력 인사와 양국간 어업협력 방안을 협의하였다.

2. 國際 水産機構와의 協力

가. 기존 加入機構 活動 參與

우리나라 어선의 公海上 操業을 지원하기 위하여 우리나라와 같은 입장인 遠洋操業 國家들과 공동으로 기존에 가입한 8개의 國際水産機構에 적극적으로 참여, 과학적 근거에 의한 합리적 자원관리의 필요성을 역설하여 公海漁場의 유지를 위해 노력하였다.

나. 새로운 公海資源 管理 參與

공해자원 관리와 관련한 UN 公海 魚族保存會議의 개최와 FAO의 “公海上 漁船의 보호 및 管理 措置履行 促進을 위한 協定” 채택 등으로 공해 자원에 대하여도 國際的 協議를 통한 제한적 利用만을 허용하는 추세에 따라 국제기구에서의 우리의 이익보호를 위해 北西 大西洋水産機構(NAFO) 등 국제 수산기구에 신규 가입하였으며, 北太平洋 遡河性 魚族 委員會(NPAFC), 北太平洋 海洋科學 機構(PICES) 등의 기구에 가입을 추진하고 있으며, 베링공해 관련국 6개국회의에 참가하여 “中部 베링해의 明太資源 保存 및 管理를 위한 協約”에 서명하여 공해 자원 관리에 있어서 연안국과 조업국의 합의에 의해 합리적 자원이용 방안을 도출하는 선례를 남겼다.

다. 環境關聯 會議 參加

리우 UN環境會議 結果에 따라 '93. 7월 개최된 제1차 UN 魚族 保存會議 및 FAO의 便宜國籍船 規制를 위한 회의 등에 능동적으로 參與하여 우리나라의 이익을 최대한 반영하였으며, 環境關聯 國際 動向을 國內정책에 반영하고 있다.

第 2 節 新漁場 開發

1. 新漁場 開發

海外漁場의 持續的 確保를 위하여 다각적으로 連안국과의 어업협력을 강화하였으며 개별 입어에 의한 漁場開發과 公海漁場 開發을 적극 추진 하였다.

'93년도 新漁場 開發을 위하여 南東太平洋 페루公海에 오징어채낚기 5隻, 西部아프리카 씨에라레온 및 코트디부아르에 母船式 외줄낚시 2隻, 南水洋 協約수역 및 인근 公海水역에 메로資源 開發을 위한 底延繩 1隻을 출어토록 하였다.

2. 海外 合作事業

세계 連안국들이 『200海里 經濟水域 宣布』 등 어업자원의 자국화정 策을 실시, 外國어선에 대한 單純入漁 금지 및 規制를 강화하고 있으며 특히 미국의 경우 대외국 直接漁獲 할당 및 共同事業 물량배정 宗식으로 사실상 外國어선의 입어가 불가능하게 되었다.

따라서 長期的으로 海外資源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대부분의 연안국들이 장려하고 있는 해의 합작사업이 불가피한 실정이다.

合作事業을 통한 어장진출은 '93.12末 현재 水産物 국내 수입을 목적으로 海外資源開發事業法에 의한 허가를 받은 업체는 14個國(미국, 칠레, 아르헨티나, 뉴질랜드, 인도네시아, 중국 등)에 52개 업체가 진출하고 있으며, 이들 업체가 '93년도중 國內에 輸入한 물량은 11개국에서 78,207톤이며, 主要魚種은 오징어, 명태, 연육, 조기 등이다.

특히 中國水域에 9개사 7척이 合作出漁 操業하여 홍어, 조기, 아귀 등 1,513톤을 국내에 수입하였다.

第 3 節 遠洋漁業 競爭力 強化

1. 遠洋業體 經營 支援

海外漁場의 진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연안국의 어업자원 차극화정책 심화 및 國際水産機構의 자원관리 強化 등으로 원양어업이 어려움에 처해있다. 이에 對處하기 위하여 기존어장의 持續的인 확보와 연안국 어장개발 및 특수지역 어장 진출을 적극 추진하고 아울러 新漁法을 개발하여 원양어장을 안정적으로 확보토록 노력하였다.

또한 원양어업의 경영압박 해소와 불황극복을 위하여 遠洋漁船 출어 지원경비인 營漁資金과 海外資源生産支援資金을 '93년도에 1,450억원을 적기에 지원하였으며, '94년도에도 1,700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소비자의 기호에 맞는 水産加工品의 개발과 품질향상으로 내수기반을 더욱 확대하는 한편, 내실있는 기업경영으로 국내·외적 여건

변화에 적응력을 확보하도록 하였으며 국제수산물기구와 沿岸國의 入漁條件 및 규제상황을 분석 홍보하므로써 날로 악화되고 있는 국제어업환경에 적극 대처, 해외어장에 안정적으로 진출 하도록 지원하였다.

2. 勞使協助와 安全 操業

노사협조를 통한 생산증대를 위해 한국원양어업협회와 전국원양수산노동조합간의 船員 處遇 改善 努力를 지도하여 고정급과 보장급 및 주부식비 등이 인상되도록 하였으며, 이 중 하급선원의 경우 월평균 최저 고정급을 '92년도 592천원에서 '93년도 643천원으로 8.6%, 주부식비는 '92년도 1인 1일기준 6,000원에서 6,500원으로 인상되었고, 漁撈 契約 만기 종료후의 최저 보장급도 700천원에서 750천원으로 상승하므로써 船員에 대한 處遇가 실질적으로 개선되도록 지도하였다.

勤勞環境 개선을 위해서는 부산항 및 해외기지에 정박중인 17개사 20척의 원양어선을 방문 선내거주 위생시설 및 임금지급 실태 등을 점검하여 도출된 問題點 및 改善事項을 해당업체에 통보, 보완 시정토록 하였다.

그리고 船員家族 격려 및 사기진작을 위하여 중·고등학생 835명에게 1억2천3백만원의 학자금 보조와 수산청장 및 업계 대표의 격려 서한문을 전달하였고 총 271회에 걸친 船員과의 對話 機會를 가지므로써 노사간 화합을 이루도록 하였다.

또한 沿岸國의 피납 방지와 각종 사고 방지 등 安全 操業을 위하여 國立水産振興院에서의 선장교육, 韓國漁業技術訓練所에서의 안전조업, 해외기지 및 업체 자체교육 등 총 10,097명의 遠洋漁船員에 대하여 연안국 규제동향과 조업중 안전수칙 등의 교육을 실시하였다.

한편 선박점검 철저로 해난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도록 207척에 대하여 출항전 안전점검을 실시하였으며, 빈발하고 있는 선원간 폭행사고에 대하여는 사고선원의 채용 금지 및 선장과의 대화기회 확대 등 船內 화합 분위기 조성에 만전을 기하도록 지도하였다.

3. 北太平洋 오징어流刺網漁業 轉業

北太平洋 오징어流刺網漁業은 1980年 14隻이 最初出漁 操業한 이후 출어척수 및 생산량이 매년 증가하여 왔으나 '91.12.20일 제4차 유엔총회에서 '92.12.31이후 세계 모든 공해상에서 유자망어업 증지를 결의함에 따라 우리나라 北太平洋 오징어流刺網漁業도 조업 중단이 불가피하게 되었다.

이에 대처하기 위하여 정부에서는 '93.1.18 北洋 오징어流刺網漁業 轉·廢業 대책을 수립하여 기존 유자망어업자중 타어업으로 전업을 희망할 때에는 어업허가가 가능한 범위내에서 원칙적으로 전업허용토록 하고, 전업에 따른 어선 개조 및 구입 자금으로 長期 低利資金 375억원 ('92 농어촌발전기금 100억원, '93 재정융자특별회계 275억원)을 확보하여 지원토록 하였고, 또한 어선이 노후되어 폐선할 경우를 대비, 이를 어초로 활용키 위하여 古船魚礁 事業費 79.8억원을 확보하여 정부에서 한국감정원의 감정평가에 따라 폐선을 매입키로 하였다.

이와 같은 전·폐업 대책을 추진한 결과 '93년말 현재 轉業 대상 105隻중 47隻이 오징어채낚기, 트롤, 통발 등으로 전업을 완료하였으며, 34척의 유자망어선은 폐선, 또는 수출하거나 개조하여 전업을 추진중에 있으며, 24척이 미전업상태에 있다.

그러나 폐선을 이용한 고선어초 사업은 한국감정원의 감정가가 어민

이 희망하는 금액과 현격한 차이로 인하여 어민들이 어초 제공을 기피함으로써 어초투입 사업은 추진이 불가능하게 되었으며 수출 또는 어선 개조에 의한 전업도 어렵게 되었다.

따라서 현재까지 轉業을 완료하지 못한 58隻에 대하여는 연승, 통발 어업 등 비교적 轉業費用이 적게드는 업종으로 전업을 적극 지도하고, 아울러 轉業資金의 지속적인 지원과 능력있는 업체와 협업을 유도하는 등 빠른 시일내에 전업을 완료할 수 있도록 '94년도에도 轉業을 적극 추진해 나갈 것이다.

第 6 章 水産 技術開發

第 1 節 研究機能 強化

1. 專門研究所 推進

道 단위로 설치되어 있는 소규모의 9개 地域 水産研究所가 동, 서, 남해 海域別 대단위 3개 水産研究所로 통합 개편('93.2.10)됨에 따라 지역단위 연구소가 폐지된 지역내 어민들의 수산 기술지도 수요 및 민원 불편을 해소하고 지역별 특성있는 전문 연구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전문연구소 신설을 위한 직제개정을 추진하였다.

2. 研究基金 造成 및 運用

'93년도 水産研究財團 收入 총액은 基本資産 586백만원에 대한 利子 收益 79백만원 및 '92년도 사업집행잔액 5.5백만원, '92년도 선급법 인세 환급금 14.6백만원이었으며, 支出은 시험연구 및 지도사업 등에 76.8백만원을 집행하고 잉여금 22.5백만원중 14백만원은 기본자산으

로 편입, 財團基金 총액을 600백만원으로 증액시켰으며, 잔액 8.5백만 원은 '94년도로 이월하였다.

第 2 節 水産 技術開發

1. 優良品種 技術開發

가. 魚類品種 改良試驗

해산어류의 遺傳育種學的 연구의 일환으로 넙치의 전암컷 集團 生産을 위해 '91년에 생산된 가짜 수컷을 이용, 정상 암컷과의 交配로 수암컷을 生産하였고, 이에 대한 子孫檢定을 실시한 결과 높은 비율의 암컷 집단이 誘導되었다.

가자미류 新品種 開發에 있어서는 우리나라 연안에 棲息하는 가자미류중 産業性이 있는 5종에 대하여 형태 및 細胞 遺傳學的 조사 결과 양식개발 種으로 범가자미가 가장 유리하였고, 아울러 범가자미에 대한 形態 및 成熟, 遺傳學的 조사를 실시하고 繁殖生理 및 遺傳工學에 의한 優良品種 生産을 시도하였다.

內水面 養殖品種에 대한 우량품종 기술개발을 위하여 초어, 백련어, 대두어를 대상으로 한 교잡 우량종 선발시험과 비단잉어 음성발생 2배체 생산시험, 틸라피아와 메기 음성생산 시험 및 산천어 3배체 생산시험을 실시하였다.

나. 貝類品種 改良試驗

참굴·전복 육종학적 연구로, 참굴에 있어서는 4倍體 생산기술 기초시

험과 3배체 생산기법의 대량 종묘생산 적용연구를 실시하였으며 전복에 있어서는 지금까지의 실험 중에서 가장 3배체 유도율이 높았던 저온자극(3℃)으로 3배체 유도실험을 한 결과, 85% 이상의 높은 3배체 유도율을 나타냈으며, 3배체 유도후 2년이 지나서 평균 각장 45mm 전후에서 3배체가 2배체보다 성장이 빨라지기 시작하였다.

다. 海藻類 品種 改良試驗

海藻類 우량품종 기술개발을 위해 遺傳育種學的 技法인 組織培養 기술을 통하여 순수조직과 원형질체를 分離 培養하는 실험과 김 품종 개량시험으로 優良種苗의 保存培養 및 보급, 遺傳形質調査, 김 採苗 方法 開發을 실시하였다.

2. 增養殖 技術開發

가. 種苗生産 試驗

有用種苗의 生産, 分讓 및 방류를 위해 전국 11개 培養場에서 魚類는 넙치의 8종 2,674천마리, 貝類는 전복의 5종 4,622천마리, 甲殼類는 보리새우의 4종 33,143천마리, 기타 보라성게의 3종 454천마리, 넙치수정란 30,000천개로 총 70,893천마리를 생산하여 48,720천마리를 전국의 어민에게 분양하였고, 22,173천마리는 放流하였다. 種苗生産 技術開發을 위해 총거리 가자미의 11종에 대한 新品種 開發試驗을 실시하였고 송어의 3종(5과제)에 대한 基礎技術 開發을 수행하였다. 또한 국내의 固有 遺傳子 保存을 위해 어류 7종(12계통)에 대해 遺傳的 동정과 系統保存을 실시하였다.

나. 海産魚類 養殖技術 開發試驗

새로운 海産魚類 養殖技術을 개발하기 위하여 시해안의 築堤式 송어 양식시험, 조피볼락 및 능성어류(능성어, 볼바리) 해상가두리 양식시험을 실시하였고, 陸上水槽 飼育技術 開發을 위하여 조피볼락 消化酵素 活性研究와 오존치리에 의한 飼育實驗을 실시하였고, 고밀도로 육상에서 사육할 수 있는 폐쇄순환 여과조의 最適 濾過條件 구명을 위하여 浸漬式과 回轉圓板式에 대한 濾過條件 究明試驗을 실시하였다. 또한 값싼 海産魚 配合飼料를 開發하여 양식경비를 줄이고 生産性を 높이기 위하여 조피볼락의 탄소화물원 이용성을 구명하였고, 수산가공 부산물을 이용한 넙치 배합사료의 개발을 위하여 참치 내장의 이용성을 조사하였다. 해산어 魚病分野 연구에서는 양식넙치의 種苗生産時 孵化仔魚의 大量 斃死를 야기하는 病原體 조사결과 상피증생증 원인 바이러스에 의한 疾病임을 국내 최초로 究明하였고, 약제 안전성 검토를 위하여 抗生劑 투여 결과 근육과 혈액에서 부약중지 5일후 검출한계 이하로 減少함을 알 수 있었다.

다. 內水面 魚類養殖 技術開發 試驗

內水面 자원증강을 위하여 잉어류, 틸라피아, 송어류, 산천어, 무지개송어 등의 淡水魚種의 우량어미를 飼育管理하고 치어를 生産, 養殖漁家에 221천마리를 分讓 普及하여 어가소득 향상에 기여하였다. 아울러 회유성 어종인 연어의 資源造成을 위해 연어 치어 11,000천마리를 강원도 남대천 등에 放流하였다. 그리고 養殖品種 多樣化를 위하여 은어, 자라, 참게 등에 대한 養殖技術 開發試驗과 어민 개인양식장의 疾病 發生 상황을 조사하여 예방 및 치료대책의 지도에 임하였고, 잉어 장포자충에 대한 연구도 실시하였다. 內水面 魚類養殖場의 水質汚染 負荷量

경감 및 魚病對策의 일환으로 오존사용 效果에 대하여 조사하였고, 對漁民 技術普及을 위하여 전문연구원에 의한 技術教育, 技術指導誌 보급 및 管内 養殖場 순회교육 등을 실시하였다.

라. 貝類 養殖技術 開發試驗

養殖 貝類의 생리 특성 연구를 위해 어장환경별 피조개 양식 생리에 관한 연구를 실시하고 水産物 輸入개방에 대처하기 위한 지역 특산품종 개발 추진을 위하여 우리의 月別 生殖巢 발달 過程 조사와, 飼育 수온별 生殖巢 절개에 의한 採卵 實驗을 실시하여 人工種苗 生産을 위한 基礎 자료를 蓄積하였다.

또한 키조개 양식 이식시험, 해가리비 양식기술 개발, 전복 人工種苗 放流에 의한 자원조성 효과조사 試驗 등을 실시하였다.

마. 海藻類 및 其他 養殖技術開發

서해안 들깍의 양식기술 개발을 위하여 들깍의 分類檢索, 絲狀體 生長 및 病害調査, 양식 기초시험, 選拔 育種試驗을 실시하였으며, 모자 반증식을 위해 人工採苗 試驗과 養成試驗을 實施하였고, 꽃게류중 민꽃게의 양식화를 위해 種苗生産 技術開發과 養殖生殖 生理에 관한 研究를 실시하였다.

第 3 節 漁具漁法 및 加工技術 開發

1. 漁具漁法 技術開發

가. 操業自動化 시스템 開發 研究

(1) 延繩漁業 操業 自動化

수동식 방법으로 조업하고 있는 沿岸海 延繩漁業의 조업과정을 省力化 시키기 위해서 沿岸 延繩用으로 自動投繩機 및 미끼절단기 등을 개발하여 명태延繩 주어기에 재래식 방법과 비교 시험한 결과, 개량식 방법이 재래식 보다 釣獲성능이 약 2배 높고, 人力도 20~30% 절감 가능함을 확인하였다. 또한 近海 延繩用으로 컴퓨터 제어형의 自動投繩機 개발 시험을 계속 수행중에 있다.

(2) 機船權現網漁業 揚網 機械化

機船權現網漁業 자루그물 揚網用 다기능 불물러를 설계 제작하여, 현지조업 어선을 이용하여 경남 충무沿岸에서 58일 동안 191회에 걸쳐 揚網에 관계되는 기능시험과 실용화상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관련업계와 학계, 船主 및 어로장 약 60명이 참석하여 海上 시범조업을 실시하였으며, 전 업계의 實用화가 예상됨에 따라 다기능 불물러의 구조와 기능 및 취급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영상 녹화한 비디오 테이프를 제작하여 이에 대한 지도와 홍보를 하였다. 자루그물 揚網用 유압식 다기능 불물러는 수평 수직揚網, 좌우 상하조절 및 갑판 좌우이동의 기능을 갖고 있으며 볼은 원통형이고 시험중 揚網하는데 참여한 網船의 선원은 10명이다. 揚網시간은 평균 16분이고, 揚網을 하는데 선원 1인당 소요되는 힘은 평균 4kg이었다.

나. 資源管理型 트롤網에 관한 研究

우리나라 전 해역에서 操業하고 있는 트롤漁業은 沿近海 어업생산량의 22%, 10톤이상 대형선의 20%를 차지하는 주요어업이나 현행 트롤망 끝자루의 網目 내경 54mm와 Diamond형태 網地의 漁具 물리학적 특성으로 인하여 소형어의 탈출이 거의 없어 未成魚의 혼획률이 전어획량의 60~70%를 차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탈출한 어류의 생산률도 극히 저조하여 대상자원 감소의 주된 요인이 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대상어종과 업종의 현실여건에 알맞은 資源管理型 트롤망의 개발로 未成魚의 혼획률을 최소화함으로써 資源이용의 합리화를 도모하고자 '92년부터 5년간 단계적인 연구를 수행하고 있으며, '93년도에는 트롤망의 끝자루를 網目 내경 54mm인 현행 Diamond net와 새로운 형태의 Square net 및 Cover net를 제작하여 시험조사선 부산 881호(369톤, 1,600ps)로 총 30회 試驗操業하여 Diamond net와 Square net 끝자루의 未成魚 탈출률을 비교 분석한 결과 말쑤치, 달고기, 가자미 등 납작고기에서는 Square net 및 Diamond net 모두 거의 탈출이 없었으며, 즐도화돔, 눈볼대, 밴댕이 등 소형어류와 살오징어, 꼴뚜기 등 연체류에서는 Square net 및 Diamond net 모두 비슷한 경향을 보였으나, 조기류, 돌류, 전어 등 등근고기에서는 Square net가 Diamond net 보다 약 15% 높게 나타나 Square net 끝자루가 未成魚 탈출에 더욱 效果의임을 알 수 있었다.

다. 旋網漁業의 魚群制御 技術開發 研究

선망 양망조업중 漁具 가장자리 방향으로 逃避하는 어군 차단기술 개발을 위하여 시험선 부산 881호(369G/T, 1,600PS)로 南海岸에서 압축공기 Tank를 이용한 어군제어용 刺戟源裝置(Air gun)의 吐出口別,

空氣壓力別, 호스 수중 깊이별 水中音響 물리적 특성을 시험한 결과, 吐出口가 커질수록 水中音壓이 높고 周波數가 낮아졌으며, 호스 길이가 깊어 질수록 水中音壓은 감소하고 周波數는 낮아졌다.

또한 사용의 안정성과 원격작동에 따른 편리성 및 대량의 氣泡發生 동도 구명하였고, 멸치, 고등어, 전갱이 魚群에 적용 시험한 바 魚群逃避 반응행동이 민첩하였으며, 民間 旋網船 제85 단성호(149G/T, 1, 600PS) 조업시 적용 시험한 바 양망시 漁具 가장자리 방향으로 逃避하는 魚群을 효과적으로 遮斷할 수 있음을 스케닝 소나로 확인 관찰할 수 있어 實用性 評價를 위하여 계속 시험중에 있다.

라. 北太平洋 오징어 漁場調査 및 채낚기 漁獲性能 研究

최근 5년간('88~'92년) 북태평양 公海上에서 流刺網에 의해 漁獲된 빨강오징어의 연평균 漁獲량은 79천톤으로 우리나라 遠洋 오징어 漁獲량의 34.3%를 차지하는 주요어업이었으나, UN결의에 따라 '93년도 부터 동 어장에서 流刺網操業이 전면 중단되었다. 따라서 이에 대한 대체 漁具漁法 개발과 漁場을 조사하기 위하여 북태평양(38°30'~43°N, 152°E~178°W)에서 '93.7.6~8.31(57일간)까지 시험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기간중 自動釣獲機에 의한 오징어 종별 漁獲량은 빨강오징어가 83.9%인 4,044kg, 문어오징어가 15.5%인 747kg, 갈구리오징어가 0.6%인 32kg, 두줄무늬 빨강오징어가 0.01%인 0.3kg 漁獲되었고, 표층수온 13.6~18.3℃에서의 빨강오징어 어획량은 3,825kg으로 總漁獲량의 94.6%이고, 水深 100m층의 수온 10℃ 전후에서 漁獲 성능이 우수하였다.

표층수온 13.6~18.3℃에서의 自動釣獲機 1대당 시간당 어획량

(CPUE)는 0.8~11.8kg로서 평균 8.7kg 漁獲되어 채낚기가 流刺網 (폭당 漁獲量 3.36~5.41kg)의 대체 漁具漁法으로 정착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또한 오징어의 集魚效果는 集魚光力을 일정하게 유지시키면서 漁獲할 때 보다 10~15분 간격으로 점멸시킬 때가 3~4배 증가하였고, Jumbo 낚시에서 漁獲된 빨강오징어의 평균 중량은 858g으로서 소형 낚시의 507g 보다 1.7배 무거운 것이 漁獲되었다.

2. 水産物 利用加工 技術開發

다회성 수산물인 오징어 및 콩치의 소비확대를 위하여 포클랜드산 냉동오징어, 북태평양산 콩치를 원료로 하여, 햄, 어묵류, 精肉통조림, 냉동식품류 및 즉석 편리식품 등 총 16종의 試製品을 가공하여 2회에 걸쳐 시식회를 개최하였으며, 특히 오징어 햄, 튀김어묵, 스프레드, 식빵, 비스킷 및 국수와 콩치 정육통조림은 選好度가 좋았다. 또한 전통 수산식품인 새우젓의 품질표준화를 위하여 시중 새우젓의 품질평가 시험과 정제염 및 천일염 사용에 따른 품질의 비교 및 돛대기 새우젓과 추젓에 대한 熟成中の 품질변화를 조사하였다.

한편 수산물이 건강 식품으로서의 소비가치가 점차 증대되고 있어 이에 관한 과학적 기초자료 제공을 목적으로 주요 어패류 29종에 대하여는 베타인류(betaine), 해조류를 포함한 수산물 40종에 대하여는 셀레늄(selenium) 함량을 조사하여 이들 수산물에 생리활성 물질이 다량 함유되어 있음을 확인하였다.

한·미 패류위생협정 운영과 관련하여 수출용 패류 생산 지역 및 주변 해역 38천ha에 대하여 위생지표 세균, 패류독소 조사를 통한 지정해역

관리와 안전성 제고로 패류 수출 신장에 이바지하여 오고 있으며, 이밖에 어패류 유통에 따른 패혈증 비브리오팀 소장에 관한 연구, 수산 발효식품의 품질개선을 위하여 유전자 再組合을 통한 우량 醱酵菌株 개발 시험 및 양식산 넉치 육의 조직감 개선에 관한 연구를 실시하였다.

第 4 節 漁場環境 및 資源調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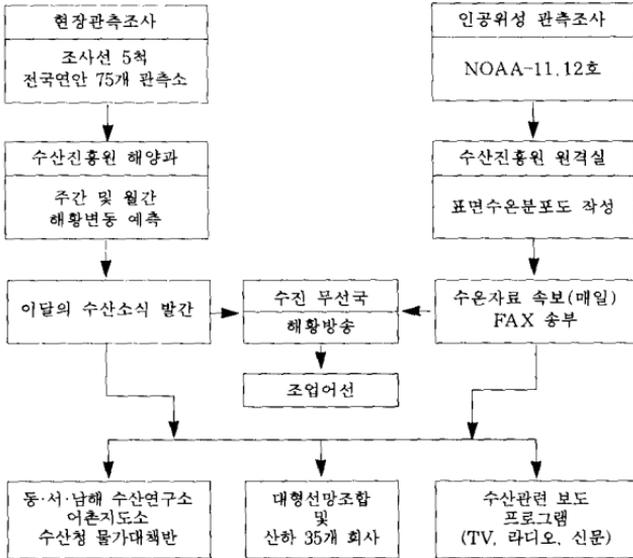
1. 海洋環境

가. 海洋

우리나라 연근해 어장환경의 효율적 이용 관리 및 보전을 기하고, 어장형성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해양의 장·단기 변동연구를 위하여 기초 조사를 수행하였다. 이를 위하여 미국의 NOAA 인공위성으로 부터 직접 수신된 자료를 매일 분석하여 “水溫資料 速報”로서 제공하였으며, 조사선 및 전국연안 75개 관측소의 현장관측 자료로서 주간 및 월간 해양변동을 예측하여 “이달의 수산소식”에 게재 배포하였다.

한편, 연안어장의 생산성 증대를 위해 시설된 각 해역별 인공어초 어장의 자원조성 효과를 조사하여 연안어장의 목장화에 대한 기초연구를 수행 하였으며, 한국해양자료센터(KODC)의 기능을 적극 활용하여 국내·외 해양 및 수산정보를 수집, 해외 어장확보를 기하는 등 어민소득 증대와 수산업계의 합리적 경영을 지원하는 사업을 수행하였다.

〈表 77〉 우리나라 近海 海況變動 調査 및 海況情報 提供 體系圖



資料 : 수산청 국립수산진흥원

나. 環境

연안어장 환경오염 수준을 평가하기 위하여 전국 주요 연안어장에 설정된 309개 조사점에서 化學的 酸素要求量, 溶存酸素 및 營養鹽類 등 10개 水質指標 성분에 대한 조사를 연 4회, 저산소 수괴조사 연 8회,

저질조사 연 2회 및 重金屬 汚染 조사를 연 1회 실시하여 전국 연안의 환경오염 변화 양상을 파악하여 환경보전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하였다. 또한 폐쇄성 내만의 부영양화 원인물질의 분포특성과 계절적 변동 그리고 부영양화에 따른 저산소 수괴형성, 적조 발생과의 관계 등 연안 양식어장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기술개발을 목표로 표본 해역인 진해만에 대하여 유기물질 조사, 침강물질 조사 및 유입부하량 조사를 연 12회 실시 하였으며, 전국 수산자원 보전지역(해면 10개소, 내수면 19개소)에 대하여 일반 수질지표 성분 및 어·패·조류의 생산동향 및 출현종 조사를 실시하여 보전지역의 환경변화를 파악하여 수역보전 관리의 기초 자료로 활용하고 있다.

한편, 적조에 의한 양식생물의 피해를 경감시키기 위하여 남·서해안 총 57개 조사점에서 연 7회 이상 적조감시 조사를 실시하고, 해수중 유독성 플랑크톤의 출현종과 출현량을 조사하여 패류독화 상황 감시를 위한 기본 자료로 활용 하였다. 또한 폐늘 및 유치리체에 대한 생물의 독성 평가 실험을 실시하여 각종 환경기준 및 수산피해 보상의 근거 자료로 활용하고 있다.

2. 沿近海 漁業資源

연근해 어업자원의 持續的 생산과 合理的 관리를 위하여 연근해 주요 어업자원에 대한 漁獲狀況 및 生物學的 조사에 의하여 資源變動 特性을 연구하고 대상자원의 수준을 평가하였다. 어획 상황조사는 대형선망어업 및 대형트롤어업외 6개 近海漁業과, 꽃게 沿岸 流刺網漁業외 6개 연안어업을 대상으로 실시되었으며, 어획량 및 어획노력량을 조사하여 資源密度 指數와 分布域 變動을 분석하였다. 고등어, 전갱이, 정어리, 삼

치, 부세, 멸치 등 6개 어종의 浮魚類와 갈치, 참조기, 꽃게, 말려치 등 4개 어종의 底魚類에 대하여 어체 측정조사와 체장 조성조사를 실시하여 再生産力의 徑年變動과 年級群을 분석하고 자원을 평가하였다. 한편 연안자원에 대하여는 東海에서 용가자미, 노래미, 오징어, 명태, 도루묵, 콩치, 명태 등 7개 어종에 대한 생물학적 특성과 정치망 어획물에 의한 沿岸魚類의 群集構造를 분석하였다. 西海에서는 낭장망 어획물과 꽃새우에 대하여, 南海에서는 낭장망 어획물과 황갈당이, 그라비새우, 옥돔, 자리돔 및 연안안강망 어획물에 대하여 생물학적 조사를 실시하였다. 또한 東, 西, 南海의 주요어종에 대한 資源特性 研究를 위하여 西海의 홍어, 南海의 소라 및 비단가리비, 東海의 까나리에 대하여 어획량 변동조사, 생물학적 조사 및 어장환경 조사를 실시하였다. 특히 소라자원에 대하여는 각고 조성조사와 표지방류를 통하여 資源 特性值를 추정하고 資源量 및 適正 어획수준을 평가하였다.

주요어업 자원의 신속한 동태 파악과 시공간적 분포특성을 연구하기 위하여 南海岸 및 東海南部海域을 대상으로 年 3회 科學魚探 調査를 실시하여, 어종별 자원량을 추정하고 魚群의 形態, 크기, 垂直 水平分布 등의 魚群分布 特性을 분석하였다. 이와 동시에 고래자원의 評價와 管理를 위한 고래 目視조사를 年 3회 실시하여 발견되는 고래의 種識別 및 수량을 조사하고 분석하였다.

한편 연근해 어업의 安定的인 생산을 유지하고 漁業能率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대형선망 어업 등 연근해 주요 13개 어업에 대한 魚群의 移動狀況과 漁況의 전망을 매월 분석하여 월간 漁況豫測을 실시하였으며, 東·西·南海에 대한 주간 漁況概況 및 전망을 매월 분석하여 주간 漁況豫測을 실시하였다.

3. 遠洋 漁業資源

遠洋漁業 資源의 지속적 이용과 국제적 관리 기초를 마련하기 위하여 6개 主要漁業(다랭이연승, 다랭이선망, 트롤, 새우트롤, 오징어채낚기, 봉치봉수망)의 대상자원에 대한 漁業資源 調査를 실시하여 자원풍도 및 분포상태 등 자원 동태를 파악하였고, 10개 主要魚種(황다랭이, 눈다랭이, 가다랭이, 날개다랭이, 명태, 붕치, 뽕강오징어, 웰링턴오징어, 아르헨티나 짧은지느러미오징어, 아메리카 대왕오징어)의 어획물 크기 조성, 성숙 상태, 연령조사 등 生態學的 調査를 실시하였다. 원양 출어선으로부터 수집한 操業動態 報告書 및 生物學的 조사 자료와 실험실내에서의 魚體 精密測定 資料, 기타 해외정보 자료를 이용하여 遠洋漁業 資源의 동태 및 생태 파악과 資源評價를 실시하였고 분석된 결과는 원양어업의 水産政策 資料 및 漁業活動에 필요한 정보로서 제공되었으며 국제수산기구 및 쌍무회담(ICCAT, CCAMLR, FAO, SPC, IOFC, NAFO, IPTP, IATTC, INPFC, CECAF, 한·미, 한·뉴지)에 제공하였다.

대서양 다랭이保存委員會, 南極 海洋生物 자원보존위원회 및 南極 개 漁業管理 워킹, 6~9차 중부베링해 해양생물자원보존 및 관리회의, 1~2차 오호츠크公海 생물자원보존 및 관리회의와 科學者會議, 한·러 漁業委員會 會議, '93년 한국-러시아聯邦 수산과학기술협력 회의 및 한·러 東海 해표기물 共同調査 協議會, 北太平洋 날개다랭이 워킹, UN 경제왕래 魚類資源 및 高度回遊性 어류자원회의, 북태평양 공해어업 管理問題 學術會議 등 16개 국제회의에 참석하여 우리나라 遠洋漁業의 권익을 확보하는데 노력하였다.

또한 太平洋에서 조업중인 우리나라 遠洋漁船(다랭이연승, 다랭이선

망, 풍치붕수망, 트롤)에 8명의 研究員이 직접 승선하여 漁獲 對象種의 豊度 分析, 생물학적 조사, 어장환경 조사 및 附隨의 漁獲狀態 파악을 위한 기초자료를 축적함으로써 국제어업 분쟁 해소와 합리적인 자원 관리에 대처하였다.

第 5 節 水産技術 指導 普及

1. 技術 指導 및 弘報

가. 水産技術 普及

全國 沿岸 1,654개 漁村契와 內水面에 배치된 263명의 어촌지도 공무원으로 하여금 어장관리에 대한 양식어민들의 새로운 意識 啓導와 국제경쟁력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고급어종의 안정생산을 목적으로 산하 25개 어촌지도소에 作況 豫報센타를 설치하여 동해안의 가리비, 서해안의 조피볼락, 새우, 참게, 남해안의 조피볼락, 진주조개, 들깍 등 지역특성에 맞는 高所得 養殖品種의 보급 확대와 넙치, 방어, 굴, 피조개, 김, 미역, 우렁쉥이 등 양식기술 普遍化 품종에 대한 適期 技術支援, 그리고 가리비, 전복, 가무락, 모자반 등 4개 품종을 대상으로 試驗·敎習漁場 7개소를 운영하는 등 地域 特化品種 발굴 및 개발과 과학적인 양식기술 보급 확산에 注力하여 어민소득 증대에 기여하였다.

또한, 주요 양식단지를 중심으로 技術指導船 또는 試驗調查船을 이용하여 어촌지도 공무원이 직접 水溫, 比重 등의 어장환경 및 품종별 작황조사를 비롯하여 어장시설 및 관리실태 파악과 幼生調査를 통한 採苗 適期 豫報 등 양식어장 豫警활동을 每月 실시하였고, 각종 災禍로부터

반복적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赤潮 主 發生 時期인 5~10월 사이 赤潮가 常習의으로 일어나는 곳과 우려되는 87개 지역에 대하여 定期豫察, 隨時豫察, 漁民委託 豫察을 실시하여 赤潮 발견시 신속하게 대처하는 한편, 태풍, 폭풍, 油類被害 등 각종 재해에 대비하기 위하여 38개 災害豫防 警勵班을 편성 운영함으로써 증양식 시설물 안전 관리 및 출어선 안전대피 지도 등으로 수산피해 최소화에 노력하였다.

새로운 수산기술에 관한 試驗·研究 결과 및 營漁活動에 필요한 각종 수산정보를 어민들에게 신속하게 전달하기 위해 각종 보도매체를 적극 활용하는 한편, 수산기술지, 이달의 수산소식, 週間 海·漁況 情報, 어촌지도 소식지 등 정기간행물을 발간 배부하였고, 주요 수산시책 및 현안사항 홍보와 水産養殖, 海洋, 어구어법 및 水産加工의 발전과정 및 미래상을 전시한 전시실을 연중 개방, 많은 국민들이 견학할 수 있도록 하여 수산에 관한 올바른 이해와 중요성을 인식시켜 水産施策 및 研究·指導事業에 적극 협조할 수 있도록 하였다.

나. 漁民教育 및 漁民後繼者 指導

어민들에게 새로운 어업기술과 所得源을 개발普及하여 어촌 정착의 욕을 고취시키고자 어촌지도소에서는 專門指導班을 편성 1,654개 全漁村契를 순회하면서 지역특성에 맞는 어업에 대하여 어민 29천명에게 신기술 교육을 실시함과 아울러 有關기관과 합동으로 集합교육을 397회 실시하여 과학적인 營漁活動에 의한 어업소득 개발 및 어가소득 증진을 도모하였다.

또한, 지역단위로 主要 養殖品種의 당면과제에 대한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漁民, 業界, 學界, 有關機關 등 415명이 참석하는 養殖漁業 研鑽會를 9회 개최하였으며, 어촌청소년에게 미래의 수산업에 대한 꿈과 회

망을 심어주고자 방학기간을 이용한 어촌청소년 수산교실을 32회(4,879명) 열었다.

한편 어촌에 정착하여 어업에 종사할 의욕과 사업추진 능력이 있는 청소년을 정예인력으로 길러내고자 '81~'93년까지 선발된 6,591명의 漁民後繼者에게 專擔指導士를 지정 배치하여 기술 및 경영지도를 전담케 하였으며 또한, 後繼者의 기술향상을 위하여 水産技術誌 등 각종 간행물을 수시로 지원하여 科學 營漁活動에 전력하도록 지도하였다.

2. 漁村 指導機能 強化

어촌지도 업무의 활성화를 기하고 점차 증가하고 있는 對漁民 指導欲求 需要에 대처하고자 연차적으로 사무실 新·増築 事業을 추진하여 그동안 25개 지도소를 확보하였으며, 어촌지도 인력도 '92년 255명에서 263명으로 增員하였다.

또한, 과학적인 營漁技術 지도를 위한 指導裝備 보강에 역점을 두어 '93년에 複寫器 19대, 컴퓨터 67대, 車輛 2臺, 指導船 2隻, 適地調査 裝備 26種 125點 등 총 37種 275點을 확보하였으며, 최신 水産技術 및 流通情報를 보다 신속하게 어민들에게 제공하기 위하여 25개 전 어촌지도소와 국립수산진흥원에서는 公衆情報通信網(천리안)에 加入하였다.

어촌지도 공무원의 전문기술 향상과 지도능력 배양으로 보다 深度있는 기술을 어민들에게 지속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수산진흥원 및 水産 種苗培養場 등에서 총 27명의 지도원이 전문기술 교육을 이수하였고, 16회에 걸쳐 66명을 대상으로 先進地 見學을 실시, 현장교육을 통한 情報蒐集 強化 및 기술지도의 전문화에 노력하였다.

또한 營漁經驗이 풍부하고 덕망과 지도력을 갖춘 地域社會 지도급 인

사를 自願 漁村指導者로 총 208명을 위촉, 어촌지도 사업에 자진 참여토록 함으로써, 지도소와의 유대강화를 기하고 지역실정에 맞는 適合品種 新技術 개발 보급 및 資源造成 사업에 협력토록 하여 정부시책에 대한 대어민 신뢰도를 높이기도 하였다.

〈表 78〉 年度別 自願 漁村指導者 確保人員

| | | | | | | 單位：名 |
|-----|-----|-----|-----|-----|-----|------|
| 年度別 | '88 | '89 | '90 | '91 | '92 | '93 |
| 人 員 | 80 | 127 | 198 | 200 | 208 | 208 |

資料：수산청 국립수산진흥원

對漁民 指導活動과 관련 指導士別 擔當區域 現況과 增·養殖場 管理 및 기술지도 등에 필요한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 기록함으로써 今後 지도활동에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1,654개 어촌계에 대해 漁村契 現況카드를 작성 비치하고, 漁場管理 指導手帖 300부, 主要品種 養殖 循環表 2,000부를 발간하여 각 지도소 및 어촌계 등에 배부함으로써 지도계획 수립 및 적기 기술지원 체계를 확립하도록 하였다.

당해연도 사업추진에 따른 懸案事項 및 問題點 등에 대한 개선방안을 강구하여 어촌지도 사업의 성과 極大化를 도모하고자 지도소별 주례회의와 선임 지도소단위 월 1회 정례회의를 개최하는 한편, 半期別로 전국단위 中間評價會議 및 最終評價會議를 개최하여 사업성과의 評價·分析을 통해 보다 체계적인 어촌지도 사업이 이루어지도록 하였다.

第 6 節 水産技術 訓練

1. 公務員 教育

수산청, 시·도 및 산하 기관 등 수산관계 공무원을 대상으로 공직관과 使命感에 투철한 수산 공직자상 정립과 수산행정 전반에 대한 필요한 지식 및 기술습득으로 행정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직무 수행능력 배양에 목표를 두고 직급별 기본교육과 직무 분야별 전문교육을 실시하였다.

기본교육은 교육반을 승진 단계별로 편성하여 실무자보수반 3회 107명, 신규실무자반 2회 73명 등 5회 180명에 대하여 해당직급에 필요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으며, 국정이념 및 국가 당면시책에 대한 이해를 제고시키기 위하여 전체 교육시간의 30%를 정심교과목으로 편성하고, 신규채용자의 교육시 1주간을 정심교육으로 편성하여 공직자로서 요구되는 基本精神 教育을 강화하였다.

전문교육은 직무성격에 따라 교육반을 세분화하여, 政策開發班 2회 54명, 水産經營班 1회 40명, 漁業秩序管理班 1회 50명, 海面魚類繁殖班 1회 40명, 內水面魚類繁殖班 1회 43명, 水産土木班 1회 37명, 水産施策班 2회 99명, 水産法規班 1회 47명, 電算初級班 3회 89명, 電算中級班 1회 27명, 英語教育班 1회 20명, 日本語教育班 1회 20명 등 16회 566명을 교육하였다.

또한 국제화, 정보화 시대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어학교육 및 전산교육을 지속적으로 강화하였으며, 수산정책의 개발 및 발전방향을 모색하기 위하여 『沿岸資源의 效率의 管理方案』, 『漁業經營의 合理化方案』 등을 주제로 정책개발반을 운영하여 수산정책에 활용할 수 있

는 자료를 제공하였다.

2. 漁民教育

어민교육은 어민후계자 및 어민교육과정으로 구분 실시하였다. 어민후계자 교육은 소득 품종별 漁漁技術 教育을 통한 어촌정착 기반조성을 목표로 당해년도에 선발한 漁民後繼者를 대상으로 新規 漁民後繼者班 16회 991명을 교육하였고, 이미 選拔한 어민후계자를 대상으로 專業漁家班 3회 99명을 교육하였다.

신규어민후계자반은 어민후계자로서 갖추어야 할 사명감과 지도자의 역할 등의 정신교육을 중점 실시하였고, 전업어가반은 교육대상자의 특성을 감안하여, 업종 및 지역단위 교육반을 設定, 優秀 水産業體 현장 순회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지역특성을 감안한 수익성 높은 유망 개발품종에 대한 집중교육으로 교육효과를 높였다.

漁民教育은 해양오염 방지로 청정한 해양환경 보존과 국민건강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海洋汚染防止管理人 教育을 3회 194명 실시하였고, 전국 어촌계장을 대상으로 어민이 自律的으로 수산자원을 보호하고 어업질서 유지에 앞장서도록 資源保護管理班 教育을 2회 87명 실시하였다. 또한 전국의 관상어양식자 및 수족관 경영자를 대상으로 觀賞魚 養殖 教育을 2회 81명 실시함으로써 수산물 수입개방에 대처하고 국제 경쟁력있는 소득품종 개발보급으로 소득증대를 도모하기 위한 기반조성에 기여하였다.

3. 特別教育

민원관계 공무원 52명에 대하여 民願行政 교육을 실시하여 친절, 봉사자세의 생활화로 『신한국』의 공무원상을 정립하고, 국민 편익위주의 민원행정을 수행토록 하였다.

방학 중에는 인근지역 국민학생 178명에 대하여 早期 컴퓨터 기초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컴퓨터의 생활화와 과학 탐구능력을 배양하였다.

또한 교육참여 기회가 적은 수산청 漁業指導船 乘船公務員 289명 대하여 의식개혁교육, 직장인의 인간관계 교육 등을 통하여 선원의 의식 개혁 및 자질향상에 기여하였다.

〈表 79〉

水産公務員敎育院 敎育訓練 實績

單位：名

| 區 分 | '90 | '91 | '92 | '93 | '93/'92 |
|-------|-------|-------|-------|-------|---------|
| 計 | 3,354 | 1,438 | 2,812 | 2,717 | 97% |
| 公務員敎育 | 843 | 738 | 949 | 746 | 79 |
| 漁民敎育 | 2,511 | 700 | 1,376 | 1,452 | 106 |
| 特別敎育 | - | - | 487 | 519 | 107 |

資料：수산청 수산공무원교육원

第 7 章 支援體制 整備와 制度 改善

第 1 節 漁民支援 強化

1. 水産資金 供給

가. 營漁資金

'93년도 營漁資金 지원은 '92년도에 비하여 1,000억원이 증가한

〈表 80〉

營漁資金 供給實績

單位：億원

| 區 分 | '92 | '93 | 增 △ 減 |
|-------------|--------|--------|-------|
| 所 要 額 | 13,936 | 15,909 | 1,793 |
| 供 給 額 | 6,000 | 7,000 | 1,000 |
| (供 給 率) | (43%) | (44%) | (1%) |
| 調 達 | | | |
| 財 政 資 金 | 865 | 1,033 | 168 |
| 韓 銀 借 入 金 | 2,567 | 2,883 | 316 |
| 水 協 自 體 資 金 | 2,568 | 2,884 | 316 |
| 相 互 金 融 | - | 200 | 200 |
| 運 用 | | | |
| 沿 近 海 漁 業 | 5,190 | 6,000 | 810 |
| 遠 洋 漁 業 | 810 | 1,000 | 190 |

資料：수산청 협동조합과

7,000억원으로 沿近海漁業에 6,000억원, 遠洋漁業에 1,000억원을 供給하였으며 資金調達 能力이 미약한 零細 小規模漁業 및 共同申告漁業 漁民을 우대 지원하기 위해 漁業經營 규모가 작을수록 融資比率을 높이는 差等支援 制度를 시행하였다.

나. 水産振興財政資金

水産振興財政資金은 영어자금을 지원받지 못하는 製造加工 分野 및 어망 生産에 지원함으로써 어업과 水産제조업의 均衡의 發展을 도모하였으며 '92, '93년은 농어촌발전기금으로 '94년부터는 農漁村構造改善 事業計定으로 代替하여 同 業種에 持續的으로 지원하고 있다.

〈表 81〉 水産振興財政資金 運用實績

單位：百萬元

| 區 分 | '92 | '93 | 增 △ 減 |
|-----------|-------|-------|--------|
| 計 | 6,500 | 5,500 | △1,000 |
| ○水産物製造加工 | 4,900 | 4,500 | △400 |
| - 冷凍·冷蔵加工 | 2,300 | 2,200 | △100 |
| - 凍조림 加工 | 2,600 | 2,300 | △300 |
| ○漁 網 生 産 | 1,600 | 1,000 | △600 |

資料：수산청 협동조합과

다. 農漁村發展基金

'93년도 農漁村發展基金중 水産분야에 투입된 資金은 '92년 보다 7% 감소한 916억원으로 이 중 運轉性 資金으로 水産物加工, 漁網生産, 漁船用 機資材 生産에 135억원을 支援하였고 施設性 資金으로는 어촌관

광개발 15건에 6억원, 수산물 처리저장시설 18건에 114억원, 수산물 유통보급시설 확충에 34억원, 수산물 유통구조 개선사업에 66억원, 어선 건조 및 설비보완에 280억원, 내수면어업 개발에 28억원, 양식어장 개발에 41억원, 어촌소득원 개발에 12억원, 어민후계자 및 전업어가 육성에 200억원 등을 지원하여 漁村開發 및 生産性 向上에 寄與하였다.

'94년도 부터는 『農漁村構造改善特別會計法』에 의거 農漁村發展基金

〈表 82〉

'93 農漁村發展基金 運用規模

單位：百萬元

| 區 分 | '92 | '93 | 용 자 조 건 (거치/상환) |
|-------------|--------|--------|--------------------|
| 計 | 99,002 | 91,580 | |
| ○ 運 營 資 金 | 13,932 | 13,500 | |
| - 水産物加工 | 9,480 | 8,148 | 0/1(8%) |
| - 漁船用機資材 | 3,400 | 1,052 | " |
| - 漁網生産 | 1,052 | 4,300 | " |
| ○ 施 設 性 資 金 | 85,070 | 78,080 | |
| - 漁村觀光開發 | 600 | 603 | 3/7(5%) |
| - 水産物處理加工施設 | 16,800 | 11,400 | 3/7(5~8%) |
| - 水産物流通補給施設 | 3,123 | 3,447 | 3/7(5%) |
| - 水産物配銷構造改善 | 3,686 | 6,593 | 3/7(5%) |
| - 淡水魚流通施設 | 700 | 700 | 3/5(5%) |
| - 漁船建造妥設補完 | 33,376 | 27,968 | 1/4~3/10(5%) |
| - 養殖漁場開發 | 5,735 | 4,069 | 3/7(5%) |
| - 淡水魚育苗施設 | 210 | 2,100 | 3/5(5%) |
| - 配合飼料製造施設 | 840 | - | 3/7(8%) |
| - 漁村所得源開發 | - | 1,200 | 3/7(5%) |
| - 漁民後繼者 | 20,000 | 20,000 | 5/5(5%) |

資料：수산청 협동조합과

이 폐지되어 農漁村構造改善事業計定으로 변경되어 계속 지원된다.

라. 水協 自體資金

水協 自體資金의 원활한 조달을 위하여 일반 與受信店舖 14개소('93년말 147개소)와 相互金融店舖 31개소('93년말 396개소)를 증설하였고 전 점포에 온라인망을 구축하여 顧客에 대한 서비스를 강화함으로써 水協의 자체자금을 '92년보다 3,935억원이 증가한 25,356억원을 조달 운용하였다.

<表 83> 水協 自體資金 造成 및 運用

單位：億圓

| 區 分 | | '92 | | '93 | | 增加率 |
|-----|-----------|--------|-------|--------|-------|-------|
| | | 金額 | 構成比 | 金額 | 構成比 | |
| 調 | 自體資金 | 12,098 | 56.5% | 14,779 | 58.3% | 22.2% |
| | - 예수금 | 7,778 | 36.3 | 10,089 | 39.8 | 29.7 |
| | - 특별회계예탁금 | 2,625 | 12.3 | 2,952 | 11.6 | 12.5 |
| | - 회원한결세 | 1,695 | 7.9 | 1,738 | 6.9 | 2.5 |
| | 借入金 | 8,034 | 37.5 | 9,025 | 35.6 | 12.3 |
| | - 차입금 | 2,381 | 11.1 | 2,592 | 10.2 | 8.9 |
| | - 재정자금 | 2,059 | 9.6 | 2,552 | 10.1 | 23.9 |
| | - 諸기 | 3,581 | 16.7 | 3,871 | 15.3 | 8.1 |
| | - 차관 | 13 | 0.1 | 10 | 0.0 | △23.1 |
| | - 其他 | 1,289 | 6.0 | 1,552 | 6.1 | 20.4 |
| 計 | | 21,421 | 100.0 | 25,356 | 100.0 | 18.4 |
| 運 | 貸出金 | 14,526 | 67.8 | 17,100 | 67.4 | 17.7 |
| | - 金용 | 7,919 | 37.0 | 9,547 | 37.7 | 20.6 |
| | - 재정 | 6,607 | 30.8 | 7,553 | 29.8 | 14.3 |
| | 他事業지원 | 478 | 2.2 | 847 | 3.3 | 77.2 |
| | 現金 및 預置金 | 3,374 | 15.8 | 3,093 | 12.2 | △8.3 |
| 用 | 其他 | 3,043 | 14.2 | 4,316 | 17.0 | 41.8 |

資料：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2. 被害復舊 및 災害補償

가. '93 被害復舊 推進

颱·暴風 및 豪雨 등 自然災害가 5차례 발생하여 수산피해는 총 18,846백만원이었으며, 1차 피해는 1.14~1.19 기간중 강원, 경북지역에 대설 및 暴風으로 인해 1,983백만원의 수산피해가 발생하였고, 2차는 6.1~6.3 기간중 충북을 제외한 각 도에 暴·風雨로 인해 15,844백만원의 수산피해가 발생하였으며, 3차는 7.11~7.14, 7.18 기간중 豪雨·海溢로 인해 강원, 충북, 전북, 경북지역에 231백만원의 수산피해가 발생하였다.

4차 피해는 8.8~8.12기간중 부산, 강원, 경북, 경남지역에 颱風「로빈」으로 인해 508백만원의 수산피해가 발생하였고, 5차피해는 8.20~8.21 기간중 전남, 경남지역에 暴雨로 인해 280백만원의 수산피해가 발생하였다.

이에 대한 被害復舊費는 총 13,404백만원으로서 재원별로는 국고

〈表 84〉

被害 및 復舊費 支援內譯

單位：百萬元

| 區 分 | 被 害 | | 復 舊 費 支 援 | | | | | |
|---------|---------|--------|-----------|--------|-------|-------|-------|-------|
| | 物 量 | 金 額 | 物 量 | 計 | 國 庫 | 地 方 費 | 融 資 | 自 擔 |
| 合 計 | | 18,846 | | 13,404 | 3,105 | 349 | 6,666 | 3,284 |
| 漁 船 | 641隻 | 7,706 | 613 | 4,573 | 867 | - | 3,030 | 676 |
| 增 養 殖 | 282件 | 1,797 | 130 | 1,495 | 924 | 55 | 94 | 422 |
| 內 水 面 | 32件 | 56 | 27 | 251 | 100 | 31 | 37 | 83 |
| 漁 網 | 31,735件 | 8,346 | 30,716 | 6,309 | 701 | - | 3,505 | 2,103 |
| 漁 港 | 16個所 | 888 | 12 | 723 | 460 | 263 | - | - |
| 公 共 施 設 | 2個所 | 53 | 2 | 53 | 53 | - | - | - |

資料：수산청 시설과

3,105백만원, 지방비 349백만원, 용자 6,666백만원, 자담 3,284백만원이 복구비로 사용되었고 간접지원으로는 營漁資金 償還延期 10,890백만원과 利子減免 1,089백만원을 지원하였고 이재민 구호로 1,943가구에 767백만원과 중·고등학생 635명에 대한 授業料免除 136백만원 및 피해어민의 生計補助로 1,337가구에 704백만원의 無償糧穀을 지원하는 등 피해어민이 생업에 조기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다.

나. 漁船 및 船員共濟 支援

共濟 加入者의 負擔을 輕減시키고 共濟制度를 漁民 便益 爲主로 改善하여 대의 경쟁력을 提高시키고자 어민 여론 및 요망사항을 수렴하여 制度改善에 注力하여 어선 및 선원공제에 있어 共濟料 納入期間을 마감일 기준 14일까지 납입 유예할 수 있도록 기간을 신설하여, 공제료의 납입을 지체한 경우라 하더라도 공제료 納入 猶豫期間중의 사고에 대하여는 공제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여 加入者의 共濟料 負擔 便宜를 도모하는 한편, 어선공제 特約制度 개선으로 補償範圍를 확대하고, 동 料率을 인하시키는 물론 선원 特殊共濟에 있어서도 사용자 賠償責任 負擔 特約을 신설하고 공제료 납입회수를 3회에서 4회로 확대하여 가입자의 부담을 경감시켰다.

또한, 漁船員의 사고 발생시 共濟金에 의하여 遺族에 대한 補償이 가

<表 85>

船員共濟料 國庫補助金 支援實績

單位：名, 百萬元

| | '90 | '91 | '92 | '93 | '93/'92 |
|-----|--------|--------|--------|--------|---------|
| 人 員 | 41,005 | 36,302 | 32,404 | 31,409 | 97% |
| 補助額 | 1.152 | 1.257 | 1.277 | 1.269 | 99 |

資料：수산청 협동조합과

능하도록 공제가입을 촉진하고자 船主가 부담하는 공제료중 30톤미만의 소형어선에 대하여는 최고 50%까지 補助하여 '93년에 총 31,409명에 1,269백만원을 國庫에서 支援하였다.

다. 農漁業災害對策法에 의한 被害 支援

颱風, 暴雨, 海溢 등에 의한 수산피해는 風水害對策法에 의해 복구비가 지원되고 있으나, 同 法의 지원대상에서 제외된 海況變動에 의한 이상조류 현상과 적조현상 등으로 발생한 養殖物 被害에 대하여는 政府가 被害復舊費를 지원할 수 있는 制度가 없어 피해 발생시에는 營漁資金 상환 연기 및 이자 감면 등 間接支援에 의존하므로서 양식 어민들의 어려움이 많았다.

이러한 問題點을 개선하여 養殖 被害漁民의 負擔을 輕減하고 경영안정을 도모하고자 정부에서는 '90. 8.1 農業災害對策法을 農漁業災害對策法으로 개정하고 이상조류 및 적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한 수산양식물 피해 복구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制度를 보강하였다.

이와 같은 制度는 정부가 어려운 養殖漁民을 지원하기 위한 획기적인 방안의 하나로서 국가 지원범위는 市·郡別로 3億원 이상의 被害가 발생될 경우 漁家別 피해정도와 양식규모 및 경영형태에 따라 種苗代와 죽은 養殖物 撤去費, 영어자금 상환연기 및 이자감면, 중·고등학생 학자금 면제 등을 國庫에서 지원토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93. 8. ~10月 경남지방에서 발생한 굴 및 어류 적조피해에 대하여 총 복구비 17億원중 國庫와 地方費에서 12億원을 지원하였으며 피해어민들의 생계안정을 위하여 이미 貸出받은 營漁資金에 대한 이자감면 280百萬元 및 중·고등학생 學資金 10百萬元을 지원함으로써 피해어민들의 어려움을 解消하고 安定的인 養殖漁業을 경영할 수 있도록

하였다.

3. 水産關聯 稅制支援

가. 漁業用機資材 附加價値稅 零稅率 適用

어민이 사용하는 어업용 기자재중 어망, 부자 및 集魚燈 등 13개 품목만 '89년부터 租稅減免規制法에 의하여 부자가치세에 대한 零稅率의 적용을 받아 왔으나 '92. 3. 1부터 20톤 미만의 어선 및 선박용 무전기 추가 적용, 15개 품목으로 확대되어 '93년에는 약 214억원의 租稅負擔 輕減效果를 거두어 어업생산성 향상과 수산업 활성화에 기여하였다.

〈表 86〉 附加價値稅 零稅率 適用 機資材 品目

| | | | | | | |
|-------|-------|--------|----------|-----------------------------|---------------------------------------|-----------------------|
| 1. 어망 | 2. 부자 | 3. 집어등 | 4. 자동조상기 | 5. 양망기 | 6. 양송기 | 7. 통발 |
| 8. 초호 | 9. 낚시 | 10. 연승 | 11. 발장 | 12. 해너용 잠수복, 잠수복지, 물안경 및 태와 | 13. 폴리에틸렌로프 및 폴리프로필렌로프(양식어업 또는 정지어업용) | 14. 총톤수 20톤미만의 어업용 선박 |
| | | | | | | 15. 선박용 무전기 |

資料 : 수산청 어정과

나. 標準 所得率 引下

정부에서는 '93년도에 발생한 소득에 대한 所得稅 부과시 적용할 표준소득을 조정에 있어 유자망, 안강망, 선망, 트롤, 저인망 등의 23개 業種에 대한 표준소득율을 5~20% 引下함으로써 18억원(推定)의 所得稅 輕減效果를 가져와 어업경영 개선에 이바지하였다.

〈表 87〉 '93年 水産業分野 歸屬 標準所得率 調整内譯

| | '92年 基本率 | '93年 基本率 | 引 下 幅 |
|--------------------|----------|----------|-------|
| 底 引 網 | 4.9 | 4.6 | 5% |
| 流 刺 網 | 4.4 | 4.1 | " |
| 鮫 鱈 網 | 5.3 | 5.0 | " |
| 旋 網 | 6.0 | 5.4 | 10% |
| 트 룰 | 7.3 | 6.5 | " |
| 통 말 漁業 | 5.3 | 5.0 | " |
| 船 引 網 | 5.4 | 5.1 | 5% |
| 貝類(撒布式) | 5.4 | 5.1 | " |
| 채 낚 기 | 5.7 | 5.4 | " |
| 延 繩 | 4.2 | 3.9 | " |
| 정치망(大型) | 5.2 | 4.9 | " |
| 정치망(小型) | 4.2 | 3.9 | " |
| 潛 水 器 | 5.7 | 5.4 | 5% |
| 其他海面漁業 | 5.2 | 4.9 | " |
| 一般内水面漁業 | 9.5 | 7.6 | 20% |
| 貝類(投石式) | 8.5 | 7.6 | 10% |
| 貝類(수하식) | 6.0 | 5.7 | " |
| 海 藻 類 | 5.6 | 5.3 | " |
| 海面魚類養殖 | 10.0 | 8.0 | 20% |
| 水生 動植物 種苗 生産業 | 5.2 | 4.9 | 5% |
| 漁業 關 聯 서 비 스 | 5.2 | 4.9 | 5% |
| 자가포획한 魚類원시加工 | 7.6 | 6.8 | 10% |
| 매 입 魚 類 원 시 加 工 | 6.8 | 6.1 | " |

資料 : 수산청 어정과

다. 免稅油類 供給

부가가치세와 특별소비세를 면제하고 있는 漁業用 油類 供給事業은 '89년까지는 연근해 어업용 선박에만 면세유류를 공급하여 왔으나, '90년부터 내수면 어업용 선박과 裸潛漁業 從事者의 갯의실용 난방시설에도 공급한 데 이어 '91년 3월부터는 연안 어민의 숙원이었던 수산물 생산기초 시설중 수협, 어촌계 및 어민이 경영하는 김, 미역, 오징어, 멸치 건조 및 자숙시설에도 면세유류를 공급하고 있다.

특히 상대적으로 열악한 처지에 있는 낙도·벽지 小型漁船에 대한 免稅油類 供給을 꾸준히 확대하여 '93년도 전체 면세유류 공급량의 8.2%인 44만드림을 공급함으로써 정부의 租稅 受惠範圍를 오지의 어민에까지 확대하여 어민의 士氣진작과 어업경영비 절감으로 수산물 생산성 向上 및 어민 소득증대에 크게 이바지하였다.

<表 88>

免稅油類 供給實績

單位：千드림

| | '91 | '92(A) | '93(B) | B/A |
|--------------|--------|--------|--------|--------|
| 計 | 4,690 | 5,082 | 5,345 | 105.2% |
| 輕 油 | 4,143 | 4,523 | 4,694 | 103.8 |
| 경 질 중 유 | 474 | 490 | 562 | 114.7 |
| 중 유 | 19 | 5 | 14 | 280.0 |
| 휘 발 유 | 20 | 33 | 44 | 133.3 |
| 其 他 | 34 | 31 | 31 | 100.0 |
| 漁民負擔輕減額(百萬원) | 41,885 | 47,442 | 53,146 | 112.0% |

資料：수산청 어정과

4. 水産團體 育成

가. 水産業協同組合

1) 組織

水産業協同組合法이 '88.12.31 法律 第4084號로 改正됨에 따라 水産業協同組合長을 조합원중에서 조합원이 直接 選出토록 하여 '93년도에는 83개 조합장에서 33개 조합에서 민선 2기 組合長을 선출하였으며 '94년도에는 45개 조합에서 組合長을 선출할 계획으로 있어 실질적인 조합의 운영에 조합원이 직접 참여케 함으로써 개방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자율성과 민주성을 보장하여 수산업의 생산력 증진과 漁家所得 增大에 이바지할 수 있는 단체로 육성하고 있다.

'93年度에는 海水魚類 養殖業者들이 經濟的, 社會的 利益을 向上시키고 生産力의 增強을 圖謀할 목적으로 海水魚類養殖수산업협동조합을 '93. 2.20 水産廳長의 認可를 得하여 설립함으로써 수협조직은 중앙회와 83개 조합(지구별 조합 65, 업종별 조합 16, 수산물제조 조합2)으로 되어 있다.

〈表 89〉

水協의 組織

單位：個所, 千名

| | '90 | '91 | '92 | '93 |
|---------|-------|-------|-------|-------|
| 水協 中央會 | 1 | 1 | 1 | 1 |
| 會 員 組 織 | 78 | 81 | 82 | 84 |
| - 地 區 別 | 62 | 65 | 65 | 65 |
| - 業 種 別 | 14 | 14 | 15 | 15 |
| - 水産物製造 | 2 | 2 | 2 | 2 |
| 組 合 員 | 137.3 | 149.8 | 156.7 | 158.7 |

資料：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2) 運營

(가) 事業規模

'93年度 水協의 총 사업규모는 76,803억원(중앙회 30,452억원, 회원조합 46,351억원)으로 前年에 비하여 13,692억원이 증가한 22%의 成長 趨勢를 記錄하였는 바, 이는 주로 販賣, 相互金融, 信用事業 등이 꾸준히 신장되고 있는데 기인하고 있다.

<表 90>

水協 事業規模

單位 : 億원

| 區 分 | '90 | '91 | '92 | '93 | '93/'92 |
|---------|---------|--------|--------|--------|---------|
| 計 | 204,886 | 51,013 | 63,111 | 76,803 | 122% |
| 中 央 會 | 195,301 | 20,214 | 24,873 | 30,452 | 122 |
| 會 員 組 合 | 9,585 | 30,799 | 38,238 | 46,351 | 121 |

資料 :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나) 收支現況

'93년도 水協中央會의 사업수익은 전년에 비하여 53,285백만원이 增加한 671,466백만원이었으며, 事業費用은 54,140백만원이 增加한 671,358백만원으로 138백만원의 剩餘를 기록하였다.

한편 會員組合은 地區別水協의 경우 위판수수료와 대출이자 수입이 주된 수입원으로 收益은 전년 대비 152,551백만원이 增加한 625,070백만원이며, 費用은 대부분이 借入金 利子 지불, 事業 管理費 등으로 '92년보다 154,044백만원이 增加한 616,624백만원으로 8,446백만원의 剩餘를 보였다.

〈表 91〉 水協中央會 收支狀況 單位：百萬圓

| 區分 | '90 | '91 | '92 | '93 | '93/'92 |
|----|---------|---------|---------|---------|---------|
| 收益 | 406.264 | 506.016 | 618.181 | 671.466 | 109% |
| 費用 | 413.642 | 504.994 | 617.188 | 671.328 | 109 |
| 剩餘 | △7.378 | 1.025 | 993 | 138 | |

資料：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表 92〉 會員組合 收支狀況 單位：百萬圓

| 區分 | '90 | '91 | '92 | '93 | '93/'92 |
|----|---------|---------|---------|---------|---------|
| 收益 | 297.678 | 456.599 | 472.519 | 625.070 | 132% |
| 費用 | 285.468 | 446.660 | 462.580 | 616.624 | 133 |
| 剩餘 | 12.210 | 9.939 | 9.939 | 8.446 | |

資料：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다) 出資金 造成

水協 自立基盤 確立의 基礎가 되는 '93 出資金은 水協中央會가 '92 年 대비 14% 增加한 17,550백만원을 擴大 造成하였으며, 會員組合은 '92년도에 비해 15%가 증가한 108,226백만원을 造成하였고 組合員에 대하여 6,117백만원(基準出資金 平殘 6%)의 出資配當을 하였다.

〈表 93〉 出資金 造成狀況 單位：百萬圓

| | '90 | '91 | '92 | '93 | '93/'92 |
|----------|--------|--------|---------|---------|---------|
| 計 | 77.614 | 95.070 | 109.514 | 126.776 | 115% |
| 水協中央會 | 12.935 | 13.737 | 15.347 | 17.550 | 114 |
| 會員組合 | 64.679 | 81.333 | 94.167 | 108.226 | 115 |
| - 地區別 | 53.863 | 68.261 | 78.746 | 90.520 | 115 |
| - 業種·製造別 | 10.816 | 13.072 | 15.421 | 17.706 | 115 |

資料：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나. 水産物 輸出團體

수산물 수출단체는 對外貿易法에 의하여 설립된 韓國水産物輸出組合과 생산자 단체이면서 수출단체로서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한국원양어업협회, 한국내수면어업협회, 대한어망공업협회 등 5個 團體가 있다.

〈表 94〉 水産物 輸出團體 現況

| 團體名 | 法律根據 | 認可者 (認可日) | 輸出推薦品目 |
|----------------|-----------------|------------------------|---------------------------------|
| 韓國水産物 輸出組合 | 對外貿易法 第 55 條 | 商工部長官 ('86. 5. 1) | 活·鮮·冷凍魚類, 軟體動物, 간미역 등(30個品目) |
| 水産業協同 組合中央會 | 水産業協同 組合法 | 水産廳長 | 굴 통조림(1個品目) |
| 韓國遠洋漁業 協會 | 民法 第32條 | 水産廳長 ('64. 4. 1) | 냉동참치류(4個品目) |
| 韓國內水面 漁業協會 | 民法 第32條 | 水産廳長 ('70. 4. 15) | 활범장어(1個品目) |
| 大韓漁網工業 協會 | 民法 第32條 | 水産廳長 ('66. 3. 31) | 망 및 끈류(11個品目) |

資料 : 수산청 무역과

註 : 수출추천 품목수는 HS분류 (10단위)에 의함

이들 水産物 輸出團體는 대외무역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輸出入 公告에서 위임받은 수출 대상품목의 수출추천 업무를 관장함으로써 해당품목의 수출증대에 기여하고 있고, 그의 수출질서의 유지 및 회원사에 대한 수출지원 자금의 배정 등 會員 共同利益 증진을 위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다. 水産關聯 非營利法人

水産關聯 非營利法人은 大韓漁網工業協會 등 22개 단체가 있는데,

(表 95) 水産關聯 非營利法人 現況

| 法人名 | 設立日 | 代表者 | 住 所 地 |
|---------------|-------------|-----|-----------------------------------|
| 大韓漁網工業協會 | '55. 7. 18 | 장태성 | 서울 강남 삼성동 159(무역회관) |
| 韓國遠洋漁業協會 | '64. 6. 3 | 왕기용 | 서울 서초 양재 275-1 (삼호물산빌딩 A동 6층) |
| 大韓冷凍協會 | '65. 2. 22 | 남필원 | 부산 서구 남부인동 693-4 |
| 韓國水産會 | '65. 11. 16 | 박후근 | 서울 중구 종로동 355(대왕빌딩) 630 |
| 韓國漁船通信士協會 | '67. 8. 3 | 전재홍 | 부산 서구 남부인3동 151-22 |
| 韓國內水面漁業協會 | '70. 4. 15 | 국기일 | 서울 마포 성산동 572-107 |
| 韓國水産冷凍搬船協會 | '77. 10. 19 | 김수봉 | 부산 중구 중앙동 3가 12-3 |
| 全國남시회聯合會 | '81. 2. 5 | 최지영 | 서울 종로 인의동 57 1 광명B/D 5층 |
| 韓國미역加工協會 | '81. 10. 15 | 박종일 | 전남 함도군 관도읍 군내리 365-25 |
| 水 友 會 | '83. 11. 8 | 김명년 | 서울 마포 공덕동 404풍림빌딩 1608호 |
| 韓國水産技術研究院 | '87. 3. 13 | 김대준 | 부산 영도 대림동 1가 23 |
| 韓國遠洋오징어漁網漁業協會 | '88. 10. 11 | 양충도 | 부산 중구 남포동 6가 55 |
| 全國水産物仲買業協會 | '89. 7. 21 | 최경석 | 서울 마포 합정동 386-8 |
| 韓國水産物容器協會 | '90. 9. 5 | 한충부 | 부산 서구 남부인동 691-3 |
| 機船船引網協會 | '91. 6. 12 | 정삼희 | 전남 여수 남산동 4면지 |
| 全國漁民後繼者協議會 | '91. 10. 22 | 김성룡 | 서울 동작 노량진동 138(노량진수산시장) |
| 濟州道陸水槽式넙치養殖協會 | '92. 6. 26 | 강천종 | 제주 연동 301-1(건설공제조합 1층) |
| 全國觀賞魚振興協會 | '92. 10. 9 | 김형열 | 서울 종로구 승인동 241-4 (경일B/D) 304호) |
| 韓國남시業中央會 | '93. 11. 15 | 서장용 | 경기 수원시 장안구 영화동 350-1 (보훈회관 3층) |
| 韓國水産經營學會 | '93. 11. 16 | 장수호 | 부산 남구 대연3동 599-1 부산수대내 |
| 韓國水産物乾燥入協議會 | '94. 4. 27 | 오무영 | 강원도 삼척시 정하동 41-186 |
| 水産研究재단 | '88. 8. 20 | 박병하 | 경남 양산군 기장읍 시랑리 (국립수산진흥원내) |

資料 : 수산청 법무담당관실

'93년 이후 신규 설립한 법인은 3개 단계로서 낚시터 施設 向上과 經營 改善의 연구개발로 낚시인들의 편익증진과 낚시업 育成·發展을 위한 한국낚시업중앙회가 '93.11.15일, 水産業의 生産·流通·販賣·輸出入 등 수산경영 전반에 관한 이론과 응용에 관한 연구 및 이의 보급, 水産政策 수립에 대한 건의를 목적으로 韓國水産經營學會가 '93.11.16일, 會員의 자주적 협동으로 수산물 품질 고급화와 가공 수산물의 원활한 유통으로 漁民 所得增大에 기여하고 회원 상호간의 共同利益 증진 도모를 위한 韓國水産物乾燥人協會가 '94.4.27일에 각각 설립되었다.

第 2 節 行政規制 緩和

정부가 「신경제」 7대 과제으로써 추진하고 있는 “行政規制 緩和”을 위하여 水産廳에서는 현재 시행중인 각종 법령 및 규정 등에서 정하고 있는 規制事項 전반에 대하여 규제완화와 필요성을 심도있게 검토하여 行政 便宜의인 규제사항과 기득권 보호를 위한 인·허가사항, 규제의 필요성은 인정되나 그 수준이 현실과 괴리된 사항 및 一線機關의 行態 또는 관행에 의한 規制事項 등은 과감히 철폐하거나 그 기준을 대폭 緩和하기 위하여 改善 작업을 推進하였다.

經濟行政 規制緩和 대상과제로 水産技術者 고용의무 폐지, 漁船檢査 免除범위 擴大 등 22件을 발굴하고 行政刷新 대상과제로 遠洋漁獲物의 國內揚陸時 轉續許可제도를 신고제로 개선하는 등 35件을 發掘하였으며, 그 중 輸出水産物 義務檢査 廢止 등 경제행정 규제완화 과제 8件과 漁獲物 전적 許可制度 改善 등 행정쇄신과제 18件을 조치 완료하였으며 추진중인 과제도 조속히 개선 完了 施行할 계획이며, 앞으로도 漁民의

창의성과 자율성을 제고하고 漁業을 하고자 할 때 현실과 괴리되었거나 부조리의 개연성이 있는 인·허가 사무 등 전 분야에서 새로운 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 改善할 계획이다.

〈表 96〉 規制緩和 推進狀況

| | 計 | 完 了 | 推 進 中 |
|----------|-----|-----|-------|
| 計 | 57건 | 26 | 31 |
| 經濟行政規制緩和 | 22 | 8 | 14 |
| 行政刷新 | 35 | 18 | 17 |

資料 : 수산청 행정관리담당관실

註 : '93. 12末 現在

한편 경제행정 규제완화 및 행정쇄신 과제중 주요 개선내용을 살펴보면

○ 水産動植物 漁獲·採取 禁止期間 및 捕獲禁止體長 조정

'93.6.19일자로 수산자원보호령을 개정하여 붕장어 등 4개 품종에 대한 포획·채취 금지기간 또는 금지체장을 조정하여 '93.10.20일부터 시행

○ 內水面 種苗採捕 漁業許可 對象者 擴大

'93.12.31일자로 내수면어업 개발촉진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양식어업을 위한 면허를 받았거나 신고한 자 또는 양식용 종묘를 채포하여 양식어업자에게 공급하고자 하는 자로 확대

○ 漁港區域內 活魚保管用 가두리 設置 許容

'93.4.29일자로 수협(어촌계)의 활어 위판 보관사업에 한하여 가두리 설치를 허용토록 개선

○ 漁船建造·改造發注 許可事項 變更許可

‘93.6.11일자로 어선법을 개정하여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변경허가를 생략토록 개선

○ 漁獲物 轉讓許可制度 改善

‘93.6.19일자로 수산자원보호령을 개정하여 원양어획물 전적허가제를 신고제로 개선하여 ‘93.10.20일부터 시행

○ 漁港 基本調査時 住民意見 收斂

‘93.6.11일자로 어항법을 개정하여 어항 기본조사시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시설계획을 수립하도록 개선하여 ‘93.12.11일부터 시행

○ 漁船의 新·舊 톤수 一元化

‘93.6.11일자로 어선법을 개정하여 어민의 편의도모를 위하여 신청시 기존어선을 신통수로 측정하여 변경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여 ‘93.12.11일부터 시행

○ 內水面漁業 許可 權限 委任

‘93.12.31일자로 내수면어업 개발촉진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시·도지사가 처분하고 있는 중요채포 어업허가 권한을 시장·군수가 처분하도록 권한 위임

○ 水産物 運搬船에 대한 運送貨物 制限 緩和

‘93.7.1일자로 수산물 운반선 외항운송사업 면허처분 요령을 개정하여 수산물 운반선에 대한 운송화물을 농축산물도 가능토록 완화

○ 漁船 登錄時 身元調査 廢止

‘93.11.9일자로 어선등록 사무취급요령을 개정, 종전의 어선 신규등록시와 소유자 변경시 신원조사를 실시하던 것을 전 어선에 대하여 소유자 신원조사를 폐지

여백

第 3 編

1994年度 水 産 施 策

여백

第 1 章 基本 方向

第 1 節 水産業의 與件 變化

우리나라 水産業은 '60년대에는 漁撈手段, 장비·기술 낙후 등으로 연안 採捕漁業이 주된 어업형태이었으나, '70년대에 들어와 양식기술 및 漁具·漁法の 발전과 遠洋漁業의 신장세에 힘입어 비약적인 성장을 하였다.

'80년대에는 이러한 성장과 발전을 토대로 안정적인 성장을 거듭하여 우리나라는 세계 先進 수산국으로 발전하였으며, 수산업은 국민들이 섭취하고 있는 動物性 단백질의 절반가량을 공급하는 食糧 및 健康 식품산업으로 국가경제에 크게 이바지 하고 있다.

그러나 '90년대에 들어와 國內外 漁業環境은 급변하고 있다. 埋立·干拓과 産業化에 의한 沿岸漁場 축소 및 沿岸汚染의 심화, 무분별한 水産資源의 남획 등으로 水産資源은 날로 減少되고 있는 추세에 있으며 세계 沿岸國의 操業 規制 및 入漁조건 악화로 遠洋漁業도 매우 어려운 처지에 놓여 있는 실정이다. 한편 漁民의 소득은 도시 근로자 가계소득의 81.4%, 農家所得에 비하여는 85.3%에 불과하고 漁村의 生

活環境도 매우 열악하여 어민들은 타부문 従事者에 비해 소외되고 있다는 인식이 擴散되고 있고 漁村을 떠나는 현상이 계속되고 있다.

한편 國際的으로는 '93년말 UR협상의 타결로 외국의 輸入開放 압력은 더욱 가속화 되고 있고, '94.11월에는 UN해양법의 발효로 國際海洋秩序 또한 크게 변화될 展望이다.

이와 같은 國·내외 興件 變化로 많은 어려움이 있으나 우리나라 水産業은 水産食糧의 안정적 供給, 소득·고용기회 提供, 해양환경 보전, 漁村지역의 균형 발전 및 국가 해양력 증대라는 국가적 役割을 持續적으로 담당해야 한다는 점을 감안할 때, 國·내외적으로 어려운 漁業 현실과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극복하기 위한 多角的인 對應方案이 절실히 요청되고 있다.

第 2 節 重點 推進施策

水産業을 국가적 食糧供給 산업으로 발전시켜 안정적인 생산체제를 구축하고, 漁民들의 生活 空間인 漁村의 定住環境을 改善하기 위하여 바다에 대해서는 풍요로운 水産資源이 서식하는 곳으로 造成하여 漁民들의 生活터전으로 가꾸고, 漁民에 대해서는 자율적인 秩序 維持 및 漁業 經營의 주체로 육성하며, 漁村에 대해서는 1, 2, 3차 産業이 共存하는 쾌적한 生活環境 空間으로 발전시키고, 遠洋어업에 대해서는 國際協力 강화를 통한 어장확보 등으로 水産物을 안정적으로 확보·공급토록 하여 경쟁력있는 先進水産業으로 발전시킨다는 정책방향하에 水産施策을 다음과 같이 설정·적극 推進하고 있다.

展 望

- 生 産 : 321萬M/T
- 輸 出 : 16億\$

指 標

- ◇ 『깨끗한 바다』 環境 保全
- ◇ 『풍요로운 資源』 造成
- ◇ 『秩序있고 競爭力있는 漁業』 으로 育成
- ◇ 『잘사는 漁村』 建設

重點 推進 施策

1. 풍요로운 資源造成을 위한 「바다 淨化와 기르는 漁業 育成」
2. 競爭力 培養을 위한 「漁業 構造調整과 秩序 確立」
3. 漁村 活性化를 위한 「漁村 綜合開發과 漁業基盤施設 擴充」
4. 國際化에 대비한 「水産物 流通改善과 加工産業 育成」
5. 海外資源의 安定적 확보를 위한 「遠洋漁業의 育成」
6. 生産性 향상을 위한 「水産 技術開發」
7. 漁民 참여 擴大를 위한 「支援體制 整備와 制度 改善」

第 3 節 投融資 規模

1. 水産部門 豫算

‘94년 수산부문의 총 예산액은 4,288억원으로서 ‘93년의 3,676억원에 비해 16.7%가 증가된 규모이며, 정부 총 예산의 0.8%, 農林水産豫算의 6.0%를 차지하고 있다.

〈表 97〉 ‘94 水産豫算

○ 會計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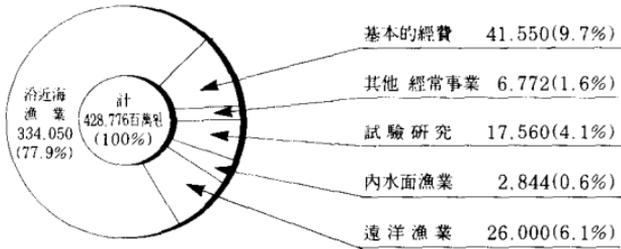
單位：百萬元

| | ‘93 豫算 | ‘94 豫算 | 增△減 | % |
|-------------|---------|---------|--------|------|
| · 般 會 計 | 208,521 | 223,574 | 15,053 | 7.2 |
| 財 特 會 計 | 83,480 | 99,200 | 15,720 | 18.8 |
| 農 特 會 計 | 75,565 | 106,002 | 30,437 | 40.3 |
| 計 | 367,566 | 428,776 | 61,210 | 16.7 |
| 事 業 費 | 331,371 | 387,226 | 55,855 | 16.9 |
| · 基 本 的 經 費 | 36,195 | 41,550 | 5,355 | 14.8 |
| · 人 件 費 | 25,125 | 28,180 | 3,055 | 12.2 |
| · 基 準 經 費 | 10,149 | 11,845 | 1,696 | 16.7 |
| · 官 署 運 營 費 | 921 | 1,525 | 604 | 65.6 |

資料：수산청 기획예산담당관실

註：‘93 農特會計에는 農發基金(融資) 71,580百萬元 포함

○ 分野別



○ 事業別

單位：百萬円

| | '93 豫算 | '94 豫算 | 增△減 | % |
|-------------------|---------|---------|---------|-------|
| 計 | 367,566 | 428,776 | 61,210 | 16.7 |
| 1. 事業費 | 331,371 | 387,226 | 55,855 | 16.9 |
| ○ 漁場環境改善 | 6,741 | 10,203 | 3,462 | 51.4 |
| ○ 水産資源造成 | 37,503 | 45,041 | 7,538 | 20.1 |
| ○ 漁業秩序確立 及 安全操業指導 | 15,932 | 13,163 | △2,769 | △17.4 |
| ○ 漁港建設 | 56,641 | 78,459 | 21,818 | 38.5 |
| ○ 漁撈施設 | 29,168 | 36,760 | 7,592 | 26.0 |
| ○ 水産物流通施設 | 24,167 | 21,184 | △2,983 | △12.3 |
| ○ 遠洋漁業育成 | 53,480 | 26,000 | △27,480 | △51.4 |
| ○ 漁民負擔輕減 | 79,809 | 120,596 | 40,787 | 51.1 |
| ○ 漁村綜合開發 | 5,003 | 11,488 | 6,485 | 129.6 |
| ○ 試驗研究 及 技術普及 | 15,985 | 17,560 | 1,575 | 9.9 |
| ○ 其他經常事業 | 6,942 | 6,772 | △170 | △2.4 |
| 2. 基本的經費 | 36,195 | 41,550 | 5,355 | 14.8 |

資料：수산청 기획예산담당관실

2. 各種 水産資金 支援

政府豫算外에도 어업경영 및 수산물 가격안정을 위해 營漁資金, 농수산물 가격 안정기금 등 각종 수산자금을 前年에 비해 387억원이 늘어난 11,184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表 98〉

'94 水産資金 支援計劃

單位：億원

| | | '93 | '94 計劃 | 增△減 |
|-------------|------------------|--------|--------|-----|
| 資 金 別 | 營 漁 資 金 | 7,000 | 7,000 | 0 |
| | 水産 振興 財政 資金 | 55 | 40 | △15 |
| | 農漁村構造改善事業計定 | 916 | 987 | 71 |
| | 海外 資源 生産 資金 | 450 | 700 | 250 |
| | 農水産物 價格 安定 基金 | 2,376 | 2,457 | 81 |
| 計 | | 10,797 | 11,184 | 387 |
| 運 | 運 營 資 金 | 10,016 | 10,360 | 344 |
| | · 沿 近 海 漁 業 | 6,000 | 6,000 | 0 |
| | · 遠 洋 漁 業 | 1,450 | 1,700 | 250 |
| | · 水産物 流通, 製造業 | 190 | 203 | 13 |
| 用 | · 價 格 安 定 | 2,376 | 2,457 | 81 |
| | 施 設 資 金 | 781 | 824 | 43 |
| | · 漁 撈 施 設 | 280 | 354 | 74 |
| | · 水産物 流通, 製造施設 등 | 501 | 470 | △31 |

資料：수산청 협동조합과

第 2 章 바다 淨化와 기르는 漁業 育成

第 1 節 沿岸漁場 淨化

沿岸 共同漁場, 養殖漁場을 중심으로 어장 저질개선, 각종 오폐물 수거, 害敵生物을 구제하여 오염으로 인한 어장피해를 줄이고 沿岸漁場의 생산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94년도에는 4,140백만원의 국비를 지원하여 26천ha의 沿岸漁場을 淨化하고, 국비 4,934백만원을 투입하여 어장 淨化船 2선단 9척을 건조하여 시·도로 이관·운영하게 하여 汚染 尤甚漁場에 대한 바닥갈이, 오폐물 수거작업에 투입할 계획이며, 어항 내의 장애물 제거와 環境 保수를 위한 事業으로 금년에도 국비 1,129백만원을 投入, 漁港 청소선 3척을 건조·운영할 계획이다.

第 2 節 沿岸漁場 汚染 防止

沿岸 水産資源의 안정적 보호·육성 관리를 위하여 主要 沿岸 및 臨海 工團 주변수역 205개지점, 水産資源保全地區 144개 지점을 선정하여

水質汚染 조사를 실시하는 한편, 淸淨海域에 대해서도 168개 관측점을 선정, 海水 및 貝類에 대한 衛生調査를 실시하여 오염방지 기초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며, 전국 10개 해역에 지정된 水産資源保全地區의 공유수면 매립·간척, 광물채굴 등의 행위를 강력히 억제하는 한편, 보전지구 주변에 대해서도 관리를 강화하여 保全地區의 淸淨度 維持는 물론, 어장의 생산성을 提高시켜 나갈 계획이다.

한편, 環境處 등 유관부처와 협조하여 沿岸漁場 汚染源인 폐수, 폐기물, 기름 등의 해양유입 방지를 위하여 臨海都市의 하수 및 분뇨, 공단 폐수 등 각종 오염물질 淨化 처리시설을 확충하고, 汚染物質의 해양 투기행위를 강력히 규제·단속토록 하며, 바다 살리기 운동의 일환으로 매월 첫째주 토요일과 15일(2회)을 바다 청소의 날로 정하고, 어민의 自律的인 바다 淸掃를 유도하여 沿岸漁場이 淸淨하게 보전될 수 있도록 하고 바다 가꾸기 운동이 범국민 운동으로 擴散·普及되기 위하여 '94. 6. 17일에는 제1회 풍요로운 바다 가꾸기 대회를 開催하여 국민적 관심을 드높였으며, 앞으로도 漁民·團體, 政府가 다같이 참여하는 自律的인 環境保全 운동으로 승화되도록 持續的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第 3 節 水産資源 造成

1. 人工魚礁施設

연근해 수산생물의 産卵, 棲息場을 조성하기 위하여 '94년에는 33, 066百萬원을 투자, 9個 市·道의 시설적지 13.2千헥타에 人工魚礁를 시설하고 既施設한 海域 중 8개소에 대하여 漁獲 效果和 魚礁의 保存狀態

〈表 99〉

人工魚礁 施設計劃

單位 : ha

| | 既施設('71~'93) | '94 計 劃 | 總施設('71~'94) |
|-----|--------------|---------|--------------|
| 計 | 78,822 | 13,200 | 92,022 |
| 釜 山 | 683 | 100 | 783 |
| 京 畿 | 2,587 | 600 | 3,187 |
| 江 原 | 11,973 | 1,400 | 13,373 |
| 忠 南 | 3,678 | 1,400 | 5,078 |
| 全 北 | 3,103 | 900 | 4,003 |
| 全 南 | 16,341 | 2,400 | 18,741 |
| 慶 北 | 12,328 | 1,400 | 13,728 |
| 慶 南 | 18,283 | 2,400 | 20,683 |
| 濟 州 | 9,846 | 2,600 | 12,446 |

資料 : 수산청 자원조사과

를 조사하며, 各 水域 및 魚種에 적합한 어초를 개발하고자 시험연구를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2. 種苗培養場 施設 및 生産放流

'92~'95까지 시설을 추진중에 있는 충남 태안의 水産種苗培養場은 年間 2,000萬마리의 種苗생산 能力을 갖춘 대규모 배양장으로 施設하기 위하여 數地 買入 및 沿岸 墾壁施設 등 基礎施設을 완료하였으며, 육상건축 공사를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94년도부터 지역여건과 특성에 적합한 품종을 대량생산 방류할 수 있도록 전라남도에 2개년 사업으로 연간 2,000만마리의 생산능력 을 갖춘 대규모 도립종묘배양장 시설을 지원할 계획이다.

그리고 기존의 種苗培養場도 각 지역 특성과 여건에 적합한 魚類 및

甲殻類 등을 생산하기 위하여 시설보강비 2,202百萬원을 투자하여 有用種苗 68백만마리를 생산 어촌계 및 양식어민 등에게 分讓하고 연안에 방류할 계획이다.

또한 연안어장 자원 조성의 가속화와 資源造成의 민간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94년에 165百萬원을 투자하여 민간 종묘배양장에서 생산한 水産種苗 26백만마리를 買入, 연안어장에 방류할 계획이다.

(表 100)

培養場別 種苗生産計劃

單位 : 千마리, 千貝, 千알

| 品種別 | 計 | 正文津 | 保寧 | 扶安 | 莞島 | 麗川 | 迎日 | 巨濟 | 南海 | 北濟州 | 南濟州 | 蔚珍 |
|----------|--------|-----|--------|--------|-----|-------|-----|--------|-------|-----|--------|-------|
| 計 | 68,000 | 500 | 10,400 | 11,200 | 600 | 1,500 | 600 | 16,300 | 6,200 | 700 | 18,600 | 1,400 |
| 넙치 | 600 | | | | | | | 200 | 100 | | 200 | 100 |
| 참돔 | 300 | | | | | 100 | | | | | 200 | |
| 감성돔 | 200 | | | | | 200 | | | | | | |
| 돌돔 | 200 | | | | | | | | | | 200 | |
| 조피볼락 | 200 | | | 100 | 100 | | | | | | | |
| 은어 | 1,000 | | | | | | | | | | | 1,000 |
| 송어 | 300 | | 100 | | 200 | | | | | | | |
| 농어 | 100 | | | | 100 | | | | | | | |
| 전복 | 1,800 | 200 | 100 | 100 | 200 | 200 | 100 | 100 | 100 | 400 | | 200 |
| 소라 | 100 | | | | | | | | | | 100 | |
| 진주조개 | 2,000 | | | | | | | | 2,000 | | | |
| 오분자기 | 200 | | | | | | | | | 200 | | |
| 과조개 | 1,000 | | | | | | | | 1,000 | | | |
| 보리새우 | 6,000 | | | | | | | 6,000 | | | | |
| 대하 | 23,000 | | 10,000 | 10,000 | | | | | 3,000 | | | |
| 꽃게 | 2,000 | | | 1,000 | | 1,000 | | | | | | |
| 참게 | 300 | | 200 | | | | | | | | | 100 |
| 해삼 | 200 | 100 | | | | | 100 | | | | | |
| 보라성게 | 300 | | | | | | 300 | | | | | |
| 복족말뚝성게 | 200 | 200 | | | | | | | | | | |
| 수정란 (넙치) | 28,000 | | | | | | | 10,000 | | | 18,000 | |

資料 : 수산청 자원조성과

第 4 節 養殖漁場 開發·整備

1. 漁場 開發

‘94년도의 漁場開發은 改正 水產業法에 의거 水面의 綜合的 利用開發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신규 어장의 개발보다는 기존 어장의 生産性 및 品質의 향상과 어업질서 확립에 주력하고 있다.

‘94년도부터 양식어장 개발은 地先 多數漁民의 所得源 확보 위주로 개발하고 기존어장의 漁場與件 변화로 계속 양식이 곤란할 때에는 外延 漁場으로 代替 開發하거나, 養殖 適正 品種으로 변경 개발 하는 등 어장을 效率的으로 利用토록 하므로써 양식 수산물의 適正生産이 될 수 있도록 하며 水産物 輸入自由化에 대비하여 수출 가능성과 국제 경쟁력이 있는 品種을 중점 개발하고 김, 미역, 톳, 굴, 피조개 등과 같이 수급, 가격 등 요인으로 생산조절이 필요한 品種에 대하여는 全國單位로 어장 개발 및 생산을 조절해 나갈 계획이다.

그러나, 어민후계자 육성 측면에서 漁民後繼者가 개발코자 하는 경우와 埋立·千拓으로 축소된 어장 또는 다른 품종으로 변경된 漁場面積에 대하여는 축소, 변경된 面積만큼 신규 대체어장을 개발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2. 養殖事業 推進

‘94년도에는 양식어장 개발을 위한 總事業費 64億원을 투자하여 島

嶼, 벽지 등 저소득 어촌계의 소득원 개발을 위해 전복, 가리비 등 11ha의 漁場을 開發하고 어류양식장 13個所를 지원하는 한편 어류종묘배양장 3개소, 패류종묘배양장 1개소와 사료저장고 6개소를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漁村契 앞바다 牧場化 시범사업의 일환으로 가두리養殖 6개소를 示範漁村契에 지원키로 했다.

〈表 101〉 '94 水產養殖事業 支援計劃

單位 : 百萬元

| | 事業量 | 事業費 | 支 援 率 | 事 業 對 象 者 |
|------------|---------------|-------|--------------|-------------------|
| 計 | 361ha 29個所 | 6,379 | | |
| ○ 養殖漁場開發 | 361ha 13個所 | 2,815 | | |
| - 貝類(전복) | 1ha | 15 | 融資67%, 自擔33% | 漁村契, 自然部落, 共同事業 |
| - 가 리 비 | 10ha | 500 | 國庫21%, 地方費9% | 漁村契, 水協, 協業漁民 |
| - 魚 類 養 殖 | 13個所 | 1,300 | 融資60%, 自擔10% | 漁民 |
| - 漁場整備整理 | 350ha | 1,000 | 融資80%, 地方費2% | “ “ “ |
| ○ 漁村契가두리養殖 | 6個所 | 600 | 融資80%, 自擔20% | 漁村契 |
| ○ 養殖基礎施設 | 10個所 | 2,964 | 融資80%, 自擔20% | |
| - 魚類種苗培養場 | 3 “ | 300 | “ | 水協, 漁村契, 協業漁民, 漁民 |
| - 貝類 “ | 1 “ | 320 | “ | “ “ |
| - 飼料貯藏庫 | 6 “ | 600 | “ | “ “ |
| - 飼料製造機 | 5臺 | 75 | “ | “ “ |
| - 改良浮子 | 556千個 | 1,669 | “ | “ “ |

資料 : 수산청 증식과

3. 養殖漁場 管理·整備

養殖漁場의 효율적인 관리와 부실관리 어장 방지를 위하여 全 漁業權에 대한 精密 實態調査를 1회 이상 실시, 不實管理 漁業權은 관계 법규에 의거 정비 조치하여 어업질서를 확립하고, 養殖漁場의 단위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전국 어촌에 상주, 지도하고 있는 總 283名의 漁村指導員을 활용 적정시설 지도와 漁場豫察 강화 및 유관기관 합동 養殖漁場 評價會를 정기적으로 개최하는 한편, 漁場環境 개선을 위한 漁場 바닥 같이, 汚·廢物 수거 등 어장정화 사업을 적극 추진해 나갈 것이며, 양식어장의 재해 예방 및 복구를 위하여 災害豫防對策을 수립, 시행하는 등 철저한 漁場管理 지도 및 對漁民 홍보를 강화하는 한편 어장 생산력을 복원시키고 고품질의 수산물을 지속적으로 생산하기 위한 어장정비 정리 사업을 10억원의 사업비로 추진할 계획이다.

第 5 節 內水面漁業 開發

1. 淡水魚 集約 養殖

국제경쟁력을 강화하고 상수원 보호구역내 가두리 養殖場을 陸上으로 移設코자 淡水魚養殖場 시설자금(農發基金)을 '93년도에 2,000百萬元(10個所)을 지원하였으며, '94년도에는 2,400百萬元(12個所)을 확보하여 土產品種 및 고소득 품종 集約生産 施設을 지원함으로써 어민소득 증대 및 국민 食水源 水質保全에 기여할 계획이다.

2. 淡水魚 流通構造 改善

淡水魚 소비 저변 확대 및 유통단계 개선으로 生産者와 消費者의 보호를 위하여 淡水魚 주생산 단지화 소비 도시에 담수어 유통(直賣場)시설을 '93년도까지 3개소(1,228百萬元)에 지원하였으며, '94년도에는 2個所(1,000百萬元)를 지원하여 시설 운영케 함으로써 流通段階 축소 및 淡水魚 消費 촉진에 기여할 계획이다.

3. 淡水魚 養魚用機資材 供給

잡는 漁業에서 기르는 漁業으로의 전환 추세에 따라 정부의 능동적인 대처 및 양식 농어가 부담경감, 양식시설 기계화 촉진으로 水産物 생산 증대 및 양식 경영 개선을 위하여 機資材 등 양식장비를 구입할 수 있도록 정부의 어업용기계 반값 공급정책에 따라 '94年度부터 1,315臺(1,565百萬元)를 지원하여 水産物 수입개방에 따른 國際競爭力 강화를 도모할 계획이다.

第 3 章 漁業 構造調整과 秩序 確立

第 1 節 漁業構造 調整

1. 沿近海漁業 構造調整

연근해 어업은 어선세력의 增大에도 불구하고 어업자원 및 어업인력의 감소, 漁船 老朽化 등의 문제를 안고 있으며, 同時에 水産物 輸入 開放 擴大, 국민 水産食品 需要 증대, 漁場 縮小 및 海洋汚染 深化 등 어려운 여건 變化에 직면하고 있다. 이러한 어업의 구조적 문제와 條件 變化를 고려할 때, 向後 開放 經濟下에서 어업 경쟁력을 提高하고 지속적인 水産業 發展을 위해서는 沿近海 漁業의 全般의인 構造調整이 時急히 要請되고 있다.

또한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漁船勢力을 어업자원 수준에 적합하도록 整備하여 어선의 단위 生産性を 높이고 競爭력이 있는 어업으로 육성할 계획이며 주요 내용은

첫째, 細網을 사용하여 어린고기를 잡는 등 水産資源 감소에 영향이 큰 어업과 어업경영 상태가 악화된 어업은 정부가 보상, 어업을 폐지

토록 하거나 타 어업으로의 전업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전업토록 할 계획이며,

둘째, 漁業資源量에 비하여 어선세력이 과다한 대형 어선어업은 일본·중국 등 隣接 國家와 자원이용 공동관리 체제가 구축된 후 감축을 추진하고, 소효자금은 정부가 장기 저리 융자하되, 殘存 漁業者 相互負擔으로 하여 업계 자율적으로 감축을 추진해 나가고자 한다.

이를 위해서 정부에서는 지난 '92년도에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 어업자원, 漁業經營 實態, 어업별 適正 漁船勢力의 평가 및 어선감축 규모, 漁船·漁具의 보상기준 등에 대하여 조사 연구토록 한 바 있으며, '93년도에는 이 결과를 토대로 연근해어업 구조조정 계획을 수립하여 '94년도부터 2004년도까지 3,200억원을 투자하여 7,100여척의 연근해어선을 감축해 나갈 계획이다.

이에 따라 '94년도에는 5,752백만원의 정부예산으로 연안수역에서 어란고기를 많이 혼획하여 어업자원 보호에 지장이 크고, 수산물 수입 개방시 국제 경쟁력이 취약하며, 颱風 등에 의하여 해난사고가 많이 발생되어 어선감축이 시급한 해선망어업을 우선 감척키로 하고 감축사업을 추진중에 있다.

2. 沿岸漁業 基本調査 實施

沿近海漁場이 최근 대규모 간척·매립사업으로 축소되고 임해공단 및 도시의 각종 오폐수의 유입 등으로 漁場環境이 점차 악화되고 있고, 한정된 漁業資源에 비하여 어획 강도가 과다하여 沿近海水域에서 인접 국가와의 競爭 操業의 심화로 漁業資源이 감소되어 水産物 生産의 점차적인 둔화와 수입개방 등 興件 變化에 대응능력이 매우 취약한 실정

에 있다.

이와 같이 沿近海漁業이 당면하고 있는 국내·외 漁業與件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어업의 생산성 향상 및 國際競爭力 제고를 위하여 沿岸漁業에 대한 기본적이고 종합적인 조사가 긴요한 실정에 있음에 따라 정부에서는 '93년도 沿岸漁業 기본조사 계획을 수립, '94년도부터 '96년도까지 3년동안에 총 853백만원의 事業費를 투자하여 전국 10개 시·도의 沿岸漁業, 공동어업 및 定置網漁業의 어장이용 실태와 漁場別 생산상황, 어업경영 실태 등에 대한 조사를 실시키로 하였다.

이에 따라 '94년도에는 우선 187백만원의 豫算으로 細部調査 계획을 수립하고 조사표 및 調査裝備를 준비하고 조사요원 敎育 등을 실시한 후 6월부터 어촌 현지에서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3. 法令制度의 整備 補完

水産業法 施行令이 개정(1993.6.19)됨에 따라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事項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事項을 정하는 한편, 現行 규정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補完, 개선하기 위하여 漁業許可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 등 4개 법령을 개정하였는 바, 그 주요 改正內容은 다음과 같다.

가. 漁業許可 및 申告 등에 관한 規則

- 1) 종전에는 漁業許可를 신청하는 경우 선박국적증서, 선적증서 또는 등록필증사본을 반드시 제출하도록 되어 있었으나, 앞으로는 등록관청과 허가관청이 다른 境遇에만 提出하도록 하는 등 提出書類를 대폭 간소화하여 민원인의 便宜을 圖謀하였고,

- 2) 허가된 漁業의 제한·정지, 어선의 계류 또는 取消 處分의 措置를 취하는 경우 이의 기준을 정하여 어업허가를 받은 자에 대한 行政官廳의 자의적인 處分을 制限하였으며.
- 3) 중형 기선저인망 어업의 기관마력을 450마력에서 550마력(회전수가 1,200이하인 경우는 450마력)으로 기선선인망어업의 기관마력은 220마력에서 350마력(회전수가 1200이하인 경우는 220마력)으로 上向 調整하여 현재 생산되고 있는 機關의 마력과 일치시킴으로써 漁船의 기관 代替에 따른 漁民의 불편을 해소하였고
- 4) 앞으로 老朽漁船을 다른 漁船으로 代替하는 경우에는 노후어선을 폐기하거나 수출하도록 의무화하여 폐어선의 방치로 인한 海洋汚染을 방지하고 어항을 효율적으로 管理·利用하도록 하였으며
- 5) 종전에는 언제든지 잠수어업을 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潛水器 漁業의 야간조업을 금지하여 타인 소유의 共同漁場 및 養殖漁場의 침범을 방지함으로써 이에 따른 민원을 예방하도록 하였다.

나. 漁獲物 運搬業 許可에 관한 規則

- 1) 漁獲物 運搬을 의뢰할 수 있는 漁業에 중형기선저인망어업 등을 새로이 추가하여 어획물 운반의 편의를 도모하도록 하였고
- 2) 沿近海 漁獲物을 운반하는 운반선의 규모를 상향 조정하여 1회에 運搬할 수 있는 漁獲物의 양을 늘림으로써 漁民의 편의를 도모하였으며
- 3) 運搬業許可가 취소된 자에 대한 허가의 제한기간이 종전에는 1년이었으나 앞으로는 이를 6개월로 短縮하여 運搬業 許可가 취

소된 자에 대한 불이익을 완화하였고

- 4) 老朽된 운반선을 다른 운반선으로 代替하기 위하여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당해 노후운반선을 廢船하도록 하여 老朽漁船의 放置 또는 불법어업에의 이용을 방지하도록 하였다.

다. 水産動物 移植承認에 관한 規則

- 1) 種苗生産 어업자도 수산동식물을 이식할 수 있도록 하여 국내 養殖用 種苗의 수급 안정을 도모하고 국내 종묘의 수출로 외화 획득에 기여토록 하였고
- 2) 養殖漁業 業務가 시·도지사에서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됨에 따라 당해수면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申請書를 提出하도록 하여 민원인의 便益을 圖謀하였으며,
- 3) 水産動物의 이식시 국립수산진흥원이 檢討하여야 할 사항을 구체적으로 明示하고, 국내 養殖漁場에 병충해가 유입되는 것을 防止하기 위하여 국내로 반입·이식되는 품종에 관한 자료를 사전에 징구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 4) 국외반출 승인품목의 병충해 감염여부 검사는 신청하는 경우에만 실시하도록 하여 적기 수출로 민원인의 편익을 도모하였다.

라. 漁業免許 및 漁場管理에 관한 規則

- 1) 漁業面許 유효기간 만료전 4월부터 3월까지의 사이에 어업권자에게 연장허가를 받도록 個別通知 함으로써 신청기간 경과로 인한 어업권 소멸을 방지하여 어민 피해를 豫防할 수 있도록 하였고
- 2) 종전에는 養殖漁業의 품종이나 해조류 養殖漁業의 양식방법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새로이 면허를 받아야 하였으나, 앞으로는 漁業權의 변경허가로써 이를 가능하도록 하여 행정사무의 간소화와 漁民의 便益을 도모하였으며,

- 3) 養殖場 청방선의 기관 마력을 종전의 80마력(漁船 총톤수의 8배)이하에서 150마력이하로 擴大 調整하였으며 漁場의 規模別 어선척수는 시·도지사가 지역 실정에 맞게 정한 기준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이 척수를 정하도록 하는 등 漁場을 效率的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 4) 漁業面許 漁場의 기점과 어장구역의 표지 설치방법을 정하여 어장구역의 경계를 명확히 함으로써 漁業 紛爭 및 어장시설물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도록 하였다.

第 2 節 不法漁業 追放

毎年 漁業秩序 確立對策을 수립, 추진하여 왔으나 아직까지 漁業秩序가 정착되지 못하고 있어 이들 海上 불법행위를 追放시키기 위해 漁民의 자율적인 漁業秩序 確立을 유도하는 한편, 내무부, 법무부, 경찰청, 해양청 등 관계 부처의 협조하에 法 秩序 確立 次元에서 강력한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主要對策으로서의 漁民의 자율적인 漁業秩序 確立을 유도하기 위해 대어민 교육·홍보를 強化하고 특히 弘報效果 提高를 위하여 담화문, 표어, 포스터 및 리후렛 등을 제작, 배포하고, TV, 라디오 출연 등 다각적이고 광범위한 弘報를 전개하여 不法漁業 追放 政策이 全 漁民에게 전파되도록 할 계획이다.

不法漁業 豫防 및 再發 防止를 위하여 불법어구 제작자, 불법어구 적재 어선 및 어선표지판 미부착 漁船에 대한 육상단속을 實施하고 不法漁業者에 대한 각종 支援을 배제함과 동시에 불법어획물에 대한 委販을 徹底히 禁止시킬 계획이다.

또한 상습적 기업형 不法漁業者와 小型機船底引網漁業 등을 중점 단속하되 생계형으로서 영세규모의 不法漁業에 대하여는 단속에 앞서 계도에 주력해 나갈 계획이며, 특히 沿近海 魚·貝類의 産卵期 및 성육기(5月, 10月)에는 각 沿岸 시·도에 배치한 소형 쾌속정과 전 지도선을 총동원하여 水産廳, 시·도 합동으로 전국 일제단속을 실시하고, 평소에는 우심지역 및 虞犯 港·浦口를 중심으로 한 집중단속도 持續的으로 實施할 계획이며, 한·일 兩國間의 현안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서일본 수역 違反操業 방지를 위하여 500톤以上の 대형 指導船 2~3隻을 상시 배치하여 違反操業 豫防에 最善을 다할 계획이다.

또한 단속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水産廳, 시·도 지도선의 신조 확보 및 老朽指導船의 代替 등 지도단속 장비를 보강할 계획이다.

第 3 節 操業水域 擴張

동·서해 操業海域 擴張 및 操業規制 완화를 위하여 漁船 安全操業規則(내무부, 국방부, 농림수산부, 교통부 4부 공동부령) 및 漁船 安全操業規程(水産廳 告示)을 관계부처와 협의 개정할 계획이다.

개정을 추진중인 주요 내용은 동·서해 操業海域 확장과 강화도 주변 의 만도리 漁場의 操業期間 연장 및 出漁船의 선단편성 기준 완화 등으로 관계규정이 개정 공포될 경우 沿近海 漁民의 소득증대는 물론 일

부 漁民들의 苦情사항이 해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第 4 節 安全操業 指導

어로한계선 및 操業自制限 월선예방과 해난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 漁船의 安全操業을 도모함으로써 漁民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國家安保에 기여하고자 漁場에서의 安全操業 現場 指導, 출·입항 漁船에 대한 安全點檢 강화, 상황실 기능 보강, 有關기관과의 협조체제 강화 등을 내용으로 한 沿近海漁船 安全操業 指導 對策을 수립 추진할 계획이다.

重點 推進事項으로서는 漁民의 安全操業에 대한 의식고취를 위해 선주, 선장 등 幹部船員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고, 해난사고와 월선예방을 위해 出漁船의 감시제도 및 동·서·남·동중국해역 담당 안전조업 상황실 運營을 강화하는 한편, 대화되 오징어 漁場 出漁船의 安全操業 指導를 위하여 어선이 많이 출어하는 성어기에 북지모선을 통한 特報 迅速 傳播 및 待避 指導를 강화하고 군·경 등 有關기관과의 긴밀한 協助體制를 유지하여 월선 및 해난사고 예방과 事故漁船의 迅速한 救助體制를 確立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中國漁船의 우리측 漁業資源 保護水域 침범 불법조업 방지를 위해 '92.1.16.國務總理 지시인 「中國漁船 우리 수역 침범 단속 기본 방침」에 의거 어업자원 보호수역을 침범하는 中國漁船 발견시는 漁業 無線局 및 어업지도선 등에 즉시 신고토록 계도하고, 신고된 中國漁船에 대하여는 水産廳 指導船 및 해경 등 有關기관의 지원을 받아 추방 조치 함으로써 우리수역 漁業資源 保護와 漁民의 安全操業을 위하여 努力을 기울일 계획이다.

第 4 章 漁村 綜合開發과 漁業基盤施設 擴充

第 1 節 漁村 綜合開發

1. 漁村 綜合開發

우리 어촌은 도서 또는 벽지에 대부분 소재하고 있어 타지역보다 일상생활에 불리한 조건을 갖추고 있을 뿐만 아니라 埋立, 干拓 및 沿岸 漁場의 汚染으로 養殖漁場은 갈수록 환경이 악화되어 생산성이 저하되고, 漁船漁業의 경우 漁撈裝備의 高性能 現代化로 漁獲강도가 높아져 점차 자원이 減少되는 추세에 있다.

이에 따라 정부에서는 낙후된 漁村地域의 構造改善과 定住基盤을 確保하여 地域間, 階層間의 소득격차 해소와 均衡 發展을 위하여 어촌 종합개발사업을 추진한다.

지원대상으로는 開發 潛在力은 있으나 미개발되고, 協業能力이 있고 개발후 인근어촌에 파급효과가 기대되는 어촌이 있는 지역을 圈域으로 하여 灣을 중심으로 개발하며, 對象事業은 어선 계류시설, 해안시설, 어촌 환경시설 등 생산기반 시설과 어촌 부업시설, 수산 자원조성 등

소득원개발 사업에 대하여 지원하며, 사업주체는 市·道知事로 하고 支援率은 國庫補助 50%, 地方費 45%, 自擔 5%로 10개 圏域을 선정, 2개년동안 계속 지원한다.

〈表 102〉

'94 漁村綜合開發 推進計劃

單位：百萬元

| 圏 域 數 | 事 業 量 | | | |
|-------|--------|-------|-------|-----|
| | 計 | 國 庫 | 地 方 費 | 自 擔 |
| 10 | 13,170 | 6,585 | 5,926 | 659 |

資料：수산청 협동조합과

2. 漁民福祉會館 建立

'89년 이후 추진한 漁民福祉會館 建立은 어민들의 긍정적인 반응과 호응속에 꾸준히 추진되고 있으며 '94년도에도 어민 및 漁船員들의 健全한 休息空間 提供과 便益 增進을 위하여 1,080백만원의 補助金을 確保하여 全南 보성군 수협 등 4개소의 일선 수협에 목욕탕, 예식장, 구판장, 휴게실 등 현대적 綜合福祉 施設을 갖춘 어민복지회관을 建立中에 있으며 2001년까지는 65개소에 187억원을 지원, 65개 전국 지구별 수협에 각 1개소씩 建立 完工하여 運營할 계획이다.

3. 漁村觀光 所得源開發

정부에서는 多樣한 國民觀光 需要를 充足하고 漁民所得 增大를 도모하기 위하여 풍부한 관광자원을 보유하고 있는 동·서·남해안의 여촌지

역에 대하여 觀光 便益施設을 설치할 수 있도록 '94년도에는 관광소득원 개발사업비 1,305백만원(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783백만원, 지방비 392백만원, 자담 130백만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관광자원이 부존되어 있고 사업경영 능력이 있는 어촌계의 지역 여건 및 특성에 알맞고 投資效果를 極大化할 수 있는 활어찻집, 숙박시설 등 어촌관광 소득원 개발사업에 지원하여 낙후된 漁村地域의 均衡 發展을 圖謀할 계획이며 융자금의 償還期間은 3년据置 7년償還이며 金利는 5%이다.

<表 103>

'94漁村 觀光開發 推進計劃

單位：百萬元, 個所

| 事業名 | 事業量 | 事業費 | | | |
|------|-----|-------|-----|-----|-----|
| | | 計 | 融資 | 地方費 | 自擔 |
| 계 | 15 | 1,305 | 783 | 392 | 130 |
| 활어찻집 | 8 | 696 | 418 | 209 | 69 |
| 숙박시설 | 1 | 87 | 52 | 26 | 9 |
| 휴게소 | 2 | 174 | 105 | 52 | 17 |
| 활어찻집 | 4 | 348 | 208 | 105 | 35 |

資料：수산청 협동조합과

第 2 節 漁村人力 育成

1. 漁民後繼者 育成

정부는 '94년도에 農漁村構造改善特別會計에 120억원을 편성, 어촌에 정착하여 어업에 종사할 의욕과 사업추진 능력이 있는 40세미만의 어민 640명을 漁民後繼者로 선정, 사업규모에 따라 1인당 15~30백만원의 長期低利 資金을 지원하여 漁船購入, 漁船建造, 漁船 改補修, 養殖施設物 設置, 稚具·稚魚 購入資金으로 사용토록 할 계획이다.

또한 高級 養漁技術의 普及, 施設 現代化로 地域漁業 發展에 선도적 역할을 하는 어가를 專業漁家로 선정하여 '94년도에 50억원의 사업비로 100명에게 1인당 50백만원씩 용자 지원하며 이들 741명 전원에 대하여는 전문기술 교육을 실시하게 된다.

〈表 104〉

漁民後繼者 育成 支援計劃

單位：名, 百萬元

| 區 分 | 合 計 | | '81~'93 | | '94 | |
|---------|-------|--------|---------|--------|-----|--------|
| | 人 員 | 金 額 | 人 員 | 金 額 | 人 員 | 金 額 |
| 계 | 7,532 | 93,200 | 6,791 | 76,200 | 741 | 17,000 |
| ○ 漁民後繼者 | 7,232 | 78,200 | 6,591 | 66,200 | 641 | 12,000 |
| - 漁船漁業 | 4,223 | 46,124 | 3,894 | 39,900 | 329 | 6,224 |
| - 增養殖漁業 | 2,908 | 30,863 | 2,612 | 25,415 | 296 | 5,448 |
| - 水産物加工 | 101 | 1,213 | 85 | 885 | 16 | 328 |
| ○ 專業漁家 | 300 | 15,000 | 200 | 10,000 | 100 | 5,000 |

資料：수산청 협동조합과

2. 水産系 高校 支援

水産系 高等學校의 육성 및 어촌지역 사회發展에 선도적 役割을 擔當할 수산역군 양성을 목적으로 한 자영수산과 학생에 대한 寄宿舍 식비 보조는 '94년도에도 114百萬원의 豫算을 확보 支援할 計劃이다.

〈表 105〉

自營水産科 學生現況

單位：名

| | 計 | | 1 學 年 | | 2 學 年 | | 3 學 年 | | 定員 對比 |
|-------|-----|-----|-------|-----|-------|----|-------|----|----------|
| | 定員 | 現員 | 定員 | 現員 | 定員 | 現員 | 定員 | 現員 | |
| 計 | 480 | 294 | 160 | 109 | 160 | 98 | 160 | 87 | 61% |
| 注文津水高 | 120 | 41 | 40 | 16 | 40 | 13 | 40 | 12 | 34 |
| 大川水高 | 120 | 92 | 40 | 32 | 40 | 32 | 40 | 28 | 77 |
| 莞島水高 | 120 | 77 | 40 | 26 | 40 | 20 | 40 | 31 | 64 |
| 巨濟水高 | 120 | 84 | 40 | 35 | 40 | 33 | 40 | 16 | 70 |

資料：수산청 연근해과

3. 海技士 養成 및 漁業技術 訓練

韓國漁業技術訓練所에서는 1994년에는 153회에 걸쳐서 總 8,200名의 漁船員을 教育訓練시킬 計劃이다.

특히, 항해사, 기관사, 통신사, 운항사 등 海技士를 2회에 걸쳐 100名을 養成할 계획이며, 乘務經歷이 없는 자에 대한 新規 教育訓練은 65회에 3,900名을, 선원과 漁船의 안전 및 해난방지를 위한 教育訓練은 60회에 3,600名을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레이더 시뮬레이터, 메인 엔진, 수평어군탐지 등 고가 첨단 訓

練裝備를 구입 활용하여 교육훈련 효과를 극대화 시킬 계획이다.

〈表 106〉 '94 海技士 및 漁船員 教育訓練 計劃

單位：回, 名

| | 海 技 士 教 育 | | 安全 및 海難 防止 教育 | | 新 規 教 育 | 應 試 資 格 取 得 教 育 | 管 理 者 普 通 | 漁 船 船 員 職 務 教 育 | 免 許 取 得 教 育 | 레 이 더 教 育 | 外 國 人 教 育 | |
|-----|-----------|------|---------------|---------|---------|-----------------|-----------|-----------------|-------------|-----------|-----------|----|
| 計 | 18 期 | 19 期 | 新 規 者 班 | 再 教 育 班 | 教 育 | 管 理 者 | 普 通 | 教 育 | 教 育 | 教 育 | 教 育 | |
| 回 數 | 153 | 1 | 1 | 20 | 40 | 65 | 2 | 2 | 12 | 4 | 5 | 1 |
| 人 員 | 8,200 | 50 | 50 | 1,200 | 2,400 | 3,900 | 40 | 40 | 240 | 160 | 100 | 20 |

資料：수산청 원양개발담당실

第 3 節 漁港建設 擴充

1. 漁港建設

'94年度 漁港開發 방향은 基本施設인 외곽시설 完成위주에 두고 추진하고 있으며, 1·3종 漁港은 총사업비 566억원중 496억을 全南의 능동항 등 41개항에 투자하여 능동, 안마 2개항 完1. 目標로 추진하고 있으며, 慶南 외포항 등 15개항에 대하여는 70억을 투자 補修·補強事業을 추진중이며 2種 漁港은 77개항에 175억원(국비 64억원, 지방비 111억원)의 사업비를 投資하므로서 어선 안전수용 및 어획물의 신속한

양륙처리 등 어항능력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며 그 동안 개발수요에 비하여 투자 과소로 어항건설이 부진하였으나 농어촌발전대책의 일환으로 '94.7월부터 2004년까지 투자하는 총 15조원의 농어촌특별세를 어촌기반시설인 어항건설에 집중 지원되도록 하여 우선 '94년 추경예산에 2종어항 건설 사업비로 300억원을 확보하는 등 향후 10년간 총 7,800억원(1·3종어항 3,300억원, 2종어항 4,500억원)을 투자함으로써 어항을 조기에 완공할 계획이다.

2. 漁港 整備計劃調查

漁港施設 完工 후 장기간 경과로 港勢 등의 與件變化와 施設老朽로 整備가 필요한 2개항(미조, 청산도항)에 대한 漁港 整備調査를 실시하여 整備計劃을 수립할 計劃이다.

3. 制度改善

어항법('93.6.11 개정) 및 동법 시행령('93.12.31 개정)의 전문개정에 따라 동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한 어항법시행규칙을 제정하여 '94.8.19 공포 시행하였다. 그 주요내용은

첫째, 어항의 지정기준은 제1종 어항은 항간거리를 종전과 같이 10km로, 3종어항은 종전 항간거리를 20km에서 10km로 완화하고, 2종 어항은 항간거리 관계없이 지정개발 가능토록 하였으며, 이용어선의 척수 및 톤수 또는 어획량에 관한 세부기준을 수산청장이 정할 수 있도록 하므로써 어항 확대지정 개발의 길이 넓혀지므로써 어촌정주권 개발과 연계하여 어항개발이 활발히 전개될 것으로 기대된다.

둘째, 지방항인 제2종 어항의 경우 직할시장, 도지사가 어항시설 사업중 기본시설 사업에 관한 사업비를 보조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어항의 지정진에 수산청장과 협의토록 규정하고 있어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으로만 어항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협의할 필요가 없게 하였으며

셋째, 비관리청이 어항시설 사업의 허가를 받고자 할 때에는 어항시설 사업계획서를 관리청에 제출토록 하고, 어항시설 사업 허가를 받은 자(비관리청)는 허가받은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어항시설 실시계획을 관리청에 제출토록 규정하였다.

넷째, 어항시설의 사용 또는 점용의 허가는 공익목적에 부합되어야 하고 기간은 3년이내로 정하였으며, 신고로서 어항시설을 사용·점용할 수 있는 기간은 30일 이내로 한정하여 다수의 어민이 효율적으로 이용토록 하였으며

다섯째, 어항시설의 사용·점용허가를 받은 자에 대하여 어항시설의 사용·점용료는 당해 어항시설의 가액에 1천분의 50을 곱한 금액을 연간 사용료 또는 점용료로 하되 일할로 계산토록 정하는 등 어항의 이용 관리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였다.

第 4 節 漁撈施設의 現代化

1. 漁船建造

가. 老朽漁船 代替

'94년도 老朽漁船 代替事業은 66억원을 投入하여 1,000톤의 老朽漁船을 합성수지(FRP)어선으로 代替할 계획이며, 同 事業의 支援對象은

선령이 木船은 16년이상, 鋼船 및 합성수지(FRP)어선은 21년이상의
老朽漁船을 8톤미만의 합성수지 어선으로 代替하고, 被代替 漁船을 3개
월 이상 所有한 者로서 被代替 老朽漁船을 人工魚礁 投入이나 廢船 條
件으로 하며, 最近 2년이내 不法漁船을 建造한 者는 支援對象에서 제외
하여 실제로 漁業을 經營하는 漁民에게 惠澤이 가도록 할 計劃이며 支
援條件은 總事業費의 20%는 보조, 60%는 용자, 20%는 自擔으로 하
고 融資條件은 3년거치 10년상환에 金利는 年 5%이다.

나. 經濟性漁船 建造

'94년 經濟性漁船 建造事業은 264억원을 投入, 4,000톤을 建造 支援
하여 漁船의 現代化로 安全操業 및 漁業經營 改善을 圖謀할 計劃이다.

同 事業의 支援對象은 前年과 같이 40톤미만 漁船은 經濟性있는 합성
수지(FRP)어선으로 建造하고 40톤이상 어선은 FRP어선 또는 강선으로
建造 支援할 計劃이며 支援條件은 총사업비의 80%는 용자, 20%는 自擔
으로 하고 3년거치 10년상환에 金利는 年 5%로 融資 支援하고 있다.

2. 漁船裝備 등 改良

가. 漁船機關 代替

安全操業과 操業能率 向上은 물론 燃料節約을 위하여 연료 과다 소모
형 低效率 機關과 老朽機關을 性能이 우수한 燃料節約型 船舶用 機關으
로 代替하여 漁民所得 向上에 寄與하기 위하여 施行하는 漁船機關 代替
事業은 '94년도에 64억원을 투입, 40千마력을 代替할 計劃이다.

支援對象은 500마력이하 船舶用機關 代替이며, 零細漁民과 多數漁民
에게 골고루 惠澤이 갈 수 있도록 小型漁船의 저마력기관 代替에 우선

支援하고, 총사업비의 80%는 융자, 20%는 자담으로 하며 융자조건은 1년거치 4년상환에 金利는 년 5%이다.

나. 漁船裝備 및 設備改良

漁船裝備 및 設備의 現代化로 操業能率 향상과 漁業經營 改進黨을 기하고자 '94년도에는 66억원을 投入, 새래식 裝備·設備의 改良과 어로서 설의 機械化, 自動화 및 船員 住居環境 改善을 위한 船體構造 改良을 지원할 計劃이며, 漁船機關 代替 支援條件과 마찬가지로 총사업비의 80%는 융자, 20%는 자담으로 하고 융자조건은 1년거치 4년상환에 金利는 년 5%이다.

다. 漁船用機資材 生産支援

漁船用機資材 生産業體에 대한 運營資金 지원으로 品質좋은 漁船用品의 生産과 원활한 需給을 도모코자 1개 업체에 3억원의 한도내에서 15억 원을 支援할 計劃이며, 融資 支援條件은 1년 償還에 金利는 년 8%이다.

라. 漁船用機械 購入資金 支援

漁船用機械 購入資金 支援事業은 '94년부터 정부의 어업용기계 반값 공급정책에 따라 어민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신규로 지원되고 있으며 釣上機, 魚探機 등 6종류 장비 4,000톤에 대하여 대당 200만원 한도내에서 총 사업비의 50% 보조, 30% 융자, 20% 자담으로 하고 융자조건은 1년거치 4년상환에 金利는 년 5%이다.

<表 107>

漁撈施設 事業計劃

單位：百萬元

| 事業別 | 物 量 | 事 業 費 | | | |
|--------------------|----------|--------|------------------|--------|--------|
| | | 計 | 補 助 | 融 資 | 自 擔 |
| 計 | | 55.084 | 3,229 (1,909) | 38.930 | 11.016 |
| ○ 漁船建造 | 5,000톤 | 33,000 | 1,320 | 25,080 | 6,600 |
| - 老朽漁船 代替 | 1,000 " | 6,600 | 1,320 | 3,960 | 1,320 |
| - 經濟性漁船建造 | 4,000 " | 26,400 | - | 21,120 | 5,280 |
| ○ 漁船機關 代替 | 40,000마력 | 6,400 | - | 5,120 | 1,280 |
| ○ 漁船裝備 및 設備 改良 | 65척 | 6,550 | - | 5,240 | 1,310 |
| ○ 漁船用機資材生産 支援 | 5개사 | 1,500 | - | 1,200 | 300 |
| ○ 漁船用機械 購入 資金支援 | 4,000대 | 7,634 | 1,909 (1,909) | 2,290 | 1,526 |

資料：수산청 어선과
註：()는 地方費임

3. 法令制度的 整備·補完

漁船法('93.6.11 개정) 및 同法 施行令('93.12.31 개정)의 전문개정 에 따라 그 하위법령인 漁船法 施行規則 및 漁船登錄·檢査 등에 관한 手 數料 規則을 '94.6.16일 개정 공포하였으며, 漁船檢査 업무의 간소화 및 효율적인 검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漁船用品의 型式 및 製造施設 承認 規則을 '94. 7.27일 개정 공포하였고, 漁船用品의 優秀 事業場 指定 등 에 관한 規則을 '94. 8.10일 제정 공포하였다. 그 주요 내용으로는

가. 漁船法 施行規則

첫째, 經濟行政規制 緩和을 위하여 5톤미만 無動力漁船과 1톤미만 動力漁船 및 5톤미만 內水面 漁船에 대해서만 漁船檢査를 면제해 주던 것을, 5톤미만 無動力漁船과 2톤미만 動力漁船과 全 內水面 漁船으로 확대하는 한편, 2톤미만의 漁船에 推進機關을 새로이 설치하거나 推進機關의 종류 또는 출력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漁船 改造許可 대상에서 제외키로 하였으며, 小型漁船의 범위를 40톤미만의 漁船에서 길이 24m미만의 漁船(약 60톤급)으로 완화하고, 小型漁船의 檢査期間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였으며

둘째, 길이 24m 이상의 漁船에 대해서만 실시하는 中間檢査는 檢査 지정일 전후의 3개월이내에 받도록 했고, 4년마다 실시하는 定期檢査(길이 24m미만 어선은 3년마다 실시)의 지정일에 漁船檢査를 조업 등으로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3개월 범위내에서 연기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외국에서 定期檢査를 받았거나 기타 부득이한 경우로서 새로운 漁船 檢査證書를 즉시 교부할 수 없거나 漁船에 檢査證書를 비치할 수 없는 경우에는 漁船 檢査證書 有效期間 연장신청에 따라 5개월 범위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했으며, 어민의 편의제공을 위해 어선 소유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휴일에도 檢査를 실시토록 하였다.

셋째, 종전에 40톤이상의 漁船에 대해서는 선령 구분에 따라 船齡 15년이상인 경우 매년, 船齡 15년미만인 경우 2년마다 조선소에 上架하여 檢査를 받도록 했던 것을 그 對象漁船을 길이 24m이상 漁船으로 緩和하고 2년에 한번만 上架하여 檢査를 받도록 하는 한편, 매년 安全 檢査를 받도록 하여 國際協約 基準에 맞도록 개선하였으며

다섯째, 임해공단 建設·埋立·干拓 등에 따른 공공개발 지역으로 고시된 지역안에 船籍港을 지정하여 漁船을 건조하거나 다른 지역의 어선을 매입

하여 移轉登錄을 하고자 하는 경우 補償을 目的으로 하는 漁船의 投機化 및 사회문제 발생을 예방기 위해 시·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漁船建造 許可 또는 船籍港 移轉登錄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였고

여섯째, 漁船의 總噸數 改測 또는 漁船檢査시 登錄사항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檢査기관에서 이를 船籍港을 管轄하는 시·군·구에 통보하도록 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직권으로 漁船原簿에 變更 登錄하고 船舶 國籍證書 등의 기재사항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증서를 다시 작성하여 어선 소유자에게 교부하도록 개선하여 어민의 편의를 제 공토록 하였다.

나. 漁船의 登錄·檢査 등에 관한 手數料規則

첫째, 小型漁船의 檢査手數料는 낮게 中·大型 漁船은 높게 조정하여 영세어민의 부담을 줄이도록 하였고, 8톤급 漁船의 경우 檢査手數料 내역을 살펴보면 현행 2년마다 17,480원을 부담하던 것이 3년마다 21,300원을 부담하게 되어 어선소유자의 연간 부담액은 8,740원에서 7,100원으로 18%(1,640원) 정도 감소되며, 따라서 漁船檢査 手數料의 인상조정은 40톤미만 어선의 경우 년 평균 부담률은 15% 정도 감소되며, 60톤이상 漁船의 경우 5% 정도 추가부담 요인이 발생되도록 조정하였다.

둘째, 漁船 定期檢査시 별도로 부담하던 檢査 항목중 漁船의 주요설비 改造檢査, 冷蔵裝置 檢査, 荷役裝置 檢査, 安全構造 檢査, 安全設備 檢査, 無線電信·電話, 滿載吃水線 檢査, 復原性 判定 檢査 등 항목의 檢査手數料는 定期檢査 手數料에 포함하여 처리토록 함으로써 실질적인 어민부담은 크게 경감되도록 하였으며

셋째, 豫備檢査와 臨時檢査, 總噸數 測定 등 기타 檢査는 檢査 항목

별 또는 등급별로 인상조정 하였다.

다. 漁船用品의 型式 承認 規則

漁船用品의 型式 承認은 지금까지 漁船에 사용되는 漁船用品의 안전성을 확보하여 품질을 향상시키고 人命에 대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나 규제가 과도하여 企業활동에 장애가 되고 있음을 감안 經濟行政 規制緩和 조치에 따라

첫째, 漁船用品의 製造施設承認 제도를 폐지하고

둘째, 漁船用品의 型式承認 대상품목을 38개에서 14개로 대폭 감축하고

셋째, 漁船用品의 型式承認 有効期間을 3년에서 영구적으로 개선하였다.

라. 漁船用品의 優秀事業場 指定 등에 관한 規則

漁船用品의 優秀事業場 지정은 지금까지 운영한 바 없으나 '93.6.11 漁船法 改正시 신설된 제도로써 漁船 또는 漁船用品을 건조, 제조, 정비하는 優秀事業場을 지정하여 이들 事業場에서 건조, 제조, 정비를 확인받은 漁船用品에 대하여 漁船의 製造, 定期, 中間檢査를 생략함으로써 새로운 기술도입이나 품질개선으로 기술수준을 향상시키고 어민편익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그 추진방향은

첫째, 漁船用品의 優秀建造, 製造, 整備 事業場의 지정기준인 漁船用品의 범위, 설비 기준을 정하고

둘째, 漁船用品의 優秀事業場을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시설기준에 맞는 事業場을 갖추고 건조, 제조, 정비규정을 작성하여 수산정장의 지정을 받도록 하였다.

第 5 章 水産物 流通改善과 加工産業 育成

第 1 節 價格安定 對策

'94년도 농수산물가격안정기금에 의한 水産物 價格安定 및 流通改善 事業은 總 運用額 11,950억원중 22%인 2,582억원이며, 이중 1,775억원을 가격안정 사업에 運用할 計劃이다.

1. 價格安定 事業

需給의 원활한 조절로 생산자 受取價格을 제고하고 소비자도 보호해 나가기 위해 農安基金 675억원을 이용하여 김, 冷凍오징어 등 10個 品目 27,500톤을 정부에서 직접 備蓄, 放出할 계획이며, 또한 1,100억원을 民間 및 生産者(團體)에 지원하여 備蓄 收買, 방출, 輸出原料 收買 및 出荷 調節을 원활하게 함으로써 수급 및 가격안정을 기해 나갈 計劃이다.

〈表 108〉

'94政府備蓄 事業計劃

單位：千、百萬元

| | 收買物量 | 基金支授 | 事業 時期 | |
|------------------|----------------|--------|--------------|---------------|
| | | | 收 買 | 販 賣 |
| 計 | 27,500 | 67,473 | | |
| 김 | 600 (300만속) | 13,239 | '94.1.1~4.30 | '94.6.1~10.31 |
| 갈미역 | 2,000 | 2,808 | 2.1~4.30 | 7.1~11.30 |
| 마른미역 | 100 | 932 | 2.1~4.30 | 7.1~11.30 |
| 냉凍오징어 | 10,000 | 19,306 | 9.1~12.30 | '95.2.1~6.30 |
| 냉凍조기 | 1,000 | 4,591 | 3.1~5.31 | '94.8.1~10.31 |
| 냉凍고등어 | 5,500 | 4,947 | 8.1~12.30 | '95.3.1~6.30 |
| 냉凍명태 | 5,000 | 5,940 | 3.1~5.31 | '94.8.1~10.31 |
| 냉凍갈치 | 1,500 | 4,572 | 9.1~12.30 | '95.3.1~6.30 |
| 냉凍갈치(수입) | 1,000 | 2,800 | 3.1~6.28 | '94.5.26~6.30 |
| 마른멸치 | 300 | 2,161 | 9.1~12.30 | '95.3.1~8.31 |
| 마른오징어 (400천속) | 500 | 5,777 | 9.1~12.30 | '95.3.1~7.31 |

資料：수산청 어정과

2. 需給 및 價格管理 強化

수산물 需給 安定을 위해 沿近海 및 海外漁場에서의 생산 증대와 외국과의 共同 및 合作漁業 事業을 통한 漁獲物의 內需 搬入을 확대해 나가고 需給上 부족 품목에 대한 制限의 輸入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조기, 명태, 오징어, 고등어, 갈치, 김 등 6개 主要 品目에 대하여는 需給狀況을 특별히 관리하고 연중 物價管理 非常體制를 運營하여 需給 및 價格管理를 점검해 나가며, 또한 설날, 秋夕 越冬期 盛需期에는 特別對策을 수립하여 生수품의 需給 圓滑과 價格安定을 도모해 나갈

계획이다.

第 2 節 流通構造 改善

1. 產地 流通 施設

수산물의 신속한 揚陸과 판매를 위한 產地 委販場 擴充에 1,245백만 원을 투자하여 1,511평을 새로이 건설하는 등 위판장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고 있으며, 委販業務의 效率化·自動화를 위하여 流通情報 전달을 확대하고, 위판장을 部類別로 專門化하기 위하여 活魚 專門 위판장 495평에 918백만 원을 투자하여 건설할 계획이다.

또한 위판 수산물의 圓滑한 수송과 어민단체의 直出荷 促進을 위하여 活魚 및 冷凍·冷蔵 輸送車輛 10대 150백만 원을 산지조합 등에 지원, 보급하고, 위판장 廢水處理施設 2개소에 400백만 원을 지원, 위판장의 衛生시설을 강화하며, 특히 夏節期 細菌性 傳染病의 發生으로 인한 어민 被害가 없도록 豫防活動에도 철저를 기할 계획이다.

2. 消費地 流通機能 強化

수산물의 流通段階를 短縮하고 유통마진을 줄이기 위해서 생산자 단체의 直出荷를 활성화 하기 위한 수산물 직판장을 產地組合에 5개소 1,950백만 원을 지원하고, '93년부터 건설중인 서울 외발산동의 수산물 공판장 시설에 5,542백만 원을 투자하여 건설중에 있으며, 생산자 단체의 自體買取 事業으로 61천톤, 共同收集 販賣 事業으로 1,088톤 등 直

出荷사업을 확대해 나가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그리고 저렴하고 값싼 수산물을 소비자에게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내륙지 공판장 및 직판장 기능을 活性化해 나가며, 輸入水産物에 대하여 原産地 表示制度를 실시하는 등 不正流通 根絶 對策을 추진하여 유통 질서를 확립해 나가는 한편, 流通情報의 확대 보급 및 自動應答機 설치 확대 등 消費者 保護를 위한 시책도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3. 水産物 規格化 및 任意上場制 推進

수산물의 規格化와 包裝을 改善하여 수산물의 商品性을 提高함으로써 消費者에게는 新鮮하고 衛生的인 商品을 공급하고 生産漁民에게는 受取 가격을 높여 소득증대에 기여하고자 수산물 標準去來 單位 30개 品目中 標準 出荷 規格을 1단계로 10개 품목을 制定, 수산물 規格化를 추진토록 할 계획이다.

한편, 연근해 어획물은 현행 시·도지사가 지정하는 판매장소인 수협 위판장에서만 거래를 허용하여 왔으나, 앞으로는 수협을 포함한 타 구매처에서도 어획물을 자유롭게 판매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며, 다만 갑작스런 제도변경으로 많은 혼란이 예상되어 우선 '94년 하반기에 일부품목을 선정, 시범실시후 '95년부터 연차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表 109〉

'94 規格出荷 事業計劃

單位 : 톤, 百萬元

| | 出 荷 助 合 | 物 量 | 財 源 別 | | |
|-------------|---|-------|--------|--------|-------|
| | | | 計 | 農安基金 | 自 擔 |
| 계 | | 7,329 | 16,819 | 13,455 | 3,364 |
| 새 우 짓 | 강화, 신안, 대천 | 362 | 665 | 532 | 133 |
| 별 치 짓 | 대천, 경주, 흑산도, 용 진, 고흥, 굴수하, 광양 | 349 | 307 | 245 | 62 |
| 굴 | 용진, 고흥, 굴수하, 광양 | 421 | 1,779 | 1,423 | 356 |
| 바 지 락 | 고흥 | 632 | 711 | 569 | 142 |
| 꽃 개 | 용진, 진도, 인천, 군산 | 151 | 890 | 712 | 178 |
| 마 른 오 징 어 | 흑산도 | 325 | 702 | 562 | 140 |
| 마 른 멸 치 | 완도, 약산, 소안, 진도, 고흥, 여수, 거제, 삼천포, 권현망, 경남청치망 | 1,313 | 5,474 | 4,598 | 1,149 |
| 마 른 새 우 | 군산 | 21 | 287 | 230 | 57 |
| 고 막 | 고흥 | 276 | 523 | 418 | 105 |
| 마 른 문 어 | 고흥 | 10 | 173 | 138 | 35 |
| 간 미 역 | 약산, 완도 | 3,054 | 2,261 | 1,809 | 452 |
| 마 른 실 미 역 | 약산, 완도, 금일 | 185 | 1,062 | 850 | 212 |
| 마 른 썰 은 미 역 | 완도, 금일 | 165 | 1,075 | 860 | 215 |
| 피 조 개 | 보성 | 3 | 19 | 15 | 4 |
| 조 기 | 군산, 안강망 | 24 | 288 | 230 | 58 |
| 갈 치 | 군산, 거문도 | 29 | 255 | 204 | 51 |
| 삼 치 | 거문도 | 9 | 75 | 60 | 15 |

資料 : 수산청 어정과

第 3 節 加工産業 育成

1. 加工製品 生産

水産物の 시장개방에 대비한 加工産業의 경쟁력 제고와 수산물의 소비패턴 변화에 따른 加工食品 수요 증대에 대응하여 高次 加工製品の 생산 증대가 절실히 요청된다. 이에 따라 高次 加工製品の 확대 생산을 위해 다음과 같은 시책을 추진하고 있다.

첫째, 加工原料의 安定的 供給을 위하여 原料의 鮮度 維持 및 系列化를 기하고 특히 부족 원료에 대하여는 沿近海 어민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國內 魚價 안정에 영향을 주지 않는 범위내에서 輸入을 허용하고,

둘째, 輸入 開放化에 대비하고 國際競爭力 강화를 위하여 新製品 개발 촉진 및 新技術 도입 보급에 힘쓰며,

셋째, 水産物 加工製品の 품질 향상을 위하여 KS 表示許可 취득의 확대를 유도하며 특히, 產地 및 傳統食品을 중심으로 수산물 品質認證 制를 점차 확대 보급시켜 나아가고,

넷째, 傳統食品 및 地域 特産品 開發과 加工團地 造成사업을 적극 지원해 나아갈 계획이다.

2. 加工業體 支援

水産物の 수입개방에 대처하고 水産物の 消費 增大에 대비하기 위하여 水産物 處理加工 施設을 확대하여 생산을 증대하고 新製品 開發로 국제경쟁력을 강화하여 지속적으로 輸出 및 어민소득을 증대시켜 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하여 '94년도에는 冷凍·冷蔵 施設의 新設 및 改·補修 지원에 129억원, 産地加工에 26억원, 冷凍·冷蔵, 통조림, 魚肉煉製品, 海藻加工品, 調味加工品 등의 生産加工 業體에 運營資金 130억원, 합계 285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가. 國內 水産 加工産業 育成

국내 수산물의 가공원료화 촉진 및 가공원료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국산원료 사용 가공업체를 우대 지원하고, 전통식품 개발 및 특산단지 가공 지원을 확대한다. 수산 가공식품의 소비 극대화를 추진하기 위해 小包裝化된 鮮魚 조리식품의 보급을 확대시키고, 品質認證制를 통한 傳統 및 特産食品의 商品化를 지원하고, 소비 계층별 기호제품 생산자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어민, 생산자단체가 산지 가공산업에 참여함으로써, 원료 조달능력을 향상 시키고, 판매와 경영의 조직화 및 어한기 유희인력 활용을 통한 어촌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한다.

이를 위해 소비지 시장에 직판되는 産地 加工化를 추진할 계획이며, 水協의 가공산업 참여를 지원할 방침이다.

나. 輸出促進 戰略

맛살류, 굴 통조림 등 輸出 지속성 水産食品은 운전자금 지원 등으로 중점 생산 수출하고, 또한 國家別 선호 수산식품 발굴과 해외교포용 우리나라 傳統 및 特産食品 생산을 확대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검사규칙, 위생관리규칙 등을 국제적 수준으로 통일하고 전통식품의 규격을 국제화 시키고, 또한 작업과정이 단순한 노동 집약

형 가공품을 원료 생산지나 저임금 국가에서 1차 처리하거나 반제품화한 후, 국내에 반입하여 高附加價値化시켜 이를 다시 재수출하는 再加工 逆輸出 戰略을 추진한다.

다. 水産物 加工團地化 推進

原價를 節減하고 物流費用을 最小化함과 동시에, 위생처리 제품을 유통 시킴으로서 국민보건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수산물 가공단지 조성은 꼭 필요한 사업이다.

시·도별 도시계획과 조화된 수산물 가공단지화 조성계획의 일환으로 부산 甘川港 水産物 加工團地 조성을 추진중에 있다.

第 4 節 水産物 檢査

1. 檢査制度의 改善

水産物 가공업계의 자율적인 品質 向上 노력으로 품질고급화를 통한 對外 競爭力을 확보할 수 있도록 水産物 檢査制度를 官 위주의 義務檢査制에서 민간 自律的인 檢査制度로 轉換할 목적으로 '92.12.31 水産物 檢査法 施行令을 改正하여 檢査 對象品目을 31개 品目으로 대폭 緩和하여 '93.4.1부터 施行하고 있다.

또한 '92.3.2부터 실시하고 있는 輸入水産物 검사업무를 강화하여 低質品, 위장품, 有害오염 등 부적합 輸入 水産物 색출에 주력하고 있으며, 輸入 檢査業務 體制의 一元化를 위하여 '93.12.6 行政權限의 委任 및 委託에 관한 規定을 改正하여 '94.1.1부터 原料水産物 및 단순

加工品에 대한 輸入 申告 및 檢査業務를 專門 檢査機關인 國立水産物檢査所가 管掌하고 있다.

2. 水産物 檢査機能의 強化

水産物の 輸入 開放으로 인하여 水産物 輸入이 急増함에 따라 종래 官能檢査 위주의 輸出檢査 체제인 現 水産物 檢査體制을 조속히 精密檢査 중심의 輸入檢査 및 内수檢査 체제로 개편할 必要性이 대두되고 있는 바, 國民에 대한 衛生的인 水産物の 供給과 水産物の 品質 高級化를 목표로 수산물 검사인력, 施設, 裝備, 등에 대해서 검사체제 改善을 위한 年次別 水産物檢査 機能強化對策을 수립하여 적극 추진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94년도에는 388백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國立水産物檢査所 仁川支所 廳舍를 新築하고, 主要 分析裝備 購入을 위하여 340백만원의 예산으로 방사능측정기, 액체크로마토그래피 등의 검사장비를 보강할 예정이며 중·장기적인 수산물 검사기능 강화를 위하여는

첫째, 本所 및 부산지소에 조사분석과의 설치와 항공편 이용 輸入 水産物 증가에 대비하여 國立水産物檢査所 서울支所의 신설 및 業務量 過少支所는 인근 지소에로의 통·폐합, 지소 위치 및 관할 구역의 합리적 조정 등을 추진하고

둘째, 國立水産物檢査所의 廳舍 및 分析室을 확충하고 主要 尖端裝備 補強을 위하여 연도별로 소요예산을 확보토록 적극 추진하여 본소 및 지소별로 분석실 등 시설을 확충하는 한편, 첨단장비를 보강토록 하고,

셋째, 專門人力의 확보뿐만 아니라 國內 專門機關 委託教育 擴大 및 해외 연수의 활성화로 검사원의 자질 향상 및 해외 검사정보 수집능력 증대에 주력하는 등 '97.7월부터의 水産物 輸入 完全 自由化에 대응한

수산물 검사기능 강화 대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第 5 節 水産物 輸出·入 對策

1. UR협상 妥結과 제2단계 水産物 輸入自由化

'93.12.15 UR협상 타결에 따라 354개 수산물중 146개 품목의 관세양허가 확정되었다. 그 결과 양허품目に 대하여는 관세 인상시 그 인상을 품목을 제한 받게 되었으며, 水産物 평균 관세율도 높게 가져갈 수는 없게 되었다.

제2단계('95~'97) 수입자유화 豫示計劃은 GATT/BOP합의에 따라 잔존 46개 품목에 대한 연도별 자유화 豫示計劃을 '94.4.30 GATT 이사회에 제시하였다.

이번 豫示計劃에 따라 '95년도에는 6개 품목을 그리고 '96~'97년에는 각각 17개 품목과 23개 품목의 수입을 자유화하게 된다.

2. 輸出·入 對策

水産物の 輸入自由化에 따라 '94년도에 들어와 수입 급증의 징후가 보이고 있어 적절한 수입 管理對策을 樹立·施行에 나갈 計劃이다. 이에 따라 관세법에 의한 품목별 기본관세의 조정 작업이 진행되고 있으며 조정관세 대상품목을 확대하고 조정관세의 상한선(100%)도 폐지하여 國內·外 가격차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할 計劃이다.

또한 적절한 수입관리를 위해 외국 漁船의 직접 기항에 의한 漁獲物

양륙에 의한 수출을 금지하기 위하여 관계법을 改正하고 EU 등의 수출 공장 등록제에 대응하여 이 제도의 국내 도입도 檢討·推進할 계획이며, 수입품에 대한 원산지 표시제 확행을 위하여 원산지 표시대상 품목의 확대(294→317개)와 위반자 제재를 3년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이하의 벌금으로 강화하고 매월말 별로 통보하던 수산물 수입업자 명단을 매주 단위로 단속기관인 市·道에 通報할 예정이다.

偽裝 不法輸入 방지와 衛生檢査 강화를 위해 檢査項目에 중금속, 방사능 검사를 추가하고 장비 보강과 전문인력을 양성하여 나갈 계획이며, 민간 자원의 水産物 수입 협의체를 구성토록 하여 자율적으로 수입 질서를 유지해 나가도록 할 계획이다.

한편, 수출증대를 위하여 수출 추천품목의 일부를 폐지하는 등 수출 추천 및 검사절차를 간소화하고 수출유망 新商品 개발 및 수출업체의 競爭力 제고를 지원하여 주요 수출대상국의 고관세, 비관세 장벽제거를 위한 통상협력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第 6 章 遠洋漁業의 育成

第 1 節 國際漁業 協力 強化

1. 兩國間 漁業協力 推進

기존 漁業協定 締結國과 협력사업을 협의하기 위한 쌍무간 회의를 개최하고 상대국의 水産行政 責任者를 초청하여 어업협력을 확대, 증진해 나갈 계획이며, 중국, 페루, 알젠틴국과의 漁業協定 締結을 협의하기 위해 漁業交涉團 과건 및 상대국 수산장관 등을 초청하여 漁場 確保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2. 國際水産機構와의 協力

기존 가입 국제수산기구 활동에 적극 참여하고 특히 FAO차원의 公海資源 管理會議에 참여하여 환경보호 명분에 입각한 연안국의 급진적인 操業規制에 적극 대응해 나가고 UN 公海魚族會議, FAO 公海漁業 操業規範(Code of Conduct) 성안 전문가 회의 등 국제 어업 질서를

구축하는 중요 회의에 적극 참여하여 공해상 조업권 유지에 전력을 경주할 계획이다.

우리나라 明太 공급량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베링 및 오호츠크 公海 資源管理를 위한 회의에 적극 참여하여 沿岸國과 操業國의 상호이해가 고려되는 가운데 資源의 지속적 개발이 확보되도록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

第 2 節 既存漁場 確保 및 新漁場 開發

세계 연안국들의 200해리 經濟水域 선포와 어업자원 자국화정책 등 각국의 漁業規制에 대처한 해외어장의 안정적 확보를 위하여 연안국들과의 漁業協力과 新漁法에 의한 어장개발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西部아프리카 세에라레온 및 코트디부아르에 母船式 외줄낚시 2隻, 南水洋 協約수역 및 인근 공해수역에 메로자원 개발을 위한 底延繩 1隻이 출어하여 試驗操業을 하고 있다.

한편 北太平洋 오징어유자망어업의 중지에 대처하여 동 어장의 持續的인 확보를 위한 代替漁法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해 '93년에 이어 '94년도에도 오징어채낚기 어선에 의한 시험조업을 계속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원양어업의 安定的 성장을 위하여 出漁資金 지원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 그러나 沿岸國 漁業協力 資金은 '93년도 45억원에서 '94년도에는 원양어업의 不況으로 투자가 萎縮되어 10억원으로 減少되었으나, 海外資源 生産 運營資金은 전년보다 250억원이 증가한 700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1. 참치漁業

참치漁業은 '57年 印度洋에서 試驗操業으로 처음 진출한 이후 매년 괄목할 만한 발전과 성장을 거듭하여 오늘날에는 世界의 참치 主操業國으로 成長하였다.

우리나라의 참치 主漁場은 참치延繩 漁業의 경우 태평양, 대서양, 인도양의 中緯度를 中心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나 대부분이 太平洋 公海上에서 主로 操業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참치旋網 漁業은 南太平洋의 파푸아뉴기니아 水域 및 公海上에서 主로 操業하고 있으나 最近 國際 水産機構의 규제 강화 등으로 참치 漁業의 여건은 어려워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어려운 與件下에서 참치漁業의 안정적 발전을 위하여 南太平洋 島嶼國 등 참치 主要 沿岸國 등과의 漁業協力을 가일층 강화하고 있으며, 國際會議에도 적극 참여하여 우리나라의 立地를 強化해 나갈 계획이다.

2. 오징어漁業

우리나라 오징어 주어장은 연근해와 남서대서양, 뉴질랜드, 페루수역이며 '85年 南西大西洋 漁場이 개발되면서 오징어채낚기 어선이 크게 늘어나 '94년에는 남서대서양 81척, 뉴질랜드 수역 14隻, 페루수역 49척이 조업하고 있으며, 오징어를 漁獲하는 트롤漁船도 남서대서양 42隻, 뉴질랜드 水域 9隻이 操業하고 있다.

한편 빨강오징어를 主로 漁獲하는 北太平洋 流刺網어선이 UN 결의에 따라 '93.1.1부터 操業이 中止됨에 따라 北太平洋에서의 오징어 채

낙기 漁法을 적극 개발할 계획으로 있다.

가. 南西大西洋

南西大西洋 오징어 채낚기어선은 '85年 처음으로 20隻이 出漁하여 10千톤을 漁獲한 이후 漁船隻數 및 生産量이 급격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93년에는 채낚기어선 68隻, 트롤漁船 43隻이 操業하여 129千톤을 漁獲하였으며, '94년에는 채낚기어선 81隻, 트롤어선 42隻이 操業하고 있으나 漁獲은 부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나. 페루, 뉴질랜드 水域

'90년부터 開發된 페루水域의 오징어 채낚기 漁業은 '93年보다 11隻이 늘어난 49隻이 허가되어 있으며, '94年 상반기 현재 페루水域 오징어 쿼타는 49,795톤에 이르고 있다.

그러나 뉴질랜드 수역은 어장성의 불투명으로 많은 채낚기어선들이 출어하지 않고 있으나 기존의 트롤어선들은 계속해서 조업이 예상된다.

3. 트롤漁業

트롤漁業은 원양어업중 比重이 가장 큰 業種으로서 원양어업 生産量의 48%를 차지하고 있으며 업종별로 보면 다음과 같다.

가. 北洋트롤

北洋트롤 漁業은 명태, 가자미를 主 對象으로 미국수역, 베링公海, 러시아수역 및 北海道 주변수역에서 操業을 하여 왔으나, 미국수역의

쿼타사업은 '88년에, 共同漁撈 사업은 '91년에 종식되었고 베링공해도 '92년 8월 모스크바에서 개최된 제5차 베링공해 관련 국제회의 결과 '93년부터 2개년간 잠정적으로 操業 중단을 결의하고, '94.2.11 中部 베링해 명태資源의 보호 및 관리에 관한 協約에 가시명하여 명태 자원량이 167萬톤이 될 때까지 操業을 중단하기로 하였다.

또한, 오호츠크공해에 대하여도 '93.11.15 한·러 어업위원회시 兩國間 合意事項이 원만히 이행되는 것을 전제로 오호츠크公海 操業을 自制기로 하였다.

따라서 러시아 水域과 북해도 주변수역 등에서 약 245千톤을 생산할 계획이다.

나. 太平洋 基地트롤

'77年 미·러의 200海里 經濟水域 선포에 따라 동 수역 조업선 일부가 뉴질랜드 水域으로 漁場을 이동, 조업중 '78年 兩國間의 漁業協定 체결로 쿼타操業을 하여 왔으나 최근 자원의 自國化政策에 따라 외국에 대한 쿼타량을 삭감하고 자국어민에게 쿼타 割當을 확대하여 '92年度부터는 쿼타操業이 終熄됨으로써, 個別 入漁를 擴大하는 한편, '86년부터 進出한 인도네시아 水域 등에 대하여도 지속적으로 操業을 확대해 나가도록 지도해 나갈 계획이다.

다. 大西洋트롤

'66年 以來 進出하여온 大西洋 트롤漁業은 꾸준히 발전하여 '70년대에는 100餘隻으로 출어척수가 증가하였으나 大西洋의 자원 감소에 따른 어획감소로 출어척수가 격감하였으나 '80년대 중에는 남서대서양을 비롯하여 NAFO 水域 등으로 이동 출어하였다. NAFO 수역은 캐나다

政府가 동 수역의 자원 보전 등을 이유로 우리 어선의 早期 철수 등을 요구하여 '93.4.29 동 수역에서 조업하던 3隻이 완전 철수하여 현재 대서양에는 60여척이 조업하고 있다.

그러나 公海操業도 인접국의 規制 움직임이 점증되고 있어 다각적인 교섭을 통하여 조업어장의 기득권 확보와 새로운 漁場개발이 필요한 실정이다.

라. 印度洋트물

'80년대에 새로운 漁場確保 차원에서 진출한 파키스탄, 오만 漁場은 그동안 關聯國의 規制에도 불구하고 民間交渉에 의해 지속적으로 조업을 維持하여 오고 있다. 그러나 관련국도 資源保護를 목적으로 外國漁船의 입어 금지 또는 어획량 제한 등으로 操業規制가 강화되고 새로운 漁場의 開發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80년대 후반기부터 인근 소말리아, 이란, 예멘 등에 진출하여 조업중이다.

마. 中南美 새우트물

'69年度에 수리남 파라마리보를 中心으로 하여 進出した 새우트물漁業은 가이아나, 불령가이아나, 브라질 등에 進出, 새로운 所得源으로 각광을 받아 왔으나 '77年 가이아나의 200海里 水域 선포, '81년 이후 佛領가이아나의 쿼타 삭감 및 漁獲物 揚陸 條件附 許可와 '88年 9月 以後 브라질의 外國漁船 入漁規制 등으로 同 漁場에서 철수후 현재는 수리남 水域에서만 조업하여 오고 있다.

그러나 최근 수리남은 자원의 감소와 어가하락 등으로 漁業經營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第 3 節 遠洋漁業 競争力 強化

우리나라 遠洋漁業은 1957년도에 처음으로 印度洋에 진출한 이후 수출산업으로 계속 성장하여 우리나라 總水産物 生産量의 25%이상을 차지하고 있고 최근에는 생산량의 85%를 국내 단백질 식량으로 공급하고 있으나 90년대에 들어 주요 연안국들의 資源自國化 政策과 국제수산기구의 공해조업 규제조치로 북태평양 오징어유자방 어업과 베링공해, 북서대서양수산기구(NAFO)수역 등의 주요어장이 상실되고 입어료 및 어로경비 상승 등으로 어업경영에 어려움을 초래하여 '90년도 이후 극심한 불황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한편, 국내의 水産物 需要는 계속 增加 추세에 있으나 연근해어업은 沿岸漁場의 오염과 남획 등으로 자원의 감소 및 진척상태에 있어 생산량을 増大시키는 데는 한계성이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부족한 국내 수산물 공급을 확대하고 1997년도 수산물 수입의 완전개방화에 대처한 수입 대체산업으로서 또한 외화가득률이 높은 輸出産業으로서 중요성을 감안할 때 원양어업을 더욱 육성, 발전시켜야 한다.

이와 같은 어려움을 극복하고 國際競争力を 제고시킬 수 있도록 정부는 遠洋 出漁資金을 전년도 1,450억원에서 '94년도에는 1,700억원으로 늘려 지원함으로써 경영압박을 해소하도록 할 계획이며, 자원보유 주요 연안국과는 漁業協定の 체결 및 合作·共同 어로사업의 확대와 저개발 국가와는 자본·기술협력의 강화 등을 통하여 해외어장을 확보토록 할 계획이다.

또한 부족한 船員 人力難을 해소할 수 있도록 외국인 선원의 고용 범위와 병역특례 범위를 확대하도록 하고 이와 아울러 國際漁業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조업어장의 선택범위를 대양별로 확대 허용하고, 기존 허가척수 범위내에서 조업수역 및 업종간 전업을 허용함과 아울러 허가기간을 1~5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는 등 제도를 개선하므로써 어업구조의 합리적 조정 등 원양어업의 경쟁력을 높힐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아울러 북태평양 유자망어업 중단으로 오징어업계가 처한 어려움을 타개하기 위해 추진중인 북양오징어 유자망어업 전업대책은 계속 추진하여 당초 대상어선 105척중 84척의 전업을 완료하고 나머지 21척에 대한 전업도 조속히 추진할 계획이다.

第 7 章 水産 技術開發

第 1 節 養殖品種 研究開發

1. 種苗生産 試驗

水産種苗의 大量生産을 통한 沿岸資源 增強과 地域특성에 맞는 양식용 種苗生産 技術개발 및 安定的인 공급을 위하여 魚類 8종(넙치, 참돔, 감성돔, 돌돔, 조피볼락, 송어, 농어, 은어), 貝類 5종(전복, 소라, 진주조개, 오분자기, 피조개), 甲殼類 4종(보리새우, 대하, 꽃게, 참게), 其他 3종(보라성게, 북쪽말동성게, 해삼), 넙치受精卵 등 총 21품종 68,000천마리를 生産할 계획이며, 총거리가자미 등 7종에 대한 新品種 種苗生産 試驗과 6종에 대한 種苗生産 技術개발 시험을 실시할 計劃이다.

2. 海産魚類 養殖技術 開發試驗

魚類 遺傳育種 연구로서 넙치 전암컷 집단의 生理·生態學的 特性調

查, 넙치 有用遺傳子의 분리 및 생산, 범가자미의 成熟內分泌 호르몬 분석과 海産魚類 유전자 분석 및 보존에 관한 시험을 실시하고, 새로운 해산어류 양식기술 개발을 위하여 쥐노래미 養殖技術 試驗을 하고 있다. 海産魚類 陸上水槽 사육기술의 개발을 위하여 조피분락 消化酵素 活性研究와 적정 먹이공급량 파악을 위한 체내 代謝生理實驗과 高密度 사육을 위한 폐쇄순환여과 양식기술을 보다 심도있게 연구개발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加工 副産物과 값싼 사료원을 개발하여 경제적인 配合 飼料를 만들어 원활한 사료공급 및 費用 節減을 추구하고 있다.

3. 內水面 魚類養殖 技術開發

內水面 자원증강과 함께 生産性 向上 및 所得增大를 위해 優良 品種을 改良하고 생산을 확대 보급하기 위하여 잉어류, 틸라피아, 산천어, 무지개송어 등 優良親魚를 계속 관리 사육하고, 이들로부터 種苗를 양산하여 양식어가에 분양할 계획이다. 은어나 메기 등의 淡水魚 遺傳育種 시험을 통해 優良品種을 생산하고 자라, 갑각류 및 동자게의 생리 생태를 연구하여 養殖技術基盤을 마련할 것이다. 양식어민에게는 최신 淡水魚 양식기술을 신속히 보급하기 위해 技術誌를 발간하고 養殖技術 教育을 실시함은 물론 養殖現場 訪問 및 수시로 書信 및 전화로 상담 指導해 나가고 있다.

4. 海産魚 魚病研究

넙치 孵化仔魚의 大量斃死를 일으키는 상피증생증의 感染經路의 구명 과 치료 및 예방을 위해 원인 바이러스를 분리하고, 직접 건강한 넙치

에 감염시켜서 요오드나 紫外線을 照射하여 효과를 비교 실험하는 한편, 양식어민의 생산성 향상과 所得増大를 위한 魚病 豫報技術을 개발하기 위하여 동, 서, 남해 沿岸魚類 養殖場의 질병 발생실태를 조사하여 分離菌의 동정, 보관 및 藥劑感受性을 시험할 계획이고, 또한 養殖場에서 發生되고 있는 원인이 밝혀지지 않는 질병의 정확한 원인을 밝히는 診斷試驗을 並行한다. 양식장에서 발생되고 있는 많은 질병들의 치료에 사용되는 抗生物가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항생제의 투여방법과 투여량에 따른 어체내에서의 動態分析과 더불어 이들 항생제를 檢出하기 위한 最適條件을 확립하기 위한 연구를 遂行한다.

5. 貝類養殖 技術開發 試驗

양식굴의 品種 改良에 관한 연구의 일환으로 동해(영일), 서해(대전), 남해안(통영) 굴의 형질 특성을 把握하고자 각 지역의 참굴 모패를 통영군 봉암 지선에 移植하여 성장, 性성숙, 아미노산 성분 구성, 체내 글리코겐 含量 등을 비교 조사 중이며, 이와 함께 移植하지 않은 각 產地別 母貝의 성장, 性성숙, 구성 아미노산 조성 및 체내 글리코겐 함량도 비교 분석하여 棲息 環境에 따른 成長 特性을 把握하고자 分析 중이다. 이 연구 결과를 토대로 우량 모패간의 交雜 試驗을 실시할 豫定이다.

패류 먹이 개발에 관한 研究로 패류의 실내 사육시 널리 이용되는 5종의 植物 플랑크톤 高密度 培養 技術 개발을 위한 배양 條件別(수온, 조도, 培地의 營養鹽 造成, 海水의 滅菌 處理方法) 식물 플랑크톤의 성장을 測定함과 아울러 배양 조건별 식물 플랑크톤에 의한 영양염 흡수 변화를 측정 중이며, 참굴 및 큰 우럭의 산란 시기에 幼生 및 치패에

대한 먹이 適用 시험을 실시할 豫定이다.

우리 養殖 技術開發을 위하여 모패 사육 수조의 水溫, 比重 等の 環境 要素와 먹이 投與量에 따른 生殖集 重量 및 생식소 발달 단계를 조사하여 큰 우럭 種苗生産을 위한 基礎資料를 축적 중이며 추계 산란 시기에 産卵 유발 方法別 반응률, 産卵률 및 受精卵의 발생 過程, 幼生 飼育 密度別·溫度別 成長度를 조사하여 큰 우럭의 重要 생산 기술을 確立할 豫정이다.

굴 種貝 대량생산 技術개발 시험은 서해안 굴 종패 대량採苗 技術開發로 남해안 수하식 굴 양식장에 사용 가능한 종굴을 確保, 普及하고 서해안에 적합한 굴 양식 방법을 개발하기 위하여 해역별 어장환경 조사를 실시함으로써 굴 採苗 漁場의 環境 要因을 把握하고 있으며, 자연산 참굴 모패의 위 내용물 및 난숙도를 조사 중이다. 채묘 시기에는 굴 浮遊 幼生の 出現量 및 종패 부착 效果를 조사할 豫정이며, 이와 함께 海域別·노출선별 성장도 및 생존율도 조사할 豫정이다.

키조개 양식 기술에 관한 연구는 키조개의 稚貝 移植 養成 및 採卵 技術 개발로 양식 對象種으로서의 開發과 沿岸 어장의 資源 造成을 위하여 추진되고 있으며 이를 위하여 集團 발생한 稚貝 발생장에서 淺海 干潟地 및 수면이 얇은 底面에 키조개 치패를 移植하여 密度別 生存率 및 성장도를 조사하고, 産卵 誘發 및 幼生 飼育 시험을 실시하여 種苗 生産을 위한 基礎 資料를 蓄積하고 있다.

굴 양식의 持續的 생산에 관한 연구는 환경 適應力이 강한 굴 品種 選擇, 種貝의 生存率과 成長 增大 및 生産 變動 要因의 把握 등을 통하여 굴 養殖의 지속적 生産 方案 강구를 위하여 추진되고 있으며 이를 위하여 産地別 人工 採苗 및 天然 採苗 굴의 比較 養成 시험과 굴 양식 어장의 環境 調査, 종패의 단련 時期와 露出時間 등을 調査하고 이에

다른 단련 종패와 비단련 種貝의 성장 및 生存率 등을 조사함으로써 단련 기술개발을 꾀하고 있다.

피조개 養殖場의 지속적 생산에 관한 연구는 피조개 養殖 漁場의 장기간 連作으로 중간 養成 및 살포장에서 야기되는 大量 斃死의 原因 分析과 養殖 方法 개선을 모색하기 위하여 실시되고 있다. 이 연구를 위하여 中間 育成場 및 撒布 養殖場의 실태 파악과 채종 수하식 양식 및 自然産과 人工産 치패의 중간 육성에 따른 피조개의 成長度, 生存率 및 附着 生物를 조사하고 굴·피조개·진주담치의 주요 양식장 環境 分析을 실시하고 있다.

6. 海藻類 및 其他 養殖技術 開發試驗

海藻類 品種改良 試驗에서 김 耐病性, 다수확성 優良品種 조직의 生長 및 分化의 연구를 위해 융합조직과 원형질체를 분리 배양중이며 細胞融合 기초시험을 위해 대엽김(큰방사무늬김)과 내병성김(돌김류)의 原形質體를 분리하여 PEG(Poly Ethylene Glycol)에 의한 細胞融合을 실험중이다.

서해안 돌김을 선발 육종하여 계통을 보존하고 種苗量産 技術 및 養殖開發로 어민소득 증대를 위해 貝殼絲狀體, 유리사상체 培養 및 病害 調査와 동시에 패각사상체의 採苗 및 養殖試驗을 실시중이며, 優良形質을 유리사상체로 배양 보존하기 위해 選拔 育種試驗을 실시중이다. 김 品種改良 및 종 保存 普及을 위하여 남해안産 돌김을 分類 檢定하여 形質特性을 구명하고 우수 품종 選拔 育種을 통한 品種改良 試驗을 실시하고 있다.

高所得 양식품종인 모자반 增殖試驗을 위하여 참모자반의 種苗生産

및 養成技術 開發試驗으로 모조성숙도 조사, 가이식 및 害敵驅除 試驗, 2년산 참모자반의 成長度 조사를 실시중이다.

國內 보리새우 養殖産業을 위해 현재 外國産에 의존하고 있는 어미새우(母蝦)를 국내산으로 代替하기 위해 보리새우 모하의 室內飼育을 통해 性 성숙 誘導實驗을 실시하고 있다.

第 2 節 漁具漁法 및 加工技術 開發

1. 漁具漁法 技術開發

가. 操業自動化 시스템 開發 研究

우리나라 沿近海 延繩漁業은 13,000여척으로 명태, 복어, 돔류, 대구 등을 대상으로 操業을 하고 있으나, 이들 漁業은 投繩, 揚繩, 漁具 정리 및 미끼 켜는 작업 등 모든 操業과정이 수동으로 행해지고 있는 노동 집약적인 漁業 형태로써 국제 경쟁력이 취약하다. 따라서 延繩漁業이 국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어획성능이 좋고 操業이 간편한 自動延繩機 개발이 시급한 실정으므로 '93년도에 이어 계속 연구사업으로서 중·저층 延繩에 적합한 漁具 설계, 제작과 延繩 自動化 장치 시제품으로 실용화 試驗을 추진하고 있다.

나. 資源管理型 트롤網에 관한 研究

트롤어업은 沿近海 전체 생산량의 22%, 10톤이상 대형 어선의 20%를 차지하고 있으나 現행의 網目형태(마름모꼴) 및 크기(43~54mm)로는 未成熟魚의 원활한 탈출이 불가하여 未成熟魚의 혼획률이 60~70%

를 차지하고 있어 대상 資源 격감의 주된 요인이 됨에 따라 대상어종과 업종의 현실 여건에 맞는 資源管理型 트롤망 개발로 未成熟魚의 원활한 탈출과 탈출어의 생산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資源 이용의 합리화를 도모함으로써 지속적인 어민소득 향상으로 국제 漁業경쟁력을 높이고자 어체 형태 및 크기별 未成熟魚 탈출 상태 조사용 網目 크기별 사각망치 Codend 설계, 제작 등에 의한 시험조업을 통하여 트롤漁業에서 지속적으로 資源管理가 가능한 漁具漁法을 연구하고 있다.

다. 資源管理型 통발 漁具開發 試驗

지금까지의 人工魚礁 주변 수역에서의 漁具漁法은 資源조성 효과시험을 위한 소규모의 刺網, 낚시가 주로 사용되었으나 조성된 水産資源의 적정 활용을 위한 漁具가 개발되지 않아 부정어업자 및 낚시꾼들에게 주로 이용되어 沿岸 어민의 소득증대에 크게 기여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人工魚礁 주변에 최유하는 주요 어종중 成熟魚만을 활어 상태로 漁獲하고 미성숙어는 탈출시킬 수 있는 資源管理型 통발을 개발하기 위하여 기존 각종 통발 漁具의 구조 및 대상어종을 조사하고 이를 기초로 다목적 漁獲이 가능한 통발 漁具를 설계 및 제작하여 構造別, 이료別, 漁場別 漁獲 선택성 基礎試驗을 추진할 것이다.

라. 旋網漁業의 魚群制御 技術開發 研究

현재 旋網漁業의 어군제어 방법은 야간 操業시는 集魚燈을 사용하고, 주간 操業은 船體 일부분에 충격을 주어 수중에 위협 音響을 방출 사용하고 있으나 揚網(침출 인양)중에 어구 가장자리 방향으로 魚群 도피율이 많아 어획효율이 저조한 실정이다. 또한 魚群 도피 방지를 위하여 揚網용 침줄을 신속하게 인양하여야 하므로 상대적으로 揚繩機의 대용

량화가 요구되며, 또한 대규모의 船團과 漁具를 사용함으로써 많은 자본이 소요되고 있으나 주 漁獲 대상으로 하는 고등어 및 전갱이류의 魚群은 유영속력이 빨라 操業중 도파율이 높은 실정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93년도에 이어 계속연구로서 壓縮空氣 Tank를 이용한 魚群制御用 刺戟源 장치(Air gun)의 實用性 평가를 위한 海上試驗을 추진하고 있다.

마. 定置網 魚群監視 System 開發에 관한 研究

定置網 漁業은 어군의 군집(입망) 상황을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1일 1~2회 출어 操業하고 있으며 操業시 많은 인력(통당 20~30명)이 소요되어 인력난을 가중시키고 있다. 또한 입망된 魚群의 정확한 행동 패턴을 알 수 없어 漁具구조 개량이 어려운 실정으므로 定置網 漁業의 경영 합리화와 漁具구조 개량의 기본 자료 확보를 위하여 출어전에 魚群의 상태 파악은 물론 이들 魚群의 행동패턴을 관찰할 수 있는 魚群행동 自動監視 System을 고안, 설계하여 超音波 송수신기 및 기록장치 조합에 의한 豫備試驗을 추진하고 있다.

바. 피빨고등 漁具漁法 開發試驗

피빨고등은 西·南海岸에서 많이 생산되는 맛이 좋은 기호식품으로써 그 비중이 점차 높아지고 있으며 양식장의 해적 생물 구제측면에서도 대책이 필요하다. 현재의 피빨고등 漁具漁法은 형망, 패류 채취어업 등이 있으나 漁獲 選擇성이 낮으므로 資源의 효율적 관리와 효과적인 漁獲을 위해서는 선택적 漁具漁法의 개발이 필요하다. 따라서 '94년도에는 피빨고등의 행동 반응 水槽試驗, 기존 漁具의 어획성능 조사, 模型 漁具 어획성능 水槽試驗 등에 의한 기초연구를 추진하고 있다.

2. 利用加工 技術開發

다핵성 수산물중 최근 어획량이 급증하고 있는 오징어, 멸치 등의 수산물을 대상으로 하여 현대적 소비성향에 부응한 편리 기호식품의 개발과 그 가공 생산기술의 확립에 주력하는 한편, 전통 수산식품의 품질 표준화를 위하여 새우젓간의 품질에 미치는 영향을 鮮度, 鹽濃度 및 숙성온도별로 조사하고 또한 어류 내장물 등 가공 부산물의 사료소재 이용을 위한 시험도 실시중이다. 최근 건강식품으로서 그 가치가 새롭게 인식되고 있는 수산물의 특수성분을 이용한 제품개발을 위하여 해조류 등의 항균성 및 항산화성 물질의 검색과 열수 추출물을 이용한 담수산 어류 등의 기능성 제품개발 연구도 수행중에 있다.

동시에 수산물 수입개방에 대처하고 漁家소득 증대를 위하여 지역 특산품인 김 조림 및 분말제품 가공시험과 보구치를 이용한 편리식품 개발시험도 추진중에 있다.

어패류 위생관리에 관한 연구로는 패류독소 조사와 양식장에 대한 위생조사를 실시하여 한·미 패류위생 협정의 원활한 운영을 기할 것이며, 최근 수산식품 가공에 문제가 되고 있는 listeria균의 오염실태와 그 경로를 조사하는 등 수산 가공식품의 위생학적 품질 안전성에 관한 연구도 병행 실시중에 있다.

第 3 節 漁場環境 및 資源調查

1. 海洋 및 漁場 環境調查

가. 海洋調查

우리나라 연근해 어장환경의 효율적 이용, 관리 및 보전을 기하고, 어장형성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해황의 장·단기 변동 연구를 위하여 기초조사를 실시한다. 이를 위하여 미국의 NOAA 인공위성으로부터 직접 수신된 자료를 매일 분석하여 “水溫資料 速報”로서 제공하고, 조사선 및 전국 연안 75개 관측소의 현장관측 자료로서 주간 및 월간 해황 변동 등을 예측하여 “이달의 수산소식”에 게재 배포하며, 현재의 한반도 표면수온 정보이외에 먹이생물 분포와 태평양 전역에 대한 위성 해양 원격탐사 기능 강화를 위하여 첨단 수신분석 시스템 설치를 추진중이다.

한편, 연안어장의 생산성 증대를 위해 시설된 각 해역별 인공어초, 어장의 자원조성 효과를 조사하여 연안어장의 목장화에 대한 기초연구를 수행하며, 한국해양자료센터(KODC)의 기능을 적극 활용하여 국내·외 해양 및 수산정보를 수집, 해외 어장확보를 기하는 등 어민소득 증대와 수산업계의 합리적 경영을 지원하는 사업을 수행한다.

나. 沿岸漁場 및 水産資源 保全地域 環境汚染 調查

전국 주요 연안어장 및 수산자원 보전지역의 309개 조사점에 대하여 일반 수질 조사를 연 4회, 전국 연안의 저질조사 연 1회, 주요 수산물에 대한 중금속 및 유기주석 화합물 오염조사 연 2회, 수산자원 보전지

역의 자원동태 조사를 연 2회 실시하여 연안어장의 환경보전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다. 閉鎖性 内灣의 副營養化에 관한 研究

각종 양식어장이 밀집되어 있는 폐쇄성 내만 해역의 부영양화 원인물질의 순환을 파악하여 부영양화에 따른 저산소 수괴 형성 및 적조 발생과의 관련성 그리고 부영양 수역의 환경개선 및 효율적 관리를 위한 모델개발에 필요한 기본인자를 도출할 계획이다.

라. 赤潮探索 技術開發 研究

진해만을 비롯한 남·서해안 총 57개 조사점에 대하여 연 7회 이상 각 시 조사를 실시하고 적조 고도 탐색 기술 개발을 위하여 진해만과 인접 수역에 대한 원격 위성 영상에서의 적조 탐색 여부를 조사할 계획이며, 수산피해 경감을 위해 유독적조 발생 환경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마. 海洋汚染 物質과 生理生態 研究

각종 오염사고 발생시 효율적으로 대처하고, 어장의 수질오염과 생물의 반응과의 상호 작용을 구명하기 위하여 어류를 대상으로 유처리제에 대한 독성 실내 실험을 실시할 계획이다.

2. 沿近海 資源調査

연근해 어업자원의 持續的 생산과 合理的 관리를 위하여 연근해 주요 어업 대상자원에 대한 生物學的 조사와 資源動態 조사를 실시하여 成長, 再生産力, 年級群 强度, 初期 生活期 密度 등의 경년변동에 관하여

연구하고 있다.

주요 어업자원의 신속한 동태파악과 시공간적 분포특성을 연구하기 위하여 科學魚探에 의한 조사를 실시하며, 고래자원의 評價 및 管理를 위한 고래자원 目視調査를 실시하고 있다. 한편 연구해 어업의 안정적인 생산을 유지하고 어업능률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魚群의 移動狀況과 漁況의 전망을 분석하여 週間 및 月間 漁況豫測을 실시하고 있다.

3. 遠洋漁業

遠洋漁業 자원의 지속적 이용과 효율적인 국제적 어업관리 기초를 위하여 원양 주요어업(트롤 등 6개어업) 및 魚種(황다랭이 등 10개 魚種)에 대한 資源變動 및 生物特性 조사, 어업자원 概觀 作成 및 資源管理 기초연구를 실시하여 어종별 生態學的 특성 파악, 資源狀態를 평가하고 있다. 이들로부터 분석된 결과는 大西양 다랭이 資源保存委員會 (ICCAT) 등 16개 國際水産機構와 원양어업 정책자료 및 조업선의 조업능률 향상 지원을 위한 자료로서 제공되고 있다. 또한, 공해어장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遠洋漁船(트롤, 다랭이延繩, 旋網, 공치붕수망, 오징어채낚기 등)에 乘船하여 어업별 主對象種 및 附隨 漁獲種의 漁獲 統計調査, 生物學的 調査 등 원양어업 과학감시 조사활동을 통하여 魚種別 혼획상태, 漁獲對象 생물의 種別 분포와 漁場 環境과의 관계를 밝혀 公海上의 국제적 분쟁에 대처할 과학적인 기초자료를 수집, 분석하고 있다. 그리고 최근에는 遺傳學的 분석방법(미토콘드리아 DNA의 분리 및 절편이용)에 의한 원양어업 대상자원의 單位系統群 및 種確認 연구가 시도되고 있다. 시험조사선 부산 851호를 이용하여 베링공해 및 보고슬르프해역의 명태 자원상태 평가, 생물학적 조사, 어장환경

조사 등 북태평양 어업생물 군집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第 4 節 水産技術 指導 普及

국립수산진흥원 산하 25개 어촌지도소 285명의 漁村指導 公務員은 全國의 漁村契를 순회하면서 主要 養殖品種에 대한 기술지원을 강화하여 漁民所得 증대를 기하고 수입 개방에 對應하여 高所得 전략품종 보급 확대 및 지역 특산물 발굴, 養殖 普遍化 품종의 適期 기술 지원 및 適正生産, 共同漁場 자원조성, 不法漁業 추방 제도, 試驗·敎習 漁場을 통한 기술 보급 및 科學營漁 실천 등의 기본목표를 설정하여 전국 80개 연안 시·군의 어민에 대하여 수산기술 지도·보급을 실시할 계획이다.

高所得 戰略品種 普及 擴大를 위해 동해안의 큰가리비, 전복, 서해안의 참게, 보리새우, 대하, 남해안의 진주조개, 소라, 돌김, 어류 등을 대상으로 種苗生産, 養成管理, 病害對策, 經營指導에 대해 중점 지도할 계획이며, 1지도소 1품종을 선정, 指導所, 水檢, 市·郡, 水協 등과 합동으로 얼굴있는 지역 으뜸品種(商品) 개발에 노력할 계획이다.

또한, 水産技術 전반에 대한 문제점, 애모사항 등을 어민들로부터 청취하여 어민의 궁금증을 해결하고 보다 전문적인 기술지원을 위해 연구소(배양장), 지도소, 어민봉사대와 연계하여 합동 기술지원단을 편성 巡廻指導를 실시하고, 共同漁場의 효율적 관리로 資源造成 사업의 效果 增進을 도모하고자 전국연안 共同漁場에 專擔指導士를 배치하여 월 1회 이상 순회 지도하면서 漁民意識 제도, 有用 水産種苗 살포 및 餌料繁殖 조장, 어장청소, 害敵生物 驅除 등의 지도를 실시할 계획이다.

어촌지도 活動基盤 조성을 위하여 漁村指導所 창사 3개소를 증축하

고, 指導用 장비 25種 187點을 보강할 계획이며, 技術指導船 1척을 신규 배치함으로써 신속하고 보다 과학적인 어촌지도가 가능토록 노력하였으며, 指導事業과 관련한 자문 및 指導活動 협조, 漁村動向 파악 및 영어활동상의 문제점, 건의사항 등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어촌지도소 지역내의 德望과 營漁經驗이 豊富한 208名의 自願 漁村指導者를 임명하여 漁村指導 事業에 자진참여케 함으로써 지도효과를 높이도록 할 계획이다.

수입개방에 對應한 지역특성에 맞는 품목별 新技術을 보다 체계적이고 신속하게 전달하고 單純 生産指導 중심에서 생산과 경영의 종합지도로 전환함과 아울러 개방화 극복을 위한 각종 유통정보 제공으로 판매활동 개선 및 품목별 생산예측과 適正生産 誘導로 經營合理化를 기하고자 學界, 業界의 전문가 및 연구직공무원을 초청하여 지역 현안 문제 해결을 위한 研鑽會를 개최하고, 어민후계자, 自願 漁村指導者, 일반어가를 대상으로 經營日誌를 제작배부, 營漁設計 指導를 실시하고 기록실태를 심층 분석하여 지도자료로 활용할 예정이다.

어촌의 정예인력 확보 및 지도자 육성을 위해 '94어민후계자 641명, 전업어가 100명, 産業 機能要員 漁民後繼者 128명을 선정하여 집중 지도할 계획이며, 대국민 수산시책 홍보 및 UR 대비 尖端 營漁技術을 집중 홍보함으로써 어민의 자신감과 의욕을 고취시키고, 어민이 원하는 신속한 수산정보 제공을 위해 농림수산정보센터 운영의 활성화를 기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각종 養殖技術誌 및 水産消息誌, 주간 海·漁況情報, 漁場管理指導速報 등을 발간 배부하고, 신문, 잡지, 라디오 등의 매스컴을 통한 홍보활동을 더욱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또한, 어촌지도원의 資質向上으로 대어민 신뢰도를 높이고자 어류질병, 수질분석, 적조, 內水面養殖 교육 및 국내 先進地 견학과 先進 水

産國의 연수를 더욱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第 5 節 研究機能 強化

1. 機構 및 機能 強化

동·서·남해 해역별 대단위 수산연구소가 설치됨에 따라 本院은 국가 및 국제수준의 연구수요에 부응할 수 있도록 첨단 기술개발 및 기초연구 기능을 강화하고, 研究所는 지역 특화품종 개발 등 어민소득과 직결되는 산업화 시험 및 응용연구 기능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貝類, 海藻類 및 養殖 등 專門研究所의 신설을 추진하고, 시험연구 결과의 원활한 보급 및 어촌 지도기능 강화를 위하여 어촌지도소의 기구 확대 등 직제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2. 研究基金 造成 및 運用

‘94년도 水産研究財團 收入 총액은 基本財産 600백만원에 대한 利子 수입 74백만원, ‘93년도 선급법인세 환급금 11백만원, ‘93년도 사업 집행잔액 9백만원 등 총 93백만원의 예산으로 시험연구 및 지도사업 등에 75백만원, 선급법인세로 15백만원 등 총90백만원을 집행할 계획이며, 잉여금 3백만원은 기본재산으로 편입, 財團基金 총액을 603백만원으로 증액시킬 계획이다.

第 6 節 水産技術 訓練

1. 公務員 教育

국가와 국민을 위해 봉사하는 공직관 확립과 행정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직무 수행능력 함양, 「신수산」 시책 추진요원 양성교육에 중점목표를 두고 職級別 基本教育 4회 145명, 職務分野別 專門教育 26회 1,075명의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5급 25명, 6급이하 120명에 대한 승진 단계별 補修教育을 통하여 공직 윤리관 확립과 새로운 행정실무에 필요한 기본소양 및 자질향상을 도모하고, 4, 5급 및 수산청 산하단체 임직원 25명을 대상으로 「수입 개방에 따른 수산업 경쟁력 강화방안」을 주제로 한 政策開發班 교육과 5급이하 수산청 및 시·도 수산관련 공무원 135명을 대상으로 현안 수산시책 및 개방화 국제화 시대에 대응한 직무 수행능력 배양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정책개발과 시책업무 추진능력을 향상시킬 계획이다.

또한 5급이하 165명을 대상으로 漁船行政實務班, 補償行政實務班, 漁村指導實務班을 신설하여 어선등록 및 관리를 위한 전문요원을 양성하고, 어업 피해 보상 및 지원에 대한 전문지식을 습득시키며 어촌지도 실무에 필요한 신기술을 배양함으로써 수산행정의 수요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지속적인 어업질서의 확립과 수산자원의 보전을 위한 행정능력 배양을 위하여 漁業秩序管理班, 海面 및 內水面 魚類養殖班 160명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수산경영에 필요한 전문지식을 습득시키고 어민

편의 도모 및 민원감소를 위한 公正한 法 適用능력 배양을 위하여 水産 經營班, 水産法規班 95명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2. 漁民教育

어민교육은 어민후계자 및 어민 교육과정으로 구분 실시할 계획으로 어민후계자 교육과정은 漁村構造를 개선시켜 나갈 水産役軍 배출과 선진 수산기술 교육을 통한 漁村定着 기반구축을 목표로 '94년도 선발 어민후계자를 대상으로 한 신규 어민후계자과정 8회 600명과 이미 選拔한 어민후계자 교육과정의 專業漁家班 3회 100명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며, 국제 경쟁력을 갖춘 어업전문 경영인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94년도 산업기능 요원에 편입된 어민후계자를 대상으로 한 산업기능요원 어민후계자반 교육을 2회 128명을 실시할 예정이다.

어민 교육과정은 漁村契長 등 어촌계 간부 80명을 대상으로 자원보호관리반을 설정하여 어촌의 개발방향과 지도자의 역할, 어업질서 확립 대책 등을 교육함으로써 不法漁業이 없는 어촌환경 조성에 앞장설 일선 지도자를 양성할 계획이며, 또한 100톤이상 어선의 海洋汚染防止 管理人 210명에 대한 해양오염 방지교육을 통하여 청정한 해양환경 보전을 위한 전문인력을 양성할 계획이다.

3. 特別教育

신한국 창조를 위한 새 공직자상 정립과 활력있는 공직기풍 진작을 위하여 5급이상 중간관리자 35명에 대하여 意識改革 核心管理者班 교육을 실시하며, 水産製造, 水産養殖 기술자격 취득자 487명에 대하여

國家技術資格者 補修班 교육을 실시, 새로운 양식기술과 제조기술을 보급함으로써 수산 관련 기술자격 취득자의 자질향상을 도모할 계획이다.

第 8 章 支援體制 整備와 制度 改善

第 1 節 漁民支援 強化

1. 水産關聯 稅制 改善

가. 推進方向

정부의 租稅減免의 범위를 축소하려는 조세정책 기조에도 불구하고 어려운 어촌경제를 지원하기 위하여 租稅 次元의 지원을 통한 稅負擔 輕減을 올해도 계속 추진하고 있다. 특히 어업용 기자재의 부가가치세 零稅率 적용품목의 확대, 免稅 油類의 공급대상 범위 확대 등 직접적인 漁業生産費 節減을 이룰 수 있는 세제지원의 확대를 통하여 수입개방화에 對備한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稅制 改善을 관계부처에 건의하여 협의 추진중에 있다.

나. 漁業用 機資材 附加價值稅 零稅率 適用品目 擴大

현재 영세율이 적용되고 있는 어업용 기자재를 15개 품목에서 44개 품목을 추가, 59개 품목으로 확대하여 零稅率이 적용되도록 租稅減免 制法 特例規程 施行規則 제3조 개정안을 관계부처에 提出, 협의 추진중에 있다.

〈表 110〉 附加價值稅 課稅率 適用擴大 對象 漁業用 機資材

| | | | | | |
|-------------------------|-------------|------------------|------------|---------|---------|
| 1. 기관 | 2. 어군탐지기 | 3. 나침의 | 4. 구명동의 | 5. 구명의 | 6. 구명벌 |
| 7. 선동 | 8. 호중 | 9. 기적 | 10. 닻 | 11. 축전기 | 12. 선외기 |
| 13. 방향탐지기 | 14. 로오관 | 15. 레이더 | 16. 비디오프로타 | 17. 프린트 | |
| 18. 위성항법장치 | 19. 냉동기 | 20. 로프(어선어업용) | 21. 샤클 | | |
| 22. 코스 | 23. 코팅샤 | 24. 잠수용 콤팩트샤 | 25. 잠수용 호스 | | |
| 26. 수은계 | 27. 전개관 | 28. 넷트레코드 | 29. 보빙 | 30. 이상자 | |
| 31. 페인트 | 32. 사료 | 33. 항목(양식장) | 34. 양어용약품 | 35. 얼음 | |
| 36. 기상패시밀리 | 37. 패각분쇄기 | 38. 양어용수차(산소공급용) | | | |
| 39. 양어용브로와(산소공급) | 40. 양어장용 비닐 | 41. 펌파 | 42. 진주용 핵 | | |
| 43. 하우스용 폴리매치렌비닐(보온용) | | | | | |
| 44. 양어장용 비닐하우스용 파이프(보온) | | | | | |

資料 : 수산청 어정과

다. 免稅油類 供給 擴大

’94년 면세유류 공급 計劃量은 ’93보다 5%가 增加된 5,600천드럼으로 어민 수혜액이 ’93년 대비 40% 증가된 744억원에 달할 것으로 展望되며 올해도 특히 낙도·벽지 小型漁船에 44만드럼을 공급하여 낙후

〈表 111〉 ’94 免稅油類 供給計劃

單位 : 千드럼

| | ’93 實績(A) | ’94 計劃(B) | B/D |
|------------------|-----------|-----------|--------|
| 計 | 5,345 | 5,600 | 104.8% |
| 輕 油 | 4,694 | 5,011 | 106.8 |
| 輕 質 重 油 | 562 | 500 | 89.0 |
| 重 油 | 14 | 15 | 107.1 |
| 휘 발 유 | 44 | 37 | 84.1 |
| 其 他 | 31 | 37 | 119.4 |
| 漁民負擔輕減額 (百萬원) | 53,146 | 74,395 | 140.0% |

資料 : 수산청 어정과

된 낙도·벽지의 어민소득 증대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면세유류 공급대상에 内水面 및 陸上水構式 養殖場의 난방용 보일러 및 양수기도 포함될 수 있도록 재무부에 稅制 改善을 건의하여 추진하는 등 면세유류 공급대상을 확대토록 추진중에 있다.

라. 其他 稅制支援 擴大

이외에도 어선원 근로소득세 非課稅 範圍의 확대, 小型漁船에 대한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 면제범위 확대, 양식업에 부과되는 사업소세 면세 등 어민의 租稅負擔 輕減을 위해 '94. 6.2자로 재무부, 내무부 등 세제관련 부처에 건의하여 협의 추진중에 있으며, 어려운 漁村經濟 및 他産業에 비해 소득이 낮은 어민에게 조세정책 차원에서 지원이 확대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2. 水産資金 供給 擴大

가. 營漁資金

'94년도 營漁資金 支援規模는 '93년도와 동일한 7,000억원으로 沿近海漁業에 6,000억원, 遠洋漁業에 1,000억원을 供給할 계획이다.

영여자금은 어민소득을 높이기 위하여 低利로 지원되는 政策資金이므로 자금조달 능력이 미약한 零細 小規模 어업 및 共同 申告漁業 漁民을 優待 지원하고 水産物 密輸者(위장수입 포함)에 대한 營漁資金 制限 規定을 強化하여 水産物의 不法流入을 防止하므로써 沿近海 生産漁民을 保護하기 위한 制度的 裝置를 補強하였다.

<表 112>

營漁資金 供給計劃

單位：億圓

| 區 分 | | '93 | '94 | 增 △ 減 |
|---------|-------------|--------|--------|-------|
| 所 費 額 | | 15,909 | 16,594 | 685 |
| 供 給 額 | | 7,000 | 7,000 | 0 |
| (供 給 率) | | (44%) | (42%) | - |
| 調 達 | 財 政 資 金 | 1,033 | 1,613 | 580 |
| | 韓 銀 借 入 金 | 2,883 | 2,303 | △580 |
| | 水 協 自 體 資 金 | 2,884 | 2,884 | 0 |
| | 相 互 金 融 | 200 | 200 | 0 |
| 運 用 | 沿 近 海 漁 業 | 6,000 | 6,000 | 0 |
| | 遠 洋 漁 業 | 1,000 | 1,000 | 0 |

資料：수산청 협동조합과

나. 水産振興財政資金

영어자금 등 운영자금을 지원받지 못하는 수산 가공업체 및 어망생산 등에 지원하여 어업과 수산제조업의 균형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지원되는 자금으로 水産振興財政資金을 점차 農漁村構造改善事業計定으로

<表 113>

水産振興財政資金 運用計劃

單位：百萬圓

| 區 分 | '93 | '94 | 增△減 | 內 譯 |
|---------|-------|-------|--------|--|
| 計 | 5,500 | 4,000 | △1,500 | |
| 水産物製造加工 | 4,500 | 3,200 | △1,300 | '94 製造加工 - 冷凍·冷蔵加工 1,600 - 통조림加工 1,600 |
| 漁 網 生 産 | 1,000 | 800 | △200 | |

資料：수산청 협동조합과

代替하여 支援할 계획이다.

다. 農漁村構造改善特別會計 構造改善事業計定 運用

농수산업의 구조개선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農漁村構造改善特別會計法』의 제정에 따라 지원되는 농어촌구조개선사업계정 부문에 987억원을 투자하여 수산업의 구조조정 사업과 고소득 개발업종에 대한 중점지원으로 수산업을 경쟁력있는 산업으로 육성해 가고 있다.

<表 114>

農漁村構造改善事業計定 運用規模

單位：百萬元

| 區 分 | '93 | '94 | 融 資 條 件 (据置/償還) |
|---------------|--------|--------|--------------------|
| 계 | 91,580 | 98,666 | |
| ○ 運營資金 | 13,500 | 16,280 | |
| - 水産物 加工 | 8,148 | 9,780 | 0/1(8%) |
| - 水産物 機資材生産 | 1,052 | 1,200 | " |
| - 漁網 生産 | 4,300 | 5,300 | " |
| ○ 施設性資金 | 78,080 | 82,386 | |
| - 水産物處理貯藏施設 | 11,400 | 12,920 | 3/7(5~8%) |
| - 水産物流通補給施設 | 3,447 | 1,242 | 3/7(3~5%) |
| - 水産物流通構造改善 | 7,293 | 5,700 | 3/5~7(5%) |
| - 漁村觀光 開發 | 603 | 783 | 3/7(5%) |
| - 漁村所得源 開發 | 1,200 | 1,140 | 3/7(5%) |
| - 漁船建造 및 設備補完 | 27,968 | 35,440 | 1~3/4~10(5%) |
| - 養殖漁場 開發 | 4,069 | 3,721 | 3/7(5%) |
| - 淡水魚 畜養施設 | 2,100 | 1,680 | 3/5(5%) |
| - 漁業用機械 供給 | - | 2,760 | 1/4(5%) |
| - 漁村 人力育成 | 20,000 | 17,000 | 5/5(5%) |

資料：수산청 협동조합과

3. 漁民負擔 輕減

가. 營漁資金 利差補塡

‘86. 3. 5 “농어촌종합대책”의 추진으로 營漁資金 대출금리를 10%에서 8%로 引下하였고 ‘89.4.28 “농어촌 발전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沿近海 부문에 대한 營漁資金 대출금리를 8%에서 5%로 추가 引下하게 됨으로써 ‘94년도에 총 15,012백만원의 漁民負擔을 輕減하게 된다.

나. 漁家 負債輕減 利差補塡

‘87. 3 『農漁家 負債輕減 對策』에 따라 計劃造船(근해부문) 및 수산 개발자금(피해복구 용자금) 金利 引下와 경지면적 0.5ha미만에 준하는 영세어가의 증장기 자금을 3%의 低利資金으로 代替함으로써 ‘94년도에 총 1,319백만원의 어민금융 부담을 덜어주고 있다.

다. 漁家 負債輕減 特別措置 利差補塡

農漁家の 금융부담을 緩和함으로써 농어업의 경영비를 줄이고 농어가의 負債償還 負擔을 덜고자 ‘89.12.30 『농어가 부채경감에 관한 특별 조치법』이 제정 공포됨에 따라 부담경감 특별조치 대상이 되는 어가는 경지면적 2ha미만에 준하는 어가로서 零細漁家和 중·소규모 어가로 구분하여 당초 대출기간이 2년이상인 증장기 수산자금은 가구당 400만원 범위내에서 利子を 감면(연 1~12.5→0~3%)하고 상환기간도 5년据置 5년均分 償還토록 연장하였다.

相互金融 資金에 대하여도 가구당 200만원 범위내에서 이자를 감면(연 14→0~5%)하고 상환기간을 3년거치 7년균분 상환하도록 延長 조치한 바 있다.

이와 같이 漁家 負債 輕減 特別措置에 따라 '94년도에 5,218백만원의 利子負擔을 덜어주게 된다.

라. 水産被害 漁民 約定利子 補助

'92년도에 발생한 태풍, 폭풍 및 집중호우로 수산시설에 50% 以上 피해를 입은 어가가 피해 발생일 현재 대출받아 사용중인 영여자금에

〈表 115〉 各種 特別對策別 金利引下 및 '94利差補填額

單位 : 百萬元

| 特別對策別 | 金利引下 | 利差補填額 | 對象期間 |
|-----------------------|-----------|--------|--------------|
| 計 | | 24,620 | |
| ○ '86.3 農漁村綜合對策 | | | |
| - 營漁資金 金利引下 | 10.8% | 2,539 | '93.7~'94.6 |
| ○ '89.4 農漁村發展綜合對策 | | | |
| - 營漁資金 金利引下(沿近海) | 8.5% | 15,012 | '93.7~'94.6 |
| ○ '87.3 農漁家負債輕減對策 | | 1,319 | '93.1~'93.12 |
| - 計劃造船(近海) | 10.5~8% | | |
| - 水産開發(金融) | 12.5~8% | | |
| - 借款資金(IBRD) | 9.9~8% | | |
| - 零細漁家 中長期資金低利代替 | 8~12.5~3% | | |
| ○ '89.12 農漁家負債輕減特別措置法 | | 5,218 | '93.7~'94.6 |
| - 中長期資金 | 1~10.0~3% | | |
| - 相互金融資金 | 12.0~5% | | |
| ○ '92 水産被害 漁民約定 利子補助 | 5% | 532 | '92.1~'92.12 |

資料 : 수산청 협동조합과

대하여 2년간 이자 면제 및 상환기간을 연장토록 조치함에 따라 '94년도에 被害漁家 利子負擔이 532백만원 줄게 되었다.

4. 漁船員 共濟 支援

총 톤수 30톤 이상 선원에 한하여 가입이 허용되고 있는 船員 特殊 共濟의 加入對象을 漁民 便益을 위하여 전 선원으로 확대하고 선주겸 선장의 경우에도 공제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신설함과 아울러 500톤이상 대형 官用船에 대한 共濟料 割引제도 신설을 추진중에 있으며, 어한기에 연근해 소형어선의 遊漁 行爲를 許容함에 따라 어선의 유어 행위중 遊漁客에게 災害가 발생할 경우 선주가 부담하는 법률상의 損害賠償 責任으로 인한 손해를 보상함으로써 안심하고 유어행위에 종사할 수 있도록 船主 賠償責任共濟의 加入金額을 1인당 2,000만원에서 5,000만원까지로 상향 조정하고, 1사고당 지급할 수 있는 최고 한도금액을 2억원으로 신설하고 또한 共濟料 基本料率도 현행 유어객 1인당 13,500원에서 22%를 인하한 10,500원으로 인하여 공제가입 어민의 經費 負擔을 輕減시킬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表 116〉

漁船 및 船員 共濟加入 計劃

單位 : 百萬元

| | | '93 | '94 | '94/'93 |
|----|-----|---------|-----------|---------|
| 漁船 | 契約高 | 738,746 | 1,045,522 | 141% |
| | 共濟料 | 15,164 | 19,213 | 127 |
| 船員 | 契約高 | 610,820 | 837,941 | 137% |
| | 共濟料 | 11,335 | 15,210 | 134 |

資料 : 수산청 협동조합과

이와 같이 공제제도의 개선과 함께 선원 공제료의 국고 보조율도 현행 30톤미만의 어선원은 50%, 30~100톤이상의 어선원은 25%~3%를 지원하고 있으나 '95년도에는 이를 70%~3%로 상향 조정, 30톤미만의 소형어선 위주로 共濟料 補助를 대폭 인상 추진하고 漁業經營 基礎이 脆弱한 30톤미만 어선을 운영하는 船主의 共濟料 負擔輕減을 위하여 5~20톤 미만의 어선은 25%, 20~30톤미만의 어선에 대하여는 15%의 共濟料 一部를 國庫에서 支援될 수 있도록 '95년도 豫算에 反映 확보토록 적극 추진중에 있다.

5. 北漢山 水産物 搬入 制度改善

南北韓 水産物 交流는 南北交流 協力에 관한 法律에 의거 '89년부터 推進하여 오고 있으며 '89~'93간의 搬入實績은 냉동명태, 냉동홍어 등 15,284톤(9,580천\$)이고 搬出實績은 마른김 1,126(6천\$)과 냉동오징어 100톤(97천\$)으로 대부분 搬入위주로 추진되고 있다.

그동안 北韓産 搬入은 南北交流協力 促進次元에서 가급적 制限을 하지 않아 왔으나, 國內産 가격과의 차이가 많은 일부품목은 偽裝搬入이 우려되는 등 연근해 생산어민의 보호 필요성이 대두되어 '94. 4월부터는 조기, 갈치, 홍어 및 오징어에 대하여는 搬入을 허용치 않고 있으며 기타 搬入制限 品目에 대하여도 국내 반입시에는 國內 流通秩序 維持를 위해 搬入후 農水産物流通公社로 하여금 農水産物 價格安定基金을 활용해 전량 引受 販賣토록 하고 있다.

第 2 節 行政規制 緩和

지난해에 이어 금년에도 規制緩和 課題를 지속적으로 발굴·개선하여 문민정부에 부응하는 水産行政 제도발전에 노력하여 왔으나 아직도 인·허가사항 등에 대하여 이를 대폭적으로 緩和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表 117〉

規制緩和 推進狀況

'94. 8末 현재

| | 計 | 完 了 | 推 進 中 |
|----------|-----|-----|-------|
| 計 | 84건 | 65 | 19 |
| 經濟行政規制緩和 | 39 | 28 | 11 |
| 行 政 刷 新 | 45 | 37 | 8 |

資料 : 수산청 행정관리담당관실

이에 따라 우리청에서는 이미 發掘한 과제에 대하여는 관계 법령과 제도를 조속히 개선 시행토록 추진하고 불합리한 규제가 더이상 기업활동에 제약이 되지 않도록 水産 全分野의 規制緩和 對상을 발굴, 검토할 계획이며 국제경쟁력 저하와 不法漁業 등 漁業秩序를 문란케 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각종 규제 사항을 대폭 완화하고 水産關聯 면허, 허가 등은 공공이익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그 對상을 간소화하여 漁民이 불편스러워 하거나 갈망하는 분야를 최우선으로 改善하여 규제완화의 효과를 피부로 느끼도록 지속적으로 推進할 것이다.

第9章 農漁村發展委員會 活動 支援

第1節 農漁村發展委員會 構成·運營

關稅 및 貿易에 관한 一般協定에 의한 自由貿易化에 따른 農水産品에 대한 市場 개방이 확대됨에 따라 이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농어촌에 대한 근본적이고 장기적인 발전대책의 수립 등에 관하여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대통령령 제14151호('94. 1.28)에 의하여 '94. 2. 1일 각계 전문가 30명을 위원으로 한 農漁村發展委員會가 구성, 7월말까지 운영되었다.

농어민 단체, 학계, 언론계, 재계 등 國民 各界 各層의 대표가 참여한 "농어촌발전위원회"는 현시 여론수렴, 정책담당자와 전문가 意見 청취, 내부 토론회 등을 통하여 農漁村의 活力을 되찾을 수 있는 실천적 대안을 제시하기 위하여 전체회의, 운영협의회, 3개 小委員會(農漁業 競爭力強化小委員會, 農漁村産業振興小委員會, 農漁民厚生福祉小委員會) 및 보고서 작성 특위활동 등을 통하여 국민 각계 各층의 의견을 수렴한 후 "농어촌발전위원회"에서 합의를 도출한 "농정 개혁의 과제와

방향” 보고서를 '94.7.20일에 대통령께 최종 건의를 하였다.

“農漁村發展委員會”의 주요 보고사항으로는

첫째, 農林水產業 競爭力 強化 분야에서 농지제도 및 양정제도 개선, 유통 및 가격정책의 개선, 기술개발과 보급, 농어업 인력 육성, 協同組合 개혁, 水産業·축산업·임업 육성 등으로 국내·외 農水產物 가격차를 최소한으로 縮小시키기 위한 농어업 체질 강화에 최우선으로 중점을 두었으며,

둘째, 農漁村 產業振興 분야에서는 도·농 통합적 생활권 개발, 社會 間接資本의 확충, 조건 불리 지역의 綜合開發, 농어촌 환경 보전대책 등으로 농어촌 지역을 豊饒로운 삶의 공간으로 변모시키기 위한 對策에 중점을 두었고,

셋째, 農漁民 厚生福祉 분야에서 농어촌 教育 여건의 개선, 농어촌 醫療 서비스 개선과 통합 의료보험 실시, 國民年金 확대 및 농어업 경영이양 장려금 제도 실시, 농어업 산재 및 농작물 재해대책, 농어민 團體 活性化 등 도시민에 뒤떨어지지 않는 수준으로의 농어민 厚生福祉 향상을 위한 대안 마련에 중점을 두었다.

政府에서는 농어촌발전위원회의 建議事項을 중심으로 “農漁村發展對策 및 農政改革 方案”을 마련하기 위하여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경제기획원, 내무부, 재무부, 농림수산부, 교육부, 보사부 등 關係長官이 참여하는 “農業政策審議會”를 운영, 실질적이고 實踐 可能的한 對策을 확정·추진중에 있다.

第2節 水産業發展對策의 檢討

農漁村發展委員會가 “農政 改革의 課題와 方向”으로 大統領에 建議한 사항중 水産業과 관련된 사항은 모두 26건이며, 建議事項中 시책으로 반영 추진키로 한 사항은 22건, 현 시점에서 반영 추진이 어려운 사항은 4건이었다.

시책으로 반영하기가 어려운 건의 사항으로는 ① 漁業資源 管理方式을 總 漁獲量 制度로 전환 ② 船員 및 漁船共濟에 國家 再保險制度의 도입 ③ 養殖漁業 共濟制度 도입 ④ 養殖漁場 免許上限 上向 調整 등이었으며, 시책 추진이 어려운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검토결과를 농어촌발전위원회에 회보하였다.

○ 漁業資源 管理方式을 總 漁獲量 制度로 전환

우리나라 주변 수역에서는 棲息魚種이 매우 복잡 다양하므로 魚種別, 漁船別로 어획량 할당이 어려워 현실적으로 총 어획량 제도의 도입은 곤란하므로 간접적으로 資源管理 方案을 취하고 있는 現行 管理體制의 골격을 유지하면서 어획강도 제한 및 어종별 총 어획량 제도를 병행 추진해 나갈 계획임.

○ 船員 및 漁船共濟에 國家 再保險制度의 導入

國家再保險 制度는 국가가 보험의 危險 일부 또는 전부를 인수하는 제도로써 재보험 운영과 관련한 制度 制定과 專門人力 및 전담기구 신설, 예산확보 등이 선행되어야 하고 水産業 특성상 높은 災害 위험성 상존으로 현재로서는 시행이 곤란하므로 장기적인 검토 후 추진할 계획임.

〈表 118〉

農漁村發展委員會 建議事項

| 部 門 別 | 建 議 事 項 |
|--|--|
| <p>■ 施策 反映 推進 事項</p> | <p>22件</p> |
| <p><input type="checkbox"/> 貿易·海洋秩序 變化에 따른 對應力 強化</p> <p><input type="checkbox"/> 漁場 環境保全과 漁業秩序 確立</p> <p><input type="checkbox"/> 無限 競爭時代에 對應한 競爭力 強化</p> <p><input type="checkbox"/> 地域 特性에 맞는 漁村 綜合開發</p> |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수산물 검사기능 강화 2. 원양어업의 활성화 3. 수산 중요양산체제 구축과 방류사업 확대 4. 해역특성을 고려한 인공어초시설 확대 5. 산란, 서식해역의 간척·매립 제한 6. 고성능 어장정화선 건조 7. 굴폐각처리공장 건립 8. 복합품목 양식제도 도입 9. 공동어장의 양식장화 10. 수산업 경영기술 전문대학 신설 11. 수산계 고등학교 기술경영과정 설치 12. 해역별 수산연구체제 구축 13. 어촌지도기관과 연구 기술개발 활동과의 연계 강화 14. 어선세력 감축 조정은 연안어업과 근해어업으로 구분 추진 15. 어로서설의 현대화 16. 수산물 의무상장제를 자유판매 제도로 전환 17. 대규모 양육항에 수산물 종합처리장 설치 18. 산지 물류시설과 소비지 집배센터 건립 19. 협동조합 개혁 20. 자원보호 및 수산물 유통기능 중심체제로 수산청 조직 개편 21. 어촌·어항·어장을 연계한 어촌개발 추진 22. 어항시설 확충 |
| <p>■ 施策 反映 관련 事項</p> | <p>4件</p> |
| <p><input type="checkbox"/> 漁場 環境保全과 漁業秩序 確立</p> <p><input type="checkbox"/> 無限 競爭時代에 對應한 競爭力 強化</p> |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어업자원 관리방식을 총 어획량 제도로 전환 2. 선원 및 어선공제의 국가재보험제도 도입 3. 양식어업 공제제도 도입 4. 양식어업 면허상한 조정 |

資料 : 수산청 기획예산담당관실

○ 養殖漁業 共濟制度 導入

양식어업 공제제도 도입을 위하여 굴 수하식 등 養殖漁業에 대한 共濟制度 도입을 검토한 결과 공제료 납부 부담 등으로 공제가입을 반대하는 어민이 많고, 共濟加入 희망자가 적어 공제료 수입만으로 공제금지면이 어려워 정부의 막대한 財政負擔이 예상되는 등 아직은 실시 시기가 적절치 않은 것으로 판단되어 우선 양식재해 어민에 대하여는 현재의 風水害對策法과 農漁業災害對策法에 의한 재해 지원 실시로 養殖被害 漁民負擔 輕減 및 안정적인 어업경영을 도모하고, 장기적으로는 외국의 사례와 국내어업 여건 변동 등을 감안, 연구과제로 추진계획임.

○ 養殖漁業 免許上限 調整

현재 水産業法上 1세대당 漁業別 소유면적은 30ha, 총 소유 可能面積은 60ha로 되어 있으며 어촌계 및 수협 소유어장은 시·도지사가 면적을 1:1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하여 특정인에게 過多한 所有를 제한하여 多數 漁民이 어장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와 같이 어장 면적 상한을제한하는 것은 배타적인 漁業權을 특징인이 과다하게 소유할 시에 다수 어민이 漁場 取得 기회가 상실될 우려가 있기 때문이며, 앞으로 養殖技術의 발달, 어장개발 및 漁業經營 추세 등을 감안하여 면적 상한을 검토해 나갈 계획임.

第3節 農漁村特別稅 投資計劃 樹立

농어촌발전위원회에서 국민 각계 각층의 輿論 收斂과 現場 農漁民의 생생한 목소리를 반영하여 수립한 農漁村發展對策을 효율적으로 추진하

기 위하여 2004년까지 매년 1조5천억원씩 10년간 총 15조원을 농어촌에 투자하는 농특세 투자계획을 마련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으로는 農漁業 競爭力 強化에 농어촌특별세의 60.5%인 9조775억원이 投資하고, 農漁村 生活與件 개선에 4조1,040억원, 農漁民 福祉 增進에 1조8,185억원을 배분 투자할 계획이다.

동 투자계획에는 水産廳 所管으로 농어업 경쟁력 강화분야에 漁港建設 7,800억원, 養殖漁場開發 700억원, 漁村綜合開發 5,035억원 등 총 1조3,535억원이 反映되어 農漁業 競爭力 強化 分野 총 규모의 14.9%를 차지하고 있으며, 또한 농수산 技術專門大學 및 自營 農水産高校 지원에 2,500억원이 배분되었는데 이 중 수산 기술전문대학 1개교를 水産廳 傘下에 설립 지원할 계획이며, 자연 농수산고교 13개교중 水産高校에 3개소가 육성 지원하게 된다.

水産廳 所管의 농어촌특별세 투자계획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첫째, 國家가 관리하는 1·3종 漁港建設의 조기 완공을 위해 '92년 以前에 착공하여 아직 완공되지 않은 24개항에 대하여 '98년까지 3,300억원을 투자하며, 地方政府가 管理하고 있는 2종 漁港은 '94년부터 2004년까지 200개항 완공목표로 4,500억원을 集中 投資하고 지방재정이 취약함을 감안 지방정부에서 負擔하고 있는 지방비 50%도 전액 국고보조로 지원하여 漁村의 社會間接 施設인 漁港 基本施設 조기 완공으로 태풍, 해일 등 각종 풍수해 피해 감소 및 漁村 정주환경 조성에 획기적으로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둘째, 沿岸漁場 汚染으로 대체 어장을 적극 개발하기 위한 養殖漁場開發 사업은 2004년까지 종묘생산시설 등 생산기반 시설과 낚치 등 魚類養殖 開發, 가리비, 전복 등 貝類養殖 開發에 총 700억원을 국고보조 40%, 용자 40%로 지원하여 고소득, 고가품종의 養殖 水産物 供給

〈表 119〉

農漁村特別税 投資計劃('94~2004)

單位：億圓

| 事業名 | 總所要 | '94追更 | 備考 |
|-------------------------------|---------|-------|------------------|
| I. 農漁業 競争力強化 | 90.775 | 1.670 | |
| ① 농어업 기술개발 | 5.040 | 150 | |
| ② 농수산 기술전문대학 및 자영 농수산고교 지원 | 2.500 | - | |
| ③ 재경지 정리 | 43.000 | 320 | |
| ④ 중소농가 고품질 농업생산지원 | 2.000 | - | |
| ⑤ 불류센터 건설 등 유통개선 | 14.550 | 700 | |
| ⑥ 농수산 신용보증기금 출연 | 7.000 | 200 | |
| ⑦ 어항건설 | 7.800 | 300 | |
| ○ 1·3종 어항 | 3.300 | - | '92이전 착공분 24개항 |
| ○ 2종 어항 | 4.500 | 300 | 200개항 |
| ⑧ 양식어장 및 어촌종합개발 | 5.735 | - | |
| ○ 양식어장 개발 | 700 | - | 패류, 어류 등 1.750ha |
| ○ 어촌종합 개발 | 5.035 | - | 150개 권역 |
| ⑨ 임도건설 | 3.150 | - | |
| II. 農漁村 生活與件改善 | 41.040 | 1.450 | |
| ① 농어촌 도로확충 | 12.000 | 650 | |
| ② 농어촌 주택개발 | 8.000 | 400 | |
| ③ 농어촌 생활용수개발 | 12.000 | 400 | |
| ④ 농어촌하수도 및 오염 소하천정비 | 7.000 | - | |
| ⑤ 농어촌 폐기물처리 지원 | 2.040 | - | |
| III. 農漁民 福祉增進 | 18.185 | 360 | |
| ① 농어민 연금제 실시 | 8.000 | 10 | |
| ②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 | 4.785 | 200 | |
| ③ 대학생 학자금 융자 | 2.100 | 100 | |
| ④ 도시유학생 기숙사 건립 | 360 | - | |
| ⑤ 농어촌 공공도서관 건립 | 940 | - | |
| ⑥ 오지 및 낙도 교통지원 | 800 | 50 | |
| ⑦ 농어민 직업훈련 | 1.200 | - | |
| 합 계(21개 사업) | 150.000 | 3.480 | |

資料：수산청 기획예산담당관실

확대로 漁民所得 증대에 크게 기여할 전망이다.

셋째, 바다, 漁業, 漁村 등 지역경제를 연계하여 종합개발하는 漁村 綜合開發 사업은 어촌환경시설, 유통·가공시설, 厚生福祉시설, 어선계류시설, 海岸施設, 수산자원 조성 등을 沿岸의 灣중심으로 권역별로 구분하여 2004년까지 5,035억원을 들여 종합적이고 집중적으로 투자하며, 국고 50%, 지방비 45%, 자담 5%로 지원하던 것을 地方財政의 취약함을 감안 地方費 45%도 전액 국고보조로 지원하여 어촌 정주환경 조성 및 漁民所得 증대에 크게 기여할 전망이다.

여백

統計로 본 水産業 動向

1. 國 民 經 濟 主 要 指 標
2. 產 業 別 經 濟 成 長 率
3. 產 業 構 造
4. 總 人 口 斗 漁 家 人 口
5. 漁 船 勢 力
6. 水 產 物 生 產
7. 水 產 物 需 給
8. 水 產 物 輸 出
9. 漁 家 所 得
10. 漁 業 粗 收 入 及 經 營 費
11. 漁 家 負 債

여백

1. 國民經濟 主要指標

| | 國民總生産 | | 1人當 GNP | | 디플레이터 | | 成長寄與率 ('90基年, %) | |
|-------|--------------|-------------|------------|------------|----------------|-----------------|----------------------|------|
| | 經常 (10億圓) | 經常 (億\$) | 經常 (千圓) | 經常 (\$) | GNP '90=100 | 農林漁業 '90=100 | 農 林 漁 業 | 鑛工業 |
| 74 | 7,597.4 | 188 | 219 | 542 | 21.8 | 22.7 | 19.5 | 37.6 |
| 75 | 10,135.8 | 209 | 288 | 594 | 27.3 | 29.6 | 14.4 | 40.6 |
| 76 | 13,912.7 | 287 | 389 | 803 | 33.1 | 34.8 | 17.5 | 37.1 |
| 77 | 17,806.6 | 368 | 490 | 1,012 | 38.6 | 41.3 | 6.4 | 36.6 |
| 78 | 24,001.6 | 515 | 651 | 1,396 | 47.4 | 56.7 | △21.4 | 51.6 |
| 79 | 30,801.8 | 615 | 823 | 1,644 | 56.7 | 63.6 | 16.9 | 36.5 |
| 80 | 36,746.7 | 605 | 968 | 1,592 | 70.3 | 74.1 | △11.1 | 7.4 |
| 81 | 45,528.1 | 668 | 1,181 | 1,734 | 82.2 | 84.9 | 35.3 | 46.3 |
| 82 | 52,182.3 | 713 | 1,334 | 1,824 | 88.0 | 85.0 | 16.4 | 24.7 |
| 83 | 61,722.3 | 795 | 1,554 | 2,002 | 92.4 | 85.7 | 9.7 | 35.3 |
| 84 | 70,083.9 | 870 | 1,739 | 2,158 | 96.0 | 94.1 | △2.4 | 54.9 |
| 85 | 79,301.1 | 911 | 1,952 | 2,242 | 73.3 | 66.4 | - | - |
| 86 | 92,909.3 | 1,064 | 2,264 | 2,568 | 76.8 | 66.2 | 5.6 | 43.2 |
| 87 | 109,726.5 | 1,334 | 2,647 | 3,218 | 80.7 | 75.0 | △6.9 | 46.0 |
| 88 | 131,971.3 | 1,798 | 3,138 | 4,295 | 86.3 | 82.2 | 6.7 | 35.5 |
| 89 | 147,941.6 | 2,204 | 3,498 | 5,210 | 90.9 | 88.0 | △1.7 | 19.3 |
| 90 | 178,262.1 | 2,518 | 4,165 | 5,883 | 100.0 | 100.0 | △4.9 | 29.3 |
| 91 | 214,239.9 | 2,920 | 4,957 | 6,757 | 110.2 | 105.7 | 0.4 | 29.0 |
| 92 | 238,704.6 | 3,057 | 5,471 | 7,007 | 116.9 | 107.2 | 9.5 | 28.0 |
| 93(p) | 263,860.9 | 3,287 | 5,993 | 7,466 | 122.4 | 115.9 | △3.5 | 26.0 |

資料：1) 국민계정(BOK)

2) 조사통계월보(BOK)

2. 産業別 經濟成長率

| | 國民 | 農 林 漁 業 | | | 鐵工業 | 建設 및 電氣가스 水道事業 | 서어비 스業 | |
|-------|--------|---------|-------|-------|------|----------------------|-----------|------|
| | 總生産 | | 農 業 | 林 業 | | | | 漁 業 |
| | '90不變% | | | | | | | |
| 72 | 5.1 | 2.4 | 1.2 | 3.7 | 17.6 | 11.6 | 2.0 | 7.2 |
| 74 | 8.1 | 6.5 | 7.0 | △5.6 | 14.3 | 15.3 | 12.8 | 7.2 |
| 75 | 6.4 | 3.9 | 5.4 | △5.9 | 2.6 | 12.2 | 9.7 | 7.3 |
| 80 | △3.7 | △19.1 | △22.7 | 17.7 | 3.9 | △1.0 | 1.4 | 2.2 |
| 81 | 5.9 | 14.3 | 15.6 | 1.2 | 13.8 | 9.4 | △1.1 | 4.5 |
| 82 | 7.2 | 7.4 | 10.3 | △16.9 | 1.0 | 5.9 | 15.6 | 7.2 |
| 83 | 12.6 | 7.7 | 7.9 | 23.0 | △2.2 | 15.0 | 22.7 | 10.5 |
| 84 | 9.3 | △1.5 | △2.2 | 2.2 | 2.6 | 16.8 | 9.8 | 9.5 |
| 85 | 7.0 | 3.8 | 4.4 | △8.7 | 6.2 | 7.0 | 6.7 | 8.9 |
| 86 | 11.9 | 4.7 | 5.2 | △16.1 | 13.8 | 19.0 | 6.4 | 10.8 |
| 87 | 12.3 | △6.1 | △7.2 | 5.2 | △2.2 | 16.9 | 12.5 | 11.7 |
| 88 | 12.0 | 6.9 | 11.1 | △7.5 | 0.2 | 13.4 | 8.9 | 11.0 |
| 89 | 6.9 | △1.0 | △1.6 | △7.1 | 6.2 | 4.0 | 14.2 | 7.7 |
| 90 | 9.5 | △4.6 | △4.9 | △9.3 | △0.2 | 9.3 | 24.4 | 8.6 |
| 91 | 9.1 | 0.4 | 1.4 | △14.2 | △1.2 | 8.9 | 13.7 | 9.5 |
| 92 | 5.0 | 6.0 | 5.8 | 5.9 | 8.1 | 4.8 | 0.5 | 6.4 |
| 93(p) | 5.6 | △2.4 | △3.2 | △13.8 | 8.0 | 4.9 | 6.5 | 7.8 |

資料 : 국민계정 (BOK)

3. 産業 構造

| | 國內 總生産 | 農 林 漁 業 | | | 鑛工業 | 建設 및 電氣가스 水道事業 | 서어비 스業 | |
|-------|-----------|---------|------|-----|-----|----------------------|-----------|------|
| | | 農 業 | 林 業 | 漁 業 | | | | |
| | 經常 10億圓 | % | | | | | | |
| 70 | 2,767.9 | 26.6 | 23.3 | 1.7 | 1.6 | 22.5 | 6.5 | 44.3 |
| 73 | 5,420.3 | 25.0 | 21.4 | 1.5 | 2.2 | 26.2 | 5.8 | 43.0 |
| 74 | 7,669.4 | 24.8 | 22.0 | 1.4 | 1.5 | 27.1 | 5.5 | 42.5 |
| 75 | 10,302.2 | 25.0 | 22.0 | 1.3 | 1.6 | 27.5 | 6.0 | 41.6 |
| 76 | 14,101.0 | 23.6 | 21.0 | 1.2 | 1.5 | 28.7 | 5.9 | 41.8 |
| 77 | 18,074.1 | 22.4 | 19.4 | 1.2 | 1.8 | 28.9 | 7.0 | 41.7 |
| 78 | 24,327.1 | 20.6 | 18.0 | 1.1 | 1.6 | 29.4 | 9.0 | 41.0 |
| 79 | 31,323.1 | 19.2 | 16.6 | 0.9 | 1.6 | 29.9 | 10.2 | 40.7 |
| 80 | 38,041.1 | 14.9 | 12.7 | 1.0 | 1.2 | 31.0 | 10.4 | 43.7 |
| 81 | 47,482.0 | 15.6 | 13.4 | 0.9 | 1.3 | 31.3 | 9.4 | 43.7 |
| 82 | 54,442.8 | 14.7 | 12.7 | 0.8 | 1.2 | 30.4 | 10.0 | 45.0 |
| 83 | 63,832.8 | 13.6 | 11.5 | 0.9 | 1.2 | 31.0 | 10.6 | 44.8 |
| 84 | 72,644.3 | 12.9 | 11.0 | 0.9 | 1.1 | 31.8 | 10.7 | 44.6 |
| 85 | 82,062.1 | 12.5 | 10.6 | 0.7 | 1.2 | 30.5 | 10.6 | 46.5 |
| 86 | 95,736.4 | 11.2 | 9.3 | 0.6 | 1.3 | 31.8 | 10.2 | 46.8 |
| 87 | 112,130.3 | 10.1 | 8.4 | 0.6 | 1.2 | 32.3 | 10.3 | 47.2 |
| 88 | 133,184.2 | 10.2 | 8.7 | 0.5 | 1.1 | 32.9 | 10.4 | 46.6 |
| 89 | 149,164.7 | 9.6 | 8.1 | 0.4 | 1.1 | 31.7 | 11.5 | 47.2 |
| 90 | 179,539.0 | 8.7 | 7.4 | 0.4 | 0.9 | 29.7 | 13.7 | 47.9 |
| 91 | 215,734.4 | 7.7 | 6.5 | 0.3 | 0.9 | 29.0 | 16.0 | 47.3 |
| 92 | 240,392.2 | 7.4 | 6.3 | 0.3 | 0.8 | 28.1 | 15.9 | 48.6 |
| 93(p) | 265,548.1 | 7.1 | 6.0 | 0.3 | 0.8 | 27.4 | 15.9 | 49.5 |

資料 : 國庫계정(BOK)

4. 總人口와 漁家人口

| | 總 人 口 | | 漁 家 人 口 | | | 漁 業 家 口 | | 家口當人口 名 |
|----|--------|----------|---------|----------|----------|---------|----------|------------|
| | 千名 | 增加率 % | 千名 | 構成比 % | 増減率 % | 千名 | 構成比 % | |
| 70 | 32,241 | 2.21 | 1,165 | 3.6 | △12.1 | 195 | 3.3 | 5.97 |
| 73 | 34,103 | 1.78 | 979 | 2.9 | △7.8 | 171 | - | 5.73 |
| 74 | 34,602 | 1.73 | 914 | 2.6 | △6.6 | 160 | - | 5.71 |
| 75 | 35,281 | 1.70 | 894 | 2.5 | △2.2 | 154 | 2.3 | 5.81 |
| 76 | 35,849 | 1.61 | 880 | 2.5 | △1.6 | 153 | - | 5.75 |
| 77 | 36,412 | 1.57 | 871 | 2.4 | △1.0 | 153 | - | 5.69 |
| 78 | 36,969 | 1.53 | 827 | 2.2 | △5.1 | 152 | - | 5.44 |
| 79 | 37,534 | 1.53 | 791 | 2.1 | △4.4 | 147 | - | 5.38 |
| 80 | 38,124 | 1.57 | 844 | 2.2 | 6.7 | 157 | 2.0 | 5.38 |
| 81 | 38,723 | 1.57 | 776 | 2.0 | △8.1 | 150 | - | 5.17 |
| 82 | 39,326 | 1.56 | 755 | 1.9 | △2.7 | 146 | - | 5.17 |
| 83 | 39,929 | 1.46 | 739 | 1.9 | △2.1 | 147 | - | 5.03 |
| 84 | 40,406 | 1.34 | 716 | 1.8 | △3.1 | 147 | - | 4.87 |
| 85 | 40,806 | 0.93 | 689 | 1.7 | △3.8 | 145 | 1.5 | 4.75 |
| 86 | 41,184 | 0.93 | 666 | 1.6 | △3.3 | 144 | - | 4.63 |
| 87 | 41,575 | 0.96 | 635 | 1.5 | △4.7 | 141 | - | 4.50 |
| 88 | 41,975 | 0.97 | 602 | 1.4 | △5.2 | 138 | - | 4.36 |
| 89 | 42,380 | 0.96 | 561 | 1.3 | △6.8 | 134 | - | 4.19 |
| 90 | 42,869 | 0.98 | 496 | 1.2 | | 122 | 1.1 | 4.08 |
| 91 | 43,268 | 0.93 | 470 | 1.1 | △5.2 | 120 | - | 3.92 |
| 92 | 43,663 | 0.91 | 425 | 1.0 | △9.6 | 116 | - | 3.66 |
| 93 | 44,056 | 0.90 | 405 | 0.9 | △4.7 | 114 | - | 3.56 |

資料 : 1) 한국통계월보(EPIB), 2) 농림수산통계연보(MAPF)

註 : 1) 총인구는 연중인구(7.1기준)

2) '90년 이후 어가인구는 해면어업 종사 경영자만을 대상으로 함.

5. 漁船勢力

| | 計 | | | 動力船 | | | 無動力船 | |
|----|-------|-------|--------|------|-----|-------|------|----|
| | 隻數 | 噸數 | 隻當平均噸數 | 隻數 | 噸數 | 馬力 | 隻數 | 噸數 |
| | 千隻 | T/G/T | G/T | | | 千HP | | |
| 70 | 68.4 | 358 | 5.24 | 14.1 | 268 | 676 | 54.3 | 90 |
| 73 | 68.6 | 511 | 7.45 | 16.5 | 432 | 1.134 | 52.1 | 79 |
| 74 | 68.0 | 602 | 8.85 | 18.0 | 526 | 1.418 | 50.0 | 76 |
| 75 | 67.7 | 648 | 9.57 | 19.7 | 581 | 1.587 | 48.0 | 67 |
| 76 | 65.8 | 662 | 10.06 | 22.7 | 605 | 1.676 | 43.1 | 57 |
| 77 | 66.5 | 683 | 10.26 | 29.8 | 636 | 1.866 | 36.7 | 46 |
| 78 | 70.3 | 756 | 10.75 | 34.0 | 713 | 2.187 | 36.3 | 43 |
| 79 | 74.6 | 753 | 10.10 | 47.1 | 721 | 2.334 | 27.5 | 32 |
| 80 | 77.6 | 771 | 9.94 | 51.1 | 740 | 2.462 | 26.5 | 30 |
| 81 | 80.5 | 782 | 9.71 | 59.7 | 757 | 2.585 | 20.8 | 24 |
| 82 | 86.5 | 808 | 9.33 | 67.1 | 785 | 2.797 | 19.4 | 23 |
| 83 | 88.5 | 828 | 9.35 | 69.3 | 806 | 2.973 | 19.3 | 22 |
| 84 | 90.4 | 852 | 9.42 | 71.6 | 830 | 3.213 | 18.8 | 22 |
| 85 | 90.9 | 858 | 9.43 | 71.8 | 836 | 3.353 | 19.1 | 22 |
| 86 | 93.0 | 884 | 9.50 | 73.9 | 862 | 3.607 | 19.1 | 22 |
| 87 | 94.2 | 912 | 9.69 | 74.8 | 890 | 4.027 | 19.3 | 22 |
| 88 | 99.0 | 948 | 9.57 | 78.4 | 925 | 4.701 | 20.6 | 23 |
| 89 | 98.5 | 963 | 9.77 | 78.3 | 941 | 5.037 | 20.2 | 22 |
| 90 | 99.7 | 977 | 9.80 | 79.4 | 955 | 5.449 | 20.3 | 22 |
| 91 | 103.8 | 983 | 9.46 | 84.0 | 962 | 6.198 | 19.8 | 21 |
| 92 | 94.1 | 959 | 10.19 | 76.8 | 940 | 6.910 | 17.3 | 19 |
| 93 | 87.5 | 920 | 10.52 | 72.9 | 904 | 7.279 | 14.6 | 16 |

資料 : 수산청 어선과

6. 水産物 生産

| | 計 | 沿岸 | 近海 | 遠洋 | 養殖 | 内水面 |
|-------|-------|-----|-----|-------|-------|-----|
| | F/M/T | | | | | |
| 70 | 935 | 455 | 271 | 90 | 119 | - |
| 73 | 1.686 | 712 | 352 | 361 | 260 | 1 |
| 74 | 2.026 | 883 | 384 | 418 | 340 | 1 |
| 75 | 2.135 | 819 | 390 | 566 | 351 | 9 |
| 76 | 2.407 | 839 | 418 | 724 | 411 | 15 |
| 77 | 2.421 | 812 | 496 | 596 | 491 | 26 |
| 78 | 2.354 | 838 | 526 | 566 | 391 | 33 |
| 79 | 2.422 | 879 | 535 | 486 | 481 | 41 |
| 80 | 2.410 | 803 | 569 | 458 | 541 | 39 |
| 81 | 2.812 | 879 | 650 | 542 | 701 | 40 |
| 82 | 2.644 | 822 | 653 | 528 | 596 | 45 |
| 83 | 2.793 | 773 | 714 | 615 | 644 | 47 |
| 84 | 2.910 | 804 | 720 | 658 | 678 | 50 |
| 85 | 3.103 | 838 | 657 | 767 | 788 | 53 |
| 86 | 3.660 | 891 | 835 | 930 | 947 | 57 |
| 87 | 3.332 | 850 | 676 | 883 | 866 | 57 |
| 88 | 3.209 | 757 | 755 | 774 | 887 | 36 |
| 89 | 3.319 | 765 | 745 | 930 | 848 | 31 |
| 90 | 3.275 | 798 | 744 | 925 | 773 | 35 |
| 91 | 2.983 | 802 | 502 | 874 | 775 | 30 |
| 92 | 3.289 | 759 | 536 | 1,024 | 936 | 34 |
| 93 | 3.336 | 885 | 641 | 741 | 1,038 | 31 |
| 94(p) | 3.210 | 800 | 600 | 870 | 900 | 40 |

資料：농림수산통계연보(MAFF)

7. 水産物 需給

| | 供給 | | | 計 | 消費 | | | 1人當消費 |
|-------|-------|-----|-----|-------|-------|-------|-----|-------|
| | 生産 | 輸入 | 在庫 | | 國內消費 | 輸出 | 移越 | |
| | | | | 千M/T | | | | kg |
| 73 | 1,686 | - | - | 1,686 | 1,326 | 360 | - | 28.7 |
| 74 | 2,026 | - | - | 2,026 | 1,641 | 385 | - | 27.8 |
| 75 | 2,135 | - | - | 2,135 | 1,562 | 573 | - | 29.9 |
| 76 | 2,407 | - | - | 2,407 | 1,644 | 763 | - | 29.8 |
| 77 | 2,421 | 15 | - | 2,436 | 1,655 | 771 | - | 29.5 |
| 78 | 2,354 | 54 | - | 2,408 | 1,711 | 697 | - | 25.9 |
| 79 | 2,422 | 55 | - | 2,477 | 1,689 | 788 | - | 25.9 |
| 80 | 2,410 | 41 | 68 | 2,519 | 1,746 | 696 | 77 | 27.0 |
| 81 | 2,812 | 48 | 77 | 2,937 | 2,096 | 731 | 110 | 33.2 |
| 82 | 2,644 | 61 | 110 | 2,815 | 2,007 | 721 | 87 | 31.6 |
| 83 | 2,793 | 66 | 87 | 2,946 | 2,147 | 699 | 100 | 38.1 |
| 84 | 2,910 | 84 | 100 | 3,094 | 2,245 | 764 | 85 | 37.7 |
| 85 | 3,103 | 91 | 85 | 3,279 | 2,318 | 867 | 94 | 37.2 |
| 86 | 3,660 | 127 | 94 | 3,881 | 2,543 | 1,236 | 102 | 41.9 |
| 87 | 3,332 | 422 | 102 | 3,856 | 2,407 | 1,272 | 177 | 37.1 |
| 88 | 3,209 | 452 | 177 | 3,838 | 2,336 | 1,303 | 199 | 33.6 |
| 89 | 3,319 | 404 | 199 | 3,922 | 2,526 | 1,120 | 276 | 36.0 |
| 90 | 3,275 | 380 | 276 | 3,931 | 2,583 | 1,058 | 290 | 36.2 |
| 91 | 2,983 | 554 | 290 | 3,827 | 2,235 | 1,284 | 308 | 35.9 |
| 92 | 3,289 | 410 | 308 | 4,007 | 2,327 | 1,300 | 380 | 35.5 |
| 93 | 3,336 | 488 | 380 | 4,204 | 2,842 | 1,002 | 360 | - |
| 94(p) | 3,210 | 630 | 360 | 4,200 | 2,850 | 1,000 | 350 | - |

資料 : 농림수산통계연보(MAFF)

註 : 1인당 소비량은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식품수급표" 자료이며 순식품 기준임.

8. 水産物 輸出

| | 計 | 活鮮魚 | 冷凍品 | 海藻鹽辛品 | 昆布類 | 遠洋魚類 | 其他水産物 | 漁網類 |
|-------|-------|-----|-----|-------|-----|------|-------|-----|
| | 百萬\$ | | | | | | | |
| 70 | 90 | 11 | 6 | 17 | - | 38 | 11 | 7 |
| 73 | 260 | 50 | 32 | 38 | 8 | 80 | 34 | 18 |
| 74 | 291 | 61 | 35 | 24 | 10 | 90 | 40 | 31 |
| 75 | 429 | 62 | 58 | 32 | 10 | 183 | 54 | 30 |
| 76 | 598 | 76 | 81 | 75 | 15 | 262 | 55 | 34 |
| 77 | 703 | 90 | 109 | 40 | 34 | 313 | 68 | 49 |
| 78 | 752 | 112 | 120 | 51 | 42 | 295 | 70 | 62 |
| 79 | 936 | 119 | 123 | 61 | 26 | 457 | 70 | 80 |
| 80 | 871 | 128 | 103 | 27 | 28 | 352 | 63 | 112 |
| 81 | 1,051 | 153 | 115 | 56 | 38 | 428 | 66 | 119 |
| 82 | 947 | 151 | 131 | 122 | 51 | 329 | 78 | 85 |
| 83 | 908 | 145 | 134 | 83 | 55 | 315 | 95 | 81 |
| 84 | 956 | 155 | 124 | 83 | 61 | 354 | 104 | 78 |
| 85 | 970 | 155 | 124 | 97 | 55 | 328 | 132 | 79 |
| 86 | 1,384 | 253 | 165 | 108 | 72 | 468 | 219 | 102 |
| 87 | 1,731 | 369 | 234 | 128 | 95 | 571 | 223 | 111 |
| 88 | 2,047 | 476 | 260 | 150 | 137 | 618 | 270 | 136 |
| 89 | 1,821 | 391 | 252 | 167 | 114 | 540 | 226 | 131 |
| 90 | 1,637 | 328 | 202 | 156 | 85 | 475 | 267 | 124 |
| 91 | 1,634 | 349 | 272 | 156 | 95 | 513 | 258 | - |
| 92 | 1,518 | 356 | 160 | 156 | 99 | 504 | 243 | - |
| 93(p) | 1,497 | 343 | 144 | 154 | 123 | 454 | 279 | - |

資料 : 農林수산통계연보(MAIF)

註 : '91년부터 어망류 제외됨.

9. 漁家所得

| | 漁家 所得 | 漁業所得 | | 漁業外所得 | | 移轉 收入 | 漁業外 所得 構成比 | | |
|----|----------|-----------|-----------|----------|-----------|----------|------------------|-------|------|
| | | 漁業 粗收入 | 漁業 經營費 | 兼業 所得 | 事業外 所得 | | | | |
| | 千圓 | | | | | | % | | |
| 77 | 1,391 | 890 | 1,797 | 907 | 501 | 365 | 136 | - | 36.0 |
| 78 | 1,529 | 829 | 2,291 | 1,462 | 700 | 506 | 194 | - | 45.8 |
| 79 | 1,923 | 1,296 | 2,519 | 1,223 | 627 | 360 | 267 | - | 32.6 |
| 80 | 2,596 | 1,752 | 3,090 | 1,338 | 844 | 392 | 452 | - | 32.5 |
| 81 | 3,042 | 1,978 | 3,475 | 1,497 | 853 | 524 | 329 | 211 | 28.0 |
| 82 | 3,279 | 1,960 | 3,513 | 1,553 | 960 | 607 | 353 | 359 | 29.3 |
| 83 | 4,109 | 2,570 | 5,415 | 2,845 | 1,185 | 772 | 413 | 354 | 28.8 |
| 84 | 4,508 | 2,582 | 5,589 | 3,007 | 1,480 | 1,051 | 429 | 446 | 32.8 |
| 85 | 4,869 | 2,815 | 6,047 | 3,232 | 1,553 | 1,045 | 508 | 501 | 31.9 |
| 86 | 5,402 | 3,219 | 7,155 | 3,936 | 1,581 | 1,011 | 570 | 602 | 29.3 |
| 87 | 6,166 | 3,420 | 7,577 | 4,157 | 1,814 | 1,320 | 494 | 932 | 29.4 |
| 88 | 6,821 | 3,451 | 7,882 | 4,431 | 2,159 | 1,597 | 562 | 1,211 | 31.7 |
| 89 | 8,079 | 4,152 | 8,863 | 4,711 | 2,508 | 1,784 | 724 | 1,419 | 31.0 |
| 90 | 10,023 | 5,216 | 10,367 | 5,151 | 3,192 | 2,200 | 992 | 1,615 | 31.8 |
| 91 | 11,309 | 5,285 | 10,255 | 4,970 | 3,776 | 2,431 | 1,345 | 2,248 | 33.4 |
| 92 | 12,371 | 6,036 | 11,021 | 4,985 | 4,217 | 2,441 | 1,776 | 2,118 | 34.1 |
| 93 | 14,432 | 6,222 | 12,276 | 6,054 | 4,685 | 2,583 | 2,102 | 3,525 | 32.5 |

資料 : 어가경제조사결과(MAFF)

註 : '80年以前에는 移轉收入이 事業外 所得에 포함

10. 漁業粗收入 및 經營費

○ 漁業粗收入

| | 計 | 漁業收入 | | | 在庫増減 | |
|----|--------|--------|-------|-------|-------|-----|
| | | 漁撈 | 養殖 | 水産加工 | | |
| | 千원 | | | | | |
| 80 | 3,090 | 3,092 | 2,133 | 848 | 111 | △2 |
| 83 | 5,415 | 5,396 | 4,333 | 938 | 125 | 19 |
| 85 | 6,047 | 6,035 | 4,588 | 1,211 | 236 | 12 |
| 90 | 10,367 | 10,003 | 6,008 | 3,043 | 952 | 364 |
| 91 | 10,255 | 10,241 | 5,613 | 3,517 | 1,111 | 14 |
| 92 | 11,021 | 11,031 | 6,746 | 2,747 | 1,538 | △10 |
| 93 | 12,276 | 12,285 | 8,075 | 2,627 | 1,583 | △9 |

資料 : 어가경제조사결과(MAFF)

○ 漁業經營費

| | 計 | 漁業支出 | | | 減價 價却費 | 在庫生産 資材増減 | |
|----|-------|-------|-------|-------|-----------|--------------|----|
| | | 漁撈 | 養殖 | 水産加工 | | | |
| | 千원 | | | | | | |
| 80 | 1,338 | 1,225 | 985 | 221 | 19 | 114 | △1 |
| 83 | 2,845 | 2,707 | 2,337 | 349 | 21 | 146 | △8 |
| 85 | 3,232 | 3,031 | 2,592 | 362 | 77 | 198 | 3 |
| 90 | 5,151 | 4,792 | 2,779 | 1,609 | 404 | 365 | △6 |
| 91 | 4,970 | 4,557 | 2,550 | 1,569 | 438 | 369 | 44 |
| 92 | 4,985 | 4,502 | 2,702 | 1,233 | 567 | 487 | △4 |
| 93 | 6,054 | 5,573 | 3,745 | 1,306 | 522 | 477 | 4 |

資料 : 어가경제조사결과(MAFF)

11. 漁家負債

○ 用途別

| | 計 | 生産性 | | | 家計性 | 其他 |
|----|-------|-------|-------|-------|-------|-----|
| | | 漁業 | 兼業 | | | |
| | 千円 | | | | | |
| 83 | 2,040 | 1,407 | 1,263 | 144 | 574 | 59 |
| 85 | 3,378 | 2,501 | 2,054 | 447 | 804 | 73 |
| 90 | 5,925 | 4,738 | 3,281 | 1,457 | 870 | 317 |
| 91 | 6,520 | 5,240 | 3,256 | 1,984 | 958 | 322 |
| 92 | 6,485 | 5,211 | 3,001 | 2,210 | 951 | 323 |
| 93 | 7,662 | 6,092 | 3,044 | 3,048 | 1,129 | 441 |

資料：어가경제조사결과(MAFF)

○ 借入處別

| | 計 | 制度金融 | | | | 私債 | | |
|----|-------|-------|-------|-------|-----|-------|-----|-----|
| | | 水協 | 農協 | 其他 | 農漁家 | 其他 | | |
| | 千円 | | | | | | | |
| 83 | 2,040 | 1,123 | 859 | 194 | 70 | 917 | 527 | 390 |
| 85 | 3,378 | 2,157 | 1,491 | 513 | 153 | 1,221 | 908 | 313 |
| 90 | 5,985 | 4,515 | 2,059 | 2,147 | 309 | 1,410 | 801 | 609 |
| 91 | 6,520 | 5,131 | 2,377 | 2,294 | 460 | 1,389 | 751 | 638 |
| 92 | 6,485 | 5,232 | 2,196 | 2,345 | 691 | 1,253 | 708 | 545 |
| 93 | 7,662 | 6,088 | 2,335 | 3,049 | 704 | 1,574 | 825 | 749 |

資料：어가경제조사결과(MAFF)

여백

1994 年度 水産業 動向에 관한 年次報告書

1994년 9월 일 印刷

1994년 9월 일 發行

編輯：水産廳企劃管理官室

發行：大韓民國水産廳

印刷：주식회사 문원사

☎ 739-3911~4

< 非賣品 >